

주요국의 조세제도

－ 캐나다 편 －

2013. 11.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준봉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 언

한국과 캐나다는 역사적으로 견고한 정치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중요한 경제협력의 동반자이다. 또한 캐나다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발전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과 캐나다의 특별 동반자 관계 구상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근거하여 한국과 캐나다는 2005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13차례에 걸쳐 FTA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이 협상은 농축수산물 개방 등에 대한 이견으로 중단되었으나, 중단 이후 5년 8개월 만인 2013년 11월 말에 서울에서 제14차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재개되어 진행 중이다. 한편 캐나다에는 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하여 많은 한국 업체들이 이미 진출하여 있다.

이상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캐나다 경제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는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캐나다의 경제제도 중에서도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가 더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원에서는 캐나다의 조세제도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현재 발간하고 있는 『주요국의 조세제도』 시리즈의 하나로 캐나다의 조세제도를 개략적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본 보고서는 캐나다 조세제도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가급적 최신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저자가 노력을 기울였으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역시 급격한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의 변화가 빈번한 이유로 인해 가장 최신 내용을 본 보고서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캐나다의 조세에 대한 최소한의 길라잡이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캐나다 조세제도의 최신 내용을 포함한,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캐나다 국세청의 홈페이지와 주요 출판물 및 관련 법령정보를 참조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준봉 교수에 의하여 집필되었다. 저자는 기초자료의 조사에 많은 도움을 준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승영 박사 및 본 보고서 작성 과정 중에 있었던 세미나 등에서 유익한 조언을 해준 본원의 세법연구센터 연구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다. 또한, 본 보고서 작성의 최종 단계에서 감수를 통하여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을 준 삼일회계법인의 관계자께도 감사를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함을 밝혀둔다.

2013년 11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옥 동 석

목 차

제1편 총 론	17
I. 경제 및 사회 환경	17
1. 자연·사회 및 정치 환경	17
가. 자연환경	17
나. 정치·사회 환경	18
2. 최근의 경제환경	23
II. 조세체계	27
1. 세목의 구성	27
2. 조세법의 규범체계 및 세무행정	29
가. 조세법의 규범체계	29
나. 세무행정 체계	44
III. 세수입 규모 및 구성	46
1. 세수입 규모	46
2. 세수입의 구성	47
IV. 최근의 경제 및 재정정책 방향	50

제2편 소득세제	52
I. 개인소득세	52
1. 개관	52
가. 캐나다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의 정의	52
나. 소득의 정의	53
다. 소득의 원천	57
라. 법령상 과세항목 및 과세 제외 항목	60
마. 증여 및 상속	62
바. 우발소득	64
사. 손해배상금과 합의금	64
아. 귀속소득	66
자. 소득의 계산	67
2. 납세의무자	70
가. 거주자	70
나. 비거주자	73
3. 과세소득의 유형	76
가. 개요	76
나. 사업소득	85
다. 근로소득	104
라. 이자소득	110
마. 배당소득	113
바. 연금소득	116
사. 자본소득	117
아. 기타 소득	123
4. 비과세소득	127
가. 개요	127
나. 비과세 근로소득	128

다. 비과세 이자·배당소득	128
라. 비과세 연금소득	129
마. 기타의 비과세소득	129
바. 비과세저축계좌	130
5. 각종 공제제도	131
가. 비용공제 및 기부금공제	131
나. 종합소득공제	153
다. 세액공제	167
6. 세율 및 세액의 계산	184
가. 세율	184
나. 세액의 계산	185
7. 소득세 행정	186
가. 개요	186
나. 소득세 신고	187
다. 소득세 결정 및 경정	188
라. 납세의무자의 권리	189
마. 가산세	190
바. 조세범	193
사. 세액의 납부	193
아. 분납	194
자. 환급	195
8. 원천징수제도	195
가. 개요	195
나.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 등	196
다. 징수 및 납부	197
라.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198
마. 상여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	199
바. 일시금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199

사.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	200
Ⅱ. 법인소득세	201
1. 서론	201
2. 납세의무자	203
가. 비상장법인	204
나.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	204
다. 상장법인	204
3. 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	205
가. 법인의 과세소득 일반	205
나. 비과세단체에 대한 소득	205
4. 비용공제 및 세액공제 등	206
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206
나. 기부금공제	206
다. 소규모 사업공제	207
라. 제조가공공제	208
마. 외국납부세액공제	208
바. 연방 정치헌금 세액공제	210
사. 투자세액공제	210
5. 자본공제제도	212
6. 조세지원제도	213
7. 손실	214
가. 이월결손금공제	214
나. 법인의 지배권취득과 결손금	217
8. 세율 및 세액의 계산	218
가. 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세율 감경	219
나. 주 소득에 대한 연방세액의 감경	219
9. 비상장법인을 통한 사업소득 및 투자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220

가. 캐나다 소득세법상 이중과세의 조정	220
나.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 갖는 장·단점	225
10. 법인의 이용 및 주주임원 보수의 사용 등과 관련된 쟁점들	228
가. 주주임원 보수와 관련된 쟁점	228
나. 지주회사의 사용	229
다. 적격 소규모 법인 주식 등	230
라. 소득분할에 따른 세금	230
11. 법인의 분배, 청산 및 영업양도	231
가. 법인의 분배	231
12. 과세이연 특례	238
가. 주주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238
나. 주식의 이전	240
다. 법인 및 그 주주와 관계된 과세이연 특례	243
라. 주식 또는 법인의 증권에 관계된 과세이연특례	246
마. 법인 주식의 부부 사이의 이전	247
13. 법인세 행정	247
가. 법인세 신고	247
나. 분납	248
Ⅲ. 파트너십	250
1. 파트너십 개관	250
가. 파트너십의 정의 등	250
나. 파트너십과 합작투자사의 차이	251
2. 파트너십 소득	251
가. 일반 원칙	251
나. 파트너십 소득계산	252
다. 파트너십 지분 및 수정취득원가	253
3. 파트너십의 신고의무	256

IV. 신탁	258
1. 신탁의 특성과 유형	258
가. 신탁의 개념	258
나. 신탁 유형	260
2. 신탁소득 계산	262
가. 신탁 설정 시의 과세	262
나.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262
다. 신탁의 세액계산	266
V. 국제조세	269
1. 국제조세의 체계	269
2. 비거주자·국외법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270
가. 비거주자의 소득원천에 따른 과세	270
나. 부분적 거주자	277
3. 조세조약의 영향: 이중과세방지 규정	280
4. 역외 거래 및 대출	281
가. 이전가격세제	281
나. 과소자본세제	282
다. 비거주자에 대한 법인의 채권	283
5. 캐나다 거주자의 외국투자에 대한 과세	284
가. 적극적 사업소득의 경우	284
나. 수동적 소득의 경우	287
6. 조세조약 및 현황	288
제3편 소비세제	291
I. 부가가치세	291
1. 개관	291

2. 납세의무자	292
가. 납세의무자 및 징수의무자 일반	292
나. 영업활동	292
3. 과세대상 거래	293
4. 세율	294
5. 영세율공급 및 면세공급	295
가. 영세율공급	295
나. 면세공급	296
6. 부분적 면세사업자	297
가. 개관	297
나. 금융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298
다. 면세사업을 하는 부동산 사업자	298
7. 부가급여에 대한 GST	299
가. 개관	299
나. 부가급여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299
8. GST 등록	300
가. GST 등록 일반	300
나. 소규모 사업자	302
다. 자발적 사업자등록	302
9. 매매시점 환급	303
10. 매입세액공제	304
11. 제한된 매입세액공제	304
12. 특례: 간이과세	305
13. 세무행정	306
가. 징수 및 납부	306
나. 국세청의 권리 및 의무	308
다. 사업자의 권리	308

Ⅱ. 개별소비세	310
1. 첫 국가들 세금	310
2. 보험료에 대한 소비세	311
 제4편 재산세제	 313
Ⅰ. 재산세	313
1. 개관	313
2. 과세대상	314
3. 납세의무자	314
4. 과세표준	314
가. 현행 가치 평가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314
나. 현행 가치 평가를 위한 부동산 유형	316
5. 세율	316
6. 감면 및 세액공제	318
7. 재산세 행정	319
 Ⅱ. 소비인지세	 321
1. 개관	321
2. 담배제조업자의 소비인지세	321
3. 담배제조업자의 소비인지세 세율 및 세액계산	322
4. 소비인지세의 감경 및 면제	322
5. 소비인지세 행정	323
 제5편 기타 조세	 324
 참고문헌	 332

표 목차

제1편

<표 1-I-1> 캐나다의 등록 및 비등록 정당의 현황	19
<표 1-I-2> 캐나다 연방의회 양원의 각 주별 의원 수	21
<표 1-II-1> 소득세법의 체계 및 구조	38
<표 1-III-1> 캐나다 연방의 세수입 규모	46
<표 1-III-2> 캐나다 연방의 수입원천별 총수입 구조	48
<표 1-III-3> 캐나다 연방의 세목별 세수입	49

제2편

<표 2-I-1> 사업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사항	96
<표 2-I-2> 옵션에 대한 세법상 처리방식	121
<표 2-I-3> 근로소득 비용공제항목	133
<표 2-I-4> 사업소득상 비용 불공제 항목	144
<표 2-I-5> 사업소득에 대한 특별공제	149
<표 2-I-6> 조세지원 대상 플랜	157
<표 2-I-7> 비자본 이월결손금의 소급공제와 이월공제기간	163
<표 2-I-8> 비자본 이월결손금의 통산방식	164
<표 2-I-9> 순자본 이월결손금의 손금공제산입비율	165
<표 2-I-10> 기혼 또는 보통법상 배우자 세액공제 계산	170
<표 2-I-11> 피부양 장애인 세액공제 계산	173
<표 2-I-12> 경로자 세액공제 계산 사례(소득이 \$80,255인 경우)	175

<표 2-I-13> 2013년 캐나다 연방소득세 세율 적용 구간	185
<표 2-I-14> 소득세 계산	186
<표 2-I-15> 원천징수 되는 지급금	196
<표 2-II-1>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의 차이	202
<표 2-II-2> Division C의 공제항목에서 개인과 법인의 차이	202
<표 2-II-3> 양도차손이 아닌 결손금 계산	214
<표 2-II-4> Net CL(순양도차손) 계산	216
<표 2-II-5> Division C상 이월공제	217
<표 2-II-6> 연방법인세 감경에 따른 총유효세율	220
<표 2-II-7> Gross Up 및 배당세액공제금액 계산	222
<표 2-II-8> 소규모 사업공제	223
<표 2-II-9> PUC와 ACB 비교	232
<표 2-II-10> Sec. 85 Election에 따른 현물출자거래금액 결정	239
<표 2-III-1> 파트너십 지분 처분소득의 계산	254
<표 2-III-2> 음의 수정취득원가에 따른 자본소득 계산	256
<표 2-V-1> 조약체결 국가 현황	289

제3편

<표 3-I-1> 주별 부가가치세율 현황	294
<표 3-I-2> 소비세법 Schedule VI(영세율 적용 항목)	296
<표 3-I-3> 소비세법 Schedule V(면세공급 적용 항목)	297
<표 3-I-4> 통상의 과세혜택과 GST/HST 취급	300

제4편

<표 4-I-1> 현행 가치 평가액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계산	316
<표 4-I-2> 부동산 유형 및 재산세율	317

그림 목차

제1편

[그림 1-I-1] 캐나다의 입법·행정·사법부 시스템	22
[그림 1-I-2] 캐나다의 입법절차	23
[그림 1-I-3] 캐나다 GDP: 상품제조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비중	24
[그림 1-I-4] GDP: 법률과 재무·세무회계 서비스의 비중	25
[그림 1-I-5] 캐나다의 신규 사업투자에 대한 낮은 세율	26

제2편

[그림 2-I-1] 배당소득의 과세	114
---------------------------	-----

제1편 총론

I. 경제 및 사회 환경

1. 자연·사회 및 정치 환경

가. 자연환경

캐나다의 자연환경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 캐나다는 북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연방제 입헌군주국이고, 영국 연방(Commonwealth)에 속한다. 서경 95도, 북위 60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토 면적은 9,984,670km²이고, 해안선은 202,080km에 이른다. 캐나다는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이다.

캐나다는 동부 대서양 연안의 높지 않은 애팔래치아고지(高地), 서부 태평양 연안의 높고 험한 코르디예라 지역, 이들 사이에 끼인 로렌시아대지(臺地: 캐나다 순상지), 허드슨만(灣) 저지(低地)와 북극해 제도, 세인트로렌스강(江) 연안 저지, 내륙평원(그레이트플레인스)으로 구분된다. 위 애팔래치아 지역은 미국 애팔래치아산맥에서 연속되는 지역이며, 로키산맥 역시 미국에서 연속된 산맥들이다. 또한 뉴펀들랜드섬 앞바다에는 세계 3대 어장인 그랜드뱅크스가 있으며, 노바스코샤주의 펀디만은 조수 간만의 차가 14m나 된다.

1) 두산동아백과(Doopedia) 중 캐나다의 “1. 자연 항목”

: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11905.

캐나다의 기후는 온난한 남쪽 기후부터, 아(亞)북극성 또는 북극성의 북쪽 기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크게 12 기후구(氣候區)로 나누어진다. 툰드라 지역 서부는 건조하고 강수량이 적은 반면, 툰드라 지역 동부는 연간 강수량이 400~500mm로 많은 편에 속한다.

내륙 북부의 경우에는 침엽수림대가 자리하고 있으며, 연간 강수량은 적다. 반면 오대호 남쪽 연안과 태평양 연안은 겨울에 상대적으로 온난하다. 즉 오대호 남쪽 연안은 여름이 길고 겨울에 강수량이 많은 편이며, 태평양 연안은 연간 강수량이 1,000mm에 이르고 가장 추운 달의 평균기온이 0도에 불과한 지역이다. 또한 대초원(Prairie) 지역의 경우에는 따뜻한 여름과 추운 겨울의 기온 차이가 상당하다.

나. 정치·사회 환경

캐나다는 1867년의 「영국령 북아메리카 조례(The British North America Act: BNA ACT)」에 따라 자치령으로서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퀘벡(Quebec), 온타리오(Ontrario), 노바스코샤(Novascotia), 뉴브런즈윅(New Brunswick)주(州)로만 구성되어 있다가, 마니토바(Manitoba),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 프린스 에드워드 섬(Prince Edward Island), 앨버타(Alberta), 서스캐처원(Saskatchewan), 뉴펀들랜드(Newfoundland)주(州)가 가입하여 10개 주(州)로 구성되었으며, 이 외 준주(準州)인 유콘(Yukon territory), 노스웨스트(Northwest territories), 누나부트(Nunavut)를 합하여 캐나다 연방을 구성한다. 수도는 현재 온타리오(Ontario)주(州)에 위치한 오타와(Ottawa)이다.

캐나다는 1951년 영국으로부터 완전 독립하되 영연방의 일원으로 남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자치령으로 운영되었다. 총인구 약 3,485만명(2012년 7월 현재)은 영국 및 스코틀랜드계(36%), 프랑스계(15.8%), 아일랜드계(13.9%)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영국이나 프랑스계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주민(the Aborigine)은 인구의 약 2%를 차지한다. 공용어로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

다.²⁾

캐나다는 영국 연방의 구성원으로서, 입헌군주제 국가(Constitutional Monarchy) 이나, 실질적으로는 내각 책임제로 운영되고 있다. 1982년 최초로 헌법이 제정되어 영국과 분리된 정치체제를 갖춘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다만, 현재 캐나다의 국가 원수는 영국 여왕인 Queen Elizabeth II이며, 군주인 영국 여왕의 개인적 대리인으로서, 캐나다 총독(the Governor General of Canada)이 임명(representative)된다. 1952년 이래 모두 캐나다인이 총독으로 임명되어져 왔으며, 현재 캐나다 총독은 David Johnston 경(卿)이다.³⁾

〈표 1-1-1〉 캐나다의 등록 및 비등록 정당의 현황

구분	정당명	창당일	(현) 당 대표
등록	동물연합환경당(Animal Alliance Environment)	2005. 8. 2	White, Liz
	퀘벡당(Bloc Québécois) - 하원 의석 보유	1991. 6.15	Paille, Daniel
	캐나다행동당(Canadian Action Party)	1997	Porter Christopher
	캐나다기독교전통당 (Christian Heritage Party of Canada)	1987	Hnatiuk, Jim
	캐나다 공산당(Communist Party of Canada)	1921. 6	Figuroa, Miguel
	캐나다 보수당(Conservative Party of Canada) 하원 및 상원 의석 보유	2003.12. 7	Harper, Stephen
	캐나다 녹색당(Green Party of Canada) 하원 의석 보유	1983. 8	May, Elizabeth
	캐나다 자유당(Liberal Party of Canada) 하원 및 상원 의석 보유	1867	Trudeau, Justin
	캐나다 자유방임주의자당 (Libertarian Party of Canada)	1973. 7. 7	Chowne, Katrina
	마리화나당(Marijuana Party)	2000. 2	Longley, Blair T.

2)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인터넷 홈페이지 중 “캐나다 개관”.

(<http://can-ottawa.mofat.go.kr/korean/am/can-ottawa/policy/overview/index.jsp>)

3) 총독은 보통 His Excellency라고 부른다. 따라서 현재 총독은 다음과 같이 공식 명칭을 부르고 있다. “His Excellency the Right Honourable David Johnston”.

〈표 1-1-1〉의 계속

구분	정당명	창당일	(현) 당 대표
등록	캐나다 마르크스레닌당 (Marxist-Leninist Party of Canada)	1970. 3.31	Di Carlo, Anna
	신민당(New Democratic party) 하원 의석 보유	1961. 8. 3	Mulcair, Thomas J.
	캐나다 해적당(Pirate Party of Canada)	2009. 6. 1	Vulliez, Shawn
	진보캐나다당(Progressive Canadian Party)	2004. 3.29	Stevens, Sinclair Mcknight
	코뿔소당(Rhinoceros Party)	2006. 9.27	Yo Gourd, Francois
	캐나다 연합당(United Party of Canada)	2010	Jedan, Brian
	서구당(Western Block Party)	2005. 6.24	Christie, Douglas H.
비등록	자연법당(Natural Law Party)	1992	Paterson, Neil
	캐나다 제일국민당 (First People National Party of Canada)	2004. 4	Morin, William
	뉴펀들랜드 라브라도 제일당 (Newfoundland & Labrador First Party)	2004.11. 5	Bennet, Wayne Ronald
	캐나다 인민의 정치력 당 (People's Political Power Party of Canada)	2006. 4.25	Everett, Anna-Maria
	여유당(Work Less Party)	2005. 6	Schmidt, Conrad

자료: <http://www.parl.gc.ca/parlinfo/Lists/Party.aspx>

의회(Parliament)는 국가원수인 영국 여왕의 대리인에 해당하는 총독(Governor General)과 상·하원(the Senate & the House of Commons)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상원은 주로 하원에서 넘어온 입법안을 심사하여 통과시키는 기능을 주로 한다. 다만, 상원에서도 입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상원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입법안은 조세를 창설하거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안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다.⁴⁾ 하원에서는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내각(the Cabinet)의 대부분은

4) Rober Marleau · Camille Montpetit, 『House of Commons Procedure and Practice』(2000 Edition), at Chapter 1. (<http://www.parl.gc.ca/MarleauMontpetit/DocumentViewer.aspx?DocId=1001&Sec=Ch01&Seq=3&Language=E>)

하원의원으로 구성된다.

〈표 1-1-2〉 캐나다 연방의회 양원의 각 주별 의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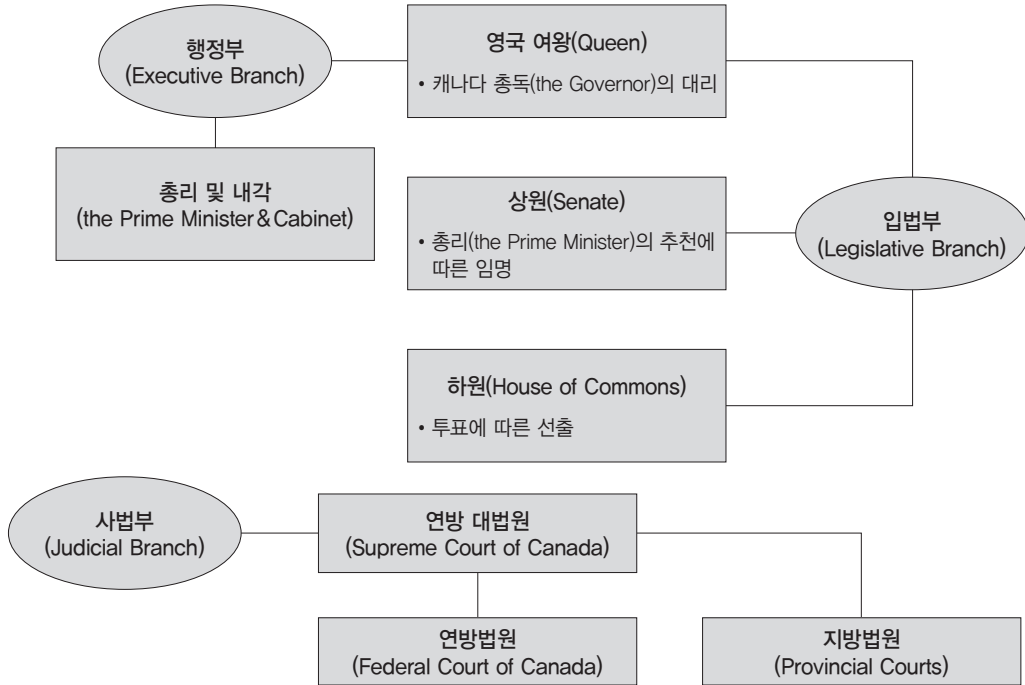
(단위: 명)

주	상원	하원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	6	34
앨버타(Alberta)	6	26
서스캐처원(Saskatchewan)	6	14
마니토바(Manitoba)	6	14
온타리오(Ontario)	24	103
퀘벡(Quebec)	24	75
뉴브런즈윅(New Brunswick)	10	10
노바스코샤(Nova Scotia)	10	11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rince Edward Island)	4	4
뉴펀들랜드(Newfoundland)	6	7
유콘준주(Yukon Territory)	1	1
노스웨스트준주(Northwest Territories)	1	1
누나부트준주(Nunavut)	1	1
총계	105	301

집행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내각(the Cabinet)은 하원의 다수당 당수가 조직하며, 대부분 하원의원으로 구성되는데, 다만 상원의원이 상원의 대표로서 1인 이상이 포함 되어야만 한다.⁵⁾ 현재 내각의 수장인 캐나다 연방 총리는 스티븐 조셉 하퍼(Stephen Joseph Harper)로 캐나다 보수당(the Conservative Party of Canada)의 당수이다.

5) The House of Commons Canada, 『Guide to the Canadian House of Commons』, Library of Parliament, 2011, p. 6.

[그림 1-1-1] 캐나다의 입법·행정·사법부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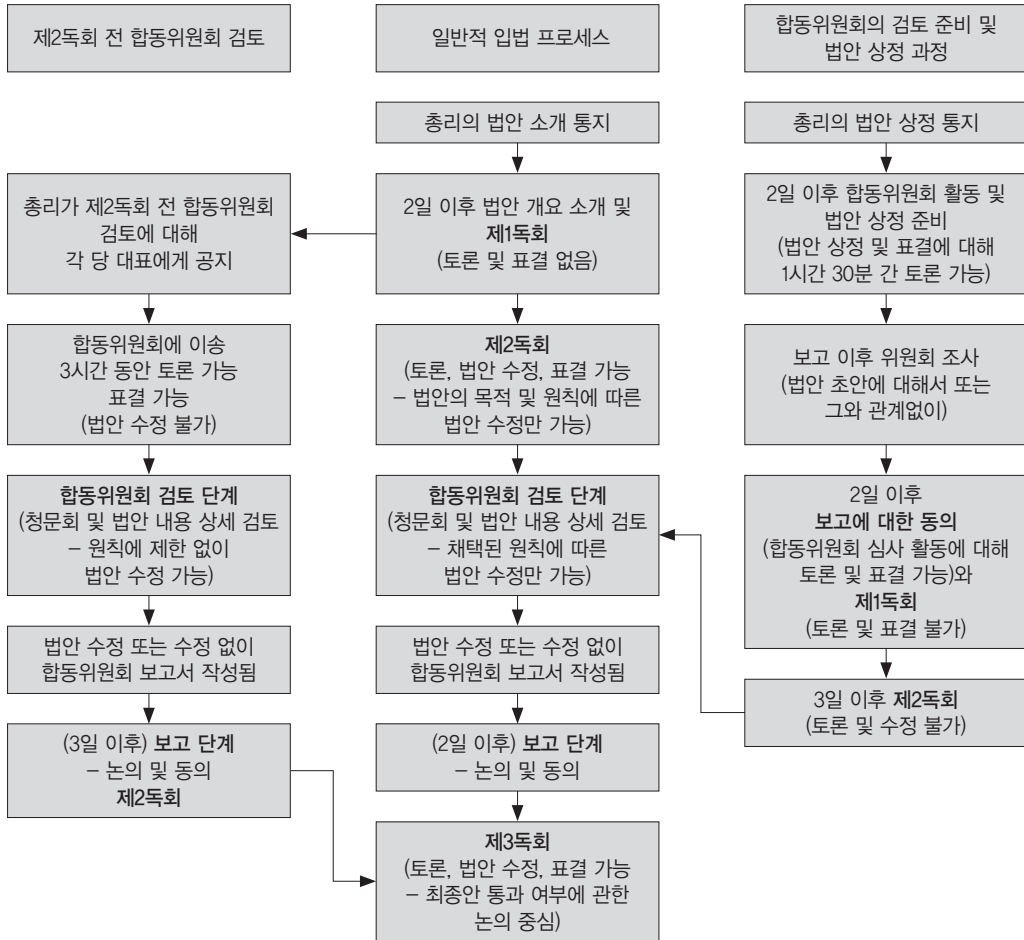


자료: The House of Commons Canada, 『Guide to the Canadian House of Commons』, Library of Parliament, 2011, p. 2.

또한 캐나다의 경우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이나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이나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입법화되는바, 입법안이 법제화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입법 제안 및 제1독회(Introduction and First Reading), 제2독회(Second Reading), 상·하 양원 합동위원회의 검토(the Committee Stage), 합동위원회의 제3독회(Third Reading), 총독의 동의(the Assent by the Governor General). 해당 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제2독회에서 폐기될 수 있다. 해당 입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단계는 제2독회, 위원회 검토 및 제3독회 단계라고 할 수 있다.⁶⁾

6) Rober Marleau · Camille Montpetit, 『House of Commons Procedure and Practice』(2000 Edition), Chapter 1. (<http://www.parl.gc.ca/MarleauMontpetit/DocumentViewer.aspx?DocId=1001&Sec=Ch01&Seq=3&Language=E>)

[그림 1-1-2] 캐나다의 입법절차



자료: Rober Marleau · Camille Montpetit, 『House of Commons Procedure and Practice』(2000 Edition), Figure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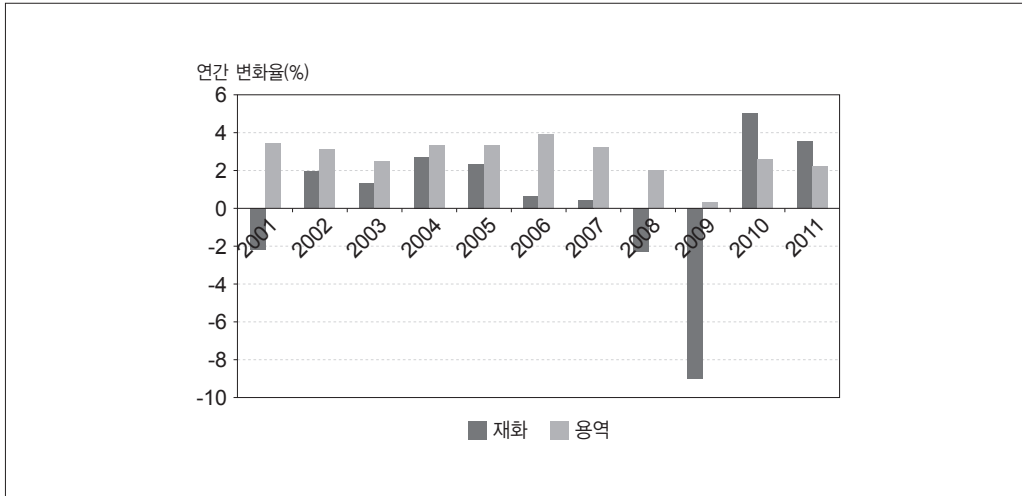
2. 최근의 경제환경

2011년 기준 캐나다의 GDP는 1조 7,586억달러⁷⁾이며, 1인당 GDP는 약 47,340달러이다. 직전연도 대비 GDP 성장률은 2.1%이며, 물가상승률은 2.3%이다.

7) 해당 수치는 미 달러 기준임

캐나다는 대외교역 비중이 GDP 규모의 60% 정도로, 무역 의존도가 우리나라와 같이 높은 편에 속하며, 천연자원 및 제조상품은 물론 서비스산업 분야에서의 수출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캐나다의 무역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바가 크며, 캐나다에 대한 외국인의 총투자 및 교역의 63%가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 3위의 원유매장량을 보유한 국가일 뿐만 아니라, 세계 3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에 해당되며, 이 중 상당분이 수출되고 원유 및 가스 등 광물자원은 전체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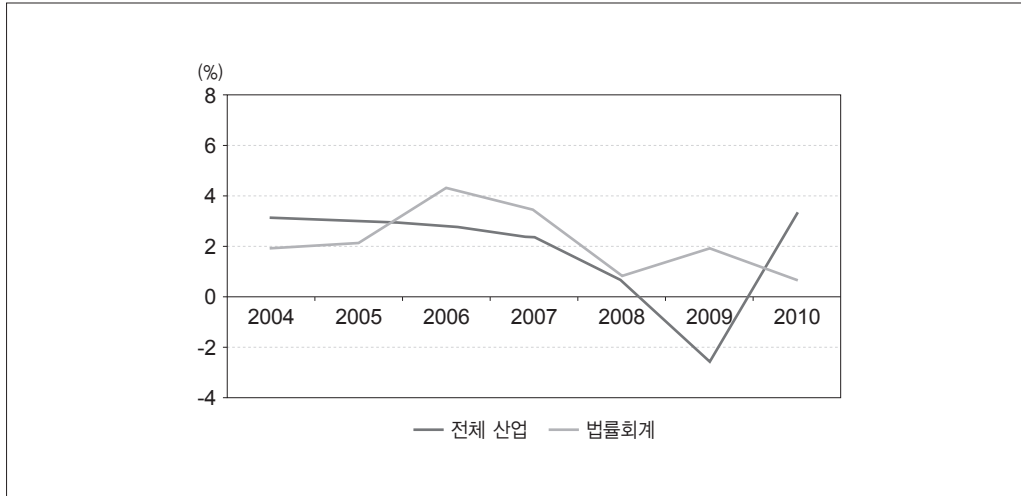
[그림 1-1-3] 캐나다 GDP: 상품제조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비중



자료: “Canada Year Book 2011”, Statistics Canada(www.statcan.gc.ca), Chart 3.1 재구성

캐나다의 서비스산업이 캐나다 전체 GDP의 약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문 서비스산업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인다.

[그림 1-1-4] GDP: 법률과 재무·세무회계 서비스의 비중



자료: “Canada Year Book 2011”, Statistics Canada(www.statcan.gc.ca), Chart 3.2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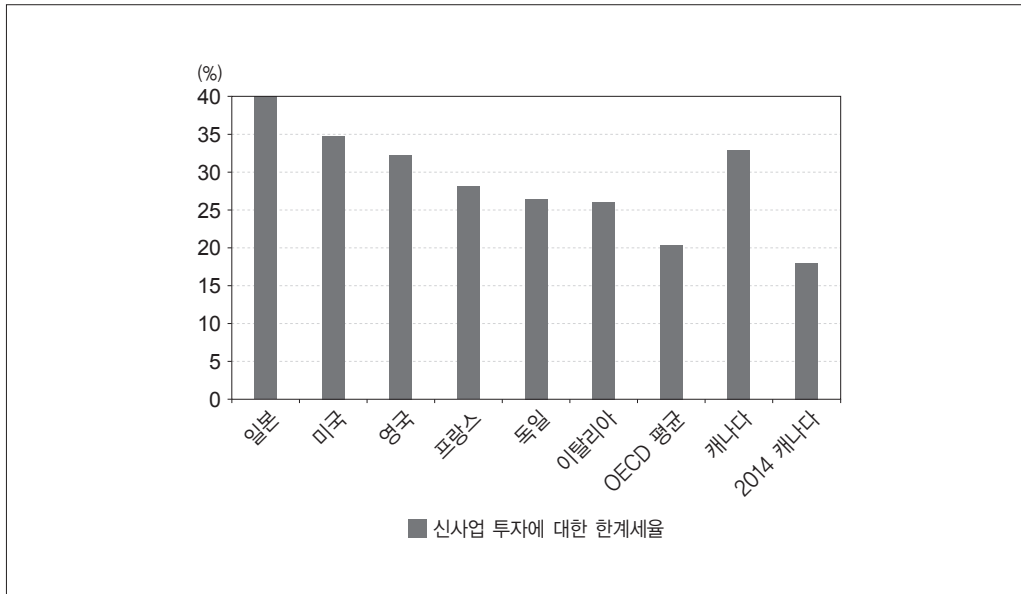
캐나다의 경제권의 지역적인 편중도 심한 편이다. 10개 주와 3개의 준주 중, 온타리오(Ontario), 퀘벡(Quebec), 앨버타(Alberta),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 등 4개 주에 총인구의 86%와 GDP의 87%가 집중되어 있다.

최근 일자리 창출 및 장기 번영을 위한 경제계획(Jobs Growth and Long-Term Prosperity)을 2012년 경제계획(Economic Action Plan 2012)의 표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 투자 조건의 향상, 교육 및 사회인프라에 대한 투자,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지속성 확보 및 균형 재정을 위한 책임 있는 국가 재정 관리 등을 5대 대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법인의 사업 투자에 대한 지원’과 ‘경제적 중립성을 갖춘 조세제도 확보’를 조세제도 개혁의 대전제로 두고, ‘법인 및 파트너십 세제 단순화’, ‘법인의 새로운 투자에 대한 한계유효세율 인하’ 및 ‘조세순응비용(Tax Compliance Cost)의 절감’ 등 개혁조치를 시행하고 있다.⁸⁾

8) 자세한 사항은 The Honourable James M. Flaherty(Minister of Finance), “Jobs Growth and Long-term Prosperity,” (Economic Action Plan 2012), Ministry of Finance, 2012, pp. 114~127.

[그림 1-1-5] 캐나다의 신규 사업투자에 대한 낮은 세율



자료: “The Honourable James M. Flaherty (Minister of Finance), “Jobs Growth and Long-term Prosperity,” (Economic Action Plan 2012), Ministry of Finance, 2012, Chart 3.2.1.

II. 조세체계

1. 세목의 구성

캐나다의 조세는 크게 연방 차원에서 부과하는 조세와 지방정부인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조세로 나누어진다. 연방 차원에서 부과하는 조세로는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및 주정부와 조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GST/HST)가 있으며, 이러한 주요 항목에 대해서 지방세 역시 부과될 수 있다.

개인소득세는 급여, 사업, 이자 및 배당, (자산의) 양도, 퇴직 및 연금소득 등에 대하여 부과하며, 법인소득세는 법인의 사업, 이자 및 배당, (자산의) 양도 등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한다. 연방 차원에서 산정한 소득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주 정부가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데, 이에 있어서도 연방 차원의 부가가치세와 주정부 차원의 부가가치세가 동시에 존재하며, 이를 조율하여 통합 부과하는 Harmonized Sales Tax System(이하 HST)이 도입되어 있다. 다만, Saskatchewan, Manitoba주와 Quebec주에서는 여전히 연방 부가가치세와 지방의 부가가치세가 나누어져 각각 부과되고 있으며, British Columbia주의 경우에는 기존에 HST를 취하고 있었으나 2013년부터는 다시 연방 부가가치세와 지방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분리하여 부과한다.⁹⁾

이 밖에 급여 항목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형태의 급여세(Payroll tax), 에너지세, 담배 등 특별 상품 등에 대해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excise tax) 및 관세(customs import duties) 등이 있다.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는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 및 재산세의

⁹⁾ KPMG, *Tax Facts(2012-2013)*, KPMG LLP., 2012, p. 179.

과세표준을 기초로 하여 부과되는 교육세(educational tax)가 있다. 기타 지방세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① 각 주별로 부과하는 주토지양도세(Provincial Land Transfer Taxes)가 있다. 해당 세제는 i) 단순 누진체계(2~3단계 누진체계)를 갖춘 British Columbia, Saskatchewan, Ouebec(Montreal 제외), Prince Edward Island, New foundland & Labrador주의 경우, ii) 다단계 누진체계(4단계 이상)를 갖춘 Manitoba, Ontario, Quebec(Montreal 시), iii) 평률세 체계를 갖춘 Alberta, New Brunswick, Nova Scotia주가 있다.¹⁰⁾
- ② Manitoba주의 보건 및 고등교육세(Manitoba Health and Post-Secondary Education Tax) : 고용주가 지급하는 연간 급여액(annual payroll)을 기준으로 1.25백만캐나다달러 초과~2.5백만캐나다달러 이하인 경우, 4.3%의 세율이 적용되며, 2.5백만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15%의 세율이 적용된다.
- ③ Ontario주의 고용주 보건세(Ontario Employer Health Tax) : 세율은 1.95%이며, 고용주가 지급하는 연간 급여액이 40만캐나다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된다.
- ④ Quebec주의 보건 서비스 기금(Quebec Health Services Fund) : 부과율은 고용주가 지급하는 연간 급여액이 500만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26%가 적용되며, 그 이하의 금액인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100만캐나다달러의 연간 급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부담금 부과율은 2.7%이다.
- ⑤ Newfoundland주 보건 및 고등 교육세(Newfoundland Health and Post-Secondary Education Tax) : 해당 세율은 2%이며, 고용주가 지급하는 연간 급여액이 1.2백만캐나다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이다.
- ⑥ 각 주별 산업재해보험료(Workers' Compensation) : British Columbia, Ontario, Alberta주 등 주요 주(州)들은 고용주들에게 주정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해당 보험료의 부과금

10) 자세한 사항은 KPMG, op.cit., pp. 132~135.

액은 1인 급여평가액 기준(Assessable Earnings)으로 최저 0.09캐나다달러(급여 100캐나다달러당 부과금액/British Columbia)에서부터 최대 37.08캐나다달러(100캐나다달러당 부과금액/Manitoba)까지 다양하다.

2. 조세법의 규범체계 및 세무행정

가. 조세법의 규범체계

1) 캐나다의 조세법 규범체계

가) 조세법령 및 관련 자료

캐나다의 조세법령의 규범체계¹¹⁾는 헌법(the Constitution Act, 1982)을 정점으로 하여, 소득세법(the Income Tax Act), 소비세법(the Excise Tax Act) 등의 개별 조세법률로 구성된다. 소득세법 등과 관련하여 참조할 수 있는 법적 준거들은 역사적 주석들(Historical footnotes), 입법초안(Draft legislations: Pending amendments), 소득세법 적용규칙(Income Tax Application Rules), 국제조세조약(International tax conventions or treaties) 및 소득세법 시행령 (Income Tax Regulations)이 있다.

역사적 주석들은 해당 조항은 언제부터 적용가능한 것인지 및 경과규정은 어떠한지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한다.

연방예산(Federal Budget)을 통하여 새로운 조세정책 목표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법초안을 도입할 수 있다. 한편 기술적인 개정안(technical amendments)은 법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바로 잡거나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것이다. 입법초안은 특정 조문 다음에 ‘Pending Amendment’라는 제목으로 박스에 넣어 표시된다.

소득세법 적용규칙은 소득세법 CCH판의 주요 구성요소인데, “the Income Tax

11)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Introduction to Federal Income Taxation in Canada*, (32nd Edition), CCH, 2011, at ¶¶ 1,120~1,130.

Application Rules, 1971(ITAR)”의 조문을 의미한다. ITAR은 1972년 법으로부터 현행 소득세법 체계 및 자본소득 과세체계에 이르기까지의 경과규정들에 대하여 규정한다.

국제조세조약은 캐나다가 잠재적인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와 협상하여 체결한 조약을 의미한다. 캐나다-미국 조세협약(1980) [Canada-United States Tax Convention (1980)]과 캐나다-영국 소득세협약(1978) [Canada-U.K. Income Tax Convention (1978)]이 소득세법 CCH판에 실려 있다. 조세조약은 소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소득세법상 개별적인 상황을 해결하고 소득세법의 일반목적 및 규정들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법의 일부이지만 의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서 “Order-in-Council”만으로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다.

나) 유권적 해석자료

유권적 해석자료들¹²⁾에는 판례(Judicial Decisions), 서식(Forms), 캐나다 국세청 발행물(Canada Revenue Agency publications), 법률안 설명자료(Technical notes and explanations) 및 재무회계기준(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이 있다.

① 캐나다 법원 및 판례(Judicial decision)

캐나다 법원 및 판례(Judicial decision)에 대하여 살펴본다.

- 보통법(common law)을 형성하는 판례에 대하여서는 최종적으로는 캐나다 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Canada: S.C.C.)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 항소법원(the Federal Court of Appeal)은 대법원에 상고되기 이전 사건을 담당한다. 이하 항소법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0년 이전에는 소득세법 사건을 연방법원(Federal Court)에서 처리하였다.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Federal Court-Trial Division(F.C.T.D.)”과 “Federal Court of Appeal(F.C.A.)”로 나

12) Id., at ¶ 1,140.

뉘어 있었고 1심은 F.C.T.D.에서 항소심은 F.C.A.에서 처리하였다. 1990년 이후에는 F.C.A.만이 소득세법 사건을 담당하되 예외적으로 몇몇 소득세법과 관련된 행정적인 쟁점들(some administrative matters pertaining to income tax)은 F.C.T.D.에서 처리하였다. 2003년 연방법원법(Federal Courts Act)이 개정되어 연방항소법원(Federal Court of Appeal)과 연방법원(Federal Court; F.C.)이 두 개의 별도 법원으로 창설되었다. F.C.A.는 계속하여 소득세법 사건을 담당하는 한편 F.C.는 소득세법과 관련된 행정적인 쟁점들을 담당한다. 1972년 전에는 항소법원을 “the Exchequer Court(Ex. Ct.)”라고 불렀다.

- 조세사건을 다루는 하급심법원을 캐나다 조세법원(Tax Court of Canada; T.C.C.)이라고 부른다. 1972년 이전에는 “the Tax Appeal Board (T.A.B.)”라고 불렀고, 1984년 이전에는 “the Tax Review Board (T.R.B.)”라고 불렀다. 현재 캐나다 조세법원은 법원 단계의 제1심 불복절차에 대하여 전속적 관할(exclusive jurisdiction)을 갖는다.¹³⁾
- 판례는 거의 항상 특정 사실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해당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을 해석하여 적용한다. 대부분의 캐나다 판례는 CCH에 의하여 “the DOMINION TAX CASES”형태로 출간된다. 판례는 납세의무자, 83 DTC 5041과 같은 인용약어(referance) 및 법원을 통하여 표시한다. *Norwegijick v. The Queen*, 83 DTC 5041(S.C.C.) 등이 그 표시례에 해당한다. ‘83’은 1983년 판례집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DTC’는 DOMINION TAX CASES set를 의미한다. ‘5041’은 1983년 판례집 중 첫 페이지가 5041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2009년부터는 종전과 같이 페이지를 통하여 표시하던 것과는 다른 인용약어를 사용한다. 2009년 조세법원사건은 1001부터 이어서 번호가 부여되며 다른 사건들은 5001부터 이어서 번호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 “*Lewis v. The Queen*”는 2009 DTC 1001로, “*Gambino v. The Queen*”은 2009 DTC 1002로 인용한다. 마찬가지로 “*Kossow v. The Queen(F.C.A.)*”는 2009 DTC 5001로, “*Kilbridge v. The Queen(F.C.A.)*”는 2009 DTC 5002로 인용한다. 사건 순서는 다음 해에

13) Id., at ¶ 1,330.

는 다시 시작한다. 한 사건 내에서는 페이지가 아니라 문단에 의하여 특정한다.

- 판례 중 구속력을 갖는 선결례(binding precedent)로서 기능할 수 있는 부분은 “ratio decidendi”라고 부른다. 이는 판결의 이유(reason for judgement)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 판례 중에는 해당 사실관계의 판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언급된 comments 역시 포함될 수 있다. 이는 “obiter dicta”라고 불린다. 이는 구속력을 갖는 선결례(binding precedent)로서 기능하지는 않는다.

② 서식들(Forms)

서식들(Forms) 역시 유권적인 해석자료가 될 수 있다. 서식들은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에 의하여 발행되는데, 이들 역시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약간의 영감을 줄 수 있다. 모든 서식들은 세무서(district taxation offices), 캐나다 국세청(CRA) 웹사이트(www.캐나다 국세청(CRA).gc.kr) 또는 상업적 출판사로부터 입수할 수 있다.

③ 캐나다 국세청(CRA) 발행물(캐나다 국세청(CRA) publications)

캐나다 국세청(CRA) 발행물들 역시 유권적인 해석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들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Information Circulars(ICs): 주로 행정적 및 절차적 문제들을 다룬다.
- Interpretation Bulletins(Its): 세법 특정 조문에 대한 캐나다 국세청(CRA)의 해석의 개요를 서술한다.
- Advance Tax Rulings(ATRs): 캐나다 국세청(CRA)는 특정 사전질의회신 중 일부를 선택하여 TR 시리즈로 출간하였는바, 그 마지막 사전질의회신은 1980년 12월 9일자 TR-101이었다. 위 TR 시리즈 중 많은 부분이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적용할 수 없게 되자 캐나다 국세청(CRA)은 1985년 11월 29일 ATR-1을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ATR은 1996년 3월까지 발간되었다. 위 ATR들은 다음 technical interpretations로 대체되었다.
- Technical Interpretations: 특정한 세법상 쟁점들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해

석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하여 캐나다 국세청(CRA)은 유권적 해석(technical interpretation)을 제공하는데 이들은 상업적 출판사들에 의하여 발간된다. 예를 들어 CCH는 그 요약본을 인쇄 또는 전자적 형태로 “WINDOW ON CANADIAN TAX”에서 제공하고, 그 전문을 전자적 형태로 “TAX WINDOW FILES”에서 제공한다.

- Information Booklets: 캐나다 국세청(CRA)은 공익을 위하여 유권적 효력이 없는(non-technical) 정보책자뿐만 아니라 특정 주제에 대한 유권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들 모두는 세무서(district taxation offices), 캐나다 국세청(CRA) 웹사이트(www.캐나다 국세청(CRA).gc.kr) 또는 상업적 출판사로부터 인쇄된 형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입수할 수 있다.
- Income Tax Technical News: 캐나다 국세청(CRA)은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발행하는바, 이에는 최근 세법상 쟁점들에 대한 시의적절한 코멘트가 실려 있고 이 뉴스레터는 전문적인 자료들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CCH의 “CANADIAN TAX REPORTER”에서 인쇄 또는 전자적 형태로 찾을 수 있다.

캐나다 국세청(CRA) 발행물들은 법은 아니다. 그러나 *Norwegijick v. The Queent*사건의 대법관 Dickson(Mr. Justice Dickson)에 따르면 행정적 정책 및 해석은 결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존중되어야 하고 입법상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요한 요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④ 법률안 설명자료(Technical notes and explanations)

법률안 설명자료들은 재무부(the Department of Finance)에 의하여 새로운 입법이 도입될 때 발행된다. 이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자료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⑤ 재무회계기준(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

재무회계기준은 법이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을 경우 해석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된다. 캐나다 상장회사의 경우 2011년부터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가 채택되었다. 이하 GAAP에는 IFRS 역시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캐나다 조세관련 법률의 입법과정

캐나다 연방 재무부의 예산(Budget Resolutions)이 연방하원(the House of Commons)에서 통과됨으로써, 조세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 역시 함께 이루어진다. 그 세법개정안은 연방 상원(the Senate)과 국가 원수인 영국 여왕의 동의(Royal assent)를 얻어 확정되는바, 연방하원을 통과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세법개정은 위헌이다.¹⁴⁾

연방예산안 확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모든 세법 개정안은 재무부 단계에서 제안되는바, “Notice of Ways and Motion to Amend the Income Tax Act”가 하원에 제출되기 이전에는 해당 세법개정안이 상정될 수 없다. 재무부 장관은 “Notice of Ways and Motion to Amend the Income Tax Act”를 하원에 제출하기 이전에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수상과 내각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원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독에 의한 승인(Royal Assent)을 얻어 확정되기 전까지 재정상임위원회(the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and Economic Affairs)에 의하여 상세하게 검토 및 토론되고 하원과 상원에서 각 총 3회의 독회가 이루어져야 한다.¹⁵⁾

2) 캐나다 연방소득세법의 역사 등

캐나다 연방소득세법의 체계에 대하여 살펴보기 이전에 캐나다 연방소득세법의 역사 및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¹⁶⁾

캐나다 소득세법은 소득전쟁세법(Income War Tax Act)에 의하여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의 전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그 법은 약 10면에 이르는 간단한 것이었다. 이는 전통적인 세제인 관세 및 거래소비세(excise tax)의 세입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다. 1948년에 의회는 소득세법(Income Tax Act)을 통과시켰고 이 법에 소

14) Sections 53~4 of the Constitution Act.

15)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021.

16) Id., at ¶ 1,001.

득전쟁세법이 통합되었다.

연방소득세법의 주요 개혁은 1962년에 Kenneth Carter의 주재하에 왕립조세위원회(Royal Commission on Taxation)가 설립되면서 이루어졌다. Carter위원회는 1967년에 7권에 이르는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이에는 종전에 과세되지 않았던 자본소득(Capital gains)를 소득에 포함시키는 포괄적 과세표준(comprehensive tax base) 개념을 사용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들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로 인하여 1969년 11월에 조세개혁에 관한 백서(White Paper)가 발간되었다. 그 내용은 뒤이어 1971년 6월 18일 예산안 시정연설(Budget address)에서 채택되어 기존의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Bill C-259가 상정되었다. 위 법안은 1971년 12월 23일 총독의 재가를 얻어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이후 현행 입법을 미세조정하고 새로운 재정정책을 도입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항들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하여 개정되었다.

1987년 6월 18일 캐나다 정부는 조세개혁에 관한 백서(White Paper)를 발간하였는데 이는 두 단계로 시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1988년에 시행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 체계가 변화하였고 기존의 연방 판매세(federal sales tax) 역시 한시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존의 연방 판매세가 재화 및 용역세(the goods and services tax: GST)로 불리는 광범위한 범위의 다단계 판매세로 대체되었다. 이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영국 북아메리카법 1987(The British North America Act, 1987)은 헌법 1987(the Constitution Act, 1987)로도 불리는데, 이는 캐나다 내 과세에 관한 권한을 연방 및 주로 구분하여 부여하였다. Subsection 91(3)은 연방정부에 무제한의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subsection 92(2)는 주정부가 해당 주에서 가득한 소득 및 해당 주 거주자의 소득을 직접 과세하는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그들의 과세권한에 관하여 과세협정(taxation agreements)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들 사이의 세수 확보에 관한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3) 캐나다 연방소득세법의 체계 및 구조

이하에서는 캐나다 연방소득세법의 구성, 조문 표기방법 및 Part별 내용의 순서로 살펴본다.¹⁷⁾

캐나다 연방소득세법은 Part, Division, Subdivision 및 Section로 구성된다. Section은 6(1)(b)(i)(A)의 형식으로 표시되는데, 이는 순서대로 section, subsection, paragraph, subparagraph 및 clause를 의미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subclause는 로마 대문자 숫자로 표시하고 sub-subclause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캐나다 연방소득세법 Part I은 소득세에 관하여, Part I.01은 스톡옵션의 과세이연에 대하여, Part I.2는 노령사회보장혜택(Old Age Security Benefits)에 대하여 각각 규정한다.

Part I 중 각 Division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Division A는 납세의무에 대하여, Division B는 소득의 계산에 대하여, Division C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Division D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들에 대하여, Division E는 개인 및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 및 세액공제에 대하여, Division E.1은 최저한세에 대하여, Division F는 특별규정들에 대하여, Division G는 과세이연 및 특별 소득 약정들에 대하여, Division H는 소득공제(Exemptions)에 대하여, Division I는 신고·결정·납부 및 불복에 대하여, Division J는 소송에 관하여 각각 규정한다.

Part I Division B의 subdivision에 대하여 살펴본다. Subdivision a는 고용에 대하여, Subdivision b는 사업소득 또는 자산소득에 대하여, Subdivision c는 자본손익에 대하여, Subdivision d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Subdivision e는 기타 공제에 대하여, Subdivision f는 소득계산에 관한 규정들에 대하여, Subdivision g는 비과세에 대하여, Subdivision h는 캐나다 법인과 주주에 대하여, Subdivision i는 캐나다 거주자가 아닌 법인의 주주들에 대하여, Subdivision j는 파트너십 및 파트너들에 대하여, Subdivision k는 신탁 및 수익자들에 대하여 각각 규정한다.

Part II에서 Part XII.6은 특별거래에 대한 조세(special transaction tax)에 대해

17) Id., at ¶ 1,110 and 1,120.

서 규정한다.

Part XIII에서 Part XIV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규정하는바, Part XIII는 비거주자가 캐나다에서 가득한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Part XIII.1은 적격 외국은행에 대한 부가적 세금(Additional tax on authorized foreign banks), Part XIII.2는 캐나다 뮤추얼펀드에 투자한 비거주자 투자자들(Non-resident investors in Canadian Mutual Funds)의 과세에 대하여, Part XIV는 비거주 법인에 대한 부가적인 세금, 즉 지점세(Branch tax)에 대하여 각각 규정한다.

Part XV에서부터 Part XVII는 세무행정 및 해석에 대하여 규정하는바, Part XV는 세무행정 및 집행에 대하여, Part XVI는 조세회피에 대하여, Part XVI.I는 이전 가격에 대하여, Part XVII는 해석에 대하여 각각 규정한다.

〈표 1-11-1〉 소득세법의 체계 및 구조

Division	Subdivision	Section(s)
Part I. A-납세의무(Liability for Tax)		2
B-소득의 계산(Computation of Income)		3-108
	a-고용(Employment)	5-8
	b-사업소득 또는 자산소득 (Business or Property)	9-37
	c-자본이득 및 손실 (Capital gains and losses)	38-55
	d-기타 소득 (Other sources of income)	56-59.1
	e-소득공제 (Deductions in computing income)	60-66.8
	f-소득 계산에 관한 규정 (Rules relating to the computation of income)	67-80.5
	g-비과세소득 (Amounts not included in income)	81
	h-캐나다 법인 및 주주 (Canadian corporations and their shareholders)	82-89
	i-캐나다 거주자가 아닌 법인의 주주 (Shareholders of corporations not resident in Canada)	90-95
	j-파트너십 및 파트너 (Partnerships and their members)	96-103
	k-신탁 및 수익자 (Trusts and their beneficiaries)	104-108
C-과세표준 계산 (Computation of Taxable Income)		110-114.2
D-비거주자의 캐나다 원천 과세표준 (Taxable Income Earned in Canada by Non-Residents)		115-116

〈표 1-11-1〉의 계속

Division	Subdivision	Section(s)
E-세액 계산(Computation of Tax)		117-127.41
	a-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원칙 (Rules applicable to individuals)	117-122.51
	a.1-자녀세액공제 (Child tax benefit)	122.6-122.64
	a.2-근로소득세액공제 (Working Income tax benefit)	122.7-122.71
	b-법인에 대한 원칙 (Rules for corporations)	123-125.5
	c-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적용되는 원칙(Rules for all taxpayers)	126-127.41
E.1-최저한세(Minimum Tax)		127.5-127.55
F-특별 규정(Special Rules)		128-143.3
G-과세이연 및 특별 소득 약정 (Deferred and Special Income Arrangement)		144-148.1
H-소득공제(Exemptions)		149-149.2
I-신고, 결정, 납부 및 불복 (Returns, Assessments, Payments and Appeals)		150-168
J-소송(Appeals to the Courts)		169-180
Part I.01-스톡옵션이익의 과세이연 (Tax in Respect of Stock Option Benefit Deferral)		180.01
Part I.2-노령사회보장혜택에 대한 과세 (Tax on Old Age Security Benefits)		180.2
Part II~PartII.6-특별거래에 대한 조세 (Special transaction tax)		182-211.91
Part XIII-비거주자의 캐나다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Tax on Income from Canada of Non-Resident Persons)		212-218.1

〈표 1-11-1〉의 계속

Division	Subdivision	Section(s)
Part XIII.1-적격 외국은행에 대한 부가적 조세 (Additional tax on authorized foreign banks)		218.2
Part XIII.2-캐나다 뮤추얼 펀드에 투자한 비거주자인 투자자 (Non-Resident investors in Canadian Mutual Funds)		218.3
Part XIV-비거주자 법인에 대한 부가적 조세 [지점세] (Additional Tax on Non-Resident Corporations [Branch Tax])		219-219.3
Part XV-세무행정 및 집행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220-244
Part XVI-조세회피 (Tax Avoidance)		245-246
Part XVI.I-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247
Part XVII-해석 (Interpretation)		248-262

4) 캐나다 조세법의 해석

가) 정확성

조세법령상 문언은 정확한 언어를 통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조세법령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산의 납세의무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891년의 영국 판례에 따르면¹⁸⁾ 조세법령은 선의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정확성을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악의를 가진 사람이 오해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오해하는 척할 수 없을 정도의 정확성을 가져야 한다.¹⁹⁾

18) In re Castioni(1891), 1 Q.B. 149 at 167.

19)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151.

나) 평범하고 명백한 의미(Plain and Obvious meaning)

조세법령에 사용되는 단어들은 법령에 특별한 정의규정이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 법의 나머지 부분의 맥락에 의하여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 한, 평범하고도 명백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해석의 ‘황금규칙(Golden Rules)’로 알려져 왔다. 이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자산의 세법상 지위에 대하여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세법 조문의 의미가 해당 단어로부터 명백하게 도출되지 않는 해석을 통하여 확대될 수는 없다. 최근 이러한 입장은 *Overdyck v. M.N.R.* 사건²⁰⁾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다 완화되었다. 이 판례에서 납세의무자는 일하러 가기 위하여 다리보호구(*leg brace*)를 사용하고 일하는 도중에는 바퀴달린 휠체어(*a chair with castor-like wheels*)를 이용한다. 1986년 개정 이전의 세법은 의로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서는 환자가 침대 또는 휠체어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였다. 법원은 위 조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외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서 완벽하게 홀로 있다면 그는 한쪽 다리의 마비증세로 인하여 항상 침대에 머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보다 유연한 해석을 하였다. 또한 법원은 사실상 법조문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상황에 대하여 공평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문언을 해석한다.²¹⁾

다) 입법의도(Intention of Parliament)

조세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종종 의회의 입법의도를 추론한다. 연방 재무부 역시 개정법령에 대한 설명자료를 발간한다. 그러나 위 자료들이 입법의도를 결정하는 것에는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법원을 구속하지는 못한다.²²⁾

라) 감면규정들(Remission orders)

조세법령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지만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문이 조세부과 조문이라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해당 조문이 조세감면 조문이라

20) 83 DTC 307 (T.R.B.).

21) *Id.*, at ¶ 1,152.

22) *Id.*, at ¶ 1,153.

면 국가에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만약 특정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서는 구체적으로 타당한(fair) 결정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재정행정법(Financial Administration Act)에 감면규정을 둘 수 있다. 동법 subsection 17(1)은 공익을 고려하여 조세 또는 가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²³⁾

마) 최근의 변화들(Recent developments)

캐나다 대법원은 조문의 평범한 의미가 명확하다면 엄격해석 원칙이 여전히 적용되나, 조문이 모호하거나 또는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경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또는 기술적 목표를 담고 있는 법의 목적 및 의회의 입법의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당 법의 맥락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여 왔다. 이를 해석의 ‘object and spirit test’라고 한다. 이 기준은 일반 조세회피방지 조항(General Anti-Avoidance Rule: GAAR)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캐나다 대법원은 다시 ‘Corporation Notre-Dame de Bon-Secours v. Communauté Urbaine de Québec’ 사건²⁴⁾에서 조문의 의미가 의심스러운 경우에 엄격해석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다음과 같은 해석 원칙을 확립하였다.²⁵⁾

- 조세법은 법령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 세법의 법조항은 법의 맥락, 법의 목적 및 입법의도에 의하여 특정된 목적에 따라 엄격하거나 유연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를 목적론적 해석(the teleological approach)이라고 한다.
- 목적적 해석은 미리 결정된 추정이 아니라 해당 법조문 자체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이롭기도 하고 국고에 유리하기도 하다.
- 법령의 문언과 목적이 부합하는 경우에는 실질이 형식에 우선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보충적 가정(residual presumption)에 따라 해석되어야

23) Id., at ¶ 1,154.

24) 95 DTC 5017(S.C.C.).

25)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155.

한다.

바) 형식 대 실질(Form v. substance)

형식 대 실질에 관한 쟁점은 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제기된 것이다. 특정 거래의 형식 또는 법률효과는 세법상 효과를 결정함에 있어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형식이 법의 문언 또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되거나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형식이 가장행위(sham)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²⁶⁾ 게다가 법원은 실질이 형식과 상당할 정도로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repugnancy test’ 또는 ‘smell test’라고 불리는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²⁷⁾

사) 예외 우선의 원칙(Exception override general)

법에 규정된 예외는 원칙에 대하여 우선하여 적용하되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Dunkelman v. M.N.R.* 사건²⁸⁾에 적용되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법문에 정확하게 해당되지 않는 한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²⁹⁾

아) 동종문언의 원칙(ejusdem generis rule)

동종문언의 원칙에 따르면 법문에 연속하여 특정된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 사용된 후에 포괄적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뒤따르는 경우 그 포괄적 의미의 단어는 특정된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에 갖는 범위와 동일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본다. 소득세법 subsection 5(1)은 “납세의무자의 직무(office) 또는 고용으로 인한 당해 과세연도 소득은 봉급(salary), 임금(wages) 및 기타 보수(other remuneration)이고 기타 보수에는 당해 연도에 납세의무자가 수령한 증여(gratuities)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는바, 기타 보수의 의미는 봉급, 임금 및 증여라

26) *Stubart Investment Ltd. v. The Queen*, 84 DTC 6305.

27)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156.

28) 59 DTC 1242(Ex. Ct.) at 1244.

29)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157.

는 특정된 의미의 단어가 갖는 의미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해석되어야 한다.³⁰⁾

자) 선결례 구속의 원칙(stare decisis)

선결례 구속의 원칙은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결은 유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의 선결례로서의 가치는 법원의 심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상급법원의 판결은 하급법원의 판결을 구속한다. 동일한 심급 법원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결들은 통상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한다.³¹⁾

차) 해석법(Interpretation Act)

해석법(Interpretation Act)는 캐나다 법령의 해석에 대하여 다룬다. 해석법 subsection 3(3)에 따르면 해석법은 당해 법조문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의 해석규칙을 인정한다. 동법 제14조는 정의규정의 사용과 예외규정의 해석에 관한 규칙들에 대하여 규정한다. 동법 제27조는 법령에 규정된 기한에 대하여 규정한다. 동법 제32조는 규정된 형식에서 벗어났으나 실질에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그 형식이 무시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동법 subsection 33(1)은 여성에 대하여 적용되는 문언(words importing female persons)은 남성과 법인에 대하여서도 적용되며 남성에 대하여 적용되는 문언은 여성 및 법인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³²⁾

나. 세무행정 체계

세무행정과 관련해서는 정책기관과 법 집행 및 운영기관이 분리되어 있다. 예산정책 및 세법안 등을 제안하는 것은 캐나다 연방 재무부(the Department of Finance)에서 담당한다. 세법의 집행 등은 캐나다 연방국세청(the Canada Revenue Agency: 캐나다 국세청(CRA))에서 담당한다. 캐나다 연방국세청의 본청(the Head office)은 수도인 오타와(Ottawa)에 있고, 캐나다 각지에 30개의 지방국세청(Tax

30) Id., at ¶ 1,158.

31) Id., at ¶ 1,159.

32) Id., at ¶ 1,160.

Service Office)을 두고 있다. 해당 지방국세청에는 사정인(assessor) 및 조사관(investigator)들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서를 검사하거나 현장에서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또한 지방국세청 산하에 있는 각 지역별 세무서(the regional Taxation centre)들이 통상적인 세무행정업무 및 모든 개인에 대한 세금신고정보를 첫 번째로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³³⁾

33)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350.

Ⅲ. 세수입 규모 및 구성

1. 세수입 규모

캐나다 연방의 전체 세수입 규모는 2013년 기준 추산 256,635백만캐나다달러이다. 이는 다음 <표 1-Ⅲ-1>과 같이 2012년의 총세입 규모보다 7,528백만캐나다달러가 많다. 2012년과 2013년에 걸친 예산 결손(budgetary deficit)은 189억캐나다달러로, 직전연도보다 28.14% 감소한 수치이다. 이는 세입 규모가 늘어난 점이 반영되어 있다.

<표 1-Ⅲ-1> 캐나다 연방의 세수입 규모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조세 수입	2012-2013	2011-2012
소득세 수입 (Income tax revenue)		
개인소득세 (Personal)	125,728	120,537
법인소득세 (Corporate)	34,986	33,641
비거주자 (Non-resident)	5,073	5,300
	165,787	159,478
기타 조세 및 관세 수입 (other taxes and duties)		
부가가치세 (Goods and services tax)	28,821	28,370
에너지세 (Energy taxes)		
가솔린 소비세 (Excise tax-Gasoline)	4,228	4,203
항공유 및 디젤연료 소비세 (Excise tax-Aviation gasoline and diesel fuel)	1,153	1,125
	5,381	5,328
관세 및 수입부담금 (Customs import duties)	3,979	3,862

〈표 1-III-1〉의 계속

(단위: 캐나다백만달러)

조세 수입	2012-2013	2011-2012
기타 소비세 및 부담금 (other excise taxes and duties)		
소비부담금 (Excise duties)	4,414	4,482
항공기 승객 안전 부담금 (Air travellers security charge)	636	631
연목생산품 수출 부담금 (softwood lumber products export charge)	160	234
기타 소비세 및 부담금 (other miscellaneous excise taxes and duties)	160	199
	5,370	5,556
	43,551	43,106
총조세수입 (Total tax revenues)	209,338	202,584

자료: Government of Canada, 『Public Account of Canada 2013 : Summary Report an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able 3.2. 재구성

2. 세수입의 구성

2005년~2009년 캐나다의 주요 세목별 수입 현황 추세를 살펴보면 캐나다 연방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 구성 요소들을 알 수 있다. 소득세는 2005년 207,415백만캐나다달러에서 2008년 269,467백만캐나다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2009년 248,655백만캐나다달러로 다시 감소하였다. 소득세에 이어 캐나다 연방정부의 수입원천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세 역시 2008년 111,684백만캐나다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2009년 기준 107,150백만캐나다달러로 일부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08년~2009년까지의 세계 경제 위기에 따른 여파에 따라 세수 역시 감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외로 세수로는 2009년 기준, 재산세 54,862백만캐나다달러, 기타세 21,807백만캐나다달러가 있었다. 그 이외로는 2009년 기준, 사회보장기부 31,995백만캐나다달러, 건강보험 3,390백만캐나다달러, 상품과 서비스 판매 53,625백만캐나다달러, 투자수입 54,068백만캐나다달러, 그 밖의 수입으로 6,836백만캐나다달러의

수입이 있었으며, 세수와 그 이외의 수입분을 모두 합한 캐나다 연방정부의 수입 총액은 2009년 기준 585,799백만캐나다달러에 이르고 있다.

〈표 1-III-2〉 캐나다 연방의 수입원천별 총수입 구조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수입원천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총수입	499,676	533,031	561,238	600,575	585,799
소득세	207,415	225,158	245,867	269,467	248,655
재산세	46,721	49,509	51,277	53,882	54,862
소비세	104,495	107,857	105,809	111,684	107,150
기타세	18,018	18,917	20,489	21,129	21,807
건강보험	3,206	3,258	3,268	3,457	3,390
사회보장기부	31,995	32,768	34,280	34,448	35,404
상품과 서비스 판매	41,275	43,376	45,310	50,113	53,625
투자수입	38,600	45,357	46,744	48,323	54,068
그 밖의 수입	7,950	6,830	8,194	8,070	6,836

또한 세목별 세수입은 살펴보면, 2009년 기준, 소득세는 189,222백만캐나다달러이며, 법인세는 50,277백만캐나다달러였다. 그 이외의 세목인 재산세 및 소비세 세수는 2009년 기준, 재산세는 54,862백만캐나다달러, 소비세는 107,150백만캐나다달러였다. 또한 재산세에서는 일반 재산세(48,188백만캐나다달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소비세에서는 일반 판매세(67,001백만캐나다달러), 자동차연료세(13,528백만캐나다달러) 순으로 세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 세수분으로는 2009년 기준, 자동차면허세 3,557백만캐나다달러, 급여세 10,450백만캐나다달러, 자연자원세와 허가세 등 기타 세액이 7,800백만캐나다달러로, 기타 세수분 총액은 21,807백만캐나다달러(2009년 기준)에 이르고 있다.

〈표 1-Ⅲ-3〉 캐나다 연방의 세목별 세수입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세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소득세 (Income tax)	개인소득세	155,136	167,276	179,869	193,525	189,222
	법인소득세	46,928	50,966	58,131	67,642	50,277
	광업·임업세	530	757	970	1,192	1,747
	비거주자 납세	4,822	6,159	6,896	7,109	7,410
	총액	207,415	225,158	245,867	269,467	248,655
재산세 (Property and related tax)	일반재산세	39,756	41,937	43,643	46,294	48,188
	자산세 (Capital tax)	3,409	3,428	3,277	2,727	2,402
	기타 재산세	3,557	4,144	4,356	4,861	4,273
	총액	46,721	49,509	51,277	53,882	54,862
소비세 (Consumption tax)	일반판매세	66,352	69,461	67,419	72,094	67,001
	오락세	561	573	531	520	525
	자동차연료세	12,700	13,016	13,025	13,462	13,528
	주세와 담배세	9,673	9,024	8,595	8,634	8,565
	관세	3,041	3,429	3,651	3,803	4,055
	주류수익	3,703	3,975	4,252	4,478	4,594
	게임수익	6,395	6,438	6,375	6,546	6,697
	기타 소비세	2,070	1,941	1,961	2,148	2,185
총액	104,495	107,857	105,809	111,684	107,150	
기타세 (Other taxes)	자동차면허세	3,111	3,067	3,345	3,524	3,557
	급여세	8,933	9,403	9,683	10,193	10,450
	자연자원세와 허가세	925	1,142	1,818	1,490	1,652
	기타세	5,049	5,305	5,644	5,923	6,148
	총액	18,018	18,917	20,489	21,129	21,807

IV. 최근의 경제 및 재정정책 방향

캐나다의 최근 경제 및 재정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장기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2년 경제실행계획(Economic Action Plan 2012)의 표제 역시 “Jobs Growth and Long-term Prosperity”로 삼고 있다. 2012년 경제실행계획은 고품질 일자리(High-quality job) 창출과 경제성장 정책에 소요 예산을 주로 집중함과 동시에 건전재정(sound public finance)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동시에 구사하고자 하며, 또한 국가 재정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조적인 수정 및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캐나다의 2012년 경제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⁴⁾

- 고용 및 성장 지원: 기업가, 혁신가 및 세계적 수준의 연구에 대한 지원, 연구·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 기업 투자 여건에 대한 개선: 책임 자원개발(Responsible Resource Development), 자연환경 및 자원에 대한 투자, 캐나다 기업을 위한 무역교역 확대 및 신 시장 개척, 일자리 창출형 기업에 저세율 과세, 농업 및 어업에 대한 경제여건의 개선, 기업 경쟁력 강화, 캐나다 금융산업 장점의 강화, 기업 투자여건 개선.
- 직업훈련, 인프라 및 기회에 관한 투자: 일자리 창출, 소기업, 직업기술 훈련에 대한 지원, 고용보험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원주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완전한 참여기회의 확대, 신속하고 유연한 투자이민제도의 구축, 캐나다의 공공 인프라 강화.
- 가정과 지역 사회에 대한 지원: 캐나다인의 건강 및 안전의 보호,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 가정에 대한 지원, 캐나다 자연환경 및 야생동물의 보호.

34) The Honourable James M. Flaherty, “Jobs Growth and Long-term Prosperity” (Economic Action Plan 2012), Ministry of Finance, 2012.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은퇴자의 사회보장: 공공재정의 지속가능한 관리,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로의 전환, 캐나다인을 위한 퇴직자 소득체제의 강화, 연방 등록연금플랜, 조세 공정성 및 연결성(廉潔性)의 개선, 자선단체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 균형재정으로의 복귀를 위한 책임관리: 공공재정에 대한 책임 있는 관, 재정 기본계획의 수립.

제2편 소득세제

I. 개인소득세

1. 개관

가. 캐나다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의 정의

캐나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 “ITA”) Sec. 3은 다음과 같이 소득을 정의한다. 본편(Part)에서 과세연도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소득은 다음 규칙에 의하여 계산된 당해연도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의미한다.

(a) 당해연도에 캐나다 국외 및 국내원천으로부터 얻은 각 소득금액(자산의 처분으로부터 얻은 과세대상 자본이득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결정하는바, 이에는 각 직무, 고용, 사업 및 자산으로부터 당해 연도에 얻은 소득을 포함하되 이전 규정의 일반적인 적용 가능성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에서(without restric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적용한다.

(b) [‘납세의무자의 열거된 동산(listed personal property)을 제외한 자산의 처분에 기인한 당해 연도의 과세대상 자본이득’과 ‘납세의무자의 열거된 동산의 처분에 기인한 당해 연도의 과세대상 순이득’의 합계액]이 [납세의무자의 열거된 동산(listed personal property)을 제외한 자산의 처분에 기인한 당해 연도의 공제가능 자본손실(allowable Capital losses)’이 ‘납세의무자의 당해 연도 공제가능한 사업투자손실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결정한다.

위 규정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³⁵⁾

첫째, 소득의 통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론적 관점 및 정책적 관점에서 소득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둘째, 원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반적 의미에서 소득을 구성하는 특정 경제적 수취액이 언제 또는 왜 소득의 원천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되지 않는가?

셋째, 위 규정에서 “이전 규정의 일반적인 적용가능성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기타소득에 관한 subsec. 56(1)의 첫머리에 “sec. 3의 일반적인 적용가능성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에서 …에 포함된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의회는 소득의 원천을 직무, 고용, 사업, 자산 및 기타소득으로부터의 소득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한바, 그렇다면 다른 어떤 금액이 소득으로서 과세되어야 하는 것인가?

넷째, 법은 특별히 특정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는바, 이를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다섯째, 자본소득은 어떻게 그리고 왜 다른 방법으로 과세되는가?

나. 소득의 정의

소득의 개념은 과세표준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념이므로 특정 수취액이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만 소득세법은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기능 역시 하는 것이므로 소득 재분배라는 정책적 목표 역시 소득을 정의함에 있어서 반영되어야 하고, 조세공평이라는 이념 역시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득에 대한 정의에는 단순한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 가치평가에 대한 고려 역시 반영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Haig-Simons 이론상 소득의 정의, Carter Commission의 포괄적 과세표준 및 캐나다 판례의 태도의 순서로 소득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본다.

35) Peter W. Hogg, Joanne E. Magee & Jin Yan Li, *Principles of Canadian Income Tax Law*, 7th Ed., CARSWELL, 2010, pp. 80-81.

1) Haig-Simons 이론

경제학자들이 세법상 소득을 정의한다면 sec. 3의 소득에 대한 정의는 지나치게 협소하고 인위적이며 기이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³⁶⁾ Robert Murray Haig는 어느 납세의무자의 두 시점 사이의 경제적 구매력(economic power)의 순증가액에 대한 화폐적 평가액이 세법상 소득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³⁷⁾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소득의 원천과 무관하게 당해 사업연도상 경제적 구매력의 증가액은 모두 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1938년 Henry C. Simons는 위 Haig의 정의를 보다 정교하게 수정하여 개인소득을 다음 두 금액의 대수적 합계액(algebraic sum)으로 정의한다. 첫째, 소비과정에서 소비된 권리의 시장가치. 둘째, 해당 기간의 두 시점 사이에 있어서 재산권의 저장(stock)의 증가액.³⁸⁾ Simons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Haig의 정의와 비슷하나, 소득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소비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 두 이론에 따르면, 소득은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의 소비에 순자산의 증가액을 더한 것이다. 정기적 수취금액의 원천(예를 들면 급여, 임금, 사업소득 또는 자산소득), 자산의 매각이익(자본소득), 타인으로부터의 이전(예를 들면 증여, 상속 및 도박이득금), 자신의 노동력에 의한 직접 생산물(예를 들면 자경 과일 및 야채, 집수리) 또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귀속소득(예를 들면 자신의 집에 대한 점유) 등이 모두 소득에 포함된다. 또한 순자산의 증가액이 예상 가능한 것인지 여부, 정기적인지 여부,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실현되었는지 여부 및 현금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모든 이득이 세법상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측정함에 있어서 포함되어야 한다. 위 이론은 분석가들이 소득세의 공평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근거로 사용되어 왔으나 현실적으로 법으로서 시행되지는 않았다. 이에 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세법상 소득의 정의는 개인의 담세능력을 측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성의 측면에서 충분히 실용적이어야 한다. 위 이론들은 순자산의 증가액이 공정 시장가치에

36) Haig in Haig (ed.), *The Federal Income Tax* (1921), at 54.

37) Id., at 59.

38) Simons, *Personal Income Tax* (1938), at 50.

의하여 측정되거나 최소한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비실현이익과 비화폐성 혜택(benefits)의 경우에는 커다란 평가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감시의 문제 역시 발생할 수 있다. 발생주의에 의하기보다는 실현주의에 의하여 이를 과세하는 것이 보다 편리할 것이다. 게다가 유동성의 문제 역시 발생한다. 납세의무자는 순자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자산을 매각하여야 한다. 증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가사노동 등과 같은 특정 경제적 소득에 대하여서는 이들이 소득을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과세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및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있고, 그 정책적 목적이 '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³⁹⁾

2) Carter Commission의 포괄적 과세표준(comprehensive tax base)

가) 포괄적 과세표준

Carter Commission은 Haig-Simons의 소득을 다음과 같이 다시 정의하였다.⁴⁰⁾

포괄적 과세표준은 당해 과세연도 중 납세단위(즉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소비되거나 포기된 재화 또는 용역의 시장가치와 그 납세단위에 의하여 보유된 자산의 시장가치의 연간 변화 금액을 합한 것으로 정의되어 왔다.

포괄적 과세표준은 Haig-Simons의 소득의 정의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그보다는 덜 포괄적이다. Haig-Simons 이론은 매년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나 이는 비실용적이다. 따라서 Carter Commission은 쉽게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예를 들면, 실현된 자본이득, 증여, 상속 및 우발적 소득 등)에 한하여 과세표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39) Peter W. Hogg, Joanne E. Magee & Jin Yan Li, op. cit., p. 83.

40) *Report of the Royal Commission on Taxation* (Carter Report) (1966), vol. 3, at 39; Peter W. Hogg, Joanne E. Magee & Jin Yan Li, op. cit., p. 83에서 재인용.

나) 자본소득의 과세

자본소득은 전통적인 소득의 개념에서는 제외되지만 포괄적 과세표준에는 자본소득이 포함된다. 자본소득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누진과세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모두에 있어서 자본소득의 대부분은 고소득 개인에 의하여 실현된다. 또한 Carter Commission은 행정적 문제를 감안하여 미실현된 자본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나 자본소득의 과세가 이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망 시, 증여 시 및 캐나다 거주자성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간주처분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것을 제안한다.⁴¹⁾

캐나다 정부의 백서(White Paper)는 Carter 보고서를 주로 받아들였지만, 정부는 1971년 법에는 간주처분을 수용하지 않았고, 실현된 자본소득의 2분의 1만을 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⁴²⁾

3) 사법적 해석

가) 통상적 의미

판례에 의하면 소득은 소득과 자본을 준별한다는 원칙과 인류의 통상적인 개념 및 용례에 따라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⁴³⁾ 법원은 일반적으로 소득을 좁게 해석한다. 즉, 판례에 의하면 자본소득 및 미실현이익은 소득이 아니며, 소득에는 원천이 있어야 한다.⁴⁴⁾

나) 자본과 소득의 구분

판례에 의하면 자본과 소득의 구분은 열매와 나무의 관계로 비유된다. 소득은 열매일 뿐이고 나무가 될 수 없다.⁴⁵⁾ 자본이라는 개념은 세후의 화폐에 해당하는 자금과

41) Peter W. Hogg, Joanne E. Magee & Jin Yan Li, op. cit., pp. 83~84.

42) Id., pp. 84~85.

43) Curran v. Minister of National Revenue, [1959] S.C.R. 850, [1959] C.T.C. 416, 59 D.T.C. 1247 (S.C.C.).

44) Peter W. Hogg, Joanne E. Magee & Jin Yan Li, op. cit., p. 85.

45) Strantton's Independence v. Howbert, 213 U.S. 399; Ryall v. Hoare, [1923] K.B. 447, 8 T.C. 521 (K.B.).

유사하다. 세후의 봉급 및 사업소득 등에 기초한 납세의무자의 예금은 자본이다. 우발적 소득, 상속 또는 비과세 수취금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본은 현금, 동산, 부동산 및 투자자산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⁴⁶⁾ 자본과 소득을 구분함에 있어서 법원은 잠재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득원천을 포기하는 대가로 취득한 금원은 자본양도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⁴⁷⁾

다) 소득의 실현

미실현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캐나다 소득세제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Haig-Simons의 소득 정의와는 다르다. 이러한 실현요건은 납세의무자에게 손익인식 시점을 폭넓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한다. 따라서 캐나다 의회는 매년 쉽게 자산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서는 실현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투자계약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만기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년 이자소득을 인식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⁴⁸⁾ 금융상품의 경우에도 매년 mark-to-market 규칙에 의하여 해당 증권에 대한 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⁴⁹⁾

다. 소득의 원천(Income from a 'Source')

1) 소득원천설(Source theory)

소득원천설에 의하면 소득은 생산적인 원천으로부터 얻은 수익(a yield from a productive source)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제3조(a)의 소득에는 원천을 갖는 소득만이 포함될 수 있고 제3조(d)는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손실만이 공제 가능하다고 규정

46) Peter W. Hogg, Joanne E. Magee & Jin Yan Li, op. cit., p. 86.

47) R. v. Fortino, [2000] 1 C.T.C. 349, 2000 D.T.C. 6060(Fed. C.A.).

48) ITA: 12(4).

49) ITA: 142.5.

한다. 소득원천설은 영국에서 발생하여 캐나다의 소득세법에도 수용되었다.⁵⁰⁾

2) 소득원천의 특성(Characteristics of an income source)

캐나다 법원판례에 따르면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⁵¹⁾

- 일정한 기간을 두고 반복하여 발생한다.
- 납세의무자의 조직화된 노력, 활동 또는 추구와 관계되어 있다.
- 시장을 통한 교환과 관계되어 있다.
- 납세의무자가 대가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 사업 또는 자산 원천의 경우(in case of a business or property source) 이윤추구활동이 있어야 한다.

3) 열거된 소득원천(Enumerated sources)

소득세법 제3조(a)는 직무, 고용, 사업 및 자산을 전통적인 소득원천으로 규정한다. 위 네 소득원천이 열거적인 것은 아니고 법원을 통하여 해석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⁵²⁾

법원은 해당 소득이 비과세인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해당 소득의 원천이 무엇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⁵³⁾

- 도박으로부터 얻은 이득의 소득원천은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도박사업이다.⁵⁴⁾
- 고용과 관련하여 받은 증여의 소득원천은 고용이다.⁵⁵⁾

50) Peter W. Hogg, Joanne E. Magee & Jin Yan Li, op. cit., p. 87.

51) Id., at 88.

52) Id.

53) Id., at 89.

54) Graham v. Green(Inspector of Taxes), [1925] 2 K.B. 37, 9 Tax Cas. 309(K.B.); M.N.R. v. Walker, [1951] C.T.C. 334, 52 D.T.C. 1001 (Ex.Ct.).

55) R. v. Savage, [1983], C.T.C. 393, 83 D.T.C. 5409 (S.C.C.).

- 연금수급권, 승진기회, 재취업 기회의 상실을 대가로 하여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원천은 고용이다.⁵⁶⁾
- 변호사가 고객 신탁계정으로부터 절취한 금원의 소득원천은 사업이다.⁵⁷⁾
- 납세의무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회사로부터 자금을 편취한 경우 해당 금액의 소득원천은 고용이다.⁵⁸⁾
- 손해배상금과 합의금(damages and settlements)의 소득원천은 대체원리(surrogatum principle)에 의하여 관계된 열거소득원천과 동일한 원천을 갖는다. 대체원리는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금에 대한 세법상 취급은 해당 금원이 대체하고자 하였던 금원에 대한 세법상 취급에 의하여 결정된다.⁵⁹⁾

4) 열거되지 않은 소득원천(Unnumerated sources)

소득원천에 대하여 법이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득의 원천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소득원천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꺼려 왔다. 예를 들어 법원은 파업수당이 법에 열거된 소득원천을 갖지 못하고 의심스러울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⁶⁰⁾

56) Curran v. M.N.R., [1959] S.C.R. 850, [1959] C.T.C. 416, 59 D.T.C. 1247 (S.C.C.).

57) Buckmann v. M.N.R., [1991] 2 C.T.C. 2608, 91 D.T.C. 1249 (T.C.C.).

58) R. v. Poynton, [1972] C.T.C. 411, 72 D.T.C. 6329 (Ont. C.A.).

59) London & Thames Haven Oil Wharves Ltd. v. Attwooll, [1966] 3 All E.R. 145; reversed [1967] 2 All E.R. 124 134 (C.A.).

60) Canada v. Fries, [1990] 2 S.C.R. 1322 1323, [1990] 2 C.T.C. 439, 90 D.T.C. 6662 (S.C.C.).

5) 위법소득(Illegal source)

고객으로부터의 절취⁶¹⁾, 횡령⁶²⁾ 또는 매춘⁶³⁾과 같은 위법적 활동 또는 위법적 사업으로부터 얻은 수익은 과세대상이라는 것이 판례상 확립된 원칙이다.

라. 법령상 과세항목 및 과세 제외 항목(Statutory Inclusions and Exclusions)

1) 자본소득(Capital gains)

소득세법 제3조 (b)는 과세대상 자본소득 역시 소득이라고 규정한다. 자본소득이 비록 소득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소득원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득원천의 처분에 해당한다. subsection 9(3)은 자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자본소득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또한 자본손실은 과세대상 자본소득을 상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다. 한편 자본소득은 단지 50%에 한하여 과세된다.⁶⁴⁾

2) 기타소득(Other income)

Subdivision d(sections 56 to 59.1)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규정한다. 위 항목들이 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생산적 원천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위 소득 포함 규정들은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다. 연금혜택분(pension benefits)과 장학금을 소득에 포함하는 것은 납세능력에 근거한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배우자 부양(spousal support)을 소득에 포함하는 것(해당 금액은 section 60에 따라 지급자의 소득에서 공제된 금액과 결합된다)은 무너진 가정에 대한 세법상 보조금(tax subsidies)을 지

61) Buckmann v. M.N.R., [1991] 2 C.T.C. 2608, 91 D.T.C. 1249 (T.C.C.).

62) R. v. Poynton, [1972] C.T.C. 411, 72 D.T.C. 6329 (Ont. C.A.).

63) Minister of National Revenue v. Eldridge(1964), [1964] C.T.C. 545, 64 D.T.C. 5338 (Can. Ex. Ct.).

64) Peter W. Hogg, Joanne E. Magee & Jin Yan Li, op. cit., p. 92.

급하기 위한 것이다. Section 56에 규정된 항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section 3에 의하여 소득원천을 갖는 것으로 과세될 수 있다.⁶⁵⁾

3) 과세 제외 항목들(Exclusions)

소득 제외 항목들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소득세법이 소득에서 직접 제외하는 많은 항목이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는 소득에 포함되나 특정 원천에 기인하는 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해당 금액을 소득에 포함시키나 Division E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넷째,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

다섯째, 특정 납세의무자가 가득한 소득을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첫째 유형 및 둘째 유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는 제2편 I-3, 가-(4) 부분에서 열거하고 있다. 셋째 유형에 해당하는 예로서는 적격 소규모기업 주식의 매각에 따른 과세대상 자본소득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넷째 유형에 해당하는 예로서는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기본적인 세액공제를 통하여 소득 중 첫 번째 8,929캐나다달러를 비과세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유형의 예로서는 자선단체 및 비영리법인이 가득한 소득을 비과세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65) Id., at 92~93.

마. 증여 및 상속(Gifts and Inheritance)

1) 개인적 증여(Personal gifts)

전통적인 소득의 개념에 증여 및 상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는 자산의 자발적인 무상이전을 의미하며 증여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⁶⁶⁾

이하 증여를 받는 것에 대한 캐나다의 세법상 취급에 대하여 본다.

가) Carter Commission의 권고

Carter Commission은 증여 및 상속을 포괄적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증여 및 상속을 포괄적 과세표준에 포함할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세율구간이 올라가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Carter Commission은 일정 수준 이하의 증여에 대하여서는 비과세하고 이를 넘는 증여에 대하여서는 증여 이후의 연도에 나누어 인식하게 하는 ‘forward averaging’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Carter Commission은 상속 및 증여에 대한 다른 세목을 철폐할 것을 역시 권고하였다. 상속 및 증여를 소득으로서 과세하자는 권고는 1971년 입법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철폐되었다. 상속 및 증여 시 간주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자본소득을 과세하게 된 점을 근거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철폐하였다.⁶⁷⁾

나) 증여 및 상속에 대한 비과세의 논거

정책적 관점에서 증여 및 상속을 비과세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증여를 비과세하는 경우 이것은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거나 최소한 좌절시키지는 않는다. 통상 증여는 보다 부유한 자에 의하여 보다 가난한 자에게 이루어지기

66) Bellingham v. R. (1995), [1996] 1 C.T.C. 187, 96 D.T.C. 6075 (Fed. C.A.).

67) Peter W. Hogg, Joanne E. Magee & Jin Yan Li, op. cit., at 94~95.

때문이다.

둘째, 가족 간의 사소한 증여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신고의무를 지우지 않는 것 역시 의미가 있다. 또한 현물로 증여를 받은 경우에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역시 어렵다.

셋째, 증여자는 증여를 통하여 실현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자본소득으로서 과세된다.⁶⁸⁾

2) 상업적 증여(Commercial gifts)

증여에 대한 비과세 취급은 개인적 증여에 한정된 것이다. 사업상 또는 고용관계의 맥락에서 받은 증여는 달리 보아야 한다. 이는 직무, 고용 또는 사업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⁶⁹⁾

3) 자산의 증여(Gift of property)

수증자에 대하여서는 증여가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자에 대하여서는 증여 시점에 실현된 자본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소득세법 subsection 69(1)은 증여자가 공정 시장가치로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자는 그 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다른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와 주주가 그 회사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이 수증자에게 이전되어 증여자에게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⁷⁰⁾

68) Id. at 95-96.

69) Id., at 96.

70) Id., at 97.

바. 우발소득(Windfalls)

1) 비과세(Tax exempt)

Carter Commission에 따르면 우발소득이 소득원천을 갖는 것은 아니나 납세의 무자의 담세능력을 증가시키므로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즉, 도박당첨금은 과세된다. 그러나 Carter Commission은 도박 손실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부정적이다.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미국과 달리 캐나다의 경우에는 우발소득이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현행 캐나다 소득세법 paragraph 40(2)(f)는 복권의 처분에 따른 손익을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사업소득과의 구분

도박활동이 조직화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도박당첨금은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된다.⁷¹⁾

사. 손해배상금과 합의금(Damages and Settlements)

1) 대체원리(Surrogatum principle)

타인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개인은 징벌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일실소득,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비용, 손괴된 자산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 또는 법원 외의 합의에 의하여 수령한 금원은 소득, 자본자산 또는 우발적 소득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그와 같은 구분은 상해 또는 손해의 성격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대체원리에 의하면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금에 대한

71) Walker v. M.N.R. (1951), [1951] C.T.C. 334, 52 D.T.C. 1001 (Ex. Ct.); Luprypa v. R. (1997), [1997] 3 C.T.C. 2363, 97 D.T.C. 1416 (T.C.C.).

세법상 취급은 해당 금원이 대체하고자 하였던 금원에 대한 세법상 취급에 의하여 결정된다.⁷²⁾

일반적으로 소득의 상실분에 대한 보상은 소득으로서 과세된다. 비용의 보상은 그 비용이 공제되지 않는 한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손괴된 자산에 대한 지급분은 해당 자산의 양도대가로 취급한다. 자본의 손실분에 대한 보상액은 자본으로 간주되고 그 수취금원은 소득이 아니다. 다만 자본손실 보상액이 적격자본금액⁷³⁾으로서 간주된 경우 또는 해당 금원이 법적 권리의 포기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이고 자산의 처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제외된다.⁷⁴⁾

2) 징벌적 손해배상금(Punitive damages)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지 희생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생자는 우연한 수익자로 간주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비록 희생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는 하지만 소득세법 제3조에 따른 소득원천을 갖는 것은 아니다. 희생자의 입장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증여 또는 우발소득과 유사한 것이나 증여 또는 우발소득 모두 과세되지 않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 역시 유사하게 과세되지 않는다.⁷⁵⁾

72) London & Thames Haven Oil Wharves Ltd. v. Attwooll, [1966] 3 All E.R. 145; reversed [1967] 2 All E.R. 124 134 (C.A.).

73) 적격 자본금액은 사업용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말한다.

74) Peter W. Hogg, Joanne E. Magee & Jin Yan Li, op. cit., at 99.

75) Id., at 101.

아. 귀속소득(Imputed Income)

1) 비과세(Non-taxation)

귀속소득은 현금이 아닌 형태의 소득이며 자기 자신을 위한 노동 또는 자신의 소유권으로부터 얻는 혜택을 의미한다. 귀속소득 역시 자신의 경제적 능력과 담세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캐나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의 원천이 없는 것으로서 취급되어 과세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불공평과 비효율이 야기되며 사회적 쟁점 역시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귀속소득을 납세의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는 쉽지 않다.⁷⁶⁾

2) 소유자 점유 주택(Owner-occupied home)

자신 소유의 자산을 이용하는 것이 귀속소득의 주요원천이다. 소유자가 점유하는 주택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자가소유자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임대소득을 가득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가 세입자가 된다면 그는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하고 대신에 자신의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을 얻게 된다. 그러나 지불한 임대료는 공제되지 않고 가득한 임대소득은 과세되어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캐나다의 경우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귀속소득을 과세하고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이자를 임대소득에 대한 비용으로서 공제하는 방법을 통하여 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취할 경우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소유자 점유 주택의 임대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행정적인 문제와 다른 형태의 귀속소득을 과세하지 않고서 과세하는 것이 공평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접근방식은 임차인(renter)이 세법상 임차료의 일정 부분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자가 점유자와 임차인의 지위를 동일하게 하는 것

76) Id., at 101-102.

이다. 이는 Carter Commission이 권고하는 바이기도 하고 실현가능하기도 하다.⁷⁷⁾

3) 무급 가사노동(Unpaid housework)

자신의 인적 용역을 소비하는 것은 귀속소득의 요소에 해당한다. 통상 어느 한 배우자가 소득을 가득하고 다른 배우자는 가정에 남아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돌보는 경우 그의 용역 제공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지 않고 따라서 과세되지 않는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해당 용역을 구입하여야만 할 비용을 절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다만 가사노동에 대한 비과세는 가족에 대한 소득과세와 관련된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녀양육비용공제(child-care expense deduction)는 일반적으로 저소득 부모가 이용하고, 해당 비용은 고용 또는 사업으로 인한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한정되는바, 그렇다면 배우자 1인만이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위 자녀양육비용공제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캐나다 연금플랜(Canada Pension Plan) 및 등록퇴직저축플랜(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 RRSPs)에 대한 불입금 한도액 역시 세법상 적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진다.⁷⁸⁾

자. 소득의 계산(Computation of Income)

1) 순액방식(Net concept)

캐나다 소득세법상 소득은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을 의미한다. 이러한 순액방식에 의하여 측정된 소득개념은 경제학자들의 소득 개념 및 포괄적 과세표준의 개념과도 일치한다. 소득을 과세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소득이 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라는 것을 의미하는바, 순소득 개념이 이러한 목적에 보다 유용하다고 할

77) Id., at 102-103.

78) Id., at 103-104.

수 있다. 순소득만이 납세의무자가 지배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해당 소득이 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⁷⁹⁾

2) 원천별 계산(Source by source)

납세의무자의 소득원천은 직무(office), 고용(employment), 사업(business) 및 자산(property)로 구성되는바, 이들 소득을 계산하는 상세한 규칙들은 직무 또는 고용이 원천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Part I Division B의 subdivision a에, 사업 또는 자산이 원천인 경우에는 Part I Division B의 subdivision b에 규정되어 있다. Subdivision d는 기타소득에 대하여 규정한다. 소득세법 제4조는 각 원천별로 계산할 것을 규정한다. 제4조상 원천은 소득의 성격뿐만 아니라 영토적 구분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업이 두 다른 지역에서 수행되었다면 소득과 손실이 각 장소에서 구분되어 결정되어야 한다.⁸⁰⁾

3) 규칙적 소득 대 과세대상 자본소득(Regular income v. taxable Capital gains)

소득세법 paragraph 3(b)는 자산의 처분에 기인한 순과세대상 자본소득을 소득에 포함할 것을 규정한다. 상세한 규정들은 Part I Division B의 subdivision c에 규정되어 있다. 자본소득은 반만 과세되고 자본손실 역시 반만 인식된다. 자본손실은 일반적으로 자본소득에 대하여서만 공제가능한 반면에 과세대상 자본소득은 규칙적으로 발생한 손실(regular losses)에 의하여 공제가능하다. 공제가능 사업투자손실(allowable business investment loss)은 특정 자본손실을 사업상 결손금으로 취급하는 것에 해당한다.⁸¹⁾

79) Id., at 104-105.

80) Id., at 105.

81) Id.

4) 정책적 공제(Policy-based deductions)

소득세법 paragraph 3(c)는 납세의무자가 paragraph 3(a)와 paragraph 3(b)에서 정하는 금액을 더하고 subdivision e에서 규정하는 기타 공제액(other deductions)을 차감할 것을 규정한다. 이러한 공제들은 정책적 공제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60조의 RRSP의 불입금공제, 제62조의 이자비용공제, 제63조의 자녀양육비용공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5) 손실인식(Loss recognition)

소득세법 paragraph 3(d)는 당기에 발생한 직무(office) 또는 고용으로부터의 손실과 사업 또는 자산으로부터의 손실을 공제하는 것과 공제가능 사업투자손실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소득세법 paragraph 3(e)는 paragraph 3(d)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 당해 연도의 소득이라고 규정한다. 만약 그 금액이 음수라면 paragraph 3(f)는 이를 '0'으로 간주할 것을 규정한다. 열거된 각 원천의 소득은 각 관계된 공제를 차감한 것이고 과세대상 자본소득은 공제가능 자본손실을 차감한 것이다. 네 가지 소득 원천에서 당기에 발생한 손실은 공제가능하다.

2. 납세의무자

이하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순서로 살펴본다.⁸²⁾

가. 거주자

1) 거주자의 범위

가) 개인의 경우

캐나다 연방소득세법(Income Tax Act)에서 거주자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183일 이상을 캐나다에서 체류하고 있는 자, 캐나다 군대의 구성원들 및 공무원은 캐나다의 거주자로서 간주된다고 규정한다. ‘183일 원칙’(The 183-day rule)은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캐나다 비거주자인 개인이 그 생활방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해마다 거주자성이 바뀔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83일 원칙’에 따라 비거주자로서 캐나다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하여서만 과세가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거주자로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법이 규정하는 해외개발원조 프로그램에 따라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당해 연도 중 어느 때에도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이 개시되는 날 이전 3개월 내에 어느 때에도 캐나다 거주자이었던 사람은 거주자로 간주된다. 해당 연도 중 어느 때에도 해외 주둔 캐나다 군대학교 직원(staff)이었고 위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전체 기간 중 어느 때에도 캐나다 거주자로서 세금을 신고한 자는 캐나다 거주자로 간주된다.

캐나다 연방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를 판정하는 것은 사실판단의 문제(a question of fact)에 해당한다. 거주 개념은 주소(domicile)의 개념이나 시민권(citizenship) 개념과는 다르며, 특히 시민권 또는 국적의 보유 여부는 캐나다 연방소득세 납세의무의 조건이 아니다. 통상적인 생활의 일부로서 해당 연도의 일부 기간 중 캐나다에 입

82) *Canadian Master Tax Guide* (67th Edition), 2012, CCH, at ¶¶ 1,020~1,100, 14,005; 이하 *Canadian Master Tax Guide*라고 한다.

국하였거나, 개인 또는 그 가족이 사용가능한 거소(a place of abode)를 유지하고 있고 사실상 그 장소에 일정 기간 동안 머무른다면, 그 개인이 해외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캐나다 연방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될 수 있다.

개인이 캐나다에 현존하지 않고 집도 외국에 가지고 있다면 설사 그가 캐나다로 돌아올 의도를 갖고 캐나다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은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다.

캐나다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상 ‘캐나다 거주자’라는 용어는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이고 다른 나라의 세법상으로는 거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나라의 세법에 따라 캐나다와 다른 나라 모두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는 조세조약상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협약상 별도로 tie-breaker rule을 두어 양국 중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를 판정할 수 있다.

나) 법인의 경우

법인이 캐나다 거주자이거나 캐나다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캐나다 내에서 제공된 용역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위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법인이 1965년 4월 26일 후에 캐나다에서 설립된 경우에는 사업연도 전체에 걸쳐서 거주자로 간주된다. 1965년 4월 27일 이전에 설립된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거주하거나 캐나다에서 1965년 4월 26일 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동안 캐나다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거주자로 간주된다. 법인이 1965년 4월 27일 이전에 비거주자였다면 캐나다 밖에서 관리되고 지배되며 캐나다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 그 지위에는 변화가 없다.

또한 법인이 1959년 4월 9일 전에 설립되었고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면 거주자로 간주된다.

- 1971년 6월 18일 현재 캐나다 내국법인이 지배하는 외국사업 법인이었을 것
- 1971년 6월 18일에 종료하는 10년 동안 캐나다 이외의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캐나다 거주자인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였고 주주들은 그 배당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 세금을 납부하였을 것
- 1971년 이전 사업연도 중 어느 때에도 캐나다 거주자이거나 캐나다 내에서 사업

을 영위하였을 것

법인은 보통법상으로는 그 지배 및 관리가 집중되어 수행되는 나라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법인이 캐나다에서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 및 지배가 런던에서 수행된다면 그 법인은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다.

다)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십[SIFT(Specified Investment Flow-through) Partnerships⁸³⁾은 제외한다]은 소득세법하에서 거주자로서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의 계산은 몇몇 예외는 있지만 파트너십 단계에서 발생주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개인인 파트너는 파트너십 이익 중 자신의 몫에 대하여 과세된다.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파트너십에 비거주자인 파트너가 있다면 그 비거주자 파트너는 파트너십 이익 중 자신의 몫에 대하여 과세될 것이다. 비거주자가 익명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신디케이트 역시 세법의 목적상 파트너십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된다.

라) 신탁과 상속재산(Trust and Estate)

신탁과 상속재산은 그 수탁자들 중 1인이 캐나다 거주자라면 그 역시 캐나다 거주자로 간주된다. 신탁 또는 상속재산은 개인으로서 과세되나 수익자에게 해당 연도에 지급하지 않은 유보분이 있을 경우에만 과세된다.

2) 일시적 체류자(Sojourners)

캐나다에 대한 일시적 방문자는 해당 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의 기간 동안 캐나다에 머무르지 않는 한,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183일 이상 머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걸쳐서 거주자로 간주된다.

83) 제5편 기타조세 중 해당 부분 참조.

3) 부분적 거주자(Part-Time Residents)

부분적 거주자 개념은 개인이 과세기간 중 캐나다 거주자가 되거나 캐나다 거주자가 아닌 상태로 법적 지위가 변화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부분적 거주자에 대하여서는 과세표준을 두 단계에 걸쳐서 계산한다. 첫째, 개인이 캐나다 거주자인 기간에 대하여서는 그 개인은 모든 원천의 전 세계에서 가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둘째, 캐나다 거주자가 아닌 기간 동안 다음 원천으로부터 가득한 소득을 더하여야 한다.

- 캐나다 내 고용 또는 캐나다 내에서 영위한 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
- 과세대상 캐나다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얻은 과세대상 자본소득
- 캐나다 원천으로부터 얻은 장학금, 연구비(fellowships), 학비보조금(bursaries) 및 연구보조금(research grant) 중 과세되는 부분

나. 비거주자

1) 캐나다에서 고용되어 있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원칙적으로 캐나다에서 고용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과세기간 중 어느 때라도 캐나다 내 소재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인하여 소득을 얻은 자는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캐나다에서 사업을 수행한 모든 비거주자 법인은 과세표준이 특정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5% 세율로 세금[지점세(branch tax)]을 부담한다.

‘고용되었다는 것’(Employed)은 직무(office) 또는 고용계약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되어 있는 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용역의 일정 부분을 캐나다의 영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Carrying on business)은 전문 직업(profession), 직업(calling), 거래, 제조 또는 여하한 종류의 사업(undertaking of any kind whatsoever)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trade)의 성격을 갖는 계획(adventure) 또는 영업(concern) 역시 포함하나 직무(office)에 따라 수행하거나 또

는 고용(employment)에 기하여 수행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거래(trade)의 성격을 갖는 adventure’는 ‘해당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scheme)’을 말한다.⁸⁴⁾

따라서 비거주자인 전문가가 캐나다에서 전문자격에 기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특히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는 무엇인가의 전부 또는 부분을 캐나다에서 생산, 재배, 채굴, 창조, 제조, 제작, 개선, 포장, 보존 또는 건설하는 자 역시 포함된다.

캐나다 내에서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캐나다 내에서 어떠한 적극적 거래, 협상 및 계약체결 등을 하는 것을 함축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한다.

첫째, 상인, 도매사업자 및 중개업자(dealer)들이 해당 제품들을 자신의 창고 또는 공용 창고에 저장하고 배달하는 경우

둘째, 제조업자가 상품이 어디에서 판매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캐나다에서 상품을 가공하거나 개발하는 경우

셋째, 금융업자, 중개업자, 투자은행이 그들의 대리인 또는 근로자가 거래를 실행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사무실을 유지하는 경우

넷째, 어느 비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캐나다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상품이 타인에 판매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캐나다 내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한, 운송이나 대금지급이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상관없다.

다섯째, 누군가(any person)가 캐나다 거주자 또는 캐나다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어느 다른 자(any other person)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여섯째, 누군가가 독립된 단일 거래(isolated transaction)가 아닌 방식으로 과세 대상 캐나다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84) M.N.R. v. Taylor, 56 DTC 1125(Ex. Ct.), and IT-459.

2) 대리인을 통한 사업의 수행

캐나다 내에서 대리인 또는 근로자(servant)를 통하여 주문을 요청하거나, 또는 매매를 위하여 무언가를 제공하는 비거주자는 캐나다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간주된다. 만약 비거주자가 매매를 위하여 배급업자, 중개업자 또는 기타 캐나다의 거주자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경우, 그 비거주자가 캐나다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배급업자, 중개업자 또는 기타 캐나다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의 대리인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배급업자가 비거주자의 대리인이 되는지 아니면 자신의 계산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것인지 여부는 결국 비거주자가 공급업자의 활동을 통제하는 정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상품이 배급업자의 이름으로 매도되는지, 아니면 비거주자의 이름으로 매도되는지 여부

둘째, 배급업자가 재고를 보관하는지 아니면 주문을 받은 후에야 비거주자에게 주문하는지 여부

셋째, 배급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주문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넷째, 배급업자가 상품의 매도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섯째, 소비자가 상품대금을 공급업자에게 지급하는지 아니면 해당 비거주자에게 직접 지급하는지 여부

상황에 따라서는 캐나다의 거주자가 제조, 기타 공정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대리인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거주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상품을 제조, 기타 가공하는 방법으로 캐나다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3) 일시적으로 캐나다가 아닌 지역에서 파견된 고용근로자

캐나다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거주자인 사용자에 의하여 고용된 자가 일시적으

로 사용자를 위하여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캐나다가 아닌 지역에 파견된 경우, 그는 캐나다에서 과세된다. 그는 통상 파견된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4) ‘캐나다 내에서’의 정의

‘캐나다 내에서(in Canada)’라는 용어는 캐나다 연안에 인접한 해저(sea bed) 및 잠수함 구역의 하층토(subsoil of submarine areas)를 포함하나 이 지역은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기타 권리를 취득하여 여하한 광물, 석유, 천연가스 또는 관계된 탄화수소(hydrocarbon)을 탐사, 시추 또는 채굴할 수 있는 권리, 허가 또는 특권을 부여받은 지역만을 의미한다. 또한 ‘캐나다 내에서’라는 용어에는 위 자원개발과 관련된 잠수함 구역 위에 위치한 바다 및 영공 역시 포함된다.

3. 과세소득의 유형

가. 개요

1) 총설

납세의무자는 연방소득세법상 각 소득원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소득을 계산하고 각 금액들을 합하여 소득세법상 소득을 계산한다.⁸⁵⁾ 납세의무자는 캐나다 내에 원천을 둔 소득뿐만 아니라 캐나다 밖에 원천을 둔 소득 역시 포함하여야 한다.

소득의 주요 원천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째, 사업(business).

둘째, 자산(property).

셋째, 직무(office).

넷째, 고용(employment).

85) ITA: 3

2) 원천별 소득

납세의무자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득 또는 손실은 각 원천별로(source-by-source basis) 계산된다. 각 직무(office), 고용(employment), 사업(business), 자산(property)들은 각 독립된 소득원천으로 취급된다.⁸⁶⁾

‘금액(amounts)’에는 현금, 권리 및 ‘화폐금액’ 또는 ‘권리 또는 사물의 화폐로 표시된 가치’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한다.⁸⁷⁾ 상품 또는 용역이 상호간 현금 없이 거래되는 물물교환은 연방소득세법상의 소득금액의 범위에 포함된다.⁸⁸⁾ 그러나 사용인이 일시적으로 이웃이나 친구들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 도움을 주는 경우에는 그것이 정기적인 용역 제공이 아닌 한, 과세되지 않는다.⁸⁹⁾

3) 과세 시기

사업 또는 자산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현금주의(the cash basis)와 발생주의(the accrual basis), 두 가지가 있다. 현금주의하에서는 수령 시에 소득에 포함되도 지급 시에 비용으로서 공제된다. 직무 또는 고용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은 항상 현금주의 방식에 따라 계산된다. 발생주의하에서는 실제로 소득이 회수되거나(collected) 또는 실제로 수령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이 가득된(earned) 기간에 대하여 소득을 계산한다. 농업을 제외한 사업 또는 자산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를 따라야 한다.⁹⁰⁾

86) ITA: 248(1)

87) Id.

88) Interpretation Bulletins IT-490.

89) Canadian Master Tax Guide, op. cit., at ¶ 2,010.

90) Id., at ¶ 2,020.

4) 소득에 포함되는 수익

다음 항목들은 캐나다 소득세법상 명시적으로 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는 것들이다.

- 자녀 부양비를 제외한 이혼 수당(Alimony) 또는 이혼 후 생활비 지급액(maintenance payments)⁹¹⁾
- 근로자(employee)나 임원(officer)에게 지급되는 개인적 비용, 생활비 또는 기타 다른 비용에 대한 공제금액(Allowances)⁹²⁾
- 근로자의 이익공유계획(employees' profit sharing plan)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분되는 금액⁹³⁾
- 매도자가 매출과 관련하여 손금으로 산입한 매출채권금액은 매수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됨⁹⁴⁾
- 사망한 자에게 과세되지 않고 수익자에게 이전된 금액⁹⁵⁾
- 신탁 또는 자산신탁(trust or estate)이 수익자인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할 금액으로서 소득 성격을 갖는 금액⁹⁶⁾
- 납세의무자의 배우자 또는 보통법상 동반자(spouse or common-law partner)에게 2006년 이후 배분된 연금소득 금액⁹⁷⁾
- 신탁 또는 상속재산(trust or estate)이 유지 등을 위하여 지급하거나 수익자를 위한 자산관리를 위하여 지급한 금액⁹⁸⁾
- 수익사채(income bond) 간주배당금액⁹⁹⁾

91) ITA: 56(1) (b), 56(1) (e)

92) ITA: 6(1) (b)

93) ITA: 6(1) (d), 12(1) (n)

94) ITA: 22(1)

95) ITA: 70(3)

96) ITA: 12(1) (m), 104(13)

97) ITA: 56(1) (a.2)

98) ITA: 105(2)

99) ITA: 15(3)

- 납세의무자의 지시에 의하여 또는 납세의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¹⁰⁰⁾
- 2003년 10월 6일 이후에 합의된 제한약정(restrictive covenant)에 따른 미수채권금액¹⁰¹⁾
- 해당 사업연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장래 미수채권금액¹⁰²⁾
- 사망한 자가 수령했어야 할 소득 성격의 미수채권금액¹⁰³⁾
- 일체의 보험약정에 기하여, 상호보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생명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¹⁰⁴⁾
- 상호보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생명보험회사가 소유한 자산에 기하여 그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¹⁰⁵⁾
- 해당 과세연도에 제공하거나 인도되지 않은 용역 또는 상품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¹⁰⁶⁾
- 연금지급액(Annuity payments)¹⁰⁷⁾
- 주주를 위한 용도로 사용이 지정된 금원(Appropriations)으로서 법인이 지출한 것¹⁰⁸⁾
- 자동차산업의 근로자에 대한 임시적 보조금¹⁰⁹⁾
- 상각채권추심익(Bad debts recovered)¹¹⁰⁾

100) ITA: 56(2)

101) ITA: 6(3.1)

102) ITA: 12(1) (b)

103) ITA: 70(2)

104) ITA: 138

105) ITA: 138

106) ITA: 12(1) (a)

107) ITA: 56(1) (d)

108) ITA: 15(1)

109) ITA: 56(1) (a) (v)

110) ITA: 12(1) (i)

-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얻은 혜택¹¹¹⁾
- 일체의 신탁으로부터 또는 신탁약정에 기하여 받은 혜택(자산분배 또는 자본환급액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¹¹²⁾
- 법인에 의하여 주주에게 제공된 혜택 또는 이익(특정 예외가 있다)¹¹³⁾
- 주택 구입자 플랜(Home Buyers' Plan)에 따라 받은 혜택¹¹⁴⁾
- 등록퇴직저축플랜(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에 따라 받은 혜택¹¹⁵⁾
- 근로자혜택플랜 또는 신탁(employee benefit plans or trusts)에 받은 혜택¹¹⁶⁾
- 노동 조정 혜택법(Labour Adjustment Benefits Act), 노동부법(the Department of Labour Act), 공장 노동자 조정 프로그램(the Plant Workers Adjustment Program), 북부 대구어업 보상 및 조정 프로그램(the Northern Cod Compensation and Adjustment Program)에 따라 받은 혜택¹¹⁷⁾
- 2005년 이후부터 신퀘벡 부모보험플랜(the new Quebec Parental Insurance Plan)에 따라 받은 혜택¹¹⁸⁾
- 직무 또는 고용에 기하여 부가하여 제공되는 식사, 숙박 및 기타 혜택¹¹⁹⁾
- 소득에 포함되는 자본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특정 예외가 있다)¹²⁰⁾
- 회사차, 개인적으로 사용가능한 것의 가치¹²¹⁾
- 다음 사유에 기하여 비과세 법인 이익잉여금으로부터 지급되는 간주배당금액
(a) 사업의 청산, 중단, 구조조정에 따른 분배 또는 지출금액(appropriation)¹²²⁾

111) ITA: 245(2)

112) ITA: 12(1)(m), 105(1)

113) ITA: 15(1)(c)

114) ITA: 56(1)(h.1), 146.01

115) ITA: 56(1)(h), 146(8)

116) ITA: 6(1)(g), 6(1)(h)

117) ITA: 56(1)(a)(vi)

118) ITA: 56(1)(a)(vii)

119) ITA: 6(1)(a)

120) ITA: 3, 38

121) ITA: 6(1)(e), 6(2)

122) ITA: 84(2)

- (b) 보통주의 상환, 취득 또는 전환¹²³⁾ 또는
- (c) 주식배당, 증자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유보이익의 자본전입¹²⁴⁾
- 이연이익공유플랜(Deferred profit sharing plan)의 지급금액¹²⁵⁾
 - 이사의 보수¹²⁶⁾
 - 주식 배당을 포함한 배당금액은 25%(2013년 이후 지급된 배당부터는 18%)의 비율로 그로스업된 금액. 단 그로스업된 금액의 $\frac{13}{18}$ 에 대해서 세액공제된다. 적격 배당의 경우에는 다른 비율이 적용된다.¹²⁷⁾
 - 수익채권 지급액에 대신하여 수령한 채권증서(Evidence of indebtedness)¹²⁸⁾
 - 공정시장가치 미만의 가액으로 주주에게 매각 또는 분배된 자산의 공정 시장가치¹²⁹⁾
 - 수수료(Fees)¹³⁰⁾
 - 장학금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연구비 및 연구보조금¹³¹⁾
 - 사례금(Gratuities)¹³²⁾
 - 소득평준화 연금수령액(Income-averaging annuity receipts)¹³³⁾
 - 위탁자의 것으로 간주되는 지배된 신탁으로부터의 소득(Income from controlled trust deemed settlor's)¹³⁴⁾
 - 특정 미성년자에게 이전되거나 임대된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으로서 양도인에게 귀속되는 소득(Income from property transferred or loaned to certain

123) ITA: 84(3)

124) ITA: 84(1)

125) ITA: 56(1) (i)

126) ITA: 6(1) (c)

127) ITA: 82(1), 121

128) ITA: 76

129) ITA: 69(4), 69(5)

130) ITA: 6(1) (c)

131) ITA: 56(1) (n), 56(1) (o), 56(3)

132) ITA: 5(1)

133) ITA: 56(1) (e), 56(1) (f)

134) ITA: 75(2)

minors attributed to transferor)¹³⁵⁾

- 적격 장래약정에 따른 소득¹³⁶⁾
-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신탁 또는 상속재산으로부터의 소득¹³⁷⁾
- 감가상각자산의 손상을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의 범위 내에 발생하고 당해 과세연도 중에 소비된 감가상각자산의 손상에 대한 보험금¹³⁸⁾
- 장래 근로자에 대한 유인금액(Inducement payments)¹³⁹⁾
-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보험료(단체생명보험 또는 의료보험을 제외한다)¹⁴⁰⁾
-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로 인하여 수령한 간주이자¹⁴¹⁾
- 이자와 함께 양도된 채권의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¹⁴²⁾
- 이자 지급액¹⁴³⁾
- 자본지급액(Capital payments)에 포함된 이자금액¹⁴⁴⁾
- 재고판매대가¹⁴⁵⁾
- 법인의 주주에 대한 대출금¹⁴⁶⁾
- 사용자의 의료보험료 부담분¹⁴⁷⁾
- 퇴직 근로자에 대한 경업피지 약정금¹⁴⁸⁾
- 협동조합 배당금(Patronage dividend). 단 소비재 및 용역을 재원으로 하는 배

135) ITA: 74.1(2)

136) ITA: 148.1

137) ITA: 104(13)

138) ITA: 12(1)(f)

139) ITA: 6(3)

140) ITA: 6(1)(a)

141) ITA: 17(1)

142) ITA: 20(14)

143) ITA: 12(1)(c)

144) ITA: 16

145) ITA: 23, 28

146) ITA: 15(2)

147) ITA: 6(1)(a)

148) ITA: 6(3)

당은 제외¹⁴⁹⁾

- 자산의 사용 또는 자산으로부터의 생산물에 근거한 지급금¹⁵⁰⁾
- 선의에 기하지 않은 거래에 의하여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¹⁵¹⁾
- 연금혜택¹⁵²⁾
- 정기지급금 수령인이 사망하는 경우 그 지급금을 일할로 계산한 금액¹⁵³⁾
- 근로자 이익공유플랜에 따른 이익 중 수익자 몫¹⁵⁴⁾
- 사업소득¹⁵⁵⁾
- 자산소득¹⁵⁶⁾
- 감가상각환입액(Recaptured depreciation)¹⁵⁷⁾
- 보수(Remuneration)¹⁵⁸⁾
- 이전 과세연도에 손금에 산입된 준비금¹⁵⁹⁾
- 채부무에 의하여 비합리적으로 많다고 판단되는 은행의 적립금¹⁶⁰⁾
- 천연자원 매각대금(Resource property sale receipts)¹⁶¹⁾
- 퇴직보상약정 지급금(Retirement compensation arrangement payments)¹⁶²⁾
- 퇴직수당¹⁶³⁾

149) ITA: 135(7)

150) ITA: 12(1)(g)

151) ITA: 15(1)

152) ITA: 56(1)(a)

153) ITA: 70(1)

154) ITA: 144(7)

155) ITA: 9(1)

156) ITA: 9(1)

157) ITA: 13(1)

158) ITA: 5(1)

159) ITA: 12(1)(d)

160) ITA: 26(1)

161) ITA: 59

162) ITA: 12(1)(n.3)

163) ITA: 56(1)(h)

- RRSP 지급금¹⁶⁴⁾
- 급여(Salary)¹⁶⁵⁾
- 급여이연약정 지급금¹⁶⁶⁾
- 수익사채의 지급에 대신하여 수령한 증권¹⁶⁷⁾
- 사회보장지급금(Social assistance payments)¹⁶⁸⁾
- 근로자에게 지급된 스톡옵션¹⁶⁹⁾
- 연금혜택(Superannuation benefits)¹⁷⁰⁾
- 보충적 실업혜택플랜 지급금(Supplementary unemployment benefit plan payments)¹⁷¹⁾
- 장애추가지급금(Top-up disability payment)¹⁷²⁾
- 소득의 원천인 자산을 이전하지 않고 소득에 대한 권리만을 불공정한 거래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인의 소득에 산입되는 공정 시장가치와의 차액분¹⁷³⁾
- 고용보험혜택¹⁷⁴⁾
- 임금(Wages)¹⁷⁵⁾
- 근로자보상지급금¹⁷⁶⁾

164) ITA: 56(1) (h)

165) ITA: 5(1)

166) ITA: 6(1) (e)

167) ITA: 76

168) ITA: 56(1) (r), 56(1) (u)

169) ITA: 7(1)

170) ITA: 56(1) (a) (i)

171) ITA: 56(1) (g), 145(3)

172) ITA: 6(18)

173) ITA: 56(4)

174) ITA: 56(1) (a)

175) ITA: 5(1)

176) ITA: 56(1) (v)

나. 사업소득

1) 총설

가) 사업소득의 계산

캐나다 소득세법상 사업은 직무(office) 또는 고용관계가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넓게 정의되어 있다. 사업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당해 사업연도 동안 얻은 이익(profit)을 의미한다. 소득세법상 이익이 별도로 정의되지는 않지만, subdivision b는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을 결정하는 수많은 규칙과 소득으로부터 공제되거나 공제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¹⁷⁷⁾ 이익은 보통법(common law)에 따르면 건전한 상업상 원칙들(sound commercial principles)에 근거하여 계산한 소득을 묘사하는 것이다. 위 상업상 원칙들에는 제무회계기준(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이 포함된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특별규정이 있거나 보통법상 원칙들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¹⁷⁸⁾ 제무회계기준은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를, 폐쇄회사의 경우에는 GAAP을 의미한다. 소득세법상 특별규정들로 인하여 세법상 소득과 제무회계기준상 소득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¹⁷⁹⁾

나) 사업소득과 자본소득의 구분(business income v. Capital receipt)

자산의 처분손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전액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나, 자본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 중 50%에 대하여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사업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사업소득으로 구분되기 위하여서는 거래의 징표(badges of trade)가 있어야 한다.

거래의 징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177)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4,015.

178) Id., at ¶ 4, 015.10.

179) Id., at ¶ 4, 015.20.

- 첫째, 납세의무자의 사업과 해당 거래의 관계
- 둘째, 통상적으로 거래와 결합되는 활동 또는 조직
- 셋째, 관계된 자산의 속성
- 넷째, 주어진 기간 내에 납세의무자가 한 거래의 수 및 빈도
- 다섯째, 자산 소유권의 보유기간
- 여섯째, 해당 거래를 통하여 처분된 자산에 대하여 또는 그 자산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가치 증가 노력(Supplement work)
- 일곱째, 처분에 이르게 된 상황
- 여덟째, 회사의 목적 또는 동업약정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 이외에 다음 요소들을 특별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 첫째, 부동산 구입 당시의 납세의무자의 의도
- 둘째, 납세의무자가 진술한 의도의 실현 가능성
- 셋째, 해당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 및 지역용도(zoned use)
- 넷째, 납세의무자가 진술한 의도가 수행된 범위
- 다섯째, 취득 후 진술된 의도가 변경된 증거가 있는지 여부
- 여섯째, 납세의무자 및 그 관련자(assocites)의 사업, 전문성(profession), 직업 또는 거래의 본질
- 일곱째, 차입자금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범위 및 차입조건
- 여덟째, 납세의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
- 아홉째, 납세의무자가 아닌 다른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의 존재
- 열째, 아홉째 내용에서 언급한 사람들의 명시된 의도 및 일련의 행위들(stated intentions and courses of conduct)뿐만 아니라 그들 부동산 점유(occupation)의 본질
- 열한 번째, 판매동기
- 열두 번째, 납세의무자 및/또는 관련자들(assocites)이 부동산을 광범위하게 (extensively) 거래하였다는 증거

증권거래라는 제목을 가진 Interpretation Bulletin¹⁸⁰⁾에 의하면 증권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거래의 빈번한 정도 - 광범위하게 증권을 매수·매입하였다는 점 또는 자산들의 회전율이 빠르다는 점(quick turnover)에 대한 이력

둘째, 소유 기간 - 단지 짧은 기간 동안만 해당 증권들이 보유되었는지 여부

셋째, 증권시장에 대한 경험 또는 지식

넷째, 증권거래가 납세의무자의 일상적 사업 활동의 일부인지 여부

다섯째, 증권시장을 공부하기 위하여 투입된 시간 및 잠재적인 투자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투입된 시간

여섯째, 주로 증거금 거래(by margin)를 하는지 아니면 차입하여 거래를 하는지 여부

일곱째, 납세의무자의 매수의사에 대하여 광고 등을 하는지 여부¹⁸¹⁾

여덟째, 주식의 경우, 그 거래의 본질 해당 거래가 통상 투기적인지 또는 무배당 유형인지 여부

3)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사업상 계약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통상 그 수령인을 해당 계약이 이행된 상태와 동일한 지위에 두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계약의 이행은 통상 소득을 야기한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간주된다.¹⁸²⁾

대리점 약정(agency arrangement)의 취소로 인하여 수령한 금원은 일반소득으로 구분되는 반면에 해당 대리점 약정이 전 사업구조의 일부분에 해당할 정도인 경우라면 그 수령 금원은 자본소득에 해당한다.¹⁸³⁾

180) IT-479R, par.11.

181)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4,020.

182) Id., at ¶ 4,026.

183) Id., at ¶ 4,027.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해당 자산이 고정자본이면 자본소득이고 해당자산이 운전자본이면 통상의 소득에 해당한다.¹⁸⁴⁾

4) 기타 수취금원 또는 혜택(Other Receipts or Benefits)

불법 사업에 기한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위법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된 비자본적 지출(non-Capital expenditure)로서 입증된 것은 특정 조건하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특정 위법한 지출액의 공제는 금지된다.¹⁸⁵⁾

개인적인 내기 또는 재미를 위한 도박으로부터 얻은 금원은 해당 활동이 조직화되거나 사업의 성격을 갖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마권업자 (bookmaker)와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는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된다.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전문적인 도박사라는 점에 대한 징표가 된다. 이 경우 도박으로 얻은 금액은 과세되고 그 손실은 공제가 가능하다.¹⁸⁶⁾ 우발소득은 그 수령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비과세한다. 우발소득의 전형적인 예는 복권 당첨금인데 이는 과세되지 않는다.¹⁸⁷⁾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Subsidies) 이나 다른 보조금이 자본소득인지 아니면 통상소득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의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 특히 납세의무자의 소득 또는 납세의무자가 이익을 얻도록 소득을 보조해주는 경우 및 투자금액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수익률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지출액과 관련하여 그 비용을 보전하거나 보조하는 경우 및 실업 등의 예방과 같은 공익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경우에는 자본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다.¹⁸⁸⁾

납세의무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원금은 소득이 아니다. 따라서 채무의 상

184) Id., at ¶ 4,028.

185) Id., at ¶ 4,031.

186) *Belawski v. M.N.R.*, 54 DTC 457 (T.A.B.).

187)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4,032.

188) Id., at ¶ 4,033.

환에 대하여서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금의 상환은 세후 금액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원금에 대한 채무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세법 상 결과에 영향은 없다. 그러나 이자가 지급되거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이자금액이 공제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자의 면제로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채무면제 규칙(debt forgiveness rules)은 상업적 채무에 대하여 적용되고 사적인 채무에 대하여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업적 채무는 사업 또는 자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의미한다.¹⁸⁹⁾

5) 사업소득 대 자산소득(Business Income v. Property Income)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해당 소득 또는 손실은 사업소득 또는 자산소득으로 구분된다. 또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대가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은 ‘자본소득 또는 손실’, ‘사업소득 또는 손실’ 또는 ‘자산소득 및 손실’에 해당할 수 있다.

소득의 원천이 사업인지 아니면 자산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산을 자산으로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재고로서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¹⁹⁰⁾

소득세법은 자산의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또는 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상관하지 않으며 일체 종류의 자산을 포함하며 특히 다음 것들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¹⁹¹⁾

- 일체의 권리, 지분 또는 무체동산(chose in action)
- 화폐, 반대의 의사표명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 목재 자원 자산(timber resource property)
- 전문적 직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재공품

189) Id., at ¶ 4,034.

190) Id., at ¶ 4,035.

191) ITA: 248(1).

자산을 보유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손실이 통상소득인지 아니면 자본소득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해당 소득이 적극적 소득인지 아니면 소극적 소득인지 여부를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근로자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통상 자산소득으로 간주된다.¹⁹²⁾

법인이 사업을 운영하고 그 사업의 주요 목적이 자산소득(이자, 배당, 임대료 및 사용료를 포함하나 부동산이 아닌 자산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을 얻는 것이라면 그 소득은 법인이 5명을 초과하는 전업 직원들을 고용하지 않는 한 소극적인 소득으로 간주된다. 법인이 가득한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은 일반적으로 자산소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해당 법인이 수행하는 적극적 사업에 부수되거나 관련된 자산소득 또는 주로 적극적 사업으로부터 소득을 얻거나 창출할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보유되는 자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제외한다.¹⁹³⁾ 법인의 경우 사업소득과 그 이외의 소득을 구분하는 것은 적용되는 세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¹⁹⁴⁾

납세의무자가 유한책임 파트너이거나 파트너십에 규칙적, 계속적 또는 실질적으로 (on a regular, continuous or substantial basis) 관여하지 않아서 납세의무자가 파트너십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납세의무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자산소득으로 간주된다.¹⁹⁵⁾

사업소득과 자산소득을 구분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¹⁹⁶⁾

- 개인이 얻은 자산소득은 지분에 대한 수익(a return on equity) 즉 소극적 소득으로 간주되고 임대소득을 제외하고는 RRSP¹⁹⁷⁾에 대한 불입금 최대한도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가득한 소득(earned income)’의 계산으로부터 배제된다. 그에 반하여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그에 포함된다.
- 자녀부양비용공제의 적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가득한 소득

192)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4,036.

193) ITA: 129(4).

194) Id., at ¶ 4,037.

195) Id., at ¶ 4,038.

196) Id., at ¶ 4,039.

197) II-5, 라-1)-나) 참조.

(earned income)’의 개념에 사업소득은 포함되나 모든 자산소득은 제외된다.

- 임대자산으로부터 얻은 자산소득에는 별도의 규칙들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임대소득에 대하여 주장된 자본비용공제를 통하여 결손금을 인식할 수는 없다.
- 법인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규칙들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적극적 사업소득에 대하여서는 소규모사업공제가 적용되고 제조활동을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서는 제조 및 가공공제가 적용된다. 대신에 자산 및 투자소득을 얻은 법인에 대하여서는 훨씬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
- 소득귀속규칙(income attribution rules)은 일반적으로 자산소득의 불공정한 이전거래(non-arm’s length transfer)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사업소득의 이전거래에 대하여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비거주자인 납세의무자는 캐나다 내에서 수행된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반면에 자산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법 중 다른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규정들이 적용된다.

6) 재고자산의 평가

가) 평가방법

① 시가법 또는 저가법(Market or lower of cost or market)

소득세법은 각 재고자산을 저가법에 의하여(at the lower of cost or market)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¹⁹⁸⁾ 소득세법 시행령(income tax regulation)은 모든 항목의 재고자산들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허용한다.¹⁹⁹⁾

② 개별법(Specific identification)

개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원가를 사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에는 송장가격(invoice cost)에 관세(duties), 운임 및 보험료가

198) ITA: 10(1).

199) ITR: 1801.

포함된다.²⁰⁰⁾ 제조회사의 재공품 및 완성품에는 취득원가에 직접 노무비가 포함되고 몇몇 경우에는 간접비 배부액이 포함된다.²⁰¹⁾ Interpretation Bulletin에 의하면 제조품의 취득원가에는 직접원가계산(direct costing) 또는 전부원가계산(absorption costing)에 기하여 배부된 간접비가 포함되어야 한다.²⁰²⁾ 소득세법은 취득원가에 재고자산으로서 보유한 공지(vacant land)에 대한 공제되지 않은 이자비용 및 재산세(property taxes)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²⁰³⁾

③ 선입선출법(First in, First out: FIFO)

개별 재고자산들의 취득원가, 가공비 또는 추정원가(assumption)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유 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FIFO)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²⁰⁴⁾

나) 재고자산에 배분된 상각비용에 대한 조정: 전부원가계산

재무회계의 목적상 기말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는 전부원가계산에 의하여 배분된 상각비용, 진부화 손실 또는 감모상각비 등이 포함된다. 그와 같은 배분은 재무회계상 이익을 증가시킨다. 세법의 목적상으로는 위와 같이 재고자산에 배부된 금액은 과세표준에 더하여진다. 위 배부액은 다음 해 기초재고액에도 역시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다음 해에는 과세표준에서 차감된다. 만약 직접원가계산(directing costing)을 사용한다면 이와 같은 수정을 할 필요는 없다.²⁰⁵⁾

7) 개인사업의 경우(Sole Proprietorship)

과세기간(fiscal period)의 정의에 따르면, 전문직 소득을 포함하는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개인은 역년에 따라 소득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개인사업자 및 전

200)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4,045.10.

201) Id., ¶ 4,045.20.

202) IT-474R.

203) ITA: 10(1.1).

204)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4,045.30.

205) Id., at ¶ 4,050.

문가 법인(a professional corporation에 대하여 적용된다.²⁰⁶⁾ 또한 이 요건은 적어도 파트너 중 1인이 개인, 전문가 법인 또는 다른 하나의 관련 파트너십(another affected partnership)인 경우에도 적용된다.²⁰⁷⁾ 그러나 개인에 의하여 수행된 사업에 대하여서는 과세기간에 대한 대체규정이 있다.²⁰⁸⁾ 과세기간의 종기는 장관의 승인(ministerial concurrence)을 통하여서만 변경할 수 있다. 법인이 아닌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기한까지 법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면, 역년주의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 신청은 장래의 기간에 대하여 취소될 수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역년주의가 사용되어야 한다.²⁰⁹⁾ 역년주의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과세이연효과를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규정들이 규정되어 있다.²¹⁰⁾ 역년주의를 사용하지 않는 비법인사업체를 통하여 얻은 소득을 추정절차(estimating procedure)를 사용하여 역년주의에 따라 계산할 수 있게 하는 공식이 규정되어 있다.²¹¹⁾ 사업의 개시로 인하여 역년주의에 따른 과세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정한 금액이 역년주의에 따라 신고될 수 있도록 조정된다.²¹²⁾

8)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

재무회계상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바꾸기 위하여서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법인의 경우에는 Schedule 1, Net Income(Loss) for Income Tax Purpose를 사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를 법인세신고서에 첨부한다. 자영 개인의 경우에도 비슷한 서식을 사용한다. 소득세법은 회계상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많은 규정들을 두고 있다. 사업소득과 관련한 회계상 소득과 과세표준 사이의 대부분 차이를 subdivision b, sections 9-47에서 다루고 있다. 위 각 조문들 중 sections 9, 12, 18

206) ITA: 249.1(1).

207) ITA: 248(1).

208) ITA: 249.1(4).

209) ITA: 249.1(7).

210) ITA: 249.1(6).

211) ITA: 34.1.

212) ITA: 34.1(1), 34.1(2).

및 20이 사업소득을 결정하기 위한 원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조문들은 해당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규정에 해당한다. 이하 sections 9, 12, 18, 20 및 67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본다.

- Section 9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규칙들에 대하여 규정한다.
- Section 12는 section 9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았던 금액을 언제 다시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할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한다. 그러나 section 12에 따라 다시 과세 소득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section 20에 따라 충당금(reserve)이 설정되어 해당 소득을 줄일 수 있다. 대손충당금(bad debt reserve)의 환입과 재설정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 Section 18은 납세의무자가 특정 사업 또는 자산을 통하여 소득을 얻거나 창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은 비용 또는 지출을 손금불산입할 것을 규정한다.
- Section 20은 사업소득 또는 자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에 의하여 특별히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항목들에 대하여 규정한다.
- Section 67은 손금에 대한 일반적인 한도를 설정하는 조문(a general limitation provision)이다. 즉, section 67은 공제되는 모든 비용이 특정 상황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로 한정되도록 하기 위한 조문이다. 이 조문은 캐나다 국세청(CRA) 공제되는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축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소득세법은 재무회계와는 달리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를 작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본소득 및 자본손실은 사업소득의 일부로서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자산의 처분에 기인한 일체의 소득 및 손실은 사업소득과 별도로 계산되어야 한다.²¹³⁾

이하에서는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항목들과 사업소득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항목을

213)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4,070.

요약하는 순서로 살펴본다. 공제항목들(deduction)은 후술한다.²¹⁴⁾

가) 사업소득에 산입되는 수익

재무회계상 소득과 세법상 소득 사이에는 상이한 측면들이 있다.²¹⁵⁾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수령한 일체의 금액(장래의 과세기간 중에 수령한 금액을 포함한다)은 소득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다.²¹⁶⁾ 소득세법은 또한 법이 허용하는 경우 현금주의에 의한 소득의 인식을 허용한다.²¹⁷⁾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납세의무자들은 현금주의를 사용할 수 있고 전문가들의 소득개념에서 재공품(work-in-process)이라는 개념은 제외된다.²¹⁸⁾ 소득세법은 일반적으로 재무회계상 충당금(reserves)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신에 충당금 설정액을 소득에 더하게 하고 제한적으로 규제된 범위 내에서만 공제를 허용하기도 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장부상 수익으로 기록하지 않은 항목들을 소득세법이 특히 소득에 포함할 것을 규정할 수도 있다. 이하 사업소득의 계산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항목들 중 일부를 살펴본다.²¹⁹⁾

- 매출채권(Amounts received and receivable)
- 상업적 임차인이 수령한 유익비 보상금 및 비용상환금액(Inducement payments or reimbursements)
- 토지사용제한 약정에 따른 수입(Restrictive covenants)
- 파트너십 수입(Partnership Income)
- 교환거래에 따른 수입(Income from Barter Transactions)

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세무조정사항

회계상 소득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변경하기 위한 세무조정사항들은 다음과 같

214) 제2편 5. 가 참조.

215) ITA: 12-17.

216) ITA: 12(1) (b).

217) ITA: 28(1).

218) ITA: 34.

219)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4,100(Inclusion).

다.²²⁰⁾

〈표 2-1-1〉 사업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사항

가산항목		차감항목	
수령하였으나 아직 가득하지 않은 소득	12(1)(a)	장래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충당금	20(1)(m)
매출채권	20(1)(b)	불량채권(doubtful debt)	20(1)(l)
		대손상각	20(1)(p)
소득의 가득과 무관한 비용	18(1)(a)		
우발적 지출 또는 손실	18(1)(a)	자본공제액(CCA) 및 누적적 격자분액(cumulative eligible Capital account: CECA)	20(1)(a), (b)
		이자비용	20(1)(c)
		자본조달비용	20(1)(e)
		중단손실(terminal loss)	20(16)
		대손상각	20(1)(p)
		조경비용(landscaping)	20(1)(aa)
		투자자문료	20(1)(bb)
		부지조사비용	20(1)(dd)
		전기 등 인입비용(utility service connection)	20(1)(ee)
		장애인관련 건물·장비의 개선 비용	20(1)(qq), (rr)
비과세소득 관련 비용	18(1)(c)	담보로 제공된 생명보험료	20(1)(e.2)
충당금(reserve) 또는 우발채무 등	18(1)(e)	불량채권(doubtful debt)	20(1)(l)
		장래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충당금	20(1)(m)
		미지급비용 관련 충당금	20(1)(n)

220) Id., at ¶ 4,275.

〈표 2-1-1〉의 계속

가산항목		차감항목	
할인채권에 대한 지급금	18(1)(f)	특정 채무에 대한 할인액	20(1)(f)
개인적 비용 또는 생활비	18(1)(h)	식비 및 접대비 한도액	67.1
		교통수단에 대한 이자비용 및 임차료 한도액	67.2-67.4
		고가승용차에 대한 자본지출액	13(7)(g)
		회의비(convention expenses)	20(10)
여가시설이용 및 입회비	18(1)(l)		
정치헌금	18(1)(n)		
사적 용역사업비용에 대한 한도	18(1)(p)		
리스 중도해지와 관련한 한도액	18(1)(q)	리스의 중도해지	20(1)(z)
특정 이자·재산세 관련 한도액	18(2)		
건물건설 또는 토지소유권 관련 비용	18(3.1)		
선급비용	18(9)		
비합리적 비용	67		
위법소득, 벌금 및 가산세	67.5, 67.6		

9) 영업중단(Ceasing to Carry on Business)

불량채권에 대하여 충당금(reserve)을 설정하거나 대손상각을 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채권금액이 이전에 소득에 포함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금액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에 사용된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자산을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할 매수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은 해당 자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동하여 매수인이 해당 채권에 대한 충당금 또는 대손상각을 매수인이 승계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²²¹⁾ 위와 같이 선택을 한 매도인에게 발생한 손실은 사업손실에 해당한다. 만약 위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도인의 손실은 자본손실에 해당하고 단지 2분의 1만 공제할 수 있으며 그 공제대상 역시 자본소득에 한정된다.²²²⁾

만약 납세의무자가 사업 전체 또는 사업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 매각된 재고자산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각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 매각대가는 매도인에게는 소득이 되고 매수인에게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가 된다.²²³⁾ 이 규정은 사업 자체의 매각에 따른 재고자산의 일괄매각을 통상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재고자산의 매각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것이다.²²⁴⁾

10) 전문가 사업소득(Professional business)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청구된 매출채권은 전문가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전문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이나 아직 청구되지 않은 부분은 재고자산으로 간주된다.²²⁵⁾ 회계사, 치과의사, 변호사, 의사 수의사 또는 척추지압사와 같은 전문적인 기술을 수행하는 납세의무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진행 중이나 아직 청구되지 않은 부분을 사업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만약 그 선택이 이루어지면 다음 과세기간 중에도 계속 그 선택이 적용되고 캐나다 국세청(CRA)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그 선택을 취소할 수 있다.²²⁶⁾ 이 규칙들에 대한 캐나다 국세청(CRA)의 해석은 International Bulletin “Election by professionals to exclude work in progress from income”에 포함되어 있다.²²⁷⁾

221) ITA: 22.

222)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4,285.

223) ITA: 23.

224)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4,290.

225) ITA: 10(5) (a).

226) ITA: 34(a), 34(b).

227) IT-457R.

11) 과학적 연구 및 실험개발(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SR&ED)

과학적 연구 및 실험개발은 과학 또는 기술분야에서 실험 또는 분석을 통하여 수행되는 체계적인 탐구(investigation) 또는 탐색(search)를 의미하는바, 이에는 기초연구(basic research), 응용연구(applied research) 및 실험개발(experimental development)을 포함한다.²²⁸⁾ 일반적으로 연구개발비는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여 지출한 해당 연도에 전액 공제된다. 그러나 해당 연도에 공제되지 않았지만 공제가능한 지출은 풀에 집계되어 납세의무자가 캐나다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연도 중에 공제된다.²²⁹⁾ 자본적 성격을 갖는 SR&ED에 대한 지출이 사업에 관련되고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또는 납세의무자를 위하여 직접 인수된 자산(토지 또는 비감가상각 자산은 제외)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²³⁰⁾ 공제가능한 SR&ED지출의 지역적 범위는 캐나다 해안의 저조선(low-water line)으로부터 200해리(nautical mile)까지에 해당한다.²³¹⁾ 실험은 실험을 하는 개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어야 한다.²³²⁾ SR&ED활동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법은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ITC)를 규정한다.²³³⁾ 캐나다 밖에서 수행된 SR&ED에 대한 지출로서 수익적 성격을 갖는(of a current nature) 특정 지출 역시 발생한 연도에 한하여 공제되나 풀에 저장되지는 않는다.²³⁴⁾ 빌딩에 대한 지출에 대하여서는 100% 대손상각이 허용되지 않는다. 위 지출에는 빌딩에 대한 자본적 지출 또는 빌딩의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포함된다. 그러나 구조에 대한 실험비용에 대하여서는 100% 대손상각이 허용된다.²³⁵⁾ SR&ED공제가 허용되는 지출은 전부 또는 실질

228) ITA: 248(1).

229)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4,320.

230) ITA: 37(1) (b).

231) ITA: 37(1.3).

232) ITA: 37(1) (a), 37(1) (b).

233) ITA: 37(1) (e).

234) ITA: 37(2).

235) ITA: 37(8) (d).

적으로 전부가 해당 연구개발의 수행 또는 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premises), 시설(facilities) 또는 장비(equipments)의 제공에 귀속될 수 있어야 한다.²³⁶⁾ 납세의무자는 캐나다 내에서 발생한 어느 지출이 SR&ED공제의 적격을 갖추고 SR&ED 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대체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 대체적 선택은 법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년 이루어져야 한다.²³⁷⁾

12) 사업 활동에 대한 GST/HST의 영향

가) 영업활동(Commercial Activity)

납세의무자가 영업활동에 종사하는지 여부가 해당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GST/HST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적 요인이다. 영업활동은 ‘사업을 수행하는 것’, ‘거래적 성격을 갖는 계획 또는 영업(an adventure or concern in the nature of trade)을 영위하는 것’ 또는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²³⁸⁾ 그러나 ‘면세공급과 관련된 사업 또는 거래적 성격을 갖는 계획·영업 중 일부’ 및 ‘이익을 얻은 의도가 없는 개인, 개인적 신탁(personal trust) 또는 개인들만으로 구성된 파트너십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은 영업활동의 정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면세 공급에 대하여서는 GST/HST를 납부하지 않고 해당 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면세공급²³⁹⁾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활동에서 제외되나 영세율공급²⁴⁰⁾을 하는 것은 영업활동에 포함된다.²⁴¹⁾ GST/HST는 공급대가의 가치에 대하여 부과된다.²⁴²⁾

GST/HST는 일반적으로 공급대가가 공급자에게 지급되는 날과 공급대가 지급약정일 중 빠른 날에 과세대상 공급의 수령자에 의하여 납부된다. 공급대가가 분할하여

236) ITA: 37(8)(a).

237) ITA: 37(8)(a)(ii)(B).

238) ITA: 123(1).

239) ITA: Schedule V.

240) ITA: Schedule VI.

241)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4,425.

242) ITA: 165(1).

지급되는 경우에는 각 지급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GST/HST는 일반적으로 송장대금이 청구되는(invoiced) 시점에 납부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다음 중 빠른 날이 대가를 지급한 날에 해당된다. 해당 금액이 기재된 송장이 발행된 날, 송장상 일자,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았다면 송장이 발행되었을 날, 서면약정상 지급일.²⁴³⁾ 임대, 허가(license) 또는 유사한 약정을 통하여 자산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수령인이 약정상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날을 대가 지급일로 간주한다. 이상의 일반적인 규칙들 외에 별도의 특별규정들이 있다.²⁴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자동차의 운영비용을 사용자가 지불하는 경우 그 혜택은 과세된다. 그 혜택의 가치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결정된다. 근로자는 킬로미터 방법(kilometer method)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자동차와 관련된 대여비용(standby charge)의 50%를 혜택의 가치로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지만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 운영비 혜택의 가치가 소득세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위 각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용자(registrant employer)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혜택의 3%에 상당하는 GST를 납부하여야 하나 구체적으로 납부할 금액은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²⁴⁵⁾ HST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다양하다. 혜택에는 보험료 및 면허수수료(licence fees)와 같은 면세 공급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이 정하는 비율은 5% 미만이다.²⁴⁶⁾

나) 매입세액공제(Input Tax Credits)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급한 GST/HST과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영업활동에 대한 투입분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전액이 공제되나, 10% 미만인

243) ITA: 152(1), 168(1), 168(2).

244) ITA: 168(1), 168(3), 168(9).

245) ITA: 6(1)(k), 6(1)(l); ETA: 1.173(1)(d)(vi)(A).

246)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4,440.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²⁴⁷⁾ 매입분이 과세 및 면세 공급에 사용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안분하여 나누어야 한다.²⁴⁸⁾ 이에 대하여서는 특정 자본재에 대한 예외가 있다. 거래세법(Excise Tax Act)이 안분방법을 정하지는 않는다.²⁴⁹⁾

다) 납부할 세액에 대한 조정(Adjustments to Net Tax)

특정 기간 동안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순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조정하여야 할 항목들이 있다.

과다 청구분(Excess charges): 공급자가 법이 정하는 이상의 금액을 GST/HST로서 청구한 경우에는 아직 징수하지 않았다면 공급자가 해당 금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미 징수된 상황에서는 이를 환급하거나, 만약 대변표(credit note)가 고객에게 발행되거나 차변표(debit note)가 공급을 받는 자에 의하여 발행되었다면, 해당 금액을 고객에 대한 부채로 인식하여야(credited to the customer) 한다. 이때 공급자는 환급하거나 부채로 인식한 금액을 다음 고객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되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위의 경우와 반대로, 사업자인 공급자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그 이전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납부할 세액에 해당 금원을 가산하여야 한다. 환급 또는 환급세액의 대기(credit)는 GST/HST가 청구되거나 징수된 이후 2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²⁵⁰⁾

공급가액의 감액: GST/HST가 청구되었으나 징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가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해당 청구금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만약 징수된 상황이라면, 이를 환급하거나, 만약 대변표(credit note)가 고객에게 발행되었다면, 해당 금액을 고객에 대한 부채로 인식하여야(credited to the customer) 한다. 환급 또는 환급세액의

247) ETA: 169(1), 123(1).

248) ETA: 169(1).

249)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4,455.

250) Id., at ¶ 4,475; ETA: 232(1), 232(3).

대기(credit)는 가격이 감액된 이후 4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²⁵¹⁾ 즉시 현금지급에 따른 할인에 대하여서는 위 규칙들이 적용되지 않는다.²⁵²⁾

대손상각: GST/HST를 납부하였으나 아직 징수하지 못한 채권이 그 이후 대손상각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해당 공급과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대손상각금액의 5/105(HST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주에 따라서 12/112, 13/113 또는 15/115)/공급에 대한 전체 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²⁵³⁾

교통수단의 리스: 사업자가 교통수단을 리스하고 그 리스비용이 소득세법 제67조의 3에서 정하는 비용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되어야 한다. 해당 금액은 적정한 보고기간에 대응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정되어야 한다.²⁵⁴⁾

식사, 음료 및 접대비(Food, beverage and entertainment expenses): 소득세법 제67조의 1이 적용되는 식사, 음료 및 접대비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법 제236조에서 특별하게 규정한다. 이들 비용과 관련하여 지급된 GST/HST에 대한 매입세액 전액이 해당 비용이 발생한 보고기간(reporting period)에 공제된다. 그러나 사업자의 과세기간 말에 이들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50%가 부인된다. 그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첫 보고기간에 대한 사업자의 GST신고 시에 포함된다.²⁵⁵⁾

251) Id., at ¶ 4,480; ETA: 232(2), 232(3).

252) ETA: 161, 232(4).

253) ETA: 231(1), 231(3).

254) ETA: 235(1), 235(2).

255)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4,495; ETA: 236(1.1).

다. 근로소득(Employment Income)

1) 봉급, 임금 기타 보수

근로소득은 역년주의에 따라 계산된다. 따라서 개인의 과세기간은 항상 12월 31일에 종료한다.²⁵⁶⁾ Section 5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직무 또는 고용에 기하여 지급받은 봉급, 임금 및 무상수령액은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Section 6은 고용관계에 기인한 수령액으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기타항목들에 대하여 규정한다. Section 7은 스톡옵션 혜택에 대하여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Section 8은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항목에 대하여 규정한다. 근로소득은 현금주의에 따라 인식된다.²⁵⁷⁾

가) 직무와 고용의 의미

‘직무(office)’란 고정되거나 특정 가능한 봉급 또는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개인의 지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법원, 연방정부, 상원 및 하원, 지방정부 의회, 정부 위원회 등과 그 선출된 구성원 등의 지위를 의미하며, 법인의 임원의 지위 역시 포함된다. 따라서 ‘직무담당자(officer)’는 해당 지위를 보유한 자연인을 의미한다. ‘고용’은 영국(Her Majesty) 및 외국 정부를 포함하는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의 지위를 의미하며, ‘근로자(employee)’는 위 지위를 보유한 자를 의미하고 회사의 임원을 포함한다.²⁵⁸⁾

나) 봉급, 임금, 기타 보수의 의미

봉급(salary)은 통상 다음의 특성을 갖는다고 한다.

첫째, 용역 제공에 대한 보수이다.

둘째,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따라 지급된다.

256) ITA: 249(1) (b).

257) ITA: 5.

258) Canadian Master Tax Guide, at ¶ 2,040.

셋째, 시간에 근거하여 계산된다.

넷째, 특정 일자 또는 시간에 지급된다.

임금(wages)은 일, 주, 또는 월과 같이 정기적인 기간 동안 노동자 또는 근로자(workman or servant)가 사용자(employer)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이에는 근로자의 작업 완료한 분에 기초하여 계산되는 금액이 포함된다. 기타 보수(other remuneration)는 상여금, 봉사료 및 사례비를 포함하는 무상수령액(gratuities)을 말한다.²⁵⁹⁾

다) 근로자 또는 독립 계약자(Employee or Independent Contractor)

이하에서는 근로자와 독립계약자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하여 살펴본다.²⁶⁰⁾ 직무 또는 고용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자산소득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것과는 다른 규정들에 따라 결정된다. 양자의 차이는 손금의 공제 여부, 소득 인식시기 및 과세기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자산소득인지, 아니면 직무나 고용에 따른 소득인지 여부는 중요하다.

직무 또는 고용에 따른 소득이 아니라면, 납세의무자는 독립 계약자로서 그 소득을 얻은 것이다.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master and servant relationships)를 다루는 보통법상 적용되는 일반원칙에 의하면,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한 지배의 속성 및 정도를 기준으로 '독립 계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를 지배 기준(control test)라고 한다. 이 기준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법원에 의하여 적용되고 있다: 통합 기준(the integration test), 경제적 실질 기준(the economic reality test), 및 특정 결과 기준(the specific result test).

통합 기준에 의하면, 계약내용 자체가 용역에 해당하는 계약(a contract of service)과 용역의 제공을 위한 계약(a contract for service)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고용되어 수행하는 근로자의 작업이 사업 전체의 중

259) Id.

260) Id. at ¶ 2,050.

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작업이 사업을 위하여 행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업은 사업에 통합되지 않고, 부수되는 것에 그친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독립 계약자에 해당된다. 이 판단 기준을 활용하게 되면,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파트타임 강사 및 교사들도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된다.

경제적 실질 기준에 의하면, 독립 계약자는 장비 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위험을 인수하고, 해당 사업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 사업이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있기에 충분한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특정 결과 기준에 의하면, 계약내용 자체가 용역에 해당하는 계약과 용역의 제공을 위한 계약을 구분하는바, 전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나타낸다.

다만, 법원은 기계적인 기준 또는 일련의 기준을 확립하는 것보다는 주장되는 고용 관계에 대한 사실을 상세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라) 근로소득의 범주에 포함되는 부분

근로소득의 범주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된다.

첫째, 근로자(employee)나 직무담당자(officer)에게 지급되는 식사, 숙박 및 기타 고용 혜택(Board, lodging and other employment benefits)으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식사 및 숙박가액, 주택의 무료 임대 또는 저가 임대, 여행 혜택, 선물, 휴가여행, 상금 및 인센티브 부여, 상용고객 프로그램(frequent flier programs),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보통법상 파트너의 여행경비, 수업료, 기구 구입비용에 대한 보상, 임금손실 대체 프로그램(wage-loss replacement plans), 무이자 또는 저이자의 융자 및 재정 상담과 소득세 신고 준비 비용²⁶¹⁾ 다만,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여행경비 또는 수업료 등, 초과근무에 따른 식사비, 성실 근무에 대한 보상(loyalty program), 비현금성 선물과 시상품 및 노면 대중교통 통행권(Surface Transit Passes)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의 범주에서 제외된다.²⁶²⁾

261) Id. at ¶ 2,055.

262) Id. at ¶ 2,057.

둘째, 거주 손실 보상 및 사용자가 제공하는 거주보조금(Housing loss reimbursements and other employer-provided housing subsidies)은 모두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다만, 적격 거주 손실은 제외되는데, 적격 거주 손실은 적격 이사로 인하여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한다.²⁶³⁾

셋째, 근로자를 위한 건강 및 복지 신탁에 대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그룹의 불입금을 사용자는 공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그 불입시점에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수탁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있어서 그 혜택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²⁶⁴⁾

넷째, 근로자의 개인적 비용 또는 생활비에 대한 수당(Allowances—Personal or living expenses of employees)은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이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²⁶⁵⁾

다섯째, 이사 보수(director's fee)가 같은 사용자로부터 봉급을 받는 것 이외로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봉급에 추가되어 근로소득을 구성하게 된다. 이사 보수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되는 유일한 것이고 인적공제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사보수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되는 유일한 것이고 그 금액이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월 정기지급금으로 전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²⁶⁶⁾

여섯째, 수익공유플랜에 따른 배분 등(Allocations, etc. under profit sharing plan)은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며, 여기에는 자본소득 및 자본손실도 포함된다.²⁶⁷⁾

일곱째, 자동차 혜택(Automobile benefits) 및 사용자가 운영하는 항공기의 이용 혜택(Employee's use of aircraft) 등의 가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²⁶⁸⁾

여덟째, 소득유지금(Income maintenance payments)은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에

263) Id. at ¶ 2,060.

264) Id. at ¶ 2,065.

265) Id. at ¶ 2,070.

266) Id. at ¶ 2,075.

267) Id. at ¶ 2,080.

268) Id. at ¶ 2,085 and ¶ 2,090.

택플랜(employee benefit plan)에 불입하였다면 그 플랜으로부터 근로자가 수령한 금원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해당 금원은 직무 또는 고용에 기하여 소득을 가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정기금으로서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소득유지금이 질병 또는 사고보험, 장애보험플랜 및 소득유지보험 플랜에 기하여 지급되고 사용자가 해당 플랜에 전부 또는 일부의 금원을 불입하였으며 그 지급분이 소득 일실분(the lost income)인 경우라면 해당 금원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만약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해당 플랜에 불입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불입하였으나 이전에 공제되지 않았던 금원만큼 과세대상 금원이 감소하게 된다.²⁶⁹⁾

아홉째, 봉급이연약정(Salary deferral arrangements)의 경우, 이연되어 지급되는 봉급 중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았던 금액 및 이에 추가하여 받는 이자 또는 다른 부가금원은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주로 캐나다 외의 장소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비거주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²⁷⁰⁾

열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근로계약 이전 또는 이후에 받도록 약정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즉, 근로계약 이전에 제시한 계약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또는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아닌 퇴직에 따른 보상금은 퇴직수당으로 본다.²⁷¹⁾

열한째, 제한약정(Restrictive Covenants)과 관련하여 과세기간 동안 수령하거나 수령할 금액은 소득에 포함된다. 제한약정은 대부분 경업피지 약정의 형태를 취한다. 위 원칙에 대하여서는 ‘근로소득’, ‘적격 자본자산’ 및 ‘주식과 파트너십 지분’과 관련된 예외가 있다.²⁷²⁾

열두째, 단체정기생명보험의 보험료(Premium for Group Term Life Insurance)

269) Id. at ¶ 2,095.

270) Id. at ¶ 2,105.

271) Id. at ¶ 2,110.

272) Id. at ¶ 2,112.

를 사용자가 지급한 경우 법령이 정하는 금액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²⁷³⁾

열셋째, 직무 또는 고용으로 인하여 특정 작업장 또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납세의무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식사, 숙박, 교통비 및 일체의 그와 관련된 수당들을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²⁷⁴⁾

열넷째, 고용(employment) 또는 의도된 고용(intended employment)에 따라, 무이자 또는 저이자 융자 및 대출채권의 포기(Interest-free, low-interest, and forgiven loans)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간주된 혜택(deemed benefits)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저이자 융자의 경우에는 지급되는 이자의 이자율과 법정 이자율(the prescribed rate)과의 차이에 해당되는 금액만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²⁷⁵⁾

열다섯째, 스톡옵션의 경우, 사용자 법인 또는 뮤추얼펀드신탁[이하 적격 사용자(a qualifying person)라고 한다]이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non-arm's length qualifying person)의 주식 또는 유가증권 등을 해당 적격사용자 또는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사용자의 근로자에게 매매하거나 발행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옵션(the option)을 행사하거나, 유가증권들을 취득하는 과세연도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옵션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취득 시 해당 유가증권이나 주식의 가격에서 권리의 행사가격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된다.²⁷⁶⁾ 다만,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CCPC)이 자신의 주식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CCPC의 주식을 해당 CCPC의 근로자 또는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CCPC의 근로자에게 발행하거나 매매한 경우라면, 해당 주식을 근로자가 처분한 과세연도까지 근로소득의 인식을 이연한다.²⁷⁷⁾ 많은 경우에 CCPC의 주식과 관련된 간주고용 혜택(the deemed employment benefit)에 대하여서는 50% 공제가 2년 이상 보유를 조건으로 하여 부여된다. 근로자가 옵션을 이전하는 등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하나 이상의 거래를 통

273) Id. at ¶ 2,115.

274) Id. at ¶ 2,120.

275) Id. at ¶ 2,130.

276) ITA: 7(1).

277) ITA: 7(1.4).

하여 시가가 아닌 가격으로 당사자들에게 이전하고 그 이전을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시가에 의하여 옵션을 이전하는 등 방법으로 처분하는 상황에는 비록 근로자가 기초 증권들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간주혜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²⁷⁸⁾

열여섯째, 옵션 또는 주식의 교환(Exchange of Options or Shares)과 관련된 특별규정이 있다. 근로자가 특정 적격법인의 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법정 법인(designated person)의 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다른 옵션으로 교환하는 특정 적격교환의 경우에는 과세이연의 혜택이 부여된다.²⁷⁹⁾

라. 이자소득

1) 이자소득 일반

캐나다 연방소득세법 Section 12는 자산소득(income from a property)에 대하여 규정하는바, 이에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자산의 생산 또는 사용에 기한 소득을 포함한다.²⁸⁰⁾

가) 이자(Interest)의 개념

캐나다 연방소득세법은 이자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캐나다 연방 대법원은 이자에 대해서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거나 또는 타인과의 채무관계에 따라 보유(the retention) 또는 사용되는(the use) 현금 총액(a sum of money)의 수익(the return), 대가(the consideration), 또는 보상(the compensation)”으로 이자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캐나다 연방 국세청에서 활용하고 있다.²⁸¹⁾

278) Canadian Master Tax Guide, at ¶ 2,135.

279) Id., at ¶ 2140; ITA: 7(1.4).

280) ITA: 12(1)

281)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6,015.

나) 이자소득 귀속 시기 및 계산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발생주의(the accrual method)에 의하여 인식한다. 다만,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에 그 당시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따라 기존에 이자소득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현금주의(the cash method)에 따라 이자소득을 인식하여야 한다. 법이 채권을 정의하지 않으나, 캐나다 연방 국세청은 채권이라는 용어에 예금계좌(bank accounts), 정기에금(term deposits), 이율보증투자증서(guaranteed investment certificates), 정부예금채권(Canada Savings Bonds), 저당권부 채권(mortgages), 회사채(corporate bonds) 및 대출채권(loans)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²⁸²⁾

투자계약을 보유한 개인은 이자를 매년 정해진 날에 발생주의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해당일까지 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인식하여야 한다.²⁸³⁾ 투자계약은 봉급이연약정(a salary deferral arrangement), 다양한 유형의 소득연계채권(various types of income-based debt), 소기업에 대한 특정 정부보증채권(certain government-sponsored debt for small business) 또는 법정 계약(prescribed contract)을 제외한 채권을 말한다.²⁸⁴⁾

다) 이자소득 관련 다른 규정들

채권이 할인발행되거나 할증발행된 경우, 해당 할인액(the discount)이나 할증액(the premium)이 이자소득인지 자본소득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고, 그 고려 사항 중에는 대출 계약조건에 따른 금액 및 해당 채권의 매도가격이 포함된다.²⁸⁵⁾ 만약 해당 채권이 공정 시장가액에 매도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볼 부분이 없지만, 공정 시장가액을 초과하여 매도된 경우라면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²⁸⁶⁾ 학자금신탁기금(scholarship

282) Id., at ¶ 6,020.

283) ITA: 12(4), 12(11) (b).

284) ITA: 12(11) (a).

285)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6,030.

286) ITA: 16(1)

trust fund)에 대한 이자는 해당 기금을 설정한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 과세되지 않는다.²⁸⁷⁾

회사채를 할인하여 구매한 경우, 경제적으로 볼 때, 유효이자율은 채권 액면이자율보다 높은 것이므로, 그 할인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캐나다 연방소득세법은 이자와 자본이 부분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 이자는 실제로 지급되거나, 지급되어야 할 부분을 한도로 하여 인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²⁸⁸⁾ 캐나다 연방국세청은 공정 시장가액이 반영된 가격에 따라 채권을 구매하였다면, 할인액이나 할증액 모두 자본요소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수용한다.²⁸⁹⁾

회사채 발행자가 유효이자율을 높여 이자 비용을 높이고자 심하게 할인발행하였다면, 해당 할인액을 모두 이자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²⁹⁰⁾ 법은 심한 할인발행(a deep discount)과 적절한 할인발행(a shallow discount)을 구분하여 취급한다.²⁹¹⁾ 따라서 채권 가액의 3%를 초과하는 할인액이 있거나, 해당 채권의 수익률(the yield rate on the debt obligation)이 액면이자율(the nominal rate)의 3분의 1만큼을 초과하는 정도라면 심한 할인발행에 해당하고 그 경우 해당 할인액의 50%만을 이자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재무부 채권(Treasury bills)은 항상 할인된 가격에 매입되며, 만기에 투자자들은 재무부 채권의 액면가액을 받는다. 따라서 할인액은 실질적으로 이자에 해당되며,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자소득에 포함된다.²⁹²⁾

무이자부 채권(Zero-coupon bonds) 또는 분리원금채권(strip-bonds)은 만기일의 상환금 중 일부가 이자에 해당하는 장기 채권이다. 따라서 세법상 이러한 채권들의 경우에는 채권 취득원가와 만기 상환금액의 차액이 누적된 이자소득의 만기일 현재가치에 해당한다.²⁹³⁾

287) ITA: 146.1.

288) ITA: 16(1) (a), (b)

289) IT-265R3.

290)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6,032.20.

291) ITA: 20(1) (f).

292) ITA: 12(1) (c), 16(1).

293)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6,034.

채권이 이자지급일이 아닌 날에 이전되는 경우에 이자소득이 매매 당사자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 여부를 법이 정하고 있다.²⁹⁴⁾ 매도인은 이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소득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이자소득으로 인식된 금액은 매도가액에서 제외된다. 매수인은 이전일로부터 이자소득을 인식한다.

마. 배당소득

가) 개관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세후 이익(after-tax profits)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분배하는 경우, 이는 주주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현물배당(a dividend-in-kind)은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지급되는 배당을 의미한다.

배당에 대한 정의가 캐나다 연방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상세하게 정의된 것은 아니다. 캐나다 국세청과 법원은 주주 사이에서 지분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는 분배는, 법인이 해당 지급금이 다른 유형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배당으로 본다.²⁹⁵⁾

나) 배당소득의 범위

납세의무자는 캐나다의 거주자 법인과 비거주자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모두를 배당소득에 산입하여야 한다. 배당소득에는 현금배당(cash dividends)과 현물배당(dividends in kind) 모두가 포함되며, 결과적으로 현금배당과 현물배당을 동일하게 취급한다. 그러나 주식배당(a stock dividend)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이 있다.²⁹⁶⁾

캐나다에서 거주자 법인으로부터 받은 과세대상 배당소득은 모두 소득 계산 시에 산입되어야 한다.²⁹⁷⁾ 과세대상 배당소득(a taxable dividend)은 과세대상이 아닌 자본배당(a tax-free Capital dividend) 또는 과세이연 우선주에 대한 적격배당

294) ITA: 20(14).

295)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6,052.

296) Id.

297) ITA: 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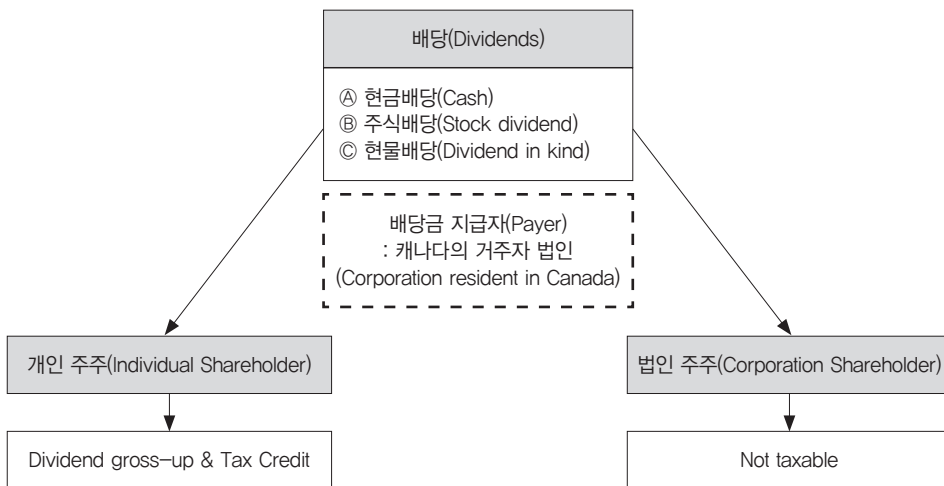
(a qualifying dividend on tax-deferred preferred shares)을 제외한 배당을 의미한다.²⁹⁸⁾ 법은 또한 비거주자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모든 배당은 소득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²⁹⁹⁾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혜택을 받는 경우 캐나다 연방소득세법은 여러 규정들을 통하여 이를 배당으로 취급하는바, 이를 의제배당(deemed dividends)이라고 한다. 의제배당은 과세대상인 배당(a taxable dividend)으로 취급된다.³⁰⁰⁾

다) 배당소득의 과세

배당을 받은 자(파트너십의 파트너 및 신탁을 포함한다)가 개인(an individual)인지 아니면 법인(a corporation)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리 과세된다. 또한 캐나다 거주자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인지 아니면 비거주자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인지 여부, 해당 배당이 주식배당인지 여부 및 의제배당에 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달리 과세된다. 이러한 관계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³⁰¹⁾

[그림 2-1-1] 배당소득의 과세



298) ITA: 89(1).

299) ITA: 90(1).

300) ITA: 84

301)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6,052.10, Figure 6-1.

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

캐나다에 있어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과 주주 사이의 이중과세 조정제도는 다음과 같다.^{302) 303)}

개인주주(the individual shareholder)는 grossing-up을 통하여 배당소득을 법인세의 과세 전의 상태로 환원하여 배당소득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 후 개인은 배당소득에 상응하는 법인세액을 배당세액공제를 통하여 공제받는다. 법인이 조세를 납부한 소득에 대하여 배당받은 부분은 배당세액공제(dividend tax credit)를 받을 수 있다. 배당가산(Gross-up)과 배당세액공제(dividend tax credit)는 배당법인의 유형과 배당소득의 유형에 따라 그 내용상 차이가 있다.

저세율로 과세되는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이하 CCPC)의 적극적 사업소득(the active business income)에 기한 배당과 CCPC의 투자소득에 기한 배당의 경우에는 25%(2013년 이후 배당부터는 18%)의 배당가산율(Gross-up rate)을 적용한다. 다만, 배당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계산된다.

- 지급받은 배당금(the dividends paid)의 16.67%
- $\frac{13}{18} \times 25\%$ (gross-up)
- $11.0169 \times 125\%$ (gross-up dividend)

캐나다 거주자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과 캐나다 거주자인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의 소득으로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소득에 기한 배당의 경우에는 배당가산율이 38%이며, 배당세액공제 계산은 다음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의 방식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 지급받은 배당금(the dividends paid)의 23.2%
- $\frac{6}{11} \times 41\%$ (gross-up)
- $15.0198 \times 141\%$ (gross-up dividend)

302) ITA: 82(1), 121.

303)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6,060.20 and ¶ 6,060.30.

마) 비거주자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

캐나다 비거주자 법인으로부터 개인이 받은 배당은 과세대상이며, 이에는 캐나다 거주자 법인으로부터의 배당과는 달리 배당세액공제 규정(Gross-up & dividends tax credit)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캐나다의 원천소득이 아니고, 캐나다의 원천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에 대하여 개인주주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납세의무자들은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s)를 받을 수 있다.³⁰⁴⁾

바. 연금소득

1) 개요

납세의무자가 연금제도(superannuation or pension benefits)에 따라 수령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소득으로서 과세된다. 연금소득은 연금기금 및 연금플랜(superannuation or pension fund or plan)에 따라 수령하는 것으로서, 수익자(beneficiary)에게 지급되는 지급금, 각종 연금 기금 또는 계획의 수정, 변경, 종료에 따라 사용자 또는 전(前)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등이 포함된다.³⁰⁵⁾

2) 연금소득의 유형

연금소득(Superannuation or pension benefits)의 유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³⁰⁶⁾

- 노령연금법(Old Age Security Act)에 따른 연금(pension), 보조금(supplement), 또는 배우자수당(spouse's allowance) 및 주법에 따른 유사한 지급금
- 캐나다연금플랜(the Canada Pension Plan) 또는 연방소득세법상 정의된 주연

304)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6,065.

305) ITA: 56(1) (a), 248(1)

306) Canadian Master Tax Guide, at ¶ 2,150.

금플랜(provincial pension plan)에 따라 수취한 혜택

-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퇴직약정(foreign retirement arrangement)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수취한 혜택

사. 자본소득

1) 자본소득(Capital gain)의 개관

자본소득(Capital gain)이란 자본자산의 처분에 있어서 처분대가가 자본자산의 조정장부가액(the Adjusted Cost Base) 및 처분비용(Disposition cost)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자본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자산 및/또는 처분 시 자본소득 또는 자본손실(Capital gain or loss)이 발생하는 기타 다른 자산을 의미한다.³⁰⁷⁾

자본자산(Capital property)은 개인용 자산(Personal-use property: PUP), 열거된 동산(Listed personal property: LPP) 및 기타 자본자산(Other Capital property)으로 나누어진다.³⁰⁸⁾

첫째, 개인용 자산(Personal-use property: PUP)은 납세의무자(법인 및 신탁을 포함)가 개인적인 용도 또는 향유(enjoyment)를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수익자(beneficiary)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이러한 자산으로 개인가구, 스포츠장비, 개인 주거지(personal residence), 자동차 및 동산(effects) 등을 포함한다.

둘째, 열거된 동산(Listed personal property: LPP)은 PUP 중 별도로 분리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산들이다. LPP에 대하여서는 이익을 인식할 수 있을 뿐, 손실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 외 PUP에 적용되는 규정들은 LPP에도 적용된다. 이에는 미술품, 보석, 희귀서적, 우표 및 동전 등이 포함된다.

셋째, 기타 자본자산(Other Capital property)은 PUP와 LPP에 속하지 않으며

307) ITA: 54

308)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7.013-¶ 7.017.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본자산을 의미한다. 이에는 사업용 자산(business asset)이나, 재고가 아닌 건물, 임대자산, 기계장치 및 금융상품 등 자본투자자산(Capital investments)이 포함된다. 재고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익은 자본이 아닌 소득에 속한다. 적격 자본자산(Eligible Capital property)의 손익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므로 적격 자본자산은 자본자산이 아니다.

2) 자본손익의 계산

자본소득 또는 손실(Capital gain or loss)은 해당 자산의 처분대가(Proceeds of disposition)에서 조정 장부가액(the Adjusted Cost Base) 및 처분비용(Expenses of the disposition)을 더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의미한다. 자본손실은 위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된 음수를 의미하지만,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처분에 기한 자본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총가치 감소분만이 자본비용공제를 통하여 공제될 뿐이다.³⁰⁹⁾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종단손실(terminal loss)을 인식하거나 감가상각액을 환입(recapture)하여 소득으로 인식한다.

3) 자본소득과세에 대한 특별규정들

가) 개인용 자산의 경우

개인용 자산(PUP)의 경우 처분 시 전형적으로 자본손실이 발생한다.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PUP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원가는 조정장부가액과 \$1000 중 큰 금액이고 처분대가 역시 처분대와 \$1000 중 큰 금액으로 한다.³¹⁰⁾ PUP에 해당하고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개인용 자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인식되었던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인식할 수 있다.³¹¹⁾

309) ITA: 39(1)(b)(i).

310) ITA: 46(1).

311) ITA: 50(2).

나) 열거된 동산의 경우

열거된 동산(LPP)은 개인용 자산의 일부이므로 개인용 자산에 적용되는 규칙들이 열거된 동산에도 적용되나, LPP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LPP 자본소득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다. 또한 미사용 LPP 자본손실은 3년 소급공제되고 7년 이월공제되는바, 이 경우에도 해당 손실은 LPP 자본소득에 대하여서만 공제될 수 있다. 다른 모든 이월공제는 Division C에 규정되어 있으나 위 이월공제규정은 Division B에 규정되어 있고 공제가능 자본손실(allowable Capital loss) 금액이 아닌 자본손실금액 전액을 대상으로 적용된다.³¹²⁾

다) 주된 거주지 공제(Principle Residence Exemption)의 경우

주된 거주지에 대하여서도 과세대상 자본소득이 발생하나, 납세의무자가 특정 연도에 대하여 자산의 주거지를 주된 주거지³¹³⁾로 지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해당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과세대상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³¹⁴⁾ 주된 주거지의 처분 또는 간주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본소득 중 공제되는 부분은 다음 공식을 통하여 결정된다.³¹⁵⁾ $[(1 + \text{지정된 연도의 수}) / \text{보유연도}] \times \text{소득}$. 주된 거주지의 사용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대하여서는 특별규정이 적용된다.³¹⁶⁾

라) 스톡옵션에 따라 취득한 주식 처분의 경우

스톡옵션 혜택 규칙(stock options benefit rules)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이미 보유한 다른 증권과 동일한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납세의무자는 개별 증권들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증권들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

첫째, 지정된 증권들은 법이 인정하는 종업원 스톡옵션에 따라 취득한 것일 것

312)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7,220.

313) ITA: 54.

314)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7,230.

315) ITA: 40(2) (b).

316)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7,240.

- 둘째,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증권들을 취득한 지 30일 이내에 처분할 것
- 셋째, 취득 후 처분하기까지의 기간 중 동일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지 않을 것
- 넷째, 납세의무자가 처분이 발생한 연도의 신고서상 지정을 했을 것
- 다섯째, 납세의무자는 다른 증권의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지정을 하지 않았을 것

위 특별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정 증권의 처분대가에서 공제되는 조정취득원가(ACB)에 ‘해당 증권의 취득 시 공정 시장가치에서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더한다. 다만 CCPC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증권을 처분하는 연도로 혜택의 인식을 이연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2010년 3월 4일자로 폐지되었다.³¹⁷⁾

마) 특정 자산의 취득원가

현물배당 또는 복권당첨품(lottery prizes)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공정 시장가치가 취득원가이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상 액면자본금을 의미하는 불입자본금을 취득원가로 한다.³¹⁸⁾

바) 가상손실(Superficial Losses)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 말 현재 미실현 자본손실이 발생한 증권들을 보유한 경우에 당해 연도에 실현된 자본소득과 상계하기 위하여 해당 증권들을 매각한 후에 동일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증권들을 거의 즉시 재매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납세의무자는 서류상 손실은 실현된 손실로 전환하되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권들은 여전히 보유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위 처분 당시의 손실은 부인되고 해당 금액은 대체하여 취득한 증권들의 장부가액에 더하여진다.³¹⁹⁾

317) Id., at ¶ 7,295-¶ 7,306.

318) Id., at ¶ 7,310.

319) Id., at ¶ 7,330.

사) RRSP에 대한 자산의 이전

자산을 RRSP에 의하여 지배되고 수익자가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배우자인 신탁에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은 '0'으로 간주된다.³²⁰⁾

아) 자본자산인 옵션에 대한 과세

자본자산인 옵션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다.³²¹⁾

<표 2-1-2> 옵션에 대한 세법상 처리방식

사 건 (Event)	콜옵션(Call Option)		풋옵션(Put Option)	
	옵션매도인	옵션매수인	옵션매도인	옵션매수인
옵션 부여시점	• 옵션의 매각대가를 자본소득에 포함함	• 옵션의 매수대금을 옵션의 취득가액의 함	• 옵션의 매각대가를 자본소득에 포함함	• 옵션의 매수대금을 옵션의 취득가액의 함
옵션 행사시점	• 기초자산의 매각 대금에 위 옵션의 매각대금을 가산함 • 필요한 경우 옵션 부여시점의 자본소득에 대하여 경정청구함	• 옵션의 매각대금을 기초자산의 취득 가액에 가산함	• 기초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옵션 매각대금을 공제함 • 필요한 경우 옵션 부여시점의 자본소득에 대하여 경정청구함	• 기초자산의 매각 대금으로부터 옵션의 매각대금을 공제함
옵션 소멸시점	• 세법상 영향 없음	• 옵션 매수대금은 자본손실로 실현됨	• 세법상 영향 없음	• 옵션 매수대금은 자본손실로 실현됨

자) 전환자산(Convertible Properties)

납세의무자가 전환증권의 전환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교환은 자산의 처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³²²⁾ 취득한 주식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취득 원가는 전환 직전의 전환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이와 같은 과세이연 혜택을 누리기

320) ITA: 40(2) (g) (iv).

321)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7,356.

322) ITA: 51.

위하여서는 납세의무자는 주식 이외의 현금 등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³²³⁾

차) 소규모 투자의 과세이연 특례

개인은 특정 소규모 투자와 관련하여 자본소득의 인식을 이연시킬 수 있다. 과세이연 특례를 얻기 위하여서는 소규모 투자의 매각대금을 다른 소규모 투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³²⁴⁾ 구투자에 대하여 이연된 금액만큼 신규 투자에 대한 취득가액을 감소시킨다.³²⁵⁾

카) 자본자산으로 간주되는 특정 주식

적극적 사업에 사용하던 모든 또는 거의 모든 자산을 법인에 처분하는 경우에 그 대가로 수령한 주식은 현물출자한 자에 대하여서는 자본자산에 해당한다.³²⁶⁾ 즉,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들을 매각할 경우 그 손익은 자본소득 또는 자본손실로 취급된다.

4) 납세의무자의 사망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본소득을 인식할지 여부는 수익자의 지위 및 이전된 자산의 유형에 의존하여 결정된다. 사망은 납세의무자에게 발생한 미실현소득을 과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는 그 사망일에 공정 시장가치로 모든 자본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된다.³²⁷⁾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이전된 비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서는 생존 배우자 사이의 이전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칙들이 적용된다. 피상속인은 해당 자산을 그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생존 배우자 또는 보통법상 파트너에게 처분한 것으로

323)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7,360.

324) ITA: 44.1(2).

325)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7,370.

326) ITA: 54.2.

327) ITA: 70(5)(a).

간주된다. 따라서 상속재산(estate)이 사망 시에 적용되는 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하지 않거나 생존 배우자 또는 보통법상 파트너가 해당 자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자본소득 또는 자본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³²⁸⁾

감가상각자산이 생존 배우자 또는 보통법상 파트너가 아닌 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은 사망일에 공정 시장가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공정 시장가치가 장부상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취득원가는 사망인의 장부상 취득원가로 정하여지고 그 초과액은 자본비용공제(CCA)한 것으로 본다.³²⁹⁾ 그 결과 양수인의 미감가상각 취득원가(undepreciated Capital cost: UCC)는 공정 시장가치이다.³³⁰⁾ 감가상각자산을 생존 배우자 또는 보통법상 파트너가 취득하고 과세이연 특례를 배제할 것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대가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배분된 UCC로 한다.³³¹⁾

5) 캐나다 출국 및 입국의 경우

캐나다 거주자가 되거나 거주자에서 벗어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들이 캐나다 연방소득세법상에 있다. 납세의무자가 캐나다 거주자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그의 모든 자본자산은 공정 시장가치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된다.³³²⁾

아. 기타 소득

1) 개관

기타 소득에는 ① 퇴직수당(Retiring Allowances), ② 사망혜택(Death Benefits)

328) ITA: 70(6), 70(6.2), 73; IT-305R4.

329) ITA: 70(5) (a).

330)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7,510.

331) ITA: 70(6.2).

332) ITA: 128.1.

과 적격장례약정(Eligible Funeral Arrangements), ③ 고용보험혜택(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④ 정부지원프로그램에 따른 혜택(Benefits under Government Assistance Programs), ⑤ 위자료 및 생활유지 지급금(Alimony or Maintenance Payments), 연금계약 지급금(Annuity Payments), 소득 평준화를 위한 연금계약(Income-Averaging Annuity Contract) 관련 수령금원, ⑥ 주택구입플랜(Home Buyers' Plan)에 따른 수령금원, ⑦ 생명보험계약(Life Insurance Policies)에 따른 수령금원, ⑧ 법정 비용 보상금(Award of Legal Costs), ⑨ 장학금, 연구비, 학비보조금, 상금 및 과학지원금(Scholarships, Fellowships, Bursaries, Prizes, and Research Grants) 및 예술가지원금, ⑩ 등록교육저축플랜 지급금(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Payments) 및 등록퇴직소득기금 지급금(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Payments), ⑪ 사회보장지급금, ⑫ 가정 난방 절약비 또는 에너지전환 지원금(Home Insulation or Energy Conversion Grants), ⑬ 근로자 보상금(Workers' Compensation) 및 개인상해 보상금(Income from Personal-Injury Awards), ⑭ 연금혜택 등, ⑮ 미국 사회보장 지급금, 봉급이연약정 및 퇴직보상약정에 따른 수령금원, 간접적 지급금원(Indirect Payments), 소득수령 권한의 이전대가, 특수관계자들 사이의 대여금, 잡소득 수령금원(Miscellaneous Income Receipts) 등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의 유형에 해당된다.³³³⁾

이하에서는 기타 소득에 포함되는 유형들 중 주요한 일부 항목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퇴직수당 및 퇴직보상 약정 지급금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퇴직수당에 기하거나 퇴직수당을 대신하여 또는 퇴직수당지급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종업원혜택플랜에 기하여 또는 종업원혜택플랜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제외한다)은 소득에 포함된다.'³³⁴⁾

333) Canadian Master Tax Guide, at ¶ 2,145-¶ 2,290.

334) ITA: 56(1)(a).

퇴직보상약정 지급금(Retirement compensation arrangement payments)은 납세의무자의 직무 또는 고용관계(taxpayer's office or employment)에 의하여 수령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범위 이내라면, RCA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동안에 수령한 금원은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³³⁵⁾

3) 사망혜택

납세의무자가 사망혜택으로서의 법정 조건을 충족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포함되어 계산된다.³³⁶⁾ 해당 수익은 근로자의 사망 당시 또는 사망 이후에 받은 금액으로 구성되며, 특정 경우에는 비과세된다.³³⁷⁾

납세의무자가 해당 수익금을 받은 유일한 사람으로서, 근로자의 생존 배우자(the surviving spouse)이거나 보통법상 파트너(common-law partner)인 경우에는 1만 캐나다달러를 초과한 금액만이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만약 수령한 혜택이 1만 캐나다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만 공제규정이 적용된다.

사망혜택의 수령자가 생존 배우자 또는 보통법상 파트너가 아닌 경우에는 1만 캐나다달러가 생존 배우자 또는 보통법상 파트너가 수령한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사망혜택이 다년간에 걸쳐서 지급되고 지급 첫 해에 그 지급액이 공제한도에 달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차액은 공제한도가 남아 있는 한도에서 다음 연도의 지급분에 활용할 수 있다.

4) 위자료 및 생활유지비(Alimony or Maintenance Payments)

기존에는 위자료 및 생활유지비에 대하여 수령자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으로서 파악되었기 때문에 위자료 및 생활유지비를 지급하는 자는 해당 금액

335) ITA: 56(1)(x).

336) ITA: 56(1)(a)(iii)

337) ITA: 248(1)

을 비용으로서 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 주로 배우자 또는 보통법상 배우자를 위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위 원칙이 유지되나 자녀 생활유지비로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과세소득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 역시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서 공제할 수 없다.³³⁸⁾

5) 연금계약 지급금(Annuity Payments) 등

연금계약 지급금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포함되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소득에 포함할 것으로 규정된 금액과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규칙이 적용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연금계약 지급금은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든 미달하든에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계약, 유언, 신탁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모든 금액을 의미한다.³³⁹⁾

연금평준화 연금계약을 포기, 취소, 상환, 매각 등 처분함으로 인하여 수령한 대가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포함된다. 위 금액에는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 역시 포함된다.³⁴⁰⁾

RRSPs, DPSPs, RRIFs 또는 보충적 실업혜택플랜(a supplement unemployment plan)에 기하여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소득에 포함된다.³⁴¹⁾

6) 장학금, 연구비, 학비보조금, 상금 및 과학지원금(Scholarships, Fellowships, Bursaries, Prizes, and Research Grants)

장학금, 연구비, 학비보조금, 상금 및 과학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소득으로 포함된다. 예술가 지원금(Artists' Grants)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나, 만약 예술가가 사업으로서 또는 고용에 기하여 받은 금액에

338) ITA: 56(1)(b), 60(b).

339) ITA: 248(1).

340) ITA: 56(1)(e), (f).

341) ITA: 56(1)(g), (h).

대해서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취급된다.³⁴²⁾

7) 사회보장지급금(Social Assistance Payments)

사회보장지급금은 일반적으로 보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 또는 보통법상 파트너의 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한다. 소득에 포함된 특정 사회보장지급금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제된다. 이러한 과정은 해당 지급금이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³⁴³⁾

4. 비과세소득

가. 개요

통상 비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소득세법이 소득에서 직접 제외하는 많은 항목이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는 소득에 포함되나 특정 원천에 기인하는 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해당 금액을 소득에 포함시키나 Division E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넷째,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

다섯째, 특정 납세의무자가 가득한 소득을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첫째 유형 및 둘째 유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는 여기서 다루기로 한다. 다만 셋째 유형 및 넷째 유형에 해당하는 예는 이하 종합소득의 공제부분에서, 다섯째 유형은 자선단체 및 비영리법인이 가득한 소득을 비과세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바, 여

342) Canadian Master Tax Guide, at ¶ 2,210 및 ¶ 2,213.

343) Id., at ¶ 2,230.

기서 '비과세단체에 대한 소득'이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살펴본다. 또한 비과세 이자소득 유형에 속하는 비과세저축계좌(Tax-Free Savings Account: TFSA)에 대하여서도 별도의 항목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나. 비과세 근로소득

- 특수 작업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숙박 기타 거주비용³⁴⁴⁾
- 근로자 수익 공유 계획에 따라 발생한 특정 지급금액³⁴⁵⁾
- 개인 건강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에 대한 수익³⁴⁶⁾
- 지역 보상금(Provincial indemnities)³⁴⁷⁾
- 공무원에 대한 봉급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분의 비용 보상³⁴⁸⁾
-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등 교육프로그램 및 2009년 파트타임 등록은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2006년 이후 초등 및 중등학교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의 장학금, 연구장려금³⁴⁹⁾

다. 비과세 이자·배당소득

- 1949년 4월 1일 이전에 뉴펀들랜드에서 발행한 전쟁구호채권 증서 기타 유사 기타 증서에 따라 수령한 금액³⁵⁰⁾
- 파산한 보험업자의 단체 재해보험 수익³⁵¹⁾

344) ITA: 5(2), 6(6), 6(7)

345) ITA: 81(1)(k), 144

346) ITA: 6(1)(a)

347) ITA: 81(1)(q)

348) ITA: 81(3)(b)

349) ITA: 56(3)

350) ITA: 81(1)(b)

351) ITA: 6(17)

- 소비재 또는 소비재 용역에 대한 후원 배당금³⁵²⁾
- 적격교육저축 계획 지급금의 환급분 금액³⁵³⁾
- 보통주 주주에 대해서 법인이 지급한 신주인수권³⁵⁴⁾

라. 비과세 연금소득

- 할리팩스 재해보상 연금(disaster pension)³⁵⁵⁾
- 참전 연금³⁵⁶⁾
- 비과세되는 연금계획에 따라 발생한 연금 수익분³⁵⁷⁾
- 캐나다 기마경찰대(R.C.M.P.)의 연금 또는 보상금³⁵⁸⁾
- 상호 비과세가 있는 경우의 우방국 공무원 연금³⁵⁹⁾

마. 기타의 비과세소득

- 캐나다 하원에서 입법을 통해 과세를 면제한 금액³⁶⁰⁾
- 탐광자, 탐광자의 사용자 또는 탐광 프로젝트의 재정 부담자가 수령한 주식 또는 광산 자산으로부터 산출되어 받은 금액으로서, 매입권, 공모기간 동안 또는 공모 기간 중에 수령하지 않았을 것³⁶¹⁾
- 1940년 6월 25일 이전에 정부 기타 유사 공공단체가 발행한 정기 지급금액³⁶²⁾

352) ITA: 135(7)

353) ITA: 81(1)(o)

354) ITA: 15(1)(c)

355) ITA: 81(1)(f)

356) ITA: 81(1)(d)

357) ITA: 57(3)

358) ITA: 81(1)(i)

359) ITA: 81(1)(e)

360) ITA: 81(1)(a)

361) ITA: 81(1)(l)

362) ITA: 58

- 특수 조건에서의 건설 기타 유사 직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숙박 기타 거주 비용 및 교통비용 금액³⁶³⁾
- 독일 보상 지급금³⁶⁴⁾
- 캐나다 총독실에서 지급하는 소득³⁶⁵⁾
- 개인의 거주지국에서 상호 비과세를 인정하는 경우, 함선이나 항공기의 운항으로 발생하는 비거주자의 소득³⁶⁶⁾
- 하원의원에 대한 비용 지급금³⁶⁷⁾
- 선출직 지방공무원의 비용 지급금³⁶⁸⁾

바. 비과세저축계좌(Tax-Free Savings Account: TFSA)

비과세저축계좌는 캐나다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18세 이상인 자가 이자, 배당 또는 자본소득을 포함하는 투자소득을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서 가득할 수 있게 한다. TFSA에 대한 출연금은 공제할 수 없는 대신에 보유기간 중 또는 인출 시점에 과세하지 않는다.³⁶⁹⁾ TFSA는 등록된 퇴직저축플랜과 같은 투자안을 보유할 수 있으나 보유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실체에 투자할 수는 없다.³⁷⁰⁾ TFSA에 투자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에 대한 이자는 공제할 수 없다.³⁷¹⁾ TFSA로 인하여 가득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의 귀속원칙(attribution rules)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인은 배우자(spouse) 또는 보통법상 배우자(common-law partner)의 출연금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다.³⁷²⁾ 납세의무자가 사망하면 비과세 혜택이 소멸하나 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363) ITA: 6(6)

364) ITA: 81(1)(g)

365) ITA: 81(1)(n)

366) ITA: 81(1)(c)

367) ITA: 81(2)

368) ITA: 81(3)

369) ITA: 146.2.

370)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 9,220.

371) ITA: 18(11).

372) ITA: 74.5(12).

그렇지 않다. 또한 대체안으로서 사망한 배우자의 TFSA에 포함된 자산들을 배우자의 TFSA로 이전시킬 수도 있다.³⁷³⁾

5. 각종 공제제도

가. 비용공제 및 기부금공제

1) 개요

캐나다 연방소득세법은 별도로 비용공제가 가능한 부분들을 정해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고용관계에 따른 비용공제 사항과 기타 공제 사항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근로소득과 관련하여서는 납세의무자는 법에서 별도로 정해둔 바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것도 근로 등 고용관계에 따른 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고용관계에 따른 비용공제 사항으로는 ① 영업사원의 비용공제(salespersons' expenses), ② 여행경비 및 식사비(travelling expenses and meals), ③ 기타 비용 및 회비(other expenses and membership dues), ④ 자동차 및 항공기 비용(automobile and aircraft expense), ⑤ 법률비용(legal expenses), ⑥ 성직자 거주비(clergy residence), ⑦ 교사의 교환기금 불입액(exchange fund contribution of teachers), ⑧ 고용상의 특별 조건에 따른 비용 공제(철도회사, 산림회사, 운송회사 및 트럭운전사의 식사비용), ⑨ 고용보험료 및 등록연금플랜에 대한 불입금(contributions to registered pension plans), ⑩ 봉급 반환금(salary reimbursement) 및 사용자의 장애보상 추가지불금에 대한 반환금(top-up disability reimbursements), ⑪ 박탈된 봉급이연금액, ⑫ 해외고용공제, ⑬ 악기 관련 공제, ⑭ 예술가 비용공제, ⑮ 견습공 및 장인 기구공제, 재택근무 비용(home office expenses),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등이 있다.³⁷⁴⁾

373) ITA: 207.01(2).

374) Canadian Master Tax Guide, at ¶ 2,300-¶ 2,391.

사업비용공제 사항들로는 ① 수익을 가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지급 이자, ③ 담보물로 제공된 생명보험의 보험료, ④ 채권 할인액(discount on debt obligations), ⑤ 주식발행비 및 차입 비용, ⑥ 사용자의 등록연금플랜 불입금(employer's contribution to registered pension plan), ⑦ 이연수익공유플랜에 대한 사용자의 불입금, ⑧ 리스해약비용(cancellation of lease), ⑨ 조경 비용(landscaping of grounds), ⑩ 사용자의 등록연금플랜 불입금(employer's contribution to registered pension plan), ⑪ 권리 등 등록비용(expenses of representation), ⑫ 부지조사비용(investigation of site), ⑬ 전기 등 인입비용(utilities service connection), ⑭ 회의비(convention expenses) 등이 있다.³⁷⁵⁾

자산소득에 대한 공제 관련 사항으로는 ① 공지의 유지비용(carrying charges: 이자 및 재산세 등)의 공제 제한, ② 건물신축 및 토지소유권 취득에 관련 부대비용(soft costs)의 자본화 규정, ③ 임대자산에 대한 손실공제 제한, ④ 감가상각 등 관련 조세회피방지 규정, ⑤ 지급이자비용의 공제 및 불공제 관련 개정안 등이 있다.³⁷⁶⁾

기타 공제 사항들로는 ① 이사비용, ② 자녀양육비용(child care expenses), ③ 장애인부조비용 및 수행간호비용(disability support and attendant care expenses), ④ 정기지급금 중 자본요소(Capital element of annuity payments), ⑤ 유산상속세에 대한 이자(interest on death duties), ⑥ 캐나다 연방 또는 퀘벡주 연금플랜 불입금(Canada or Quebec pension plan contributions), ⑦ 퀘벡 부모보험-자영업자 보험료(Quebec parental insurance plan: self-employed premium), ⑧ RRSP 또는 RRIF에 따른 보험료 또는 지급금, ⑨ 연금혜택의 이전(transfer of superannuation benefits) ⑩ 퇴직수당의 이전(transfer of retiring allowances), ⑪ 연금 또는 혜택의 과다납부금(overpayment), ⑫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비용(expenses of objection or appeal) 등이 있다.³⁷⁷⁾ 위 기타 비용공제 항목들은 Division B의 subdivision e 공제항목으로서 별도로 살펴본다.

375) ②~⑬까지는 제한적으로 공제가 허용되는 사항이다.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4,200-¶ 4,325.

376) Id., at ¶ 6,210-¶ 6,290.

377) Canadian Master Tax Guide, at ¶ 2400-¶ 2487.

이하에서는 고용관계에 따른 비용공제의 주요 사항과 사업비용의 공제에 대하여 추가하여 살펴본다.

2) 고용관계에 따른 비용공제의 주요 사항

가) 비용공제 개관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비용항목을 조문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⁷⁸⁾

〈표 2-1-3〉 근로소득 비용공제항목

조문	공제항목
8(1)(b)	근로자의 법률비용
8(1)(c)	성직자 거주비용
8(1)(d)	교사의 교환기금 불입금
8(1)(f)	판매비용
8(1)(g)	운송근로자의 비용
8(1)(h)	교통비
8(1)(h.1)	자동차비용
8(1)(i)	회비 및 기타 비용
8(1)(j)	자동차 및 비행기비용
8(1)(l.1)	CPP 불입금 및 UIA 보험료
8(1)(m)	근로자의 등록연금플랜 불입금
8(1)(m.2)	근로자 RCA 불입금
8(1)(n)	봉급 반환금
8(1)(o)	박탈된 봉급이연금액
8(1)(p)	약기 비용
8(1)(q)	예술가의 근로비용
8(1)(s)	공제-장인의 도구비용

378)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3,300.

〈표 2-1-3〉의 계속

조문	공제항목
8(2)	일반적 제한조항
8(4)	식비
8(6.1)	장인의 적격도구
8(7)	도구비용
8(13)	재택 작업장

캐나다 연방소득세법(ITA) Subsection 8(1)에서는 직무(office) 또는 고용(employment)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장할 수 있는 공제항목들을 열거한다. 특히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들을 Section 8에 규정된 항목들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은 비용공제에 대한 일반적 제한을 규정한다. 즉, 공제금액은 각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이어야 한다.³⁷⁹⁾ 여기에서 각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함은 특정 상황에서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고, 다른 요소들보다 산업상 평균 또는 기준에 수용되었던 평균 등과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될 수 있다.³⁸⁰⁾ 다른 일반적 제한은 형사법상 특정 조항에 따른 범죄행위와 관련된 비용의 공제는 부인된다는 것이다.³⁸¹⁾

나) 판매 및 협상 업무자의 비용(Sales/Negotiating Person's Expenses)

판매 및 협상 업무자의 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³⁸²⁾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커미션 수입(Commission income)을 받아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와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종종 여행, 식사, 수익 창출을 위한 홍보자료에 대해 비용을 소비할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이 커미션 수입을 얻고자 지출되는 비용의 공제와 관련된 소득세법상 쟁

379) ITA: 67

380)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3,300.

381) ITA: 67.5(1)

382)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3,310.

점들이 발생한다. 자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계약을 협상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근로 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들 또한 공제대상이 된다.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것들과는 달리, 이러한 비용의 본질 또는 유형은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자본적 성질의 비용의 경우에는 다르다. 물론 이러한 비용들에 대하여서도 일반적인 제한과 많은 특정 제한 조건 및/또는 예외사항들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요트, 캠프, 별장, 및 골프 코스의 사용료, 사교클럽의 회원권비와 같은 비용 지출은 공제되지 않는다.

또한 고용주가 제공한 자동차의 개인적인 사용에 대해서 고용주에게 상환한 비용은 공제대상이 되지 못하는데, 이러한 비용은 근로소득에 포함된 조세혜택을 감소시키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로자의 커미션 수입, 또는 기타 판매량 또는 협상된 계약의 양에 따라 고정된 금액을 한도로 제한된다. 이와 같은 청구 비용은 계산서 또는 기타 기록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비용으로서 공제받기 위하여서는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 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통상 고용주의 사업장소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근로관계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판매 또는 계약의 양에 따라 보수가 정해져야만 한다.
- 비과세 여행공제(a non-taxable travel allowance)를 받을 수 없어야 하고, 그 여행수당에는 자동차비용(an automobile allowance)이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여행비용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판매 또는 협상 업무를 하는 사람은 해당 비용을 자신의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 근로자의 자동차비용이 아닌 여행비용(Employee's Travelling Expenses other than Motor Vehicle Expenses)

근로자의 자동차비용이 아닌 기타 여행비용의 공제에 대한 개관은 다음과 같다.³⁸³⁾

383) Id. at ¶¶ 3,320-3,340.

자산의 판매 또는 계약 협상 업무에 관련되지 않는 근로자의 여행비용은 다음의 두 가지 조항 규정 내용 중 하나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 ITA 8(1)(h) : 자동차비용이 아닌 여행비용(Travelling expenses other than motor vehicle expenses)
- ITA 8(1)(h.1) : 자동차비용 (Motor vehicle expenses)

공제받을 수 있는 여행비용은 근로자인가 또는 고용주인가에 따라 제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해당 비용의 공제를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첫 번째 조건은, 근로자는 자신의 고용주의 사업장소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통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캐나다 연방 국세청(CRA)의 해석은 ‘통상(Ordinarily)’을 상시적으로(habitually) 또는 관례상(customarily)이라는 의미로 본다. 그러나 이 경우 여행은 어느 정도 정기적(regularity)이어야 한다.

두 번째, 근로자가 여행비용을 지출한 것은 계약의 일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그 계약은 문서 또는 구두 형식일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세 번째, 근로자는 여행비용에 대하여 비과세 공제(a tax-exempt allowance for travelling expenses)를 받은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합리적인 금액보다 적거나 많은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해당 금액을 소득에 산입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비용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에서의 모든 사실관계에 따른다.

자동차를 근로관계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되는 공제는 자동차비용을 공제받는 것을 배제한다. 그러나 보다 일반적인 여행비용의 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라) 여행 및 식사비용의 공제 제한

캐나다 연방소득세법 Paragraph 8(1)(f) 및 (h)는 고용주가 여행 중 지출한 식사비용을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다. 해당 비용은 단지 납세의무자가 일상적으로 근무하는 곳으로 보고되는 장소에서 12시간 이상 여행할 때, 식사한 경우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 있다. 식사비용과 유흥비에 대한 공제는 ‘지출된 또는 지출할 금

액'과 합리적인 금액 중 적은 금액의 50%를 한도로 제한된다. 식사비용 공제 제한에 관한 여러 가지 예외사항은 국세청 해석집(Interpretation Bulletin)에 열거되어 있다.³⁸⁴⁾

마) 파트타임 근로자의 여행비용

일반적 원칙상 개인적인 여행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개인이 파트타임 근로와 관련된 여행비용을 받거나 또는 환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Subdivision g의 '소득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amounts not included in income)으로 비과세되지 않은 이상, 소득으로 본다.³⁸⁵⁾ 이와 같은 여행비용이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 충족하여야 할 내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³⁸⁶⁾

(a)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다른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b) 수령한 금액은 합리적인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파트타임 근로에만 관계된 여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여행비용이어야만 하고, 단지 파트타임 근로기간 동안의 여행에 기하여 발생한 비용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c) 파트타임 근로장소는 근로자의 일상적인 거주장소, 주요 사업 또는 근로장소 모두로부터 8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위에서의 (a) 조건은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수 또는 교원으로 파트타임 근무를 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 벗어나 있는 대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이 파트타임 강사들을 모집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³⁸⁷⁾

바) 회비 기타 비용(Dues and Other Expenses)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용들 또한 공제대상이 된다.³⁸⁸⁾

384)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3,335.

385) Id., at ¶ 3,340.

386) ITA: 81(3.1)

387) ITA: 118.6(1).

388) ITA: 8(1) (i).

- 매년 법에 따라 인정된 전문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전문가 단체 회비
- 사무실 임대료 또는 보조자에 대한 급료
- 소모품에 지출된 비용
- 노조단체(Union) 연간 회비

위의 공제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지출하였거나, 고용주가 대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소득에 포함시켜야만 한다.³⁸⁹⁾

위와 같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제한이 있다.

(a) 첫째, 회비 등을 부과하는 단체의 일반 운영비용에 직접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회비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금지되는 제한이 부과된다.³⁹⁰⁾

(b) 둘째, 사무실 임대료 공제, 보조자에 대한 급료 공제, 소모품 비용에 대한 공제 금액과 관련된 근로계약 요건이 부과된다.³⁹¹⁾

(c) 셋째, Section 8의 서두(preamble)는 해당 원천에 대해 전적으로 적용되는 비용에 대하여서만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자면, 중·고등교육기관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회계사는 자신의 회계사협회 회비를 공제받을 수 없지만, 대신에 교원협회 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³⁹²⁾

사) 자가 작업장

근로자는 자가 작업장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다.³⁹³⁾

이 제한은 국세청 해석집상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자영업자(self-employed individuals)에 적용되는 규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자가 작업장에 관련된 판매비용, 임대료, 소모품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적격을 가진

389)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3,342.

390) ITA: 8(5).

391) ITA: 8(1) (i) (ii) – (iii).

392) ITA: 8(1) (i) (i), 8(1) (i) (iv).

393)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3,345.

사람들에 한하여 적용된다. 비용 공제는 자가 작업장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a) 자가 작업장이 근로에 따른 업무를 주로(근무기간 중 50% 초과) 수행하는 장소이거나,

(b) (i) 해당 기간 동안 근로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ii) 근로업무를 수행하는 일상적 과정에서 고객 또는 타인들을 만나는 정기적이면서 지속적인 근거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자가 작업장에서 근로업무의 50%를 초과하여 수행하는 한, 즉 위의 (a)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b) 조건의 충족 여부는 무시될 수 있다. (a)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b)(i)의 배타적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여기에서 ‘배타적으로’(exclusively)의 뜻은 연방소득세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Merriam-Webster Online에 따르면 이 문맥에서 사용되는 ‘exclusive’의 의미는 ‘홀로(single), 단독의(sole)…전체(whole), 나누어질 수 없는(undivided)’에 해당하므로, 이는 상당히 엄격한 검증 기준(a much more onerous test)에 해당한다.

자가 작업장에 관련된 소모품 비용에는 주택의 유지 및 관리에 쓰이는 품목에 대한 비용, 즉 연료, 전기, 전구, 청소 도구 및 기타 수리도구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개인이 커미션 소득을 버는 경우에는 재산세(property taxes) 및 개인 소유 주택에 소요되는 보험료 등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비용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작업장과 주택의 개인적인 공간에 배분되어야만 한다.³⁹⁴⁾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매입하면서 차입한 금액에 관한 이자비용을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³⁹⁵⁾

아) 근로자의 법률 비용 (Legal expenses)

근로자가 부담한 특정 법률서비스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비용은 고

394) ITA: 8(1)(f)

395) Id., at ¶ 3,345.

용주 또는 전(前)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채권(a right to remuneration)을 확인하거나 또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요된 것으로 제한된다.³⁹⁶⁾ 다만,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 아니라고 할 지라도 그 수령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와 관련된 법률 서비스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다.³⁹⁷⁾

자) 성직자의 거주지 비용(Clergy's residence)

교회를 담당하는 자, 교회에 소속된 목사 또는 수도회(religious order)나 교파(denomination)의 관리 의무를 전업으로 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성직자는 거주지 비용에 관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제받을 자격이 있다.³⁹⁸⁾

공제 금액은 해당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거주지가 근로관계에 따라 제공된 것인지, 해당 개인이 임차한 것인지 또는 해당 개인이 소유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해당 거주지가 근로에 따라 제공된 경우, 공제금액은 거주지 제공에 따른 이익의 가치와 동등한 금액이 되며, 소득에 이미 산입된 가액을 한도로 한다. 최대 공제금액은 성직자로서의 근로소득금액이다.

임차 또는 임차료 상당 가액에 대한 공제는 다음의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 '1,000×성직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개월 수(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보수의 $\frac{1}{3}$ ' 중 큰 금액
- 공정 임차가액

위 공제금액에서 근로 또는 사업소득 계산 시, 다른 근로 또는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거주지 비용으로 공제한 금액은 뺀다.

전체적으로 보아 해당 공제금액은 성직자의 해당 직무 또는 근로에 따른 성총 보수를 초과할 수 없다.

396) ITA: 8(1) (b).

397)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3,352.

398) Id., at ¶ 3,354.

차) 교사의 교환 자금 기금 불입금(Teacher's exchange fund)

캐나다 내 영연방교원협회(the Canadian Education Association for Commonwealth Teachers in Canada)가 설정한 기금에 교사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최대 \$250을 한도로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³⁹⁹⁾

카) 철도 근로자의 비용(Railway employees)

철도회사 근로자들의 식사비용[Subsection 67.1(1)에 따라 실제 비용의 50% 또는 특정 조건에서 합리적이라 볼 수 있는 비용을 한도로 제한] 및 숙박비용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된다.⁴⁰⁰⁾ (a) 납세의무자가 전신기사, 역 근무원, 또는 유지 및 보수 업무로 자신의 통상적인 거주지에서 벗어나 여행을 한 경우에 발생하는 철도회사 근로자들의 식사 및 숙박 비용일 것 또는 (b)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면서 실제로 배우자, 보통법상 파트너(common-law partner), 혈연, 결혼, 입양 등 납세자와 관련 있는 피부양자들을 부양하는 장소가 있는 도시 또는 대도시 지역에서 떨어져 여행하는 경우로서 위 장소가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거주지로 매일 되돌아갈 수 없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할 것.⁴⁰¹⁾

타) 운송 근로자의 비용(Transport employees)

주요 사업이 승객, 화물, 또는 승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회사에 고용되고, 고용주의 사업장이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하여야 하는 도시 또는 대도시 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정기적인 여행을 하여야 하는 사람이 부담한 식사비용[Subsection 67.1(1)에 따라 실제 비용의 50% 또는 특정 조건에서 합리적이라 볼 수 있는 비용을 한도로 제한] 및 숙박비용은 다음과 같이 공제될 수 있다.⁴⁰²⁾ 캐나다 연방 국세청에서는 식사당 \$17 또는 일일 식사비용 \$51을 영수증 없이 공제금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형트럭 운전자(long-haul truck drivers)가 소비하는 식음료비용에

399) ITA: 8(1)(o).

400)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3,358.

401) ITA: 8(1)(e)

402)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3,360.

대한 공제분은 2008년 65%, 2009년 70%, 2010년에는 75%, 2010년 이후에는 80%로 확장되었다. 이 경우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파) 업무 보조자와 관련해서 부담한 CPP와 EI 보험료 (CPP and EI premiums payable in respect of an assistant)

업무 보조자 또는 대체자에 대해 근로자가 지급한 봉급은 지급하는 사람의 근로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봉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캐나다 연금계획(Canada Pension Plan; CPP) 불입금 또는 고용보험료(Employment Insurance; EI) 역시 지급하여야 한다. 업무보조자에 대해서 근로자가 CCP 또는 EI 보험료로서 부담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⁴⁰³⁾

하) 기타 비용

- 퇴직보상 약정(a retirement compensation arrangement)에 대한 불입금은 공제받을 수 있다.⁴⁰⁴⁾
- 직무 또는 고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지급한 급료 상환액(Salary reimbursements)은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고용주에게 상환한 장애보험금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⁴⁰⁵⁾
- 보수이연 계약(a salary deferral arrangement) 또는 이연이익공유 플랜(a deferred profit sharing plan)에 따라 종전에 소득에 포함되었던 금액이 이후 박탈되었다면(forfeited), 해당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⁴⁰⁶⁾
- 납세의무자가 음악가로서 고용되어 자신의 악기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 악기의 유지비, 보험료 및 악기 임대비 등 악기비용(Musical instrument costs)은 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위 공제에 더하여 해

403)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3,362.

404) ITA: 8(1) (m.2).

405) ITA: 8(1) (n), (n.1).

406) ITA: 8(1) (o), (o.1).

당 약기에 대해 자본비용공제(Capital Cost Allowance)를 받을 수 있다.⁴⁰⁷⁾

- 납세의무자가 예술활동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가득하는 행위와 관련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최대 공제 한도는 '\$1,000 과 자신의 예술활동에 따른 근로소득의 20% 중 적은 금액'이다. 공제한도는 paragraph 8(1)(p)의 약기비용공제와 paragraph 8(1)(j)의 자동차 및 비행기비용공제를 받은 만큼 줄어든다.⁴⁰⁸⁾
- 숙련기술자(tradesperson)로서 근로소득을 가득한 사람은 과세연도당 최대 \$500을 한도로 숙련기술자의 공구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⁴⁰⁹⁾ 적격공구에 한하여 위 공제받을 수 있는바, 적격 공구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정의되어 있다.⁴¹⁰⁾ 감가상각비용 또는 자본소득의 계산의 목적상 사용되는 해당 공구비용은 위 공제금액만큼 감액된다.⁴¹¹⁾

3) 사업비용 공제

가) 비용공제 개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서는 세법의 목적상 어느 비용의 공제가 부인되거나 제한되는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18조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용으로서 공제되지 않는 항목들에 대하여 규정한다.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비용들은 통상적으로 공제 가능하다.

첫째, 재무회계기준상 공제가능할 것

둘째,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이 아닐 것

셋째, 세법상 소득을 가득하기 위하여 발생하였을 것

넷째, 개인적 비용 또는 지출이 아닐 것

407) ITA: 8(1)(p).

408) ITA: 8(1)(q).

409) ITA: 8(1)(s).

410) ITA: 8(6.1).

411) ITA: 8(7).

다섯째, 관련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것⁴¹²⁾

Subsection 18에서 규정하는 비용 불공제 항목들(Disallowed Deductions)은 다음과 같다.⁴¹³⁾

〈표 2-1-4〉 사업소득상 비용 불공제 항목

소득세법 조문	비용 불공제 항목들	관련 조문
18(1) (a)	소득을 가득한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은 지출	67, 67.1
18(1) (b)	자본적 지출	20(1), 14(5) (b)
18(1) (c)	비과세소득(Exempt income)	
18(1) (e)	충당금(reserve)과 우발부채	
18(1) (f)	할인발행 지급분	
18(1) (h)	개인적 비용 또는 생활비	67.1
18(1) (i) - (k)	이연소득플랜 공제한도	
18(1) (l)	여가클럽회비	
18(1) (n)	정치적 기부금	127(3)
18(1) (r)	특정 자동차비용	ITR: 7306
18(1) (t)	법이 정하는 특정지급분	
18(2) - 18(8)	이자비용 공제한도	20(1) (c)
18(9)	선급비용	
18(12)	가정 내 작업장 공제한도	
18(13)	가상손실(superficial loss)	

위 각 항목들 중 subsection 18(1)(a)는 비용공제에 관한 일반적 기준(the general test of deductibility)에 관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라 비용공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412)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4,206.

413) Id.

해당 비용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⁴¹⁴⁾

(a) 소득을 가득하거나 창출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거나 해당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b) 납세의무자의 사업 또는 자산에 연계된 소득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수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ofit: REOP) 또는 사업방식에 의한 운영(Operating in a Businesslike Manner)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⁴¹⁵⁾

수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 또는 사업방식에 의한 운영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1) 활동이 수행된 방식

- (1) 지역사회(community)에 대하여 사업으로 유지되고 있는 활동
- (2) 사업방식으로 영위된 활동
- (3) 비교가능한 영업활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영위되는 활동
- (4) 성공하지 못하고 중단된 사업방식 및 새로 채택된 사업방식
- (5) 공식적인 장부 및 기록의 유지
- (6) 별도 은행 계좌의 유지
- (7) 부문별 이익 및 관련 비용을 결정하기 위한 장부기록 시스템이 있는지 여부
- (8) 상세한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기록 유지
- (9) 수익성 향상을 위한 영업방식의 변화 여부
- (10) 수행된 광고 또는 판촉행사의 수준
- (11) 개발 계획의 공식화, 준수 및 조정 여부
- (12) 수익을 창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영업규모

2) 개인적 쾌락 또는 여가의 성격에 관계된 요소들

- (1) 납세자가 해당 활동으로부터 개인적 쾌락을 얻는지 여부
- (2) 해당 시설이 실용적 목적을 갖는지 여부

414) ITA: 18(1) (a)

415)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4,237.

- (3) 활동 자체와는 별도로 사고 또는 여가적 기능을 갖도록 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
 - (4) 취미로서의 활동에 대한 오랜 관심(long-time interest)
 - (5) 개인적인 동기에 따라 제약되는 사업방식인지 여부
 - (6) 개인적 사용내역이 별도로 보고되는지 여부
- 3) 납세의무자 또는 그에 대한 자문가들의 전문성
- (1) 해당 활동에 대한 이전 경험
 - (2) 해당 활동개시 이전에 결정되는 잠재적 수익
 - (3) 해당 활동개시 이전에 요청되거나 준수된 자문의 내용
 - (4) 해당 활동개시 이후에 요청되거나 준수된 자문의 내용
 - (5) 납세의무자가 사업 관련 협회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 (6) 새롭거나 우위를 점하는 기술의 개발 여부
- 4) 소득 및 손실에 관한 실적
- (1) 지출에 대한 수입의 평균 비율
 - (2) 지출된 비용의 5% 미만을 수입한 연도의 비율
 - (3) 손실의 평균규모
 - (4) 손실이 감소하는 경향
 - (5) 활동이 수행된 연수
 - (6) 납세의무자가 지배할 수 없는 사정에 기한 손실
 - (7) 이익이 발생한 연도의 비율
 - (8) 총수입금액의 추세
- 5) 소요된 시간 및 노력
- (1) 유능하고 지식을 갖춘 관리자의 채용 여부
 - (2) 유능한 노동력의 채용 여부
 - (3) 납세의무자가 해당 활동에 투입한 평균 시간
 - (4) 납세의무자가 해당 활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 다른 사업에서 철수하였는지 여부
 - (5) 납세의무자가 물리적 노동을 하는지 여부
- 6) 납세의무자의 재정상태
- (1) 해당 활동에 대한 손실을 감안하기 이전 납세의무자의 평균 소득
 - (2) 순손실로부터 조세가 절감되는 정도
 - (3) 해당 활동 손실의 다른 소득에 대한 평균 비율
 - (4) 납세의무자가 사치스러운 생활수준을 유지하는지 여부
 - (5) 납세의무자의 다른 소득 대부분이 투자활동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 (6) 납세의무자의 기타 순자산의 범위
 - (7) 영업에 대한 투자된 자본금액

- 7) 일시적 수익 금액
- (1) 평균 이익의 평균 손실에 대한 비율
 - (2) 최대 수입 금액
 - (3) 순손실의 순자산에 대한 비율
- 8) 해당 사업활동의 매각 또는 중단
- (1) 수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서 매각되거나 중단된 활동
 - (2) 어떠한 이유로 매각되거나 중단된 활동
- 9) 다른 활동에 있어서의 납세의무자의 성공
- (1) 유사한 사업에서 성공한 경험의 정도
 - (2) 유사 활동에서의 손실발생 이력
- 10) 자산에 대하여 기대되는 가치상승
- (1) 납세의무자가 평가되는 자산에 대해 투자의 주요 원천인 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지 여부

나) 공제가능 비용의 공제한도

위 subsection 18(1)은 지출의 성격상 공제가 금지된 항목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 외에 공제가능한 비용 또는 지출의 공제한도를 정하기 위한 규정이 있다.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인 범위의 금액만이 공제가능하다.⁴¹⁶⁾ 공제한도의 제한이 있는 지출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된다.

- 음식, 음료 및 접대비(entertainment)⁴¹⁷⁾
- 교통수단의 구입을 위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⁴¹⁸⁾
- 교통수단의 임대비용⁴¹⁹⁾

다만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위 비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416) ITA: 67.

417) ITA: 67.1.

418) ITA: 67.2.

419) ITA: 67.3.

GST/HST가 공제되지 않는다.⁴²⁰⁾

그 밖에 다음과 같이 공제한도가 정하여진 항목들이 있다.

- 위법 지급액⁴²¹⁾
- 벌금 및 가산세(fines and penalties).⁴²²⁾ 부패 외국공직자법(the Corruption of Foreign Public Officials Act) 제3조 및 특정 형법규정들(제119조 내지 제125조, 제393조 및 제426조)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지출은 공제되지 않는다.⁴²³⁾

다) 특별공제 항목들(Deduction Specially Permitted)

특정 지출 또는 비용이 공제에 관하여 section 18 및 19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section 20에서 정하는 항목들은 예외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그 항목들 중 통상적인 발생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⁴²⁴⁾

420) ITA: 248(16).

421) ITA: 67.5.

422) ITA: 67.6.

423) ITA: 67.5(1).

424)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4,240.

〈표 2-1-5〉 사업소득에 대한 특별공제

소득세법 조문	특별 공제 항목들	관련 조문
20(1) (a)	자본비용공제(Capital Cost Allowance)	18(1) (b)
20(1) (b)	누적적격배당액	18(1) (b)
20(1) (c), (d)	이자비용	IT-533
20(1) (e)	주식발행비 또는 차입비용	18(1) (b)
20(1) (e.2)	담보로 제공된 생명보험료	18(1) (c)
20(1) (f)	사채할인발행액	
20(1) (l) - (p)	충당금(reserve)	18(1) (e)
20(1) (q)	사용자의 등록연금플랜 불입금	147.2
20(1) (y)	사용자의 이연이익공유플랜 불입금	147(8)
20(1) (z)	자산소유자의 리스계약비용	18(1) (q)
20(1) (aa)	조경비용	18(1) (b)
20(1) (cc)	권리 등 취득비용(expenses of representation)	18(1) (b)
20(1) (dd)	부지조사비용	18(1) (b)
20(1) (ee)	전기 등 인입비용	18(1) (b)
20(1) (qq), (rr)	장애인 관련 건물·장비의 개선비용	18(1) (b)
20(10)	회의참가비용	

4) 자본비용공제

자본비용공제 항목은 법이 허용하는 위 특별공제 항목에 해당하나 이하 별도로 구분하여 본다.

가) 일반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비용은 과세기간 중 수익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 범위에서 공제된다. 자본자산(Capital Property)은 대개 미래 상당기간에 걸쳐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한 과세기간 동안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소요된 실제 비용은 자산의

실제 취득원가(the actual cost)보다 적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법은 수익/비용 대응 원칙(the matching principle)에 따라 취득원가 모두를 공제하는 것을 부인한다. 재무회계 역시 일반적으로 순이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산의 감가상각 또는 감모상각을 반영한다. 세법은 재무회계상 감가상각방법을 자본비용공제제도(Capital Cost allowance System: CCA System)로 대체하여 적용한다.⁴²⁵⁾

나) 자본자산의 유형

캐나다에서 자본자산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⁴²⁶⁾

첫째, 비감가상각 자본자산(Non-depreciable Capital property)

둘째, 감가상각 자산(Depreciable property)

셋째, 적격 자본자산(Eligible Capital property)

비감가상각 자본자산(Non-depreciable Capital property)은 세법상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다. 이에는 ‘토지, 투자자산, 사적 용도의 자산 및 열거된 동산’과 같은 기타 자본자산과 미수채권(receivables)이 포함된다. 약간의 사적 용도의 자산을 제외하 나머지 자산은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가치가 줄어들거나 낡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자본비용공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격 자본자산(Eligible Capital property)에는 일반적으로 영업권(Goodwill), 특허권(Patents), 프랜차이즈권(Franchise) 및 법인설립비용(incorporation costs)과 같은 무형자산(intangibles)들이 포함된다. 적격 자본적 지출(Eligible Capital expenditure : ECE)이 있을 경우 이는 비용이지만 그 비용의 75%는 하나의 공유 풀인 누적 적격자본(cumulative eligible Capital: CEC)에 포함되며 7%의 감가상각률에 따라 상각된다. 이를 누적 적격자본 공제제도(cumulative eligible Capital allowance: CECA)라고 한다.

감가상각자산(Depreciable property)은 자본비용공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에

425)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5,006.

426) Id., at ¶ 5,007.

납세의무자가 취득한 자산을 의미한다. 감가상각자산은 또한 자본자산으로서 취급되기 때문에 그 처분으로 인하여 자본소득(Capital gain)이 발생할 수 있으나,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자본손실(Capital loss)을 발생시킬 수는 없다. 캐나다 연방소득세법에서는 대부분 감가상각방법으로 ‘체감잔액법’(the declining balance method), 즉 정률법을 채택하고 있는바, 자산을 법이 정하는 범주로 각 구분하고 각 범주에 대하여 특정 감가상각방법 및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조세유인에 기한 거래(tax motivated transactions)를 줄이고, 중립성(neutrality)을 높이고 있다.

다) 자본비용공제의 적격성(Eligibility for Capital cost allowance)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정의만으로는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어렵다. 감가상각을 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자산이 CCA의 적용을 위한 자산의 범주, 즉 Schedule II에서 정하는 자산에 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당 자산이 이 범주의 자산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법이 특별히 감가상각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다. 소득의 계산 과정에 취득원가가 손금에 산입된 자산, 재고자산, 소득의 가득 또는 창출과 무관한 자산, 비용이 paragraph 18(1)(1)에 의하여 공제되지 않는 자산, 토지 및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캐나다 외 소재 자산이 그 주요한 예에 해당한다.⁴²⁷⁾

근로자는 감가상각을 공제할 수 없으나 자동차 및 항공기비용에 대하여서는 예외 규정 및 약기에 관한 예외규정이 있다. 예외적으로 감가상각을 공제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는 위 자동차, 항공기 및 약기를 고용계약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어야 한다.⁴²⁸⁾

라) 유형 자본자산의 분류 및 감가상각 원리

범주화된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은 캐나다 연방소득세법 regulations(주로 PartXI 및 Schedule II)에 규정되어 있고, 각 범주에 속한 자산들은 하나의 단위로 취급된다.

427) Id., at ¶ 5,012.10.

428) ITA: 8(2), 8(1)(j), (p).

각 범주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률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⁴²⁹⁾

자본비용공제의 기본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범주의 자산을 구입할 때마다 취득원가 전액을 미감가상각 취득원가 (undepreciated Capital cost: UCC)의 잔액에 더한다.

둘째, 특정 범주의 자산이 매각될 때마다 당초의 취득원가와 처분대가 중 적은 금액을 UCC에서 차감한다.

셋째, 과세기간 말에 해당자산 UCC의 잔액이 양수이고 해당 범주에 여전이 자산이 남아 있다면, (i) 취득원가에서 처분대가를 차감한 금액의 2분의 1을 UCC의 잔액에서 차감하고, (ii) 해당 범주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률로 CCA 공제한도에 이르기까지 감가상각하며 자본비용공제 최고액까지 공제하며, (iii) 다시 (i)에서 차감한 순액의 2분의 1을 다시 더한다.

넷째, 과세기간 말에 해당자산 UCC의 잔액이 음수(-)에 해당된다면, 해당 음수액을 자본비용공제 환입(Recaptured Capital cost allowance)으로서 소득에 산입하고, 해당 자산 UCC의 잔액은 '0'으로 한다.

다섯째, 과세기간 말에 해당자산 UCC의 잔액이 양수라 하더라도, 해당 범주 내에 물리적으로 자산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UCC의 잔액을 종단손실(terminal loss)로서 소득에서 공제하고 UCC의 잔액을 0으로 한다.⁴³⁰⁾

자본비용공제 환입과 종단손실은 세법상 해당 자산이 사용되는 기간에 걸친 자산 가치 감소분 전액만을 공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자산의 처분대가가 UC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동안 과다상각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초과액을 소득으로서 환입한다. 한편 자산의 처분대가가 UCC에 미치지 못하고 해당 범주에 자산이 없다면, 이는 그 사용기간 동안 과소상각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미달액을 추가적으로 공제한다.⁴³¹⁾

자본비용공제율은 각 범주별로 최대 비율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납세의무자가 최대공제한도 이하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가 있다. 납세의무

429)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5,015.10.

430) Id., at ¶ 5,015.20.

431) Id., at ¶ 5,015.25.

자가 공제한 금액만이 해당 자산의 UCC잔액에서 공제되고 나머지는 이월하여 미래에 공제할 수 있다.⁴³²⁾

마) 자본비용공제와 재무회계상 감가상각의 비교

유형자산에 대한 자본비용공제제도가 감가상각에 대한 세법상 등가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주요한 차이점을 살펴본다.

첫째, 재무회계는 내용연수를 자본적 지출에 대한 상각의 기본으로 삼는 반면에 세법은 내용연수, 법적 내용연수(legal life; 임대자산 유익비 또는 특허권의 경우) 또는 재정정책에 근거하여 공제를 할 수 있다.

둘째, 재무회계상 감가상각은 일관성의 원칙(the principles of consistency)에 따라야 하는 반면에 세법은 최대공제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공제할 수 있다.

셋째, 재무회계상 장부가액과 처분대가 사이의 차이 전액은 자산의 매각손익으로 취급되나 세법상으로는 해당 보유기간 동안의 가치감소분만을 상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자본공제비용 환입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으로 인식하고 중단손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세법상으로도 적정한 상황하에서는 해당 자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자본소득을 인식할 수는 있으나, 감가상각 자본 자산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본손실을 인식할 수는 없다. 즉 모든 가치감소분은 자본비용공제 및 자본공제비용 환입과 중단손실 등 조정을 통하여 규율될 뿐이다.⁴³³⁾

나. 종합소득공제

캐나다 소득세법 Division B의 subdivision e는 소득금액의 계산단계에서 법에 의하여 성질상 필요경비 등으로 공제가 허용되는 것이나 개별 소득에는 귀속시킬 수 없는 공제항목들을 규정하고, 캐나다 소득세법 division C는 소득금액을 계산한 이후

432) Id., at ¶ 5,015.50.

433) Id., at ¶ 5,040.10.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공제할 수 있는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다. 위 두 항목이 우리의 종합소득공제액에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여기서 소개한다. 이하 Division B의 subdivision e 공제항목 및 Division C 공제항목의 순서로 살펴본다.

1) Division B의 subdivision e 공제항목

가) 연금소득 중 자본요소(Capital element of annuity)

모든 연금소득은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특정연금은 이미 세금이 부과된 소득으로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연금소득 중 자본요소라고 하며 이는 연금수령 금액에서 공제된다.⁴³⁴⁾ 이미 세금이 부과된 소득으로서 연금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해당 지출액이 당시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등록저축플랜(Registered Savings Plans)

퇴직연금플랜에는 확정급여등록연금플랜(defined benefit registered pension plan: DBP), 현금구입등록연금플랜(money purchase registered pension plan: MPP), 이연이익공유플랜(deferred profit sharing plan: DPSP) 또는 등록퇴직저축플랜(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RRSP) 등이 있다. 이들 연금플랜에 대하여 동일한 조세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연금 관련 입법의 목적이다.

확정급여등록연금플랜(DBP)에 의하면, 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 '마지막 몇 년 동안 근로자의 소득의 몇 퍼센트'로 특정되며, 그 금액은 사용자에게 대한 비용 또는 해당 플랜의 실적과 무관하게 정하여진다. 혜택 금액에는 한도가 부여되며 사용자의 불입금은 특정 조건하에 공제가 가능하다. 특정 조건은 해당 불입금이 캐나다 국세청(CRA)에 등록된 플랜상 계산된 혜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라는 점이 계리인(actuary)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혜택이 부여되는 근로

434) ITA: 56(1)(d), 56(1)(d.2).

자의 불입금은 공제가능하고 이에는 최대한도가 설정되어 있다.⁴³⁵⁾

현금구입등록연금플랜(MPP)은 확정기여플랜(defined contribution plan)으로도 불리는데, 이에 의하면 지급하는 혜택이 아니라 사용자 및 근로자가 불입하는 불입금이 확정되어 있다. 개인에 대한 위 플랜은 공개된 시장에서 당시까지 불입된 불입금에 그 보유기간 중의 이득을 더한 금액을 대가로 매입할 수 있다. 조세혜택이 부여되는 사용자 및 근로자의 불입금에는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⁴³⁶⁾

이연이익공유플랜(DPSP)에 의하면 사용자만이 근로자를 위하여 제한된 금액을 불입할 수 있다. 그 금액은 해당 사업의 실적 또는 이익에 근거하여 계산된다. 이와 같이 조성된 기금에 대하여 고용기간이 2년이 경과된 근로자가 청구권을 가지며, 사용자는 출연한 금원을 반환받을 수 없다. 또한 기금은 사용자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분에 대하여 투자할 수도 있다.⁴³⁷⁾

등록퇴직저축플랜(RRSP)에 의하면, 개인은 특정 한도 범위 내에서 자신의 RRSP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RRSP에 대한 불입금 역시 공제할 수 있다. 세전 금액으로 RRSP에서 발생한 소득을 유보할 수 있다. 만약 만기 이전에 출금할 경우에는 그 시점에 그 금원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진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퇴직연금(retirement annuity) 또는 등록퇴직소득기금(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RRIF)을 구입할 수도 있다.

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 시점에 자신의 한계세율에 따라 과세된다. 그러나 RRSP는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만기 이전에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다.

첫째, 주택매입자플랜(home buyer's plan: HBP)에 의하면 개인들은 자가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RRSP로부터 \$25,000까지 과세되지 않고서 인출할 수 있다.⁴³⁸⁾

둘째, 평생교육플랜(lifelong learning plan: LLP)에 의하면 개인은 평생교육을

435)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9,330.10.

436) Id., at ¶ 9,330.20.

437) Id., at ¶ 9,330.30.

438) ITA: 146.01.

위하여 RRSP로부터 \$10,000까지 과세되지 않고서 인출할 수 있다.⁴³⁹⁾

퇴직연금 또는 등록퇴직소득기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수익의 인식시점이 각 해당 금원을 받을 때까지 이연된다. RRSP는 은행, 신탁회사, 종신보험회사, 신용조합(credit union), 서민금고(casses populaires), 뮤추얼펀드 및 주식중개회사(stockbrokerage firms)에서 이용할 수 있다.⁴⁴⁰⁾

이상 DBP, MPP 및 DPSP는 RPP(registered pension plans)로 범주화되는바, RPP에는 이 외에도 이미 비과세소득부분에서 언급한 비과세저축계좌(TFSA), 등록교육저축플랜(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RESP) 및 등록장애저축플랜(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RDSP)이 포함된다. RESP에 의하면, 적격수익자의 고등교육을 위하여 평생 \$50,000을 한도로 하여 불입할 수 있으나, 그 불입한 금액은 불입 당시 공제되지 않으며 인출 당시에는 유보된 투자소득만이 과세된다.⁴⁴¹⁾ RDSP에 의하면, 심각한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장기적으로 재무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모 또는 타인이 저축할 수 있는데 평생 \$200,000을 한도로 하여 불입할 수 있으나, 그 불입한 금액은 불입 당시 공제되지 않으며 인출 당시에는 유보된 투자소득만이 과세된다.⁴⁴²⁾ 이상의 조세지원플랜 등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다.⁴⁴³⁾

439) ITA: 146.02, 118.6(1).

440)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9,330.40.

441) ITA: 146.1(2) (d.1), 146.1(2.2).

442) ITA: 146.4.

443)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9,415.40.

<표 2-1-6> 조세지원 대상 플랜(Tax-Assisted Plans)

분류	목적	불입금 공제 여부	불입금 제한	출금액에 대한 과세
등록퇴직 저축플랜(RRSP)	개인이 퇴직을 대비하여 저축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세 절약수단 (Tax shelter)	○	매년 기준으로 다음 중 적은 금액 (i) 2013년 기준 \$23,820 (ii) 직전 가득한 소득의 18% <차감> : 연금조정 금액(pensions adjustments) <합산대상> : 직전 과세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불입금 잔액(unused contribution room)	만기 전 : 금액 수령 시 과세 주택매입자플랜 (HBP) - 15년 이상에 걸쳐 매년 분할 상환되는 경우 인출분 중 \$25,000까지 비과세 3. 평생교육플랜 (LLP) - 15년 이상에 걸쳐 매년 분할 상환되는 경우 고등교육을 위하여 인출된 금액 중 \$10,000 까지 비과세 만기 : 1. 금액 수령 시 과세 2. 등록퇴직소득 기금(RRIF) 또는 퇴직연금 (Retirement annuity) 구입한 경우에는 실제 수령 시까지 과세 이연
등록 연금 플랜 (RPP)				
확정급여등록 연금플랜(DBP)	개별 근로자에 대한 혜택의 특정	○	2013년 기준 \$24,270/9=\$2,697	수령시 과세
현금구입등록 연금플랜(MPP)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불입금의 특정	○	2013년 기준 \$24,270	수령시 과세

〈표 2-1-6〉의 계속

분류	목적	불입금 공제 여부	불입금 제한	출금액에 대한 과세
이연이익공유플랜 (DPSP)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회사 성과에 기초하여 해당 플랜에 불입함	○ (고용주)	매년 기준으로 다음 중 적은 금액 (i) 소득의 18% (ii) 2013년 경 우 \$24,270의 50%	수령시 과세
비과세 저축계좌(TFSA)	비과세 (on a tax-fee basis)로 투자소득을 얻음	×	매년 \$5,500	과세대상 아님
등록교육 저축플랜(RESP)	적격 수익자에 대한 고등 교육(post-secondary education) 자금 마련	×	생애 전체 \$50,000 제한	유보투자소득을 수익자가 수령할 때 과세
등록장애 저축플랜(RDSP)	증장애가 있는 아동의 장기적 재정 안정을 위한 저축	×	생애 전체 \$200,000 제한	유보투자소득을 수익자가 수령할 때 과세

다) 과다납부세액 및 다른 공제항목(Overpayments and Other Deductions)

캐나다 소득세법은 이미 소득에 포함되었으나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아니어서 반환
되어야 하는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그 금액은 소득에서 공제된다.⁴⁴⁴⁾

불복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fees) 또는 비용들 역시 지급된 해에 공제가 가능하다.⁴⁴⁵⁾

퇴직수당(retiring allowance) 또는 연금혜택에 대한 권리를 얻거나 회수하기 위하여
발생한 법적 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다.⁴⁴⁶⁾ 그 공제금액은 쟁점이 된 퇴직수당 또는 연
금혜택에서 RRSP 또는 RPP(registered pension plans)에 이전된 금액을 공제한 금
액을 한도로 한다.⁴⁴⁷⁾

노령연금(old age security: OAS)에 따른 환수금액(clawback)은 소득에서 공제

444) ITA: 60(n), 60(q), 60(v.1).

445) ITA: 60(o).

446) ITA: 60(o.1).

447) ITA: 60(j.1).

된다. 위 금액을 공제하기 이전의 Division B에 따라 계산된 소득금액이 일정한 금액(2013년의 경우에는 \$70,954)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5%와 노령연금 혜택 중 적은 금액이 환수된다.⁴⁴⁸⁾

라) 이사비용

적격 이사(eligible relocation)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사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겐 특정 제한이 부과된다.⁴⁴⁹⁾ 캐나다 국세청(CRA)의 실무에 의하면 실제 이사비용을 영수증에 의하여 입증하는 대신에 미리 정하여진 단일 비율(flat rates)에 의하여 이사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⁴⁵⁰⁾ 적격 이사의 정의에 포함된 납세의 무자에는 두 범주가 있다.⁴⁵¹⁾ 첫째는 캐나다 내의 새로운 사업장소 또는 고용장소(employment location)로 이전하는 납세의무자는 이사비용을 새로운 장소에서 가득한 소득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 둘째, 고등교육기관의 전업학생으로서 공부하기 위하여 이전하는 학생은 캐나다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소득(student income)에서 이사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마) 자녀양육비용(Child Care Expense)

납세의무자가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녀양육비용은 소득을 가득한 연도와 동일한 연도에 공제될 수 있다. 이러한 공제규정은 부모 또는 부양을 한 개인에 한하여 적용된다.⁴⁵²⁾ 다만 개인이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적용되지 않는다.⁴⁵³⁾

첫째, 캐나다 내 지정된 교육기관(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 또는 중등학교(secondary school)에서 전업 또는 파트타임으로 학업에 종사하는 경우

둘째, 적어도 2주 이상 동안 아파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448) ITA: 60(w), 180.2.

449) ITA: 62(3), 248(1).

450)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9,480.

451) ITA: 248(1), 62(2).

452)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9,495.

453) ITA: 63(2) (b).

셋째, 적어도 2주 이상 동안 구금된 경우

넷째, 결혼 또는 보통법상 관계가 파탄됨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 중 적어도 90일 이상 동안 보다 높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떨어져 지낸 경우

또한 적격자녀, 자녀양육비용, 공제한도, 소득의 정의 및 비용 증빙자료에 대하여서는 제한이 부과되어 있다.⁴⁵⁴⁾

바) 장애인부양공제(Disability Support Deduction)

납세의무자가 일하거나 고등교육 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공부하기 위하여 지출한 장애인부양비용은 장애인의 소득에서 전액 공제가능하다.⁴⁵⁵⁾

환급불가능 의료비용세액공제와 새로운 장애인부양공제에 의하여 공제가능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25%가 환급가능 의료비부조금(refundable medical expense supplement: RMES)에 포함된다.⁴⁵⁶⁾

육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에 특정 손상이 있고 해당 손상에 대한 세액공제가 허용되는 개인은 18세 이상인 특수관계자가 아닌 보조인에 대하여 지불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위 비용은 해당 개인이 직장에서 일하거나 지정된 교육기관 또는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⁴⁵⁷⁾

사) 캐나다 이외의 장소에 거주하는 캐나다 거주자의 비용(Expenses of Residents Absent from Canada)

캐나다 소득세법은 캐나다 외의 장소에 거주하지만 여전히 캐나다 거주자인 개인에 대하여서도 자녀부양공제 및 장애인부양공제를 확대하여 적용한다.⁴⁵⁸⁾

454) ITA: 63(1), (2.3), (3).

455) ITA: 64.

456) ITA: 122.51.

457) TA: 118.3.

458) ITA: 63, 64, 64.1, 250(1).

2) Division C 공제항목

캐나다 소득세법 Part I Division B에는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규정들이 포함된 반면에 Division C에는 소득금액으로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Division C에는 많은 공제규정들이 있으나 개인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들은 다음 일부의 규정에 국한되고, 공제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동일한 연도에 다수의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할 순서가 정하여져 있다.

첫째, 제110조. 근로자의 주식매수선택권, 근로자 주식매수선택권의 기부금공제, 이연이익공유플랜에 따라 수령한 주식, 주택이사 대출금공제, 노동자 보상금(worker's compensation), 사회부조금, 조약 또는 국제적 조직과 관련된 공제 및 필연적 가난의 서약(vows of perpetual poverty)에 따른 공제

둘째, 제110조의2. 일시금 수령에 따른 공제(deduction for lump-sum payments)

셋째, 제110조의6. 농장자산 및 적격소규모사업(Qualified small business corporation: QSBC)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공제

넷째, 북부 거주자 공제(deduction for northern residents)

다섯째, 비양도손실, 순양도손실, 제한된 농장결손금(restricted farm losses) 및 농장결손금(farm losses)의 공제

법인에게 적용되는 Division C 공제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10조의1 (1). 기부금공제

둘째, 제112조. 캐나다 내국법인이 다른 캐나다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공제

셋째, 제113조의1 (1). 캐나다 외국법인이 외국 관계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공제

이월결손금(loss carryovers) 규정은 개인 및 법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하에서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위 공제규정들 중 일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근로자 주식매수선택권 공제

근로자가 캐나다인이 지배하는 사법인(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CCPC)이 아닌 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해당 주식의 공정 시장가치에서 행사가격을 제한 금액을 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은 해당 주식의 조정취득원가(adjusted cost base: ACB)에 포함된다.⁴⁵⁹⁾

이러한 경우 해당 금액의 2분의 1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제한다. 이를 주식매수선택권 공제(stock options deduction)이라고 한다. 다만 행사가격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 이상인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되고, 부여되는 주식의 형태와 관련된 특정 제한(예를 들면 보통주이어야 한다는 등)이 부가되어 있으며 행사 시점 전후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 역시 충족하여야 한다. 부여 시점에는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⁴⁶⁰⁾

나) 특정 수취금원의 공제(Deduction for certain receipts)

다음 항목들은 캐나다 소득세법 Part I Division B의 소득에는 포함되나 과세표준의 계산과정에서 공제되어 과세되지 않는다.⁴⁶¹⁾

첫째, 소득보장부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

둘째, 사회보장부조금(social assistance payments)

셋째, 노동자보상금(worker's compensation)

넷째, 조세조약에 의하여 면제된 금액

다) 주택이사 대출금(Home relocation loan) 공제

근로자가 고용장소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주택이사 대출금을 받게 된 경우 이자비용 상당액이 근로자의 귀속소득으로 계산되는데, 그 소득에 대한 부분적 공제가 허용된다. 이 공제규정은 근로자가 과세되지 않고 \$25,000 무이자 대출을 받는 것과 같

459) ITA: 7(1), 53(1) (j).

460) ITA: 110(1) (d), ITR: 6204.

461) ITA: 110(1) (f).

은 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⁴⁶²⁾

라) 이월결손금(Loss Carryovers) 공제

① 비자본 이월결손금(non-Capital loss carryovers) 공제

비자본 이월결손금은 개인의 경우에는 캐나다 소득세법 제111조 (8)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다. 비자본 이월결손금이 공제되기 위하여서는 당해 연도의 비자본 손실이 당해 연도 다른 원천의 소득금액을 초과한 상태이어야 하고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순서로 공제하며, 이월공제기간은 다음과 같다.⁴⁶³⁾

<표 2-1-7> 비자본 이월결손금의 소급공제와 이월공제기간

	소급공제 기간	이월공제 기간
2004년 3월 23일 이전의 과세연도	3	7
2004년 3월 23일 경과 후 2006년 직전까지의 과세연도	3	10
2006년 이후의 과세연도	3	20

비자본 이월결손금의 통산방식은 아래의 표와 같다.⁴⁶⁴⁾

462) ITA: 80.4.

463)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0,035.

464) Id.

〈표 2-1-8〉 비자본 이월결손금의 통산방식

비자본 이월결손금액의 계산					
다음의 합계					
(+)	(+)	비자본적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	직무 또는 고용관계 등에서 발생한 손실		\$ 000
			사업 손실		\$ 000
			자산 손실		\$ 000
			공제가능 사업투자손실		\$ 000
		자본소득 공제액			\$ 000
		순자본손실 공제액			\$ 000
	(+)	스톡옵션 공제액		\$ 000	
		사회보장 보조금 및 기타 지급금		\$ 000	
		거주지 이전에 따른 대출 비용		\$ 000	
총 합산액			\$ 000		
(-)	순소득 합계액				
	(+)	직무 또는 고용에 따른 소득		\$ 000	
		사업소득		\$ 000	
		자산소득		\$ 000	
		기타 원천의 소득		\$ 000	
		과세대상 자본소득 (열거된 동산의 경우는 제외)		\$ 000	
		열거된 동산으로부터의 과세대상 자본 소득		\$ 000	
	합산			\$ 000	
	(-)	공제가능 자본손실(열거된 동산의 경우는 제외) 및 공제가능 사업투자손실		\$ 000	
	(-)	기타 공제액		\$ 000	
통산 금액=\$ 000					
(-)	농장 손실(사업손실에 포함된 부분은 제외)				
비자본 이월결손금					

② 순자본 이월결손금(net Capital loss carryovers) 공제

순자본 이월결손금은 ‘특정 연도의 공제가능한 자본손실이 과세대상 자본이득을 초과한 금액’에 ‘10년의 이월공제기간 중 비자본 손실로서 공제되지 못한 사업투자손실’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⁴⁶⁵⁾ 순자본손실의 소급공제기간은 3년이고, 이월공제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특정 연도의 순자본손실은 당해 연도의 산입비율(inclusion rate)을 이용하여 계산되는바, 그 산입비율은 다음과 같다.⁴⁶⁶⁾

〈표 2-1-9〉 순자본 이월결손금의 손금공제산입비율

연도	산입비율
1972년~1987년	1/2
1988년~1989년	2/3
1990년~2000년 2월 27일	3/4
2000년 2월 28일~2000년 10월 17일	2/3
2000년 10월 17일 이후	1/2

당해 연도 공제가능한 순자본손실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⁴⁶⁷⁾

$$\text{MIN} \{ \text{당해 연도의 순과세대상 자본이득}, [A \times (B/C)] \text{에 의하여 계산된 각 다른 연도의 순자본손실의 합계액} \}$$

- A: 특정 손실연도에서 발생하였고 당해 연도에 Division C 규정에 따라 공제될 수 있는 금액
- B: 순자본손실이 공제되는 연도의 산입비율
- C: 당해 손실이 실현된 연도의 산입비율

③ 농장결손금(farm loss)

농장결손금이라고 하여 다른 사업으로 인한 결손금과 다른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된 농장결손금(restricted farm loss)과 취미농장결손금(hobby farm

465) ITA: 111(8).

466)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0,040.

467) ITA: 111(11.1).

loss)의 경우에는 별도의 취급을 한다.

농장이 납세의무자의 주요 수입원이 아닌 경우 캐나다 국세청(CRA)는 제한된 농장결손금규칙을 적용한다. 농장이 주요 수입원인지 여부는 농장사업에 소요된 시간, 사업에 투자된 자본 및 합리적인 이익 기대치로서의 실제 및 잠재적인 이익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⁴⁶⁸⁾ 일반적으로 개인이 부수적으로 농장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농장결손금규칙을 적용하는바, 이 규칙에 따르면 당해 과세연도의 다른 소득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제31조 (1)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제한된다. 제한된 농장결손금은 농장소득에 대하여서만 3년 소급공제되고 20년 이월공제된다.⁴⁶⁹⁾

취미농업결손금은 이익을 얻을 동기를 갖지 않은 납세의무자에 관한 것이다. 이 결손금은 개인적 또는 생활비용으로서 공제가능하지 않다.

마) 자본소득공제(Capital Gains Deduction: CGD)

개인의 경우 적격소규모법인(QSBC) 주식, 적격농장자산 또는 적격어업자산에 대한 자본소득의 \$750,000까지는 자본소득공제를 통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QSBC, CGD에 관하여서는 법인과 관련하여 보기로 하고 이하 적격농장자산 CGD와 적격어업자산 CGD에 대하여 본다.

① 적격농업자산 CGD

CGD 최대한도액을 적격농업자산에 대한 자본소득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다.⁴⁷⁰⁾ 적격농업자산은 subsection 110.6(1)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 납세의무자(신탁의 수익자를 포함한(3), 배우자 또는 보통법상 파트너, 자녀 또는 부모, 법인(가족농장법인) 또는 파트너십(가족농장파트너십)에 의하여 운영되는 캐나다 내 농장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 가족농장법인의 주식(share Capital)

468) Moldowan v. Minister of National Revenue(1977), [1977] C.T.C. 310, 77 DTC 5213 (S.C.C.).

469) ITA: 111(1)(c).

470) ITA: 110.6(2).

- 가족농장파트너십에 대한 권리(interest)
- 캐나다 내 농장사업에 사용되는 적격자본자산(eligible Capital property)

② 적격어업자산 CGD

자본소득의 평생 최대한도액에는 어업자산, 가족어업법인의 주식, 가족어업파트너십에 대한 권리 또는 적격어업자산의 처분(2006년 3월 2일 이후에 발생한 것)에 의하여 실현된 자본소득이 포함된다.⁴⁷¹⁾

바) Division C 공제순서

Division C에 규정된 공제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⁴⁷²⁾

첫째, 제110조 기타공제(Other deductions)

둘째, 제110조의2 일시금공제

셋째, 제111조 이월결손금공제

넷째, 제110조의6 자본소득공제

다섯째, 제110조의7 규정된 장소의 거주자공제

다. 세액공제

1) 일반

캐나다 연방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범주는 비환급성 세액공제(Non-refundable tax credits)인바, 이는 기혼자 세액공제 또는 배당세액공제와 같이 세액공제금액이 캐나다 연방소득세법상 부과된 조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분이 환급되지 않는 세액공제를 의미한다. 둘째 범주는 환급성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s)인바, 이는 환급세액공제 금액이 전체 납부하여야

471) ITA: 110.6(1).

472)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0.075.

할 총조세부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비환급성 세액공제와 환급성 세액공제로 나누어 살펴본다.⁴⁷³⁾

2) 비환급성 세액공제(Non-refundable tax credits)

비환급성 세액공제는 다음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 기본 인적 세액공제(Basic personal amount) 및 추가 인적 세액공제(Additional personal amounts)
- 배우자 세액공제(Spouse amount) 및 준배우자 세액공제(Equivalent-to-spouse amount)
- 피부양 장애인 세액공제(Infirm dependent children; 18세 이상이고 장애인인 경우)
- 가족 요양인 세액공제(Family caregiver tax credit) 및 요양인 세액공제(caregiver amount)
-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 경로자 세액공제(Age amount)
- 캐나다 고용 세액공제(Canada employment amount)
- 입양비 세액공제(Adoption expense amount)
- 대중교통 세액공제(Public transit tax credit)
- 자녀 체육교육비용 세액공제(Children's fitness amount & Children's arts tax credit)
- 자녀 예술교육비용 세액공제(Children's fitness amount & Children's arts tax credit: 개정안)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세액공제(First-time home buyers' tax credit)
- 자원 소방대원 세액공제(Volunteer firefighters tax credit: 개정안)

473) Id., at ¶ 10,125.10-¶ 10,125.20.

- 캐나다 또는 퀘벡 연금 불입금 세액공제(Canada or Quebec pension plan contributions)
- 고용보험 보험료 세액공제(Employment insurance premiums)
- 연금소득 세액공제(Pension income amount)
- 장애 세액공제(Mental or physical impairment amount<disability>)
- 배우자가 아닌 피부양자로부터 이전된 장애비용 세액공제(Disability amount transferred from a dependant other than spouse)
- 교육비 등 세액공제(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s)
- 자녀 교육비 등 세액공제(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s from a child)
- 배우자로부터 이전된 세액공제(Amounts transferred from spouse)
- 의료비 세액공제(Medical expenses)
- 기부금 세액공제(charitable gifts)
- 학자금 대출이자 세액공제(Interest paid on student loans)
- 배당세액공제(Dividend tax credit)

3) Section 118에 따른 세액공제 계산방식

Section 118는 비환급성 인적세액공제금액(non-refundable personal tax credits)을 계산하는 일반적인 공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times B$$

- * A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소득세의 최저 세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2013년의 경우, 15%)
- * B는 다음에 따른 세액공제 기준액의 총합(the aggregate of the following tax credit bases)
 - (a) 기혼 또는 보통법상 배우자 지위(married or common-law partnership status)
 - (b) 완전 피부양자(wholly dependent person) (예: 준배우자 지위)
 - (b.1) 자녀 관련 금액(child amount) (예: 자녀 세액 공제)
 - (c) 독신 지위(single status)
 - (c.1) 가족의 가정 내 요양(in-home care of relative) (예: 요양인 세액공제)
 - (d) 병약 피부양자(infirm dependants)
 - (e) 피부양자에 대한 추가 공제금액[additional amount(re: dependent)]

4) 기혼 또는 보통법상 배우자 세액공제(Married or Common-law partnership credit)

기혼 또는 보통법상 배우자 세액공제는 다음 방식에 따라 계산된다.⁴⁷⁴⁾

<표 2-1-10> 기혼 또는 보통법상 배우자 세액공제 계산

2013년 기본 인적공제 기준금액 (basic personal tax credit base)		\$ 11,038
2013년 배우자 인적공제 기준금액	\$ 11,038	
(-) 2011년 배우자의 Division B 소득	\$ xxx	
순액 (음수는 0으로 본다) (Net amount : Non-negative)		\$ xxx
세액공제 기준총액 (Total tax credit base)		\$ xxx
세액공제액 (15% of total)		\$ xxx

세액공제액의 총합계액은 최대 \$3,158이고, 개인이 자신의 배우자를 부양한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 세액공제 기준액은 해당 과세기간 중 피부양자

474) ITA: 118(1)(a), 257.

인 배우자의 Division B 소득에 따라 감소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과세 기간 말에 혼인 파탄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별거중이라면, 배우자의 소득은 온전한 결혼생활 기간에 벌어들인 소득만을 고려한다.⁴⁷⁵⁾

보통법상 배우자(common-law partner)는 배우자와 같이 취급한다. 보통법상 배우자에 있어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단지 부부 관계로서 같이 거주하며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부부 관계가 이어지는 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자녀에 해당하는 아이의 또 다른 부모인 자(the parent of a child whom the taxpayer is also a parent)로 정의된다.⁴⁷⁶⁾

5) 완전 피부양자인 준배우자 세액공제(Equivalent-to-married status for wholly dependent person credit)

해당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기혼 배우자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은 없으나, 완전 피부양자인 경우 기혼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어느 때라도 독거(single), 미혼, 이혼, 별거, 또는 사별한 자로 그 가족(a relative)을 부양하는 자에 대해서 적용된다. 해당 세액공제는 배우자 세액공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⁴⁷⁷⁾

6)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비환급성 세액공제로 과세연도 말에 18세 미만인 자녀별로 \$335($\$2,234 \times 15\%$, 2013년 7월 1일 이후부터)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해당 자녀와 함께 생활한 부모인 경우에는 해당 부모 중 한 명만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즉 해당 자녀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완전 피부양자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부모가 해당 자녀에 대해서 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475)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0,145.

476) ITA: 248.

477) ITA: 118(1) (b).

자녀 출생, 입양, 사망이 있는 해에는 전액을 모두 세액공제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세액공제액 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any unused portion of the credit)은 해당 부모의 배우자 또는 보통법상 배우자(common-law partner)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⁴⁷⁸⁾

7) 기본 인적 세액공제(Basic personal tax credit)

기본 인적 세액공제 기준은 \$11,038(2013년 기준)이며, 기준 금액에 15%를 곱한 \$1,656가 기본 인적 세액공제액에 해당된다.⁴⁷⁹⁾

8) 요양인 세액공제(caregiver amount)

성인 가족(an adult relative)과 같이 거주하면서 해당 가족을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자는 \$674($15\% \times \$4,49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가족은 해당 개인의 자녀, 손자, 자신 또는 배우자(보통법상 배우자 포함)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숙모, 삼촌, 조카 등이 포함된다. 부모 또는 조부모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이거나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다른 피부양자 가족인 경우에도 18세 이상이면서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야 한다.⁴⁸⁰⁾

피부양자의 소득이 \$15,33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만큼 세액공제 기준금액(\$4,490)이 줄어들며, 피부양자의 소득이 \$19,824를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해당 조항의 해석상, 요양인 세액공제는 한 명의 납세의무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⁴⁸¹⁾

478) ITA: 118(1) (b.1), 118.8.

479) ITA: 118(1) (c).

480) ITA: 118(1) (c.1).

481)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0,165.

9) 피부양자 장애인 세액공제(Infirm dependent credit)

피부양자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배우자(보통법상 배우자 포함)의 자녀, 손자, 납세의무자 자신 또는 배우자(보통법상 배우자 포함)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숙모, 삼촌, 조카 등이 포함된다.⁴⁸²⁾ 세액공제의 적격성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전에 18세에 이르러야 하며, 대상자가 정신 또는 육체적인 장애가 있어 납세의무자가 부양하는 경우이어야 한다.⁴⁸³⁾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⁴⁸⁴⁾

〈표 2-1-11〉 피부양 장애인 세액공제 계산

피부양자의 세액공제 기준금액			\$ 4,490
(-)	피부양자의 Division B 소득	\$ xxx	
한계금액(threshold amount)		\$ 6,548	\$ xxx
순계산금액(non-negative)			\$ xxx
순세액공제 기준액(non-negative)			\$ xxx
세액공제액(15% of net)		\$ xxx (최대 \$674)	

10) 가족 요양인 세액공제(Family caregiver credit)

2012년 이후 일부 현행 조항이 수정되어 가족 요양인에 대해서 \$2,000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15% 비환급성 세액공제가 추가적으로 허용된다.⁴⁸⁵⁾

482) ITA: 118(1) (d).

483) ITA: 118(6).

484)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0,170.

485) ITA: 118(1).

11) 추가 세액공제(Additional amount)

납세의무자가 피부양자에 대하여 준배우자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부양자는 요양인 세액공제 또는 18세 이상 피부양자 장애인 세액공제의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⁴⁸⁶⁾

그러나 요양인 세액공제 또는 18세 이상 피부양자 장애인 세액공제금액이 준배우자 세액공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 추가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⁴⁸⁷⁾

12) 경로자 세액공제(Age credit)

비환급성 경로자 세액공제는 \$6,854(2013년)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진다. 해당 과세연도(2013년)에 적용될 세율이 15%이므로, 해당 연도(2013년)의 세액공제 금액은 \$1,028이 된다. 과세연도 말 이전에 65세가 된 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로자 세액공제금액은 해당 인에게 \$34,562를 초과하는 Division B 소득이 있으면, 초과분의 15%만큼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순소득이 \$80,255를 초과한다면, 경로자 세액공제를 완전히 받을 수 없게 된다.⁴⁸⁸⁾ 경로자 세액공제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⁴⁸⁹⁾

486) ITA: 118(4)(c).

487) ITA: 118(1)(e).

488) ITA: 118(2).

489)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0,180.

〈표 2-1-12〉 경로자 세액공제 계산 사례(소득이 \$80,255인 경우)

경로자 세액공제 기준금액			\$ 6,854
(－)	경로자 세액공제 금액에서 다음 중 적은 액수를 뺌	\$ 6,854	
	(a) 세액공제 기준금액 : \$ 6,854		
	* 납세의무자의 Division B 소득에서 한도금액(\$34,562)을 뺀 초과금액에 0.15를 곱함 (b) Division B 소득이 \$80,255인 경우: $\$45,963(\$80,255 - \$34,562) \times 0.15 = \$6,854$		
적은 금액			\$ 6,854
순액(net base)			nil
연령 세액공제 : 15% of nil			nil
연령 세액공제 : 15% of nil		nil	

13) 연금소득 세액공제(Pension income amount)

연금소득 세액공제는 비환급성 세액공제로서 65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2,000과 연금소득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15%를 곱하여 세액공제액을 산출한다. 다만, 위 연금소득에는 ITA Sec. 118(7)에 열거된 각종 연금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65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2,000과 적격연금소득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15%를 곱하여 세액공제액을 산출한다. 적격연금소득에는 적격연금기금 또는 계획으로부터 발생한 종신연금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 또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인이 수령한 특정 연금지급액이 포함된다.⁴⁹⁰⁾

14) 캐나다 고용 세액공제(Canada employment credit)

캐나다 고용 세액공제는 비환급성 세액공제로서 개인의 해당 과세연도 근로소득과

490) ITA: 118(3), 118(7).

\$1,117 중 적은 금액에 15%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된다.⁴⁹¹⁾

15) 입양비용 세액공제(Adoption expense tax credit)

입양비용 세액공제는 비환급성 세액공제로서 \$1,750($15\% \times \$11,669$)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세액공제는 입양 기간 동안에 입양에 관련된 적격 입양비용을 입양이 완료된 해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적격 입양비용에는 입양기관에 지급한 비용, 소송비용(courts costs), 법적·행정적 비용, 문서 번역비, 합리적인 범위에서의 여행 및 생활비용, 외국기관에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 및 기타 주 또는 준주정부 또는 주 또는 준주정부에 의하여 공인된 입양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 등이 포함된다. 특히 입양비용 세액공제에 있어서 적격 입양아동은 입양 완료 시 18세 미만이어야 한다.⁴⁹²⁾

16) 대중교통비 세액공제(Public transit passes credit)

대중교통비 세액공제는 비환급성 세액공제로서 적격 대중교통 비용과 관련하여 지급된 모든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개인 납세의무자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권 비용금액, 납세의무자의 배우자 또는 보통법상 배우자, 납세의무자의 19세 미만 자녀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권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적격 대중교통이용권(public transit pass)은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이용권이며, 대중교통수단에는 지역 버스, 시내전차, 지하철, 통근열차, 통근버스, 지역 여객선을 포함한다.⁴⁹³⁾

491) ITA: 118(10).

492) ITA: 118.01.

493) ITA: 118.02.

17) 자녀 체육교육비용 세액공제(Children's fitness credit)

자녀 체육교육비용 세액공제 역시 비환급성 세액공제로 적격 체육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해의 시작일 당시 16세 미만에 해당되어야 하며, 적격 비용은 \$500을 상한 기준으로 하여 15%를 곱한 금액인 \$75($\500×0.15)까지 세액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해당 세액공제는 부모 중 한 명이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그 적격 연령이 18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있으며, 적격 체육활동 프로그램에 등록하는데 최소 \$100를 사용한 장애아동의 경우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500의 비환급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나머지 \$400은 해당 아동이 등록 프로그램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인하여 소요된 추가적인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⁴⁹⁴⁾

18) 아동 예술교육비용 세액공제(Children's arts tax credit: 개정안)

해당 세액공제는 2011년 6월 6일에 제안된 비환급성 세액공제이며, 한 명의 아동당 \$500의 적격 비용 기준을 상한으로 최고 \$75까지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 과세기간 시작일 당시 16세 미만인 아동이 적격 예술, 문화, 오락, 자기계발 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과세기간 시작일 당시 18세 미만인 장애아동이 등록비로 최소 \$100를 지급하였다면 추가적으로 \$50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⁴⁹⁵⁾

19)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세액공제(First-time home buyers' tax credit)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세액공제는 비환급성 세액공제로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적격 주택을 매입하는 데 쓴 비용의 \$750($15\% \times \$5,000$)을 세액공제해주는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구입자 또는 구입자의 배우자(보통법상 배우

494) ITA: 118.03.

495)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0,222.

자 포함)가 ‘매입한 해 또는 직전 4년 기간’ 중 또 다른 주택에서 살 수 있거나,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세액공제는 배우자와 나누어 공제받을 수 있으나, \$750을 초과해서 공제받지는 못한다. 해당 세액공제는 장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장애인이 쉽게 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등 좋은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격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해당 매입자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적격 주택은 캐나다에 소재한 것으로 매입자 또는 매입자의 배우자(보통법상 배우자 포함)의 이름으로登記되어야 하며, 매입자 또는 매입자의 배우자, 혹은 장애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매입일이 포함된 1년 이내에 자신의 주요 거주지로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의도가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⁴⁹⁶⁾

20) 자원 소방대원 세액공제(Volunteer firefighters tax credit)

자원 소방대원 세액공제는 2011년 6월 6일에 제안된 것으로서 자원 소방대원은 \$3,000의 기준금액에 15%를 곱한 금액에 대하여 비환급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자가 자원 소방대원 활동에 따라 수령한 금액이 있는 경우, 최대금액이 \$1,000에 이르는 소득공제(exemption)를 청구할 수는 없다. 자원 소방대원의 적격 요건으로는 하나 이상의 소방 부서에서 자원 소방대원 활동을 최소 200시간 하여야 하며, 자발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원 소방대원 활동시간에 대한 증명서를 소방서로부터 발급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⁴⁹⁷⁾

21) 기부금 공제(charitable gift)

비환급성 세액공제 중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살펴본다.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주요 기부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는 적격 기부금단체에 대

496) ITA: 118.05.

497) ITA: 118.06, 81(4)(b).

한 기부(institutions that may receive donations), 등록 자산단체 및 캐나다 아마추어 체육단체에 대한 기부(registered charities and Canadian amateur athletic organizations), 영국 왕실에 대한 기부(Crown gifts), 문화자산의 기관에 대한 기부(gifts of cultural property to institutions) 및 생태 민감지역 토지의 기부(gifts of ecologically sensitive land) 등이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비환급성 세액공제(non-refundable tax credit)를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기부금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한다.⁴⁹⁸⁾ 기본적으로 개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기부금 세액공제는 다음의 산식⁴⁹⁹⁾에 따라 계산되며, 해당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75%를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되는 금액분은 차후 5년간 이월하여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⁵⁰⁰⁾

$$(A \times B) + C (D - B)$$

- * A : 15%
- * B : 전체 기부금액 중 최초 \$200까지의 기부금액
- * C : 29%
- * D : 전체 기부금액

기부 대상이 자본자산인 경우에는 기부에 대한 간주처분의제로 인하여 과세대상 자본소득이 발생하나 등록 자선단체 또는 다른 적격 수증자에 대한 기부의 경우에는 자본소득이 '0'으로 취급된다.⁵⁰¹⁾ 위 자본자산에는 뮤추얼펀드 법인(mutual fund corporation)의 자본주에 대한 지분, 뮤추얼펀드 신탁(mutual fund trust)의 수익 증서(unit), 특수관계에 있는 분리기금 신탁(a related segregated fund trust)에 대한 권리, 법정 채권(a prescribed debt obligation), 사적 재단이 아닌 적격 수증자에게 기부된 생태 민감지역 토지, 지정 주식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채권 또는 권리가 있

498)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1,050.

499) ITA: 118.1(3)

500) ITA: 118(1), 118(2.1)

501) Canadian Master Tax Guide, at ¶ 3,361.

다.⁵⁰²⁾

상장 유가증권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법인의 자본주에 대한 지분을 발행하거나 처분할 시점에 해당 지분에는 보유자가 이를 상장 유가증권과 교환할 수 있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그 교환과 관련하여 상장 유가증권만을 대가로 수령하여야 한다. 셋째, 교환된 상장 유가증권을 30일 이내에 기부하여야 한다.⁵⁰³⁾

적격 기부금단체(institutions that may receive donations)로는 등록 자선단체(registered charities) 및 캐나다 아마추어 체육단체(Canadian athletic organizations), 노령 거주자를 위한 비과세 저비용 주택법인(tax-exempt low-cost housing corporations for the elderly resident in Canada), 캐나다 지방자치단체(2000년 5월 8일 이후 기부에 대하여서는 캐나다에서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적 기구), UN 사무소, 법정 외국대학, 연방정부가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기부하였던 해외 특정 자선단체(certain charitable organizations outside Canada) 및 캐나다 연방, 주 또는 지구(district)가 있다.⁵⁰⁴⁾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기부금은 다음과 같다.⁵⁰⁵⁾

- 개인에 대한 기부(donations to individuals)
- 법원의 명령에 따른 자선단체에 대한 자산 이전(court-ordered transfers of property to charities)
- 용역 기부(gifts of services),
- 증여의 약속(gift of promises)
- 서약(pledges)
- 사업비용으로서 공제되는 상품 매입가액
- 카드파티, 빙고게임 및 복권(card parties, bingos, and lotteries)을 위하여 지

502) ITA: 38(a1).

503) ITA: 38(a.2).

504)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0,235.

505) Canadian Master Tax Guide, at ¶ 3,364.

급된 금액(자선단체를 위하여 수행되었다고 하더라도)

- 행사 또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한 기본 수수료
-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책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 또는 기부금 가액의 80%를 초과하는 물질적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협회비(membership fee)의 지급액
- 기부자산 시가의 80%를 넘어서는 대가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시가가 결정될 수 없는 현물증여
- 광고 또는 후원의 대가로 교부되는 기부
- 자산의 임대(loans of property)
- 우선사용권(use of timeshare)
- 부지의 리스(the lease of premises)
- 특정인, 가족 또는 외국 자산단체와 같은 비적격 수증자를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서 법인의 지시에 따라 교부된 기부금

22) 의료비용 세액공제(Medical expense credit)

의료비용 세액공제는 지방건강보험(provincial health insurance plan) 또는 사적 건강서비스기금(private health service plan)에 따른 의료 및 건강관리 비용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비환급성 의료비용 세액공제의 적격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미용 또는 선택 진료(cosmetic or elective procedures), 치과 진료 서비스의 일부(a fraction of dental services)는 비적격 대상에 해당된다.

의료비용 세액공제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A[(B-C)+D]$$

- * A : 15%
- * B : 납세의무자, 배우자(보통법상 배우자 포함), 과세기간 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녀를 위하여 사용된 법상 열거된 의료 비용
- * C : 다음 중 적은 금액
 - \$2,152
 - 납세의무자의 순소득의 3%
- * D : 다음 중 적은 금액
 - \$10,000
 - E - F
 - E : 피부양자를 대신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한 모든 의료비용 총액
 - F : 다음 중 적은 금액
 - \$2,152
 - 피부양자의 순소득의 3%

23) 장애 세액공제(Disability Tax Credit)

정신 또는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자가 세액공제의 적격 조건을 가진 경우에는 비환금성 세액공제로서 장애 세액공제의 혜택이 부여된다. 해당 세액공제금액은 2013년 기준 \$1,155(\$7,697의 15%)이다. 하나 이상의 심각하고 장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로서 의사 또는 의료 전문가(임상심리학자 등)로부터 이러한 장애가 있음을 입증받은 사람은 해당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장애 또는 다중의 기능 제한에 따른 누적 효과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일상 생활에 항상(all or almost all of time), 상당하게 제약을 가하는 결과를 가져와야만 한다. 장애는 1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어야 하며, 시각장애, 청각장애 기타 열거된 장애를 포함한다.

해당 세액공제 조항은 전일제 생활도우미(full-time attendant) 또는 요양원에서 의 요양(care in a nursing home)이 요구되는 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지만, 의료비용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0,000 이상의 도우미 비용은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 말에 18세 미만인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별로 \$4,490(2013

년 7월 1일 이후부터)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 금액은 자녀 양육에 따른 세액공제, 도우미 비용, 해당 아동과 관련해서 공제받은 모든 비용금액이 \$2,630(2013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만큼 줄어들게 된다.

장애 세액공제의 경우, 피부양자가 해당 세액공제금액을 자신의 소득이 '0'이 될 때까지도 공제하고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남은 세액공제액은 배우자, 부모 등에게 이전할 수 있다.

24) 교육비 등 세액공제(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credits)

연방 수업비 세액공제는 적격 수업비의 15%(주 세액공제에서는 10%)이며, 캐나다 내의 교육기관에 지출된 수업비용만으로 제한된다. 여기에서의 교육기관은 대학 또는 캐나다 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고등 교육기관 등이 해당되며, 적격 교육기관에 지출한 총비용이 \$100을 넘어야 한다.

연방 교육비 세액공제는 전일제와 파트타임인 경우, 두 유형으로 나누어서 세액공제가 이루어진다. 적격 교육기관에서 전일제 교육생으로 적격 교육프로그램을 등록한 경우에 교육프로그램에 등록된 개월 수에 따라 월별 \$400의 15%(주 세액공제에서는 10%)를 세액공제해주며, 지정 교육기관의 특정 프로그램에 등록한 파트타임 학생의 경우에는 월별 \$120의 15%(주 세액공제에서는 10%)를 세액공제로 해주고 있다. 다만, 파트타임 교육생의 경우라 하더라도, 장애 세액공제 대상자로서 적격 고등교육기관(qualifying post-secondary educational institution)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거나, 또는 기타 장애가 있어 전일제 교육을 이수하기 힘들다는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전일제 교육생과 동등하게 취급한다.

교재비 세액공제는 비환급성 세액공제로서 교육비 세액공제에 덧붙여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일제 교육생인 경우에는 매달 \$65, 파트타임 교육생인 경우에는 매달 \$20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방 수업비, 교육비, 교재비 세액공제는 활용하지 못한 금액만큼을 무한정으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수업비, 교육비, 교재비 세액공제액은 배우자, 부모, 조부모에게 이전하는 것이 가

능한데, 관련 학생이 문서상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대상을 기재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전된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다음 중 적은 금액

- * (a) : A-B에 따라 계산된 금액
 - A는 \$750와 해당 학생의 수업비, 교육비 세액공제액 중 적은 금액
 - B는 기본 인적 세액공제, 노령, 연금, 고용, 장애 등 각종 세액공제금액
- * (b) : 해당 학생이 문서로 지정한 대상에게 이전되는 지정 금액

25) 환급성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s)

세액공제 중 일부는 환급가능하다. 따라서 가장 마지막에 공제된다. 캐나다 외 장소에서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특정 주 세액공제 등과 같은 세액공제들이 전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은 환급되며 그 경우 봉급에 대한 초과 원천징수세액 및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한 초과 분할납부세액 역시 함께 환급된다. GST/HST 세액공제 및 자녀세액 혜택(the child tax benefit)과 같은 세액공제들은 기납부세액으로 간주되어 환급된다.⁵⁰⁶⁾

6. 세율 및 세액의 계산

가. 세율

캐나다 연방소득세법상 세율은 누진세 구조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각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진다. 2013년에 캐나다 연방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506) Id., at ¶ 1,102.

〈표 2-1-13〉 2013년 캐나다 연방소득세 세율 적용 구간

과세표준	세율
\$43,561 이하	15%
\$43,561 초과~\$87,123 이하	\$6,534 ¹⁾ +22%×\$43,561 초과소득
\$87,123 초과~\$135,054 이하	\$16,118 ²⁾ +26%×\$87,123 초과소득
\$135,054 초과	\$28,580 ³⁾ +29%×\$135,054 초과소득

주: 1) $15\% \times \$43,561 = \$6,534$

2) $\$6,534 + 22\% \times \$43,561 = \$16,118$

3) $\$16,118 + 26\% \times 47,931 = \$28,580$

연방소득세법은 세액 또는 세액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⁵⁰⁷⁾

캐나다 모든 주 및 지역은 주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Tax on Income': TONI)를 취한다. 주는 연방소득세법상 소득구간을 활용하거나 변경을 한다. 주별 세율은 그 소득구간별로 특정된다. 각 주는 고유의 비환급 세액공제를 정한다. 이에 관한 자료들은 'the CCH CANADIAN INCOME TAX ACT WITH REGULATION'의 preface에서 구할 수 있다.

나. 세액의 계산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표의 체계 구조에 따라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다.⁵⁰⁸⁾

507) ITA: 117.1.

508) ITA: 117(2), 117.1, 121, 126, 127(3), 180.2;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0,125.

〈표 2-1-14〉 소득세 계산

과세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000
(-)	비환급성 세액공제 총액	\$ 000	
	연방 배당세액공제	\$ 000	
기초 연방세액 (Basic Federal Tax)			\$000
(-)	외국납부세액공제		\$000
연방소득세액 (Federal Tax)			\$000
(-)	연방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000	
	기타 연방 세액공제	\$000	
연방세 순세액 (Net federal tax)			\$000
(+)	노령보험혜택에 대한 세금		\$000
연방 총세액 (Total federal tax)			\$000
(+)	주세 (Provincial tax)		\$000
	주 부가세 (Provincial surtax)		\$000
총납부세액 (Total payable)			\$000
(-)	원천징수세액 (Total income tax deducted at source)	\$000	
	환급성 연방세액공제 (Federal refundable tax credits)	\$000	
	분납 기납부 세액 (Tax paid by instalments)	\$000	
	환급성 주 세액공제 (Provincial refundable tax credits)	\$000	
납부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 (Balance payable or refundable)			\$000

7. 소득세 행정

가. 개요

캐나다 연방소득세법상 연방소득세와 관련한 세무행정은 수도인 오타와에 위치한 본청을 비롯하여 30여개의 지방 국세청 및 세무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하에서는 각 기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세무행정 중 연방소득세의 신고, 가산세 및 과

세불복에 대한 쟁송 등에 대하여 살핀다.

나. 소득세 신고

1) 신고 방식 및 기한

캐나다 연방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상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고납세방식은 법인, 개인, 신탁 등의 경우에 있어서 다르지 않으나 각 납세의무자별 성격에 따라 신고기한에 차이가 있다.

개인(Individuals)의 경우 사업소득이 아닌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4월 30일까지, 납세의무자 또는 동거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6월 15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⁵⁰⁹⁾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신고기한은 생존하는 자연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고인이 10월 이후 일반 개인의 신고기한보다 이전 일자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연도의 소득신고는 그 법정대리인(the legal representative)에 의하여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및 일반 개인에게 적용되는 신고기한 중 늦은 일까지 신고되어야 한다.⁵¹⁰⁾

신탁 또는 상속재산(estate)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연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⁵¹¹⁾

2) 소득세 신고 의무 발생 요건

캐나다 거주자이거나 캐나다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509) ITA: 150(1) (d).

510) ITA: 150(1) (b).

511) ITA: 150(1) (c).

경우, 자본자산이 해당 과세기간에 처분된 경우, 비거주자인 개인에게 과세대상 자본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개인의 주택구입플랜 또는 평생교육플랜의 잔액이 양수인 경우 및 연방 국세청장이 소득세 신고를 요청하는 경우.⁵¹²⁾

3) 전자신고

개인이 연방소득세를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혜택이 부여된다.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환급(a tax refund)이 상당히 빨라지게 되며 입증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캐나다 연방국세청은 여전히 입증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⁵¹³⁾

다. 소득세 결정 및 경정(Assessment and Reassessment)

캐나다 연방국세청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에 다음 사유를 발견하면 정당한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⁵¹⁴⁾

- 납세의무자 또는 소득세 신고를 한 자가 고의(wilful), 태만(neglect) 또는 부주의(careless)에 의하여 잘못된 신고서를 작성하였거나, 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정보 제공에 있어서 부정행위(fraud)가 있는 경우
- 캐나다 거주자 지배 비상장법인(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s: CCPC)이 아닌 모든 법인에게 납세고지서(a notice of assessment)를 발송한 일로부터 4년 내로 정의된 일반 경정기간(the normal reassessment period) 내이거나, CCPC 및 모든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일로부터 3년 내인 경우
-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경정하였거나 경정할 자격이 있다면(if taxpayer was reassessed or was eligible to be reassessed), 일반 경정기간의 만료 3년 내인

512)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4,015.20.

513) Id., at ¶ 14,015.30.

514) ITA: 152(4), 152(3.1), 152(6).

경우

- 일반 경정기간 내에 납세의무자가 법령상 경정기간이 적용되는 것을 포기한 경우에는 어느 때라도 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경정기간의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라. 납세의무자의 권리

1) 불복신청

연방소득세 부과에 대하여 개인과 유언신탁(Testamentary trust)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Mailing date on the notice+90 days) 또는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1년(Mailing date on the notice+1 year) 중 늦은 날까지 불복신청(Notice of objection due date)을 해야 한다. 그 이외의 납세의무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까지 불복신청을 하면 된다. 불복신청은 연방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a Tax Services Offices or Taxation Centre)의 국세심사위원장(the Chief of Appeals)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Form T400A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불복신청서에는 사실관계와 이의신청 이유가 포함되어야 한다.⁵¹⁵⁾

2) 수정신고(Amended Returns)

캐나다 연방소득세법은 다음 경우에 한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부여된 옵션이 행사되어 경정이 필요한 경우⁵¹⁶⁾
- 손실 또는 세액공제가 해당 과세연도에 대하여 소급공제되어 국세청장이 신고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⁵¹⁷⁾

515)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4,210.

516) ITA: 49(4).

517) ITA: 152(6).

- 고인의 법정 대리인에 의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⁵¹⁸⁾

손실의 소급공제와 관련하여 연방국세청장은 정하여진 서식 또는 수정신고서가 손해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신고기한까지 제출된 경우에만 관련 손실에 대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불복신청을 위한 90일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불복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서는 수정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연방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과세연도가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서면에 의한 환급청구(a written request for a refund)가 있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고서가 수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⁵¹⁹⁾

첫째, 연방국세청이 기존 부과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둘째, 일반 경정기간(the normal reassessment)내에 경정되거나 납세의무자가 경정기간의 이익을 포기하는 경우

셋째, 납세의무자가 공제한도에 미치지 못하게 청구하여 추가로 자본비용공제를 요청하는 것과 같은 허용된 공제만에 근거하여 부과된 세액을 감액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넷째, 환급신청이 다른 납세의무자가 제기한 환급금 소송의 승소 사실에만 기초한 것이 아닌 경우

마.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Failure to file a return)

캐나다 연방소득세법은 신고·납부기한까지 소득세액의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또한 각 온전한 1개월에 대하여 해당 미납부세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나 그 최고 한도는 12개월

518) ITA: 164(6).

519) IC 75-7R3.

이다.⁵²⁰⁾

2) 과소신고 가산세(Failure to report an amount of income)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게 이전 3년 동안(in the preceding three years)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신고하지 않은 소득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그러나 부정신고 등에 의하여 보다 가중된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직전 3개 연도 이전에 무신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⁵²¹⁾

3) 부정신고 가산세(False statement or omission)

납세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이르는 사유로 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100 또는 과소신고세액(the difference in tax liability)의 5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⁵²²⁾ 이 규정은 조세채무에 대한 선의의 분쟁으로 인하여 신고에서 제외된 금액에 대하여서는 적용되지 않는다.⁵²³⁾

4) 가산세 조항 간의 관계(Interplay of penalty provisions)

무신고 가산세의 부과요건과 부정신고 가산세의 부과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된다. 해당 과세연도에 처음으로 무신고 또는 부정신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부정신고 가산세가 우선적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특정 3년 동안 반복해서 신고하지 않는다면 연방국세청은 소득의 1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부정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선

520)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4,020.10.

521) Id., at ¶ 14,020.20.

522) ITA: 163(2).

523)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4,020.30.

택할 수 있다.⁵²⁴⁾

5) 분납세액 납부불성실 가산세(penalty for late or deficient instalments)

과소납부하거나 지연납부하는 분납세액의 이자금액이 '\$1,000 및 분납하지 않을 경우의 이자의 25%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분의 5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⁵²⁵⁾

6) 제3자의 부적정 신고에 대한 가산세(Civil Penalties for misrepresentation of a third party)

타인의 세무와 관련하여 제3자가 오류를 범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⁵²⁶⁾ 이 가산세는 조세전문가, 감정평가사 및 조세회피수단 등 조세절약 스킴을 구상한 자를 겨냥한 것이다.⁵²⁷⁾ 이 가산세는 계획자에 대한 가산세(Planner's penalty)와 조력자에 대한 가산세(Preparer's penalty)로 구분된다. 계획자에 대한 가산세의 최소한도는 \$1,000이고 최대한도는 해당 계획수립에 대한 수수료 전액이다. 조력자에 대한 가산세는 무신고소득에 대한 세금의 50%이나 최소한도는 \$1,000이고 최대한도는 [수수료 전액+\$100,000]이다.⁵²⁸⁾

7) 가산세 및 가산금 감면

캐나다 연방국세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불성실을 자발적으로 이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상황 하에서도 납세

524) ITA: 163(1), 163(2).

525) ITA: 161, 163.1.

526) ITA: 163.2.

527)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4,020.60.

528) ITA: 163.2(2), (3), (4), (5).

의무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⁵²⁹⁾

첫째, 납세의무자 또는 사용자가 지배할 수 없는 상황에 기인한 경우(천재지변, 우편 파업, 심각한 질병 또는 사고 혹은 심각한 감정상·정신상 곤경)

둘째, 과세관청의 절차 지연, 국세청 자료의 오류, 국세청 조언의 오류, 국세청 사무처리상 오류 또는 국세청의 정보 제공상 오류가 있는 경우

셋째, 과중한 이자 부담으로 인하여 합리적으로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상환약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조세 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감면이 필요한 경우

바. 조세범

직접한 시기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 이외에 약식판결(summary conviction)에 의하여 \$1,000에서 \$25,000까지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그 벌금형 및 12개월까지의 징역형이 병과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약식판결에 의하여 포탈된 세액의 50% 내지 200%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그 벌금형 및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병과될 수 있다.

첫째, 허위 소득신고서의 작성

둘째, 회계장부 및 기록의 파괴

셋째, 회계장부 및 기록의 위조

넷째, 연방 고의적인 조세회피

다섯째, 위 네 경우에 대한 공모

사. 세액의 납부

세액의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개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은 과세연도 종료 후 2개월까지, 직전연도의 사업제한에 따른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소규모사업공제를 청

⁵²⁹⁾ ITA: 220(3.1), IC 07-1.

구하는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은 과세연도 종료 후 3개월까지, 신탁의 경우에는 과세연도 종료 후 90일까지 각 납부하여야 한다.⁵³⁰⁾

아. 분납

1) 분납 요건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은 분납을 할 수 없으나, ‘2013년도 연도’ 및 ‘직전 2개 과세기간 중 한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순납부세액(net tax owing)이 \$3,000을 넘는 경우에는 분납을 허용한다.⁵³¹⁾ 순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신고서 및 조세혜택 신고서상(on income tax and benefit return)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의미한다.

2) 분납액 및 분납시기

매 분기 15일까지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각 분납세액은 다음과 같은 금액 중 제일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첫째, 당해 연도 추정납부세액(the estimated tax payable for the current year; current year option)의 4분의 1

둘째, 직전 연도 분납기준금액(the installment base for the immediately preceding year; prior year option)의 4분의 1 및

셋째, 3월과 6월의 경우에는 2년 전 과세기간의 분납기준금액의 4분의 1, 9월과 12월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분납기준금액의 2분의 1에서 3월 및 6월의 분납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no calculation option)⁵³²⁾

530) ITA: 248(1).

531) ITA: 156, 156(1).

532)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4,035.20.

자. 환급

납세의무자의 과오납에 따른 환급금액을 국세청장이 결정한다.⁵³³⁾ 국세청장은 환급금액을 재량에 따라 지급할 수 있지만, 일반 경정기간(the normal reassessment period) 중에 납세의무자가 서면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⁵³⁴⁾ 그러나 국세청장에게는 일반 경정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환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⁵³⁵⁾ 환급에 관한 제척기간은 10년이며, 환급금 수표(refund cheques)는 부과통지서(notices of assessment)와 함께 발송(mailed out)된다.⁵³⁶⁾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다음 중 가장 최근 일자를 기산일로 하여, 일할로 법이 정하는 비율에 의하여 복리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첫째, 과다납부가 있던 일자,

둘째, 개인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후 30일(30 days after the balance-due day for the year),

셋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후 120일,

넷째, 신고기일 후 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개인의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30일,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일로부터 30일.⁵³⁷⁾

8. 원천징수제도

가. 개요

캐나다 연방소득세법상 특정 유형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에서 세액

533) ITA: 152.

534) ITA: 164.

535) ITA: 164(1.5).

536)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4,120.

537) ITA: 164(3).

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소득세, CPP 불입금, 고용보험보험료(EI premium) 등을 원천징수하여 자산의 고용보험료 및 CCP부담금을 함께 세입징수관(Receiver General)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일단위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대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자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⁵³⁸⁾

이하에서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원천징수금액의 납부기한 등 제도상의 관련 규정에 대해서 기술한다.

나.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 등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지급금⁵³⁹⁾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1-15〉 원천징수 되는 지급금

1	봉급, 임료 및 기타 보수(Salary, wages, or other remuneration)
2	연금혜택(Superannuation or pension benefit)
3	퇴직수당(retiring allowance)
4	사망혜택(death benefit)
5	실업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혜택(a benefit under the Unemployment Insurance Act or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6	보충적 실업플랜의 혜택(supplementary unemployment plan benefit)
7	완전 또는 부분적 연금대체에 따른 연금 및 지급금 (annuities and payments in full or partial commutation of annuities)
8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 수수료 등 기타 지급금 (fees, commissions or other amounts for services rendered)
9	이연이익공유플랜(deferred profit sharing plans)에 따른 지급금 (payments from deferred profit sharing plans)
10	적격퇴직저축플랜에 따른 지급금 (payments from a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538) Canadian Master Tax Guide, at ¶ 12,110.

539) Id.

〈표 2-1-15〉의 계속

11	소득평준화 연금계약의 포기, 취소 또는 상환에 따른 지급금 (payments on surrender, cancellation, or redemption of an income-averaging annuity contract)
12	등록퇴직소득기금으로부터 지급되는 지급금 (payments out of a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13	정부보장프로그램에 따라 지급되는 법정 혜택 (prescribed benefits under government assistance programs)
14	법정 형식에 따라 원천징수 적용을 선택한 자에 대한 지급금액 (amounts paid to any person who has elected in prescribed form in respect of such amounts)
15	비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된 용역에 대한 지급금 (services to be performed by non-residents)
16	퇴직보상약정에 관한 지급금 (payments relating to retirement compensation arrangements)
17	연방정부 지원 프로젝트에 기한 사회부조금으로서 수취한 근로소득 보조금 (employment earnings supplements received as social assistance under projects sponsored by the federal government)
18	등록교육저축플랜에 따른 지급금 (payments under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s)
19	등록장애저축플랜에 따른 지급금 (payments from a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다. 징수 및 납부

각 월별로 원천징수된 금액은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월평균 원천징수금액이 \$15,000에서 \$50,000인 경우에는 달에 두 번, 월평균 원천징수금액이 \$5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 후 3영업일 이내 (within three working days of the pay period)에 납부하여야 한다.⁵⁴⁰⁾ 직전 2개 역년 중 하나에 있어서 월별 원천징수금액이 \$3,000 미만이고 직전 12개월간 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540) Id.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원천징수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⁵⁴¹⁾

원천징수세액은 금융기관 또는 각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수표(chèque) 또는 송금 수표(money order)를 국세청 본청에 우편 송부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는 Form PD7A에 따라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중단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대기업 등 법정 원천징수의무자들은 지정된 금융기관(a designated financial institution)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⁵⁴²⁾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자 등 원천징수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의 소득구간에 따라 달리 결정되며,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된다. 다만, 근로자가 어느 사업장에서 근무하는지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보수를 지급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⁵⁴³⁾

주소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기초 연방세액의 일정 비율로 표시된다. 연방정부는 주 정부를 대리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주정부로 송금하지만 Quebec주는 자체적으로 원천징수한다.⁵⁴⁴⁾

다만, Form TD1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동안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모든 원천의 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에 적용될 수 있는 인적 세액공제액을 초과하지 않는 사실을 입증하면, 해당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⁵⁴⁵⁾

라.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는 1회 발생 시, 원천징수 해야 할 세액의 10% 상당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2회 이상부터는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의 20% 상당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대

541) Id.

542) Id. at ¶ 12,115.

543) Id. at ¶ 12,120.

544) Id. at ¶ 12,135.

545) Id. at ¶ 12,140.

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1일 내지 3일 지연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 4일 내지 5일 지연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5%, 6일 내지 7일 지연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7%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또한 7일을 초과하여 지연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⁵⁴⁶⁾

마. 상여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

상여금(bonus)이나 또는 소급적인 급여 인상의 경우(a retroactive pay increase), 근로자의 위 각 금원을 포함한 총보수가 \$5,000 이하라면, 캐나다 내 각 주 및 지역에서는 10% 세율로, 캐나다 밖 또는 어느 주 또는 지역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1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또한 근로자의 위 각 금원을 포함한 총보수가 \$5,00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연도별 가정급여율(assumed rate of pay per year)에 근거하여 결정된다.⁵⁴⁷⁾

바. 일시금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캐나다 거주자에게 퇴직 당시 장기간 용역의 제공을 감안하여 연금기금 또는 연금플랜에 기하지 않고서 직무종료에 대한 보상으로서 일시금을 지급하거나 퇴직수당으로서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5,000을 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10%(Quebec주는 5%), 해당 금액이 \$5,000을 초과하고 \$15,000 이하에 해당하면 해당 금액의 20%(Quebec주는 10%), 해당 금액이 \$15,000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의 30%(Quebec주는 15%)를 원천징수한다. 동일한 세율이 소득평준화 연금계약, 등록 퇴직저축플랜(RRSP) 또는 수정 RRSP에 기한 일시금에도 적용된다. 사망혜택으로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보통법상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사망혜택은 \$10,000 및 마지막 1년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봉급 중 적은 금액만큼 감소

546) Id. at ¶ 12,155.

547) Id. at ¶ 12,165.

된 일시금으로 본다는 점 이외에는 동일한 원천징수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일시금이 근로자의 연금소득 또는 적격연금소득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 대상금액은 \$1,000 및 지급금액 중 적은 금액만큼 감소된다.⁵⁴⁸⁾

사.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

캐나다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고용된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그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다만,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고용된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용역이 캐나다 내에서 제공되었다면, 15%로 원천징수된다. 이는 캐나다와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 간 체결된 조약 내용과 무관하게 적용된다.⁵⁴⁹⁾

비거주자가 영화 또는 비디오 배우이거나, 그들이 속한 법인인 경우에는 지급금의 23%를 원천징수하나 이들은 그 대신에 순소득에 대하여 정규적인 Part I 세금을 납부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비거주자에 대하여 이자, 배당, 사용료 및 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비거주자가 Part XIII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는 Part I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⁵⁵⁰⁾

548) Id. at ¶ 12,170.

549) Id. a ¶ 12,175.

550) ITA: 212; IC 76-12R6, IC 77-16R4.

II. 법인소득세

1. 서론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개인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시에 적용되는 규정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법인을 통하여 영업하는 경우 보다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 신탁 및 개인기업의 경우 모두 같은 원칙에 기반하여 과세된다.

다만 소득세법의 Subdivision d(기타 원천소득)와 Subdivision e(비용의 공제)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과세대상 양도소득의 계산 및 양도손실의 공제에 관한 Subdivision c규정들 역시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되나 양도소득공제(Capital gains deduction; Section 110.6) 규정은 개인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는 점에 차이를 보인다.

한편 Division B의 수익과 Division C의 각 구성항목 역시 법인과 개인기업은 차이를 보이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⁵⁵¹⁾

551)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1,010.

〈표 2- II -1〉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의 차이

소득의 성격	개인	법인
근로소득	***	— ¹⁾
사업소득	***	***
양도손익	***	***
기타소득	***	— ¹⁾
기타공제	(***)	— ¹⁾
Division B 소득	***	***
Division C 공제	(***)	(***)
과세표준	***	***

주: 1) 법인의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기타소득과 기타 공제항목의 대부분은 법인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위 표의 Division C의 공제항목은 개인과 법인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⁵⁵²⁾

〈표 2- II -2〉 Division C의 공제항목에서 개인과 법인의 차이

조문	공제항목	개인	법인
Par. 110(1)(d), (d.1)	근로자 주식매수선택권 (Employee Stock Options)	X	
Par. 110(1)(f)	특정 사회부조금 공제 (Deductions for social assistance payments)	X	
Par. 110(1)(j)	이사관련 대출(home relocation loan)	X	
Par. 110.1(1)(a)	기부금(charitable Gifts) ¹⁾		X
Par. 110.1(1)(a.1)	의약품 기부(Gifts of medicine)		X
Par. 110.1(1)(b)	채무성에 대한 기부(Gifts to Her Majesty) ¹⁾		X
Par. 110.1(1)(c)	기관에 대한 문화재 기부 (Gifts of cultural property to institutions) ¹⁾		X

552) Id., at ¶ 11,020.

〈표 2-11-2〉의 계속

조문	공제항목	개인	법인
Par. 110.1(1)(d)	환경적 기부(ecological gifts) ¹⁾		X
Sec. 110.2	일시금 지급(Lump-sum payments)	X	
Sec. 110.6	양도소득공제(Capital gains deduction)	X	
Par. 111(1)(a)	비양도손실의 이월공제 (Carryover of non-Capital losses)	X	X
Par. 111(1)(b)	순양도손실의 이월공제 (Carryover of net Capital losses)	X	X
Par. 111(1)(c)	제한된 농장결손금의 이월공제 (Carryover of restricted farm losses)	X	X
Par. 111(1)(d)	농장결손금의 이월공제 (Carryover of farm losses)	X	X
Par. 111(1)(e)	합자조합손실의 이월공제 (Carryover of limited partnership losses)	X	X
Sec. 112	캐나다 내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Dividends from Canadian corporation)		X
Sec. 113	외국관계회사로부터의 배당 (Dividends from foreign affiliates)		X

주: I. X는 해당사항 있음

1) 개인의 경우에는 subsection 118.1(3)에 따라 환급불능 세액공제로서 이용가능함.

2. 납세의무자

캐나다 법인세의 목적상 법인은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첫째, 비상장법인(a private corporation)

둘째,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a 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셋째, 상장법인(a public corporation)

넷째, 상장법인이 지배하는 법인(a corporation controlled by a public corporation)

다섯째, 기타 법인(other corporation)

가. 비상장법인(a Private Corporation)

비상장법인은 캐나다 거주자로서 하나 이상의 상장법인(또는 federal Crown corporation)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는 법인을 말한다.⁵⁵³⁾

나.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a 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CCPC)

CCPC는 캐나다 내국법인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1인 이상의 비거주자, 하나 이상의 상장법인 또는 위 형태의 결합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는 비상장법인을 말한다. CCPC의 어떠한 종류의 주식도 정규 증권거래소(designated stock exchange)에서 거래되지 않는다.⁵⁵⁴⁾

CCPC의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공제(small business deduction)를 받을 수 있고 그 법인에 대한 개인투자자는 양도소득공제(Capital gains deduction)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과 주주 사이의 경제적 이중과세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조정되는 이점을 갖는다.⁵⁵⁵⁾

다. 상장법인(a Public Corporation)

상장법인은 캐나다의 내국법인으로서 주식이 재무부 장관(Minister of Finance)에 의하여 승인된 정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⁵⁵⁶⁾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비상장법인이 이용할 수 있는 조세혜택을 전혀 향유할 수 없고, 법인과 주주 사이의 경제적 이중과세는 거의 완전하게 조정된다.⁵⁵⁷⁾

553) ITA: 89(1)

554) ITA: 125(7)

555)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1,215.

556) ITA: 89(1)

557)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1,215.

3. 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

가. 법인의 과세소득 일반

법인의 과세표준은 Division B에 따라 계산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출발하여 계산된다. 법인의 GAAP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 소득은 세법의 목적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세무조정 절차(reconciliation process)라고 하고, 이는 Schedule 1에서 이루어진다.⁵⁵⁸⁾

나. 비과세단체에 대한 소득

캐나다 소득세법 Part I에서 과세되지 않는 단체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⁵⁵⁹⁾

- 지방자치단체
- 왕립법인, 위원회 또는 법인으로는 단체(Crown corporations, commissions, or associations)
- 농업 관련 조직(agricultural organizaions),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 또는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 등록된 자산단체들
- 사회적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노동 관련 조직들
- 자선단체가 아니지만 조직을 갖추고 있고 사회복지, 도시개발(civic improvement), 또는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는 비영리 클럽, 결사 또는 협회(non-profit clubs, societies or accociations)
- 연금신탁 및 법인
- 등록된 퇴직저축플랜 또는 이연된 이익공유플랜에 따른 신탁

558) ITA: 110-112

559) ITA: 149(1), (5)

- 등록된 교육저축플랜
- 등록된 퇴직소득기금

4. 비용공제 및 세액공제 등

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특정 수입배당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가 가능하다.⁵⁶⁰⁾ Division B의 Subdivision b에 따라 배당금은 익금산입되는 것이나 위 공제액을 이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바, 이로 인하여 적격 배당금은 법인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⁵⁶¹⁾ 적격 배당은 다음과 같다.

- (1) 캐나다 과세법인(taxable Canadian corporations)⁵⁶²⁾
- (2) 캐나다 거주자인 과세 자회사(taxable subsidiary corporations resident in Canada)⁵⁶³⁾
- (3) 캐나다에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인해 캐나다에서 과세되는 비거주자인 법인들⁵⁶⁴⁾
- (4) 캐나다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외국에서 적절하게 과세되는 외국관계회사(foreign affiliates)⁵⁶⁵⁾

나. 기부금공제(Charitable Donations)

개인의 경우에는 다양한 기부금에 대하여 불환급 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법인의 경우에는 Division C에 근거하여 비용공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의 종류는 세액공제의 혜택이 부여된 개인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러한

560) ITA: 112(1)

561)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1,020.

562) ITA: 112(1) (a)

563) ITA: 112(1) (b)

564) ITA: 112(2)

565) ITA: 113

비용공제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Division B에 의하여 계산된 사업연도소득의 75%이다. 그러나 가치가 증가된 자본자산(appreciated Capital property)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100%를 공제한도로 한다. 또한 감가상각대상인 자본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때 발생하는 CCA recapture의 100%를 공제한도로 하며, 위 한도에는 또한 Subsection 40(1.01)에 따라 이전 과세연도에 자산 처분에 따라 발생한 각 과세대상 자본이득(taxable capital gain)의 모든 합계액이 포함된다.⁵⁶⁶⁾

다. 소규모 사업공제(Small Business Deduction)

소규모 사업공제는 캐나다에서 수행된 적극적 사업(active business)을 통하여 가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의미한다. 소규모 사업공제를 받기 위하여서는 적극적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연도에 대하여 캐나다 지배 비상장법인(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이어야 한다. 그 공제액을 결정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⁵⁶⁷⁾

소규모 사업공제는 다음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의 17%로 정하여진다.

첫째, 순캐나다 사업소득금액

둘째, 전체 과세표준에서 추정 외국원천소득[[투자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환급세액을 감안하지 않고서 결정된 외국비사업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에 10/3을 곱한 금액으로 추정된 외국원천소득]+[외국사업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에 적정 추정치(2011년의 경우에는 3.77%)를 곱하는 방법으로 추정한 외국원천소득]+[법에 의하여 Part I 세금으로부터 면제된 과세표준]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캐나다에서 완전하게 과세되는 과세표준

셋째, 사업한계(business limit)[예를 들어 \$500,00에서 관계기업에 배분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

위 공식에서 둘째 부분은 외국납부세액이 적용되는 소득과 과세되지 않는 소득에

566) ITA: 110.1(1)

567) ITA: 125, 126, 248(1)

대하여서는 소규모 사업공제를 적용하지 않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⁵⁶⁸⁾

대규모 캐나다 지배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공제가 감축된다. 즉, 소규모 사업공제는 소규모 사업공제에 대한 사업한계인 \$500,000에서 [\$1천만 초과하는 캐나다 내 과세대상인 자본(taxable Capital)의] 매\$10당 \$1 만큼씩 축소된다.⁵⁶⁹⁾ 캐나다 내 과세대상인 자본(taxable Capital)은 ITA 181.2(2)-(5)에 정의되어 있다.

라. 제조가공공제(Manufacturing and Processing Profits Deduction: M&P공제)

캐나다에서의 제조 및 가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의 공제혜택을 부여한다. 그 실질은 세액공제이다. 공제금액은 캐나다에서 과세되는 다른 사업소득에 대한 일반적 세율 감경분과 동일하다. M&P 공제는 주로 연방 차원에서 계산된 M&P 이익에 근거하여 주 차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에 대하여 M&P 공제를 부여하는 주의 입장을 수용하기 위하여 연방세법에 존재한다.⁵⁷⁰⁾

제조가공공제는 제조가공사업 이익이 소규모 사업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므로 소규모 사업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서는 제조가공공제를 받을 수 없다.⁵⁷¹⁾

마.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Deduction)

외국납부세금공제는 캐나다 거주자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캐나다와 해당 외국에서 이중과세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이를 비사업소득 세액공제(non-business income tax deduction)와 사업소득 세액공제(business income tax deduction)로 나누어서 본다.

568)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2,150.30.

569) ITA: 125(5.1), Part I.3

570)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1,310.

571) ITA: 125.1(1)

1) 비사업소득 세액공제(non-business income tax deduction)

납세의무자가 외국원천의 비사업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중 적은 금액을 캐나다 납부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⁵⁷²⁾

- ①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된 외국 비사업소득 세금
- ② {외국 비사업소득(Division B에서 따라 계산된)/{당해 사업연도의 모든 원천의 소득(Division B에서 따라 계산된)+(-) 특정 금액}}×sec. 126(7)에 따라 계산된 납부된 세금

Sec. 126(7)에 따라 계산된 납부된 세금은 법인의 경우 연방세액에서 10% 경감분과 일반적인 세금 감경분(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을 제외함)을 차감한 세액을 의미한다.

2) 사업소득 세액공제(business income tax deduction)

납세의무자가 외국원천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중 적은 금액을 캐나다 납부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⁵⁷³⁾

- ① 특정 국가에서 법인이 아닌 형태의 지점을 통하여 수행된 모든 사업활동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세액에 동일한 국가에서 발생한 미사용 외국납부세액공제분을 더한 금액
- ② {외국 비사업소득(Division B에서 따라 계산된)/{당해 사업연도의 모든 원천의 소득(Division B에서 따라 계산된)+(-) 특정 금액}}×연방세액 감경분 및 다른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이전의 연방세액
- ③ 위 연방세액 감경분 및 다른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이전의 연방세액에서 subsection 126(1)에 따른 비사업소득 세액공제를 한 이후의 납부세액

572) Id., at ¶ 11,310-11,320.

573) Id., at ¶ 11,335.

바. 연방 정치헌금 세액공제(Federal Political Tax Credit)

연방 정치헌금 세액공제는 개인의 경우와 동일하다.

사.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ITC)

ITC는 1975년 임시적인 투자유인책으로서 도입된 이래 축소되어 왔다. 그러나 네 가지 형태의 ITC는 캐나다 모든 주에 대하여 적용된다.

첫째, 과학적 탐구 및 실험비용공제(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expenditures).

둘째, 견습직고용 세액공제(apprenticeship job creation tax credit).

셋째, 육아시설 세액공제(child care tax credit).

넷째, 사전 채굴비용공제(pre-production mining expenditure)

ITC는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비용지출액에 대하여 특정 비율을 곱하거나 각 범주에 대하여 설정된 제한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산출한다.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주장된 세액공제액은 자산의 취득 또는 SR&ED 지출이 있는 이후 사업연도에서 공제되며 특정 연도에 사용되지 않은 세액공제액은 이월된다.⁵⁷⁴⁾

1) 과학적 탐구 및 실험비용공제(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expenditures: SR & ED)

SR & ED는 잠재적으로 전액이 손금에 산입될 수 있으며 또한 그 지출액에 대하여 20%의 세액공제(2013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15%) 역시 가능하다. 나아가 많은 주 정부는 SR & ED에 대하여 부가적인 유인책을 제공한다.

적격 SR & ED는 신규 자산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이는 ITA에서 규정한다. 제외된

574) Id., at ¶ 11,345.10.

항목은 ITR에서 열거한다. ITA는 임차권(leasehold interest)을 포함한 빌딩(법이 정하는 특정 목적의 빌딩은 제외한다(3)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출 또는 타인을 통한 지출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⁵⁷⁵⁾

다만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의 경우에는 위 지출이 발생한 연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15%의 세액공제(2013년 12월 31일부터는 20%)를 받을 수 있다.⁵⁷⁶⁾ 추가적인 15% 세액공제(2013년 12월 31일부터는 20%)는 해당 법인과 관계기업의 과세표준이 소규모 사업공제 한도인 \$50만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의 적격 지출 합계액을 그 한도로 한다. 해당 법인과 관계기업의 과세표준이 \$50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1에 대하여 \$10을 \$300만에서 공제한다.⁵⁷⁷⁾

또한 적격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해당 법인과 관계기업의 과세표준이 소규모 사업공제 한도인 \$50만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의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분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그 한도는 다음과 같다.⁵⁷⁸⁾

첫째, 당해 연도의 지출공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적격 current SR & ED에 근거한 35% ITC의 100% 현금 환급

둘째, 적격 자본 SR & ED에 근거한 35% ITC의 40% 현금 환급

셋째, 당해 연도의 지출공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적격 current SR & ED에 근거한 20% ITC의 40% 현금 환급

2) 견습직 비용 세액공제(apprenticeship expenditure tax credit)

견습직 고용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ITC는 적격 거래에 있어서 견습직을 새롭게 고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자는 적격 견습공에 대하여 지급한 보수의 10%에 대하여 환급 불가능한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는다. 적격 보수는 견습직으로서 근무한 첫 24개월에 대하여 지급된 보수를 의미한다. 성과급, 상여, 부가급여(fringe

575) ITA: 127(9), 37(1)(a)(b), 37(8)(d); ITR: 2902, 2903

576) ITA: 127(10.1)

577) ITA: 127(10.2)

578) ITA: 12(1)(f), 13(7.1)

benefits) 및 주식매수선택권은 제외된다. 매년 견습직 1인당 공제한도는 \$2,000이다. 미사용 공제액은 3년 소급공제되고 20년 이월공제된다.⁵⁷⁹⁾

견습직이 둘 이상의 특수관계인 법인에 의하여 고용되는 경우에는 그 공제한도는 \$2,000로 제한된다.⁵⁸⁰⁾

3) 육아시설 세액공제(child care tax credit)

근로자 또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육아시설을 설치하는 법인에 대하여서는 다음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의 혜택이 부여된다.⁵⁸¹⁾

① \$10,000

② 육아시설에 대한 적격 지출액의 25%

육아시설에 대한 적격 지출액은 근로자들 자녀 및 다른 자녀들을 위하여 운영되는 허가받은 육아시설에 새로운 공간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의미한다.

4) 사전채굴비용공제(Pre-production mining expenditure)

납세의무자가 캐나다의 과세법인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지출한 사전채굴비용(pre-production mining expenditure) 중 특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5. 자본공제제도

자본비용공제는 Subdivision b의 비용항목으로서 Section 20에서 특별히 정하는 비용항목에 해당한다. 그런데 Subdivision b의 Sections 9-20은 사업 또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결손에 대하여 적용되는바, 이 조문들은 해당 소득을 얻기

579) ITA: 127(11.1)(c.4), 127(9)

580) ITA: 127(11.4)

581) ITA: 127(9)

위한 사업 실체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⁵⁸²⁾ 즉 해당 규정들은 법인, 신탁 및 개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Section 20에 해당하는 자본비용공제에 관한 규정은 법인에 대하여서도 개인의 자본비용공제에 대한 부분⁵⁸³⁾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6. 조세지원제도

캐나다의 소규모 사업공제는 캐나다에서 수행된 적극적 사업(active business)을 통하여 가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으로서 이는 캐나다에서 적극적 사업(active business)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제조가공공제는 캐나다에서의 제조 및 가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의 공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캐나다는 투자유인을 위한 조세지원책으로서 다음 네 가지 형태의 투자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첫째, 과학적 탐구 및 실험비용공제(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expenditures).

둘째, 견습직고용 세액공제(apprenticeship job creation tax credit).

셋째, 육아시설 세액공제(child care tax credit).

넷째, 사전채굴비용공제(pre-production mining expenditure)

소규모 사업공제와 제조가공공제는 위 법인에 대한 비용공제 부분에서, 투자세액 공제는 위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582)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1,010.

583) 제2편 II-5, 가-4) 참조

7. 손실

가. 이월결손금공제(Loss Carryovers)

양도차손의 공제 가능성 및 비양도차손 결손금(non-Capital losses)의 공제에 대한 규정은 개인과 법인에 있어서 같다. 유동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은 양도차익과 비양도차손 결손금이 포함된 이전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공제될 수 있다. 그 경우 양도차손은 양도차익과 상계되며 이로 인하여 이전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도차손이 아닌 결손금의 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그 줄어든 결손금은 당해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비양도차손 결손금, 제한된 범위의 농장결손금 및 2006년 이후 발생하는 농장결손금에 대한 공제기간은 20년이다.⁵⁸⁴⁾

법인의 경우 양도차손이 아닌 결손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⁵⁸⁵⁾

〈표 2-Ⅱ-3〉 양도차손이 아닌 결손금 계산

가산항목	사업상 결손금 (losses from business)	
	자산에 기인한 결손금 (losses from property)	
	공제가능 사업투자결손금(allowable business investment losses)	
	당해 연도에 공제된 순양도차손 (net Capital losses deducted in the year)	
	sec. 112에 따라 공제가능한 배당금 (다른 특정 배당금 역시 포함)	

584) ITA: 111

585)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1,060의 표를 변형한 것이다.

〈표 2-11-3〉의 계속

차감항목	사업상 소득금액 (income from business)	
	자산에 기인한 소득(sec. 112에 따라 공제가능한 배당금을 포함)	
	secs. 56-59에 규정된 다른 원천소득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열거된 동산에 기인한 것을 제외함)	
	열거된 동산에 기인한 과세대상인 양도 차익	
	차감항목	공제가능한 양도차손에 포함된 공제가능 사업투자손실을 초과하는 공제가능 양도차손 (열거된 동산에 기인한 것을 제외함)
	차감항목	secs. 60-66에서 규정하는 다른 공제항목
차감항목	위 사업상 손실에 포함된 농장결손금	
비양도차손 결손금		\$ XXX

사업투자손실(business investment loss: 이하 ‘BIL’)은 소규모 회사(small business corporation)의 주식 또는 채권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을 의미한다.⁵⁸⁶⁾ 공제가능 사업투자손실(allowable business investment loss: 이하 ‘ABIL’)은 BIL의 2분의 1로 정의된다. ABIL은 공제가능 양도차손과 달리 실현된 연도에 다른 원천의 소득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다. 비양도차손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에 이용되지 못한 ABIL은 공제기한에 제한이 없는 순양도차손(net Capital losses: 이하 ‘net CL’)에 더하여진다.⁵⁸⁷⁾

법인의 경우 net CL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⁵⁸⁸⁾

586) ITA: 39(1)(c), 248(1)

587) ITA: 3(d), 38(c).

588)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1,075.20.

〈표 2-Ⅱ-4〉 Net CL(순양도차손) 계산

열거된 동산에 기인한 양도손실과 ABIL에서 제외된 공제가능 양도손실	
차감항목	열거된 동산에 기인한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포함하는 과세대상 양도소득
가산항목	20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ABIL
net CL	\$ XXX

열거된 동산에 기인한 양도손실은 Division C가 아닌 Division B에서 공제되므로 net CL의 정의에서 제외한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이월결손금을 얼마만큼 사용할지 또는 어느 순서로 사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형태의 소득[비양도차손 결손금, 순양도차손, 제한된 범위의 농장결손금(restricted farm loss) 및 2006년 이후에 발생하는 농장결손금]은 결손이 발생한 연도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⁵⁸⁹⁾ 이러한 형태의 제한을 ‘streaming’이라고 한다.⁵⁹⁰⁾

이하에서는 Division C상 이월공제에 관한 규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⁵⁹¹⁾

589) ITA: 111(3)

590)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1,080.

591) Id.

〈표 2-Ⅱ-5〉 Division C상 이월공제

공제항목	공제대상 소득	공제의 종류	
		소급공제	이월공제
배당금	모든 형태	— ¹⁾	— ¹⁾
기부금	모든 형태	0	5
손 양도손실	과세대상 순양도차익	3	무제한
비양도차손 결손금	모든 형태	3	7/10/20 ²⁾
제한된 범위의 농장결손금	농장소득 (farm income)	3	10/20 ³⁾
농장결손금	모든 형태	3	10/20 ³⁾

주: 1) 기술적으로 어떠한 이월공제규정들도, 비록 배당이 비양도차손 이월결손금 잔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배당을 특정하여 그에 대하여 적용되지는 않는다.

2) 2004년 3월 22일 이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서는 10년, 그리고 2005년 이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서는 20년

3) 2005년 이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서는 20년

나. 법인의 지배권취득과 결손금

법인의 지배권이 양도된 경우 비양도차손 결손금 또는 농장결손금의 소급공제 및 이월공제는 엄격하게 제한된다. 게다가 지배권의 이전 당시까지 사용되지 않은 순양도손실, 자산에 기인한 손실 및 ABIL은 이월공제되지 않고 소멸한다.⁵⁹²⁾

지배권의 이전에 따르는 손실공제에 대한 제한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⁵⁹³⁾

첫째, 순양도손실, ABIL, 자산손실과 미사용된 기부금공제는 소멸하고 의제사업연도 이후로 공제되지 않는다.

둘째, 다양한 종류의 기발생 손실은 실현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순양도손실과 농장결손금을 증가시키고, 순양도손실과 농장결손금으로서의 공제가 가능 기한에 대한 시간상 제한의 적용을 받게 된다.

592) ITA: 111(4), 111(5), 111(5.1), 111(5.2), 111(5.3)

593)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1,155.

셋째, 특정 사업의 결손금을 특정 사업 및 소규모 사업의 소득에 대응시키는 streaming principle은 순양도차손과 농장결손금이 그 정하여진 공제기한 내에 공제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8. 세율 및 세액의 계산

모든 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연방세율은 38%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정될 수 있다.⁵⁹⁴⁾

첫째, 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세율 감경(general tax rate reduction).

둘째, 주소소득세의 인식에 따른 연방세율의 10% 감경(10% abatement from federal tax payable, in recognition of provincial income taxes).

셋째, 소규모 사업공제(small business deduction)와 특정 법인에 대한 제조가공공제(manufacturing and processing deduction for certain corporations).

넷째, 외국납부세액공제.

다섯째, 정치헌금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및 견습직 고용세액공제(apprenticeship job creation tax credit)를 포함하는 다른 세액공제.

위 다섯 가지 사유 중 셋째에서 다섯째 부분은 비용공제 및 세액공제부분에서 살펴 보았다. 여기서는 위 첫째와 둘째 사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한편 각 주 역시 법인의 과세표준에 부가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각 주마다 상이하나 그 세율은 통상 2.5%에서 16%에 이른다.⁵⁹⁵⁾

594) ITA: 123, 123.2-127

595)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1,215-11,255.

가. 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세율 감경

거주자가 아닌 법인으로서 일반적으로 특정한 형태의 공제의 조세혜택을 받지 않은 온전한 과세표준(full-rate taxable income)에 대하여 과세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온전한 과세표준에 일반적 세율 감경비율(general rate reduction percentage)을 곱한 금액만큼 세액에서 감경한다. 온전한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형태의 공제(제조가공공제 및 소규모 사업공제 등)의 조세혜택을 받지 않은 과세표준을 의미한다. 즉, 제조가공공제 및 소규모 사업공제 등의 조세혜택을 부여받지 못한 법인의 경우에도 위 일반적인 세율 감경의 혜택은 받을 수 있다. 2011년의 일반적 세율 감경비율은 11.5%이고 2012년 이후에는 13.%이다.⁵⁹⁶⁾

나. 주 소득에 대한 연방세액의 감경

캐나다의 모든 provinces와 territories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세율은 각각 다양하다. 주법인세의 계산 목적상 과세표준은 연방법인세의 계산 목적상 과세표준과 다를 수 있다. 이와 같이 주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연방법인세의 10%를 감경한다. 즉, 주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기 위하여 연방법인세에서 10%를 감경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연방법인세와 주법인세의 부과방식에 대하여 예를 들어 본다. 주법인세의 계산 목적상 과세표준과 연방법인세의 계산 목적상 과세표준이 동일하고 주법인세율은 13%라고 가정한다. 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⁵⁹⁷⁾

596) ITA: 123.4.

597)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1,255–11,260.

〈표 2-11-6〉 연방법인세 감경에 따른 총유효세율

기본 연방세율	38.00%
주세에 대한 연방세율 감경	(10.00)
순연방세율	28.00%
2013년 일반적 연방세율 감경	(13.00)
순연방세율	15.00%
주세(가정에 따름)	13.00
총유효세율	28.00%

9. 비상장법인을 통한 사업소득 및 투자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Integration for Business and Investment Income of the Private Corporation)

가. 캐나다 소득세법상 이중과세의 조정

1) 그로스업(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

모든 캐나다 과세대상 법인의 개인주주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중과세 조정수단은 그로스업(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이다. 그로스업은 개인 주주가 수령한 배당 금액에 배당 가능 재원이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법인소득세(주법인세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로스업된 배당은 법인단계에서 세금이 부과되기 전 금액을 나타낸다. 주주들은 그로스업된 배당에 대하여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바, 이 경우 그로스업된 금액에 상당한 금액이 개인 주주가 납부할 세금에서 세액공제된다.

역사적으로 법인세율이 20%인 상황에서 이중과세가 조정되어 왔다. 이 경우 개인의 한계세율이 34%라면 그로스업 비율은 25%이고 그로스업된 금액은 배당세액공제로서 개인이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된다. 다만, 2013년 이후 지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그로스업 비율은 18%이다. 만약 법인세율이 29.1%이고 개인의 한계세율이 34%라면

그로스업 비율은 41%이다. 2012년의 경우 그로스업 비율은 38%이다.⁵⁹⁸⁾

그런데 그로스업(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는 적격 배당에 대하여 적용된다. 적격 배당은 다음 두 배당을 의미한다. 첫째, 캐나다 거주자이고 일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상장법인에 의하여 지급된 배당. 둘째, 캐나다 거주자인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 중 투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배당재원이고 그 사업소득에 대하여 일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범위에 속하는 배당, 즉 해당 법인의 일반세율 소득 풀(general rate income pool: GRIP)의 잔고 범위에 속하는 배당. GRIP은 [(직전 사업연도 말 GRIP 잔액)+(연방 및 주 법인세율을 합한 비율이 30%라는 가정하에 과세된 법인의 세후 사업소득; 2011년의 경우, 다만 2011년 이후에는 28%)+(다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적격 배당)-(직전 사업연도에 지급된 배당)]으로 계산된다. 적격 배당을 받는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은 적격 배당을 지급할 수 있고, 통상 적격 배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비적격 배당을 수령한 법인은 비적격 배당을 먼저 배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규칙들이 있다.⁵⁹⁹⁾

배당소득이 \$1,000이고 법인세율이 20% 또는 29.1%인 경우 배당세액공제금액의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⁶⁰⁰⁾

598) Id., at ¶ 12,040.

599) ITA: 89(1)

600)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2,045.

〈표 2-Ⅱ-7〉 Gross Up 및 배당세액공제금액 계산

법인세율	20%	29.1%
배당	비적격배당	적격배당
그로스업 금액에 근거한 계산		
그로스업 금액	200	291
연방세액공제금액		
그로스업 금액의 $\frac{13}{18}$	144	
그로스업 금액의 $\frac{6}{11}$		159
주배당세액공제금액(이론상 금액)		
그로스업 금액의 $\frac{5}{18}$	56	
그로스업 금액의 $\frac{5}{11}$		132
배당세액공제 합계금액	200	291
그로스업된 소득에 근거한 계산		
그로스업된 소득	1,000	1,000
연방세액공제금액		
그로스업된 소득의 11.0169%	110	
그로스업된 소득의 15.0198%		150
주배당세액공제금액(이론상 금액)		
그로스업된 소득의 8.9831%	90	
그로스업된 소득의 14.0801%		141
배당세액공제 합계금액	200	291

위 그로스업 금액이 \$200인 경우의 그로스업 비율은 25%(2013년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는 18%)이고, \$291인 경우의 그로스업 비율은 38%이다.

25%의 그로스업 비율(2013년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는 18%)이 적용되는 배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 사업공제를 받을 수 있는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의 적극적 사업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

둘째,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의 투자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

38%의 그로스업 비율이 적용되는 배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 사업공제를 받을 수 없는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의 적극적 사업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

둘째, 캐나다 거주자이고 일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캐나다 상장법인’ 및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가 아닌 다른 법인’들이 지급하는 배당.

다만 연방법인세율과 주법인세율을 합한 결합법인세율이 20% 또는 29.1%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 단계의 법인세와 주주 단계의 소득세가 완벽하게 조정되지 않는다.⁶⁰¹⁾ 소규모 사업공제가 적용되고 소규모 사업에 대한 주법인세율이 5%인 경우 해당 법인의 유효세율은 16%가 된다. 그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⁶⁰²⁾

〈표 2-11-8〉 소규모 사업공제

연방세율	38.00%
주세에 대한 연방세 경감	(10.00)
연방세 경감을 적용한 순연방세율	28.00%
소규모 사업공제	(17.00)
총연방세율	11.00%
소규모 적용대상 법인에 대한 이론상 주세율	5%
유효세율	16%

소규모 사업공제 이외에 ‘제조 및 가공공제’와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601) Id.

602) Id. at ¶ 12,110.

법인의 유효세율이 20% 미만일 수 있다. 다만, 소규모 사업공제가 적용되는 제조 및 가공소득에 대하여서는 제조 및 가공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유효세율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조세절약(tax savings)과 과세이연(tax deferral)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조세비용(tax costs)과 과세선급(tax prepayment)이 발생할 수 있다.

2)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을 통한 투자소득에 대한 세법상 취급

이하에서는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의 투자소득에 대한 세법상 특별한 취급에 대하여 살펴본다.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은 비상장법인으로서 통상 가족 구성원에 의하여 보유되는바, 그 법인을 투자소득을 유보하는 방법으로 과세이연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하여 통상 법인세율에 $6\frac{2}{3}\%$ 를 더하여 과세한다. 이는 비상장법인의 투자소득에 대한 세율을 개인의 최고 세율에 유사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⁶⁰³⁾ 이를 additional refundable tax(ART)라고 한다.⁶⁰⁴⁾ 위 세금은 주주에게 배당이 이루어질 때 환급된다.⁶⁰⁵⁾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의 투자소득에 근거한 배당에 대한 환급은 refundable dividend tax on hand account(RDTH)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RDTH는 포트폴리오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상장법인이 납부한 모든 세금(예를 들어 $33\frac{1}{3}\%$ 의 세율에 따른 Part IV 세금)과 다른 투자소득에 대하여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이 납부한 Part I 세금을 축적한 계정을 말한다. 또한 RDTH에는 직전 연도 말 RDTH 잔고에서 '법인이 과세대상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직전 연도의 'dividend refunds'를 제외한 금액 역시 포함된다. RDTH에 축적된 세금은 지급된 과세대상 배당금 \$3당 \$1의 비율로 환급되는데, 이를 dividend refunds라

603) Peter W. Hogg, Joanne E. Magee & Jin Yan Li, op. cit., at p. 515.

604)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2,340.

605) Peter W. Hogg, Joanne E. Magee & Jin Yan Li., op. cit., at p. 515.

고 한다.⁶⁰⁶⁾

나.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 갖는 장·단점

주주가 비상장법인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적극적 사업소득(active business income)과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으로 나눌 수 있고 위 법인을 통한 투자의 경우에는 법인 단계의 과세와 주주 단계의 과세가 발생하여 경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고 위 각 소득별로 경제적 이중과세가 조정된다.

“법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적극적 사업은 법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일체의 사업으로서 특정 투자사업 또는 인적 용역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거래의 성격상 모험 사업적 성격을 갖는 것(adventure or concern in the nature of trade)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특정 투자사업(specific investment business; SIB)은 “신용협동조합 사업 또는 부동산 이외 자산의 대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그 주요 목적이 이자, 배당, 임대료 및 사용료를 포함하는 자산소득을 얻는 것이고 5인 이상의 전업 종업원을 해당 사업연도 내내 고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인적 용역소득(personal services business; PSB)은 “법인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그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간접적으로 해당 법인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하나, 5인 이상의 전업 종업원을 해당 사업연도 내내 고용하는 사업 및 그 서비스를 관계법인(associated corporation)에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⁶⁰⁷⁾

이하에서는 각 소득별로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을 통하여 투자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장점 및 단점을 살펴본다.

606)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2,345.10.

607) ITA: 125(7).

1)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을 통한 적극적 사업소득의 경우
(Income from an Active Business of a CCPC)

가) 장점

비상장법인을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누릴 수 있는 세법상 장점은 다음과 같다.⁶⁰⁸⁾

첫째, 법인세율(combined corporate tax rate)이 20% 이하이면 tax savings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소규모 사업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사업소득에 대하여서는 보다 높은 개인소득에 대하여, 소규모 사업공제가 적용되는 소득의 경우에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셋째, 가족구성원을 근로자 또는 주주로 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인 상황하에서 소득분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넷째, 성장가치가 높은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다섯째, 주주 역시 법인의 근로자로서 확정급여플랜을 포함하는 등록연금플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섯째, 주식을 배우자에게 이전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곱째, 적격 소규모 법인(Qualified Small Business Corporation: QSBC)의 경우 양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규모 법인의 증권에 대하여서는 사업투자손실에 대한 별도의 취급을 받을 수 있다.

여덟째, 적격 소규모 법인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대체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양도소득의 과세이연 효과를 이용할 수 있다.

아홉째, 봉급을 통하여 소득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고 개인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의 수령 시점에 대하여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608) *Id.*, at ¶12,285.10.

나) 단점

비상장법인을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세법상 단점은 다음과 같다.⁶⁰⁹⁾

첫째, 법인세율(combined corporate tax rate)이 소규모 사업공제가 가능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20%를, 다른 사업소득에 대하여서는 29.1%를 상회하면, tax cost가 발생한다.

둘째, 소규모 사업공제가 가능하지 않은 사업소득에 근거한 보다 낮은 개인소득의 수준에서는 세금을 선납하는 효과가 있다.

셋째, 개인소득을 공제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상 결손금과 양도손실을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

2)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을 통한 투자소득의 경우(Income from Investment of a CCPC)

가) 장점

비상장법인을 통하여 투자소득에 대하여 세액 환급을 얻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법상 장점이 있다.⁶¹⁰⁾

첫째, 주주의 결합한계세율(combined marginal tax rate)이 $46\frac{2}{3}\%$ 보다 크다면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둘째, 몇몇 주의 경우 세액공제제도를 통하여 약간의 절대적 세금절감 효과(a negligible absolute tax saving)를 얻을 수 있고, 연방세율과 주세율의 결합세율이 $46\frac{2}{3}\%$ 미만인 경우에 적은 수준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셋째,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소득의 수령 시점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넷째, 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상속플랜을 세우기 쉽고 성장가치를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609) *Id.*, at ¶12,285.20.

610) *Id.*, at ¶12,405.10.

다섯째, 가족구성원을 근로자 또는 주주로 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인 상황하에서 소득분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여섯째, 캐나다법인에 외국자산을 두는 방법으로 외국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나) 단점

폐쇄법인을 통하여 투자소득을 얻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⁶¹¹⁾

첫째, 주주의 결합한계세율이 법인세율과 ART를 합한 것보다 적다면 세금을 선납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연방 및 주법상 법인세율의 결합세율이 $46\frac{2}{3}\%$ 를 초과한다면 추가적인 세금 비용이 발생한다.

셋째, 투자손실 또는 양도손실을 이용하는 것에 제약이 있다.

10. 법인의 이용 및 주주임원 보수의 사용 등과 관련된 쟁점들 (Planning the Use of a Corporation and Shareholder-Manager Remuneration)

가. 주주임원 보수와 관련된 쟁점

주주임원의 경우에는 주주의 자격으로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임원의 자격에 기하여 보수를 받을 수도 있다. 주주임원에게 보수로서 보상할 것인지 아니면 배당으로 보상할 것인지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법인소득에 적용되는 연방법인세율, 주법인세율 및 부가세(surtaxes)를 포함하는 법인세율
- 사업소득이 아닌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에 대하여 주주단계에서 적용되는

611) *Id.*, at ¶12,405.20.

개인소득세율(연방소득세율, 주소득세율 및 부가세(surtaxes)를 포함한다)

- 해당 배당이 41% 그로스업 비율 및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주주의 인적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금액
- 주주가 배당보다는 보수의 성격을 갖는 소득일 것을 요구하는 캐나다펜션플랜, 등록연금플랜 및 등록퇴직플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세전 법인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 배당(dividend)으로서 지급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세전 법인소득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 보수(salary)로 지급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해당 법인소득이 소규모 사업공제가 적용되는 것이고 주 법인세율이 약 9% 이하인 경우와 같이 총법인세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보수 및 배당의 비율을 적절하게 결합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인세율이 20%를 넘는 경우에는 주주임원의 보상을 모두 보수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배당이 41% 그로스업비율 및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배당이 이연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만약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주주임원은 캐나다펜션플랜 또는 등록퇴직플랜 불입금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⁶¹²⁾

나. 지주회사의 사용(Use of Holding Companies)

하나의 운영회사(operating company)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주주임원들이 존재하는 경우에 지주회사를 이용한다면 보수 및 배당의 결합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다. Jim과 Bob은 Jimbo Inc.의 주식을 50%씩 보유한다. Bob은 퇴직이 가까운 상태로서 소득을 이연시키고 싶어한다. Jim의 가족은 젊고 현금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Jimbo Inc.이 배당을 할 경우에는 Jim과 Bob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Jim과 Bob이 각 보유하는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Jim Inc.와 Bob Inc.를 설립하여 각 회사의 100% 주식을 보유하고, 각 회사들은 Jimbo Inc.의 주식을 각 50%씩 보유하게 되면, Jimbo Inc.가 Jim Inc.와 Bob Inc.에 대하여 동일

612) *Id.*, at ¶13,250.

한 배당을 하더라도 이를 수취한 Jim Inc.는 Jim에게 즉각 배당을 하고 Bob Inc.는 배당을 하지 않을 수 있다.⁶¹³⁾

다. 적격 소규모 법인 주식 등(Qualified Small Business Corporation Shares: QSBCS)

자본소득공제는 QSBCS 및 적격 농어업 자산에 대한 순과세대상 자본소득이 공제가능 자본손실(allowable Capital losses: ACLs)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된다. 또한 QSBCS 및 적격 농어업 자산의 처분과 관련된 자본소득 적립금(Capital gains reserves)에 대하여서도 위 공제가 적용된다. QSBCS 및/또는 적격 농어업 자산에 대한 부분적 자본소득공제의 최대금액(maximum fractional Capital gains deduction)은 \$375,000이다.⁶¹⁴⁾

QSBCS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소규모 사업기준(SBC Test), 보유기간기준(Holding Period Test: 24개월) 및 기본자산기준(Basic Asset Test: 50% Test)을 충족하여야 한다.⁶¹⁵⁾

라. 소득분할에 따른 세금(Income-Splitting Tax: 'Kiddie Tax')

역년 말 현재 18세 미만인 개인의 특정 소득에 대하여서는 개인 최고한계세율로 특별한 세금이 부과된다. 위 세금은 소득귀속 규칙(income attribution rules)이 적용되지 않는 미성년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적용하기 위한 것인바, 이는 다음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첫째, 신탁 또는 파트너십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기한 과세배당 배당 및 다른 주주 혜택들(shareholder benefits).

둘째, 미성년자의 친척에 의하여 수행된 사업에 자산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613) *Id.*, at ¶ 13,320.

614) *Id.*, at ¶ 13,360.

615) ITA: 110.6(1)

또는 친척이 특정주주인 법인으로부터 가득한 신탁 또는 파트너십을 통하는 소득

위 세금이 적용되는 소득은 미성년자의 Part I 소득에서 공제된다.⁶¹⁶⁾

11. 법인의 분배, 청산 및 영업양도(Corporate Distributions, Windings-up and Sales)

가. 법인의 분배(Corporate Distributions)

1) 법인의 잉여금

대차대조표상 주주의 지분은 세법상 잉여금계정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불입자본(Capital stock 또는 Paid-up Capital)과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s)으로 구성된다. 이익잉여금은 다시 자본배당계정(Capital dividend accout)과 미분배잉여금(undistributed surplus)으로 구분된다. 자본배당계정(이하 'CDA')은 양도차익 중 과세되지 않는 부분과 적격 자본자산으로부터의 수익금 중 일부분을 의미하고, 미분배잉여금은 발생되었으나 배당 및 기타의 방법으로 분배되지 않은 소득을 의미한다. 법인 잉여금은 다양한 수단으로 분배될 수 있다.⁶¹⁷⁾

불입자본(Paid-up Capital, 이하 'PUC')은 주주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되지 않고 과세되지 않은 상태로 분배될 수 있는 금원이다. PUC는 당초 법인에 이미 과세된 금원을 주주가 출자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주에 의한 주식의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그 처분손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처분대가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PUC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취득원가(adjusted cost base, 이하 'ACB')를 사용하여야 한다.⁶¹⁸⁾ PUC와 ACB는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⁶¹⁹⁾

616)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3,400.

617) *Id.*, at ¶ 15,010.

618) *Id.*, at ¶ 15,025.

619) *Id.*, at ¶ 15,045.

〈표 2-11-9〉 PUC와 ACB 비교

PUC	ACB
법인단계에서 계산	주주단계에서 계산
주주의 법인에 대한 불입금액에 근거	주주의 주식취득가액에 근거
각 주식의 종류별로 모든 주주에 대하여 평균법하에서 계산된 금액	각 주주별로 상이함
법인으로부터 배당으로 간주되지 않고 인출 가능함	주식의 처분 시 처분대가에서 공제함

자본배당계정(CDA)은 개인단계의 양도소득 또는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과 개인에 대한 과세를 통합하기 위한 계정이다. 예를 들어 개인에게 양도소득 \$400이 발생한 경우 그 개인은 양도소득의 절반 즉 \$200에 대하여 과세되고 나머지 \$200에 대하여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private corporation)에 양도소득 \$400이 발생한 경우 해당 법인은 \$200에 대하여 과세되고 나머지 \$200은 비상장법인의 자본배당계정(CDA)에 더하여져서 주주에게 과세되지 않고서 분배된다. 자본배당계정(CDA)은 1972년 1월 1일 이후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기간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자본배당계정(CDA)은 기본적으로 다음 첫째에서 넷째 부분을 더한 금액에서 다섯째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첫째, 세법상 순양도차익 중 비과세에 해당하는 부분.

둘째,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자본배당(Capital dividends).

셋째, 누적된 적격자본계정(cumulative eligible Capital account)상 아직 실현되지 않은 양도소득분, 즉 적격자본자산의 처분상 경제적 이익(현재는 양도대가가 실제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의 2분의 1) 중 비과세 부분.

넷째, 법인이 특정 생명보험금으로서 수령한 사망보험금에서 보험증권의 취득원가.

다섯째, 지급된 자본배당.

2) 법인 잉여금의 분배

가) 과세배당(taxable dividend)

주식배당, 현물배당 또는 의제배당은 모두 현금배당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법인이 주주인 경우 배당은 익금에 산입되나 해당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캐나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 배당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포트폴리오 배당으로서 과세되는 경우 역시 있다. 주주가 개인이고 캐나다 법인이 배당하는 것이라면 개인에 대하여서는 그로스업(gross-up)과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적격 배당에 대하여서는 38% gross-up과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적격 배당인지 여부는 법인이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적격 배당이 아닌 배당에 대하여서는 25% gross-up(2013년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는 18%)과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된다.⁶²⁰⁾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은 일반적인 세율 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소득을 가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은 그 일반적인 세율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 풀(general rate income pool: 이하 'GRIP')의 범위 내에서 적격 배당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업연도 말 현재의 GRIP을 초과하여 적격 배당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GRIP은 다음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이전 사업연도 말 현재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의 GRIP 잔고.

둘째, 2011년 법인세율이 30%라고 의제하여 계산되고, 소규모 사업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연도의 것이며, 고세율 사업소득(high-rate business income)과 같이 세금환급이 가능한 형태의 총투자소득(aggregate investment income)으로 간주되지 않는 세후 이익잉여금.

셋째, 당해 사업연도에 수취한 적격 배당.

GRIP 잔고는 법인의 이전 사업연도에 지급된 적격 배당만큼 감소한다.⁶²¹⁾

620) *Id.*, at ¶ 15,115.

621) *Id.*, at ¶ 15,120.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의 저세율 소득 풀(low rate income pool: 이하 'LRIP')으로부터 배당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이 아닌 법인은 LRIP을 가질 수 있다. 그 법인은 LRIP에서 먼저 배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LRIP이 있는 상태에서 적격 배당을 지급한다면 벌칙이 부과된다. 개인이 법인의 LRIP으로부터 배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25% gross-up(2013년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는 18%)과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된다.⁶²²⁾

①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

주식배당의 경우에도 현금배당과 마찬가지로 과세된다. 다만 배당금액은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주식배당으로 인하여 증가된 불입자본의 증가액만큼 배당으로 과세된다. 수령한 주식의 FMV(Fair Market Value)와는 무관하다. 배당으로 간주되는 금액이 주주단계에서의 주식의 취득가액이 된다.⁶²³⁾

② 현물배당(Dividends in kind)

현물배당은 해당 자산을 매각하여 주주에게 매각하고 그 처분대가를 다시 배당하는 것과 같다. 그 결과로 법인은 해당 자산의 처분손익을 인식하고 주주는 해당 자산을 시장가격으로 취득하며, 법인과 주주는 그 시장가격 상당의 현금을 배당하고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⁶²⁴⁾

해당 자산이 지배주주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자산에 관계된 손실은 부인된다.⁶²⁵⁾

③ 의제배당(Deemed Dividends)

법인으로부터 주주에 대한 일체의 분배 중 불입자본을 초과하고 자본배당 또는 과세배당으로 선언되지 않은 것은 의제배당으로서 과세된다. 특정 상황에서는 실제의 분배와 관계없이 배당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622) *Id.*

623) *Id.*

624) *Id.*

625) ITA: 40(3.3), 40(3.4)

㉔ 불입자본의 증가에 관련된 의제배당(Deemed dividend on increase in PUC)

법인이 순자산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고서 불입자본을 증가시킬 경우 의제배당이 발생할 수 있다. 법인에 출자된 자산의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식이 발행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금액은 주식의 취득가액에 더하여진다. 법은 임의로 불입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에 해당한다.⁶²⁶⁾

첫째, 주식배당으로 인하여 불입자본이 증가한 경우.

둘째, 불입자본이 순자산의 시장가치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셋째, 어느 한 종류의 주식이 감소하고 다른 종류 주식의 불입자본이 감소된 주식의 불입자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

넷째, 법인이 주식의 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다만 주식의 발행 당시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㉕ 주식의 상환, 취득 및 소각에 관련된 의제배당(Deemed dividend on redemption, acquisition, or cancellation of shares)

법인이 주식을 상환, 취득 또는 소각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상환대가(redemption price)가 주식의 불입 자본금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의제배당이 발생한다. 상환대가는 통상적으로는 주식의 시장가치에 해당한다. 의제배당에 더하여 양도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손익의 계산 목적상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양도대가에서 제외한다.⁶²⁷⁾

주식 상환과 관련하여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법은 그 손실을 부인한다.⁶²⁸⁾ 이를 stop-loss rule이라고 한다. 상환 직후에 법인과 주주가 특수관계인(affiliated) 경우에 위 규정이 적용된다. 부인된 양도차손은 상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ACB에 더하여진다.⁶²⁹⁾

626) ITA: 84(1)

627) ITA: 84(3), 54(j)

628) ITA: 40(3.6)

629)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5,165.20.

㉔ 불입자본 감소와 관련된 의제배당(Deemed dividend on reduction of PUC)

법인이 발행된 주식을 상환하지 않고 불입자본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의제배당이 발생할 수 있다. 법인이 주요 영업부문을 매각하고 그 대가를 재투자하기보다는 주주에게 지급하는 예가 있을 수 있다. 비상장법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고 그 지급금액만큼 불입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주주의 주식에 대한 ACB가 감소한다. 불입자본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 된다.⁶³⁰⁾

만약 상장법인이 위와 같이 지급한다면 전 지급금액은 의제배당으로 취급된다.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취급되는 부분은 주주의 ACB를 감소시키지 않는다.⁶³¹⁾

나) 자본배당(Capital Dividend)

모든 배당은 지급 이전에 법인이 특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배당으로 과세된다. 비상장법인이 특정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배당을 그 자본배당계정(자본배당계정(CDA))에서 분배한 것으로 취급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선택이 있으면 주주는 그 분배액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배당계정(CDA)를 넘어서 위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60%에 해당하는 penalty tax가 Part III에 따라 과세된다.⁶³²⁾

법인이 부주의하게 과도한 선택을 하는 경우 역시 있을 수 있는바, 이 경우 해당 법인은 60%의 가산세와 관련된 부과결정의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된 배당액을 자본배당계정(CDA) 잔고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과 과세되는 배당으로 간주되는 부분으로 구분하는 선택을 하는 방법을 통하여 60%의 가산세를 회피할 수 있다.⁶³³⁾

630) ITA: 84(4), 53(2) (a) (ii), 84(1) (c)

631) ITA: 84(4), 84(4.1)

632) ITA: 84(2), 184(2) [proposed]

633) ITA: 184(3)

3) 캐나다 내국법인의 청산(Winding-up of a Canadian Corporation)

법인의 청산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가 주주에게 바로 분배되는 경우 역시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분배된 회사의 모든 자산이 청산 직전에 시장가치로 분배된 것으로 본다. 이로 인하여 법인에는 소득 및 손실이 발생하고 자본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서는 자본손익이 발생한다. 이로 인하여 법인은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만약 비상장법인이 라면 환급가능한 배당세액(refundable dividend tax)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자본배당계정(CDA) 역시 조정될 수 있다.⁶³⁴⁾

법인이 주요 자산을 매각하고 명목상 자산 및 주식을 갖는 shell로서 법인을 유지 하면서 주요 자산의 처분대가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과세배당이 발생할 수 있다. 불입자본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은 모두 배당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배당은 다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법인의 선택에 따라 자본배당계정(CDA) 잔고의 범위 내에서 자본배당으로 취급된다.

둘째, 의제배당 잔고의 범위 내에서는 과세배당으로 취급된다.⁶³⁵⁾

청산 과정에서 주주가 법인에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양도손익의 계산 목적상 처분대가는 실제 수령하는 대가에서 의제배당금액을 제외한 것이다.⁶³⁶⁾

4) 법인의 영업양도(Sale of an Incorporated Business)

법인의 영업양도는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과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전자의 방법에 의할 경우 주식의 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후자의 방법에 의할 경우 법인 단계에서 세금을 납부한 이후의 자산 처분대가는 법인 단계에서 재투자될 수도 있고 주주에게 분배할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법인의 청산과 같

634) ITA: 89(1), 69(5)

635) ITA: 83(2), 84(2), 88(2) (b), 89(1)

636) ITA: 54(j), 84(2)

은 절차를 밟게 된다. 자산의 처분대가는 특정 자산의 처분, 특정 용역의 제공 또는 영업금지 약정(a restrictive covenant)에 대한 것으로 구성될 것인바, 전체 처분대가는 각 요소별로 배분되어야 한다.⁶³⁷⁾

12. 과세이연 특례

양도손익은 해당 자산의 처분 시에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경우에는 자산이 처분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산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이 처분전 세무상 장부가액(tax value)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바 이를 rollover라고 한다.

가. 주주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Transfer of Property to a Corporation by a Shareholder)

Section 85는 현물출자된 자산을 적격자산으로 정의하여 이에 대하여 과세이연의 특례를 규정한다. 현물출자하는 자는 개인, 신탁, 법인 또는 파트너십일 수 있으며 거주자인지 여부는 불문한다.⁶³⁸⁾

과세이연의 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은 과세 캐나다 법인(a taxable Canadian corporation)이어야 한다.⁶³⁹⁾

둘째, 현물출자의 대가에는 반드시 해당 법인의 주식이 포함되어야 한다.⁶⁴⁰⁾

셋째, 현물출자된 자산은 적격 자산이어야 하고, 적격 자산에는 자본자산(감가상각 자산인지 여부는 불문하나 비거주자가 소유한 부동산은 통상 제외된(3), 적격 자본자

637)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5,315.

638) ITA: 85(1.1)

639) ITA: 89(1)

640) IC 76-19R3, par.8

산, a resource property 또는 재고자산을 포함한다.⁶⁴¹⁾

넷째, 납세의무자와 법인은 반드시 과세이연 조항을 적용할 것을 공동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그 선택은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어느 당사자의 첫 신고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⁶⁴²⁾ 기한 이후에도 3년 이내에는 위 선택을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서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즉 한 달이 지연된 것에 대하여 과세이연금액의 0.25%와 \$100 중 적은 금액의 비율로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8,000이 한도금액이다.⁶⁴³⁾ 과세당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선택하거나 첫 선택을 수정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⁶⁴⁴⁾

Sec. 85 election을 선택하는 경우 다음의 상한과 하한의 범위에서 그 거래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⁶⁴⁵⁾

<표 2-11-10> Sec. 85 Election에 따른 현물출자거래금액 결정

자산의 종류	상한	하한
재고자산 또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자본자산[par. 85(1.1) (a),(f)]	이전자산의 공정 시장가치 [par. 85(1)(c)]	MAX {주식이 아닌 대가(par. 85(1)(b)) & MINI(par. 85(1)(c.1)[자산의 공정가치, '자산의 ACB(자본자산의 경우) 또는 tax value(재고자산의 경우)]}
감가상각자산 [par. 85(1.1)(a)]	이전자산의 공정 시장가치 [par. 85(1)(c)]	MAX {주식이 아닌 대가(par. 85(1)(b)) & MINI(par. 85(1)(e)[자산의 공정가치, 해당 자산의 종류별 UCC, 양도인의 취득가액]}
적격 자본자산 [par. 85(1.1)(e)]	이전자산의 공정 시장가치 [par. 85(1)(c)]	MAX {주식이 아닌 대가(par. 85(1)(b)) & MINI(par. 85(1)(b)[자산의 공정가치, 누적적 자본자산의 잔고의 4/3, 양도인의 취득가액 전액 또는 실제지급액]}

641) ITA: 85(1.1)

642) ITA: 85(6)

643) ITA: 85(7),(8)

644) ITA: 85(7.1)

645)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6,040의 표를 변형한 것이다.

채권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 경우 채권의 이전에 대하여 section 22 election을 하여 준비금을 설정하거나 대손상각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택을 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채권을 발생시킨 거래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인식되었어야 한다. 만약 법인이 해당 채권을 매입한 것이라면 위 선택을 이용할 수 없다.⁶⁴⁶⁾

나. 주식의 이전(Transfer of Shares)

1) 시가에 의하지 않은 주식의 매각(Non-Arm's Length Sale of Shares)

먼저 예를 들어, 시가에 의하지 않은 주식의 매각을 통한 조세회피의 경우를 본다. 주주가 갑 법인을 100% 지배하는 상황에서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인 A법인을 설립하고 위 sec. 85 election을 한 경우 그 주식의 양도금액은 해당 주주가 선택할 수 있다. 주식의 장부가액은 \$100, 시가는 \$20,000이고 갑 법인은 QSBC(Qualified Small Business Corporation)으로서 그 법인의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서는 \$99,000의 양도차익을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양도대가를 \$100,000로 선택하여 \$99,000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그 양도대가로 본 적어도 한 주 이상을 받고 주식의 아닌 이전대가가 \$100,000을 초과하지 않는 한, 해당 주주는 신규 설립된 지주회사로부터 채권 또는 주식의 형태로 지주회사가 차입한 \$100,000까지 받을 수 있다. 그 후 A법인은 갑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으로 위 차입금을 상환한다. 그렇다면 주주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면서도 \$199,000을 수령하였으며 \$100,000에 대하여서만 양도소득으로서 과세되었다. 만약 주주가 갑 법인의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200,000의 잉여금을 분배받는다면 해당 주주는 \$199,000의 의제배당을 받은 것으로 과세될 것이다. 위와 같은 형태의 거래를 'dividend stripping'이라고 한다.⁶⁴⁷⁾

646) ITA: 20(1)(l) or 20(1)(p)(ii)

647)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6,215.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을 의 제배당으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유사한 상황하에서株式이 아닌 토지, 빌딩, 또는 적격 자본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⁶⁴⁸⁾ 위 특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株式의 처분이 법인이 아닌 캐나다 거주자에 의하여 행하여질 것

둘째, 이전되는株式은 캐나다 내국법인의株式이고 해당 주주에게 있어서 자본자산에 속하여야 한다.

셋째, 위株式의 처분은 subsection 251(1)에서 규정하는 독립기업과의 거래가 아닌 조건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주주가 처분하는株式을 발행한 법인과株式을 매입하는 법인은 해당株式의 처분 직후에 연관되어야 한다. 즉 매입법인이株式발행 법인을 지배하거나 의결권 총수와 의결권 가치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⁶⁴⁹⁾

2)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株式의 매각(Sale of Shares by a Corporation to an Unrelated Person)

Section 55는 캐나다 내국법인의 주주가 다른 법인이 보유한株式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전환하여 관계회사 간 공제규정(the connected corporation exemption)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⁶⁵⁰⁾ 이상의 회피거래를 ‘Capital gains stripping’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본다.⁶⁵¹⁾ A 법인이 B 법인의株式을 100% 소유하는바, A 법인은 위株式을 C 법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C 법인은 A 법인 및 B 법인과 특수관계에 속하지 않는다. A 법인은株式을 매각하기 이전에 B 법인으로부터 대규모의 배당을 받는다. 이는 Part IV의 관계회사 간 배당규정에 의

648) ITA: 84.1

649) ITA: 186(2), 186(4)

650) ITA: 55(1)-(6)

651)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6,245.

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B 법인은 배당재원을 단기차입금에 의하여 조달한다. 위 배당 이후에 A 법인은 C 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한다. 이 경우 양도대가는 배당금액만큼 감소하여 현실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C 법인은 B 법인에게 위 배당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담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금을 출자한다. 이 경우 위 탈법적 배당(offensive dividend)은 양도소득의 계산 목적상 처분대가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이 다시 계산된다.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처분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일련의 거래 또는 그 거래의 일부로서 법인이 수취한 배당에 대하여서도 subsection 55(2)의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위 특례는 해당 거래의 결과로서 특수관계 없는 자의 배당수취 법인에 대한 지분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경우에도 역시 적용된다.⁶⁵²⁾ 특수관계자는 법에 정의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형제자매 역시 포함된다. 그러나 subsection 55(2)의 적용에 있어서는 형제자매관계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자에 의하여 지배되는 법인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서도 위 subsection 55(2)의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2 이상의 특수관계를 갖는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를 이용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거래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한다.⁶⁵³⁾

위의 규정에 대한 예외에 대하여 살펴본다. 즉, 위의 탈법적 배당에서 [1971년 또는 주식취득일 중 늦은 날 이후이고 해당 배당 수취 이전의] 일체의 소득에 근거한 배당(이를 'safe income'이라고 한다) 및 [Part IV에 따라 과세된 배당액] 등은 제외된다.⁶⁵⁴⁾

652) ITA: 55(3) (a), 248(10)

653) ITA: 251, 55(4), 55(5) (e), 55(4)

654)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6,255.

다. 법인 및 그 주주와 관계된 과세이연 특례(Rollovers Involving Corporation and Their Shareholders)

1) 주식과 주식의 교환(Share-for-Share Exchange)

기업결합 또는 기업인수의 경우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다른 법인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되는바, 이 경우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은 당사자의 선택을 요하지 않고 적용된다. 다만 다른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과는 다르게 당초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인수법인의 수중에서는 해당 주식의 공정 시장가치와 교환 이전의 해당 주식에 대한 불입자본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⁶⁵⁵⁾

위 특례가 적용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의무자가 이전한 주식은 자본자산이어야 한다. 자본자산은 ITA 54에서 규정한다.

둘째, 주식을 인수한 법인은 캐나다 법인이어야 한다. 외국 주식 교환의 경우에도 과세이연 특례를 허용하는 경우 역시 있으나 이는 별도의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다.⁶⁵⁶⁾

셋째, 인수인이 지급하는 주식교환의 대가는 반드시 한 종류 주식으로서 신규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⁶⁵⁷⁾

넷째, 교환 직전 두 당사자는 상호 특수관계가 아닌 독립 당사자로서 거래하였어야 한다.⁶⁵⁸⁾

다섯째, 교환 이후 두 당사자는 특수관계자들과 함께 인수인을 지배하거나 발행주식 총가치의 50% 이상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⁶⁵⁹⁾

여섯째, 두 당사자는 교환된 주식과 관련하여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에 이용

655) ITA: 85.1

656) ITA: 85.1(5), 85.1(6), 89(1)

657) ITA: 85.1(2)(d)

658) ITA: 85.1(2)(a)

659) ITA: 85.1(2)(b)

가능한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⁶⁶⁰⁾

일곱째, 주식을 교환하고자 하는 주주는 다른 규정을 이용하여 교환주식과 관련하여 일체의 양도손익을 인식하지 않았어야 한다.⁶⁶¹⁾

2) 자본의 재구성(Reorganization of Capital)

법인의 자본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종류의 발행주식이 새로운 종류의 주식으로 변환될 수 있고 그 경우 주식이 아닌 대가 역시 교부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거래에 있어서 주식이 아닌 대가(boot)의 공정 시장가치와 주식인 대가의 불입자본의 합계액이 기왕 주식의 불입자본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재구성 이전의 주식에 대한 양도손익의 인식을 이연할 수 있다. 새로운 주식의 불입자본은 구 주식의 불입자본에서 주식 이외의 대가를 공제한 것과 같다.⁶⁶²⁾

이상의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해당 주식들은 주주에 대한 자본자산이어야 한다.

둘째, 주주가 보유한 특정 종류의 모든 주식이 교환되어야 한다.

셋째, 교환으로 교부받은 자산에는 다른 종류의 주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본재구성이 특수관계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용된 경우에 과세이연 혜택을 줄이기 위한 benefit rule이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부여하는 혜택은 구주식의 공정 시장가치가 주식이 아닌 대가의 공정 시장가치와 신규 주식의 합리적인 공정 시장가치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의미한다.⁶⁶³⁾ 이 경우 처분대가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간주된다.

첫째, 주식이 아닌 대가의 공정 시장가치와 위 초과분에 의하여 결정된 증여금액을 더한 금액

660) ITA: 85(1), 85(2), 85.1(2)(c)

661) ITA: 85.1(1)(a)

662) ITA: 86

663) ITA: 86(1)

둘째, 구주식의 공정 시장가치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은 '0'으로 간주된다. 신규 주식의 취득원가는 주식이 아닌 대가의 공정 시장가치와 위 초과분만큼 감소된다.⁶⁶⁴⁾

3) 법령상 신설합병(Statutory Amalgations)

신설합병 상황에서의 과세이연 규정은 당사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법인과 주주단계 모두에서 적용된다. 법령상 신설합병은 연결재무제표상 기업결합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과세이연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⁶⁶⁵⁾

첫째, 신설합병 이전 법인들은 과세대상 캐나다 법인(taxable Canadian corporations)이어야 한다.

둘째, 신설합병 이전 법인들의 모든 자산 및 부채가 신설합병에 의하여 탄생한 법인에 이전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들 사이의 내부거래는 제외한다.

셋째, 신설합병 이전 법인들의 모든 주주들(그 이전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은 신설합병으로 인하여 탄생한 새로운 법인의 주식을 받아야 한다.

넷째, 자산의 통상적인 매입 또는 회사의 청산으로 인한 분재의 결과로서 자산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자회사의 청산(Winding Up a Subsidiary)

주식 각 종류의 90% 이상이 다른 캐나다 법인에 의하여 소유된 과세대상 캐나다 법인이 적정한 회사법상 규정에 따라 청산하여 모회사(parent corporations)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인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처분대가는 resource property의 경우에는 '0'으로, 다른 자산의 경우에는 자회사의 장부가액으로 의제된

664) ITA: 86(2)(d)

665) ITA: 87(1)

다. 모회사의 취득원가 역시 같다. 그러나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의 조정취득원가(adjusted cost base)가 청산으로 인하여 이전되는 자회사 순자산의 세무상 가액(tax value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비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의 증가(bump)가 있을 수 있다. 그 증가금액은 모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기 시작한 당시부터 청산시점까지 계속하여 보유한 비감가상각자산에 배분될 수 있다. 위 증가금액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할 당시의 공정시장가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금액을 의미한다.⁶⁶⁶⁾ 모회사의 자회사주식에 대한 조정취득원가에서 [(자회사 자산의 취득원가와 현금을 더한 금액에서 부채와 특정 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 (모회사에게 지급된 과세배당과 자본배당을 포함한 배당금액)]을 공제한 금액.

라. 주식 또는 법인의 증권에 관계된 과세이연특례(Rollovers Involving Shares or Corporate Securities)

전환증권은 통상 주식, 채권 또는 어음의 형태를 갖는다. 이러한 증권들은 특정 조건하에서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발행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된다. 과세이연 특례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을 요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적용된다.⁶⁶⁷⁾

첫째, 교환되는 증권들에 대하여 주식만이 발행되어야 한다.

둘째, 교환되는 증권들은 해당 보유자에 대하여 자본자산이어야 한다.

셋째, 주식이 아닌 교환되는 증권들의 경우에는 그 특정 증권에 대하여 부착된 전환권이 있어야 한다.

위 특례규정은 secs. 85 또는 86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⁶⁶⁸⁾

666) ITA: 88(1)

667) ITA: 51

668) ITA: 51(4)

마. 법인 주식의 부부 사이의 이전(Interspousal Transfers)

법인의 주식을 포함한 자본자산이 배우자 사이에 또는 일방 배우자를 위한 적격 신탁에 이전되는 경우 양도손익의 인식은 이연된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이연하지 않을 것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자동적으로 적용된다.⁶⁶⁹⁾

13. 법인세 행정

소득세법의 소득세 행정 부분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법인세 신고

법인세의 신고 절차 및 방식은 소득세의 경우와 동일하나, 그 기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한다.⁶⁷⁰⁾

전자신고의 경우, 개인은 전자신고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전자신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일정 요건의 법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전자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 이후부터 \$100만을 초과하는 총수입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전자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가산세는 2011년부터 부과하고 있다.⁶⁷¹⁾ 특정 조건하에서 캐나다 거주자인 법인은 캐나다 세액을 캐나다달러가 아닌 미리 선택한 기능통화로 신고할 수 있다.⁶⁷²⁾ 기능통화로 선택될 수 있는 적격 기능통화는 미국, 유럽통화연합(European Monetary Union), 영국, 호주 및 법에 규정된 통화로 한정된다.⁶⁷³⁾

669) ITA: 70(6), 70(6.2), 73(1)

670) ITA: 150(1) (a).

671) ITA: 150.1(2.1), 162(7.2).

672) ITA: 261.

673)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4,018.

나. 분납

법인은 법인세를 분납하여야 하나, 그 분납횟수는 법인유형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 비상장법인(a private corporation)은 월별 분납세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 지급금에 대한 해당 법인의 배당 환급금의 12분의 1만큼을 줄일 수 있다. 일반법인(a corporation)은 당해 사업연도 또는 이전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3,000을 넘지 않은 경우라면 분납할 필요가 없다. 분납세액을 적정 기한까지 수령한 경우에만 납부된 것으로 간주된다.⁶⁷⁴⁾ 법인의 과대납부세액과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이자의 상계가 허용된다.⁶⁷⁵⁾ 이러한 상계를 하기 위하여서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⁶⁷⁶⁾

적격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eligible 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s: small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s)만이 분기별로 각 사업연도 분기 말일에 법인세를 분납할 수 있다.⁶⁷⁷⁾ 적격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⁶⁷⁸⁾

첫째, 관계법인과 함께 당해 사업연도 또는 이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500,000을 초과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에 캐나다에 투입되어 있는 과세대상 자본이 \$1천만을 넘지 않을 것

둘째, 당해 사업연도 또는 이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사업공제를 신청하였을 것

셋째, 분납세액 납부기일 현재 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적격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은 다음과 같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⁶⁷⁹⁾

첫째, 당해 사업연도 추정납부세액의 4분의 1

674) ITA: 157(1), 157(3), 157(2.1).

675) ITA: 161.1.

676) ITA: 161.1(2).

677) ITA: 157(1.1).

678) ITA: 157(1.2).

679) ITA: 157(1.1)(a)

둘째,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4분의 1

셋째, 첫 분납세액은 2년 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4분의 1을, 그 이후 분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에서 위 첫 분납세액을 차감한 부분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

적격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매달 말 월단위로 분납하여야 한다.

해당 법인은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 통상적으로는 가장 적은 금액을 분납한다.⁶⁸⁰⁾

첫째, 당해 사업연도의 추정 과세표준에 당해 사업연도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추정납부세액의 12분의 1

둘째, 직전 사업연도의 분납 기준금액의 12분의 1

셋째, 첫 두 달에 대하여서는 2년 전 사업연도 분납기준금액의 12분의 1, 나머지 열 달에 대하여서는 직전 사업연도 분납기준금액에서 첫 두 달의 분납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각 10분의 1

680)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4,040.30.

Ⅲ. 파트너십

1. 파트너십 개관

가. 파트너십의 정의 등

파트너십(Partnership)에 대한 정의는 캐나다 연방소득세법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캐나다 연방소득세법은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상 취급(tax consequences)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파트너십을 영리의 목적으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2인 이상 사이에 존재하는 법적 관계로 정의된다. 파트너십은 개인, 법인 또는 개인과 법인의 조합에 의하여 설립될 수 있다.⁶⁸¹⁾

다음 두 가지 요소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파트너십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첫째, 파트너십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할 것

둘째, 손익을 분배하는 방식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것

둘째의 경우 서면 약정이 없다면 파트너십의 지분관계는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아무런 약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트너가 자본, 수익 및 손실에 관하여 균등한 지분을 가진 것으로 본다.⁶⁸²⁾

681) Id., at ¶ 18,015.

682) Id.

나. 파트너십과 합작투자사(Joint Venture)의 차이

파트너십과 합작투자(Joint venture) 사이에는 세법상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파트너십은 세법상 독립적인 사업체이나, 합작투자는 그렇지 않다.

둘째, 파트너가 파트너십에 대해서 자산을 이전할 때에는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한 공정 시장가치로 이전한 것으로 보지만, 합작투자의 경우에 참여사업자의 출자거래는 과세거래가 아니고, 그 소유권 역시 이전되지 않는다.

셋째, 파트너십의 경우에는 파트너십 단계에서 순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파트너십 단계에서 자본비용공제(Capital cost allowance)를 받을 수 있으나, 각 파트너는 이를 별도로 인식할 수 없다. 그러나 합작투자의 경우에는 각 참여 사업자별로 순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자본비용공제를 인식한다.⁶⁸³⁾

2. 파트너십 소득

가. 일반 원칙

캐나다 연방소득세법에서는 파트너십이 캐나다의 독립적인 거주자인 것과 같이 소득을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파트너십 사업자산의 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 대상 자본소득(Capital gain)과 공제가능한 자본손실(allowable Capital loss)은 파트너십 단계의 소득계산 시 합산되어야 한다. 다만, 파트너십 단계에서 과세되지는 않고 파트너십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을 각 파트너 단계에서 과세한다.⁶⁸⁴⁾

683) Id., at ¶ 18.020.

684) Id., at ¶ 18.035.

나. 파트너십 소득계산

1) 파트너십 소득계산 일반원칙

파트너십 단계에서 소득을 계산한 후, 각 파트너의 지분별로 소득 및 손실을 배분한다. 파트너십의 소득은 파트너십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손실 또는 이월된 결손금 등을 파트너십 단계에서 공제할 수 없다.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손실들은 각 과세연도 말에 개별 파트너들의 지분에 따라 배분되며, 공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각 파트너가 자신의 소득 계산 시 활용할 수 있다. 각 파트너들은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소득과 파트너십이 아닌 다른 원천을 갖는 소득을 가지게 된다. 파트너십으로부터 수취하게 된 소득의 원천은 그대로 각 파트너들에게 이전된다.⁶⁸⁵⁾ 파트너십 단계의 소득이 배당소득인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 혜택을 파트너가 누릴 수 있으며, 적격 농장자산(qualified farm property)에서 발생한 자본소득공제 혜택 역시 각 파트너가 누린다.⁶⁸⁶⁾ 파트너십이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 파트너가 법인이라면 지분에 따라 배분받은 기부금을 비용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파트너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 배분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⁶⁸⁷⁾ 또한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자본소득의 특성 역시 각 파트너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배분된 금액들은 각 파트너별로 개인 순 자본손실(personal net Capital losses)로 활용할 수 있다.⁶⁸⁸⁾

2) 파트너십의 과세소득 계산 시 손실의 공제 및 수익 배분의 제한

유한 파트너십(a limited partnership)의 사업 또는 자산 손실은 '개별 파트너가 파트너의 파트너십에 대한 투자분 및 파트너십 이익에 대한 지분[파트너의 위험부담액

685) Id., at ¶ 18.035.10.

686) Id., at ¶ 18.050.

687) Id., at ¶ 18.055.

688) Id., at ¶ 18.035.10.

(partner's at-risk amount)이라고 한다.]이 '각 파트너가 파트너십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 파트너십 지분에 관계된 보장수익 및 파트너십의 보장 환매 약정금' 등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유한파트너에 의하여 공제될 수 있다.⁶⁸⁹⁾ 유한 파트너십의 유한파트너(a limited partner of a limited partnership)와는 달리 유한책임 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의 파트너들은 파트너십 또는 다른 파트너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유한책임 파트너십의 파트너들에 대하여서는 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⁶⁹⁰⁾

파트너십 약정(the Partnership agreement)에는 각 파트너별로 수익과 손실에 대한 배분에 관한 합의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파트너십의 수익 및 손실의 배분에 관한 약정이 정상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이연 또는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캐나다 연방소득세법상 조세회피방지 규정에 따라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할 수 있다.⁶⁹¹⁾

다. 파트너십 지분(Partnership Interest) 및 수정취득원가(Adjusted Cost Base)

1) 파트너십의 지분의 개념

파트너의 파트너십 지분은 파트너로서의 파트너십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파트너에 의해서 처분 및 매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파트너십 지분은 자본자산(a Capital property)이고, 자본자산으로서 수정취득원가(adjusted cost base)를 갖는다. 파트너십 지분의 처분에 따른 손익은 처분대가와 수정취득원가의 차액으로 결정되며, 파트너십 지분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세대상 자본소득 또는 공제가능한 자본손실은 해당 파트너의 소득계산에 포함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⁶⁹²⁾

689) ITA: 96(2.1), 96(2.2).

690) ITA: 96(2.4) (a).

691) ITA 103(1.1).

692)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8.065.

〈표 2-III-1〉 파트너십 지분 처분소득의 계산

		사례 1		사례 2	
파트너십 지분의 처분대가			\$22,750		\$12,750
차감	파트너십 지분의 수정취득원가	\$16,000		\$16,000	
	판매비용	\$1,750	\$17,750	\$1,750	\$17,750
파트너의 자본소득(손실)			\$5,000		(\$5,000)
과세대상 자본소득(공제가능 자본손실)			\$2,500		(\$2,500)

2) 수정취득원가(Adjusted cost base: ACB)

파트너십 지분에 대한 수정취득원가는 기본적으로 파트너십에 대한 해당 파트너의 순세후투자금(the partner's net tax-paid investment)을 의미한다.⁶⁹³⁾

캐나다 연방소득세법은 위 수정취득원가의 증가항목들과 차감항목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수정취득원가의 증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과세기간 동안의 파트너십 소득 중 해당 파트너가 배분받아야 할 몫. 다만 파트너십이 소유한 자본자산의 처분손익 100%는 소득에 산입되는 대신에 수정취득원가에 바로 더하여진다.⁶⁹⁴⁾

둘째, 파트너십이 보유한 자본주식(Capital stock)에 기하여 받은 일체의 자본배당금 중 해당 파트너의 몫⁶⁹⁵⁾

셋째, 1971년 이후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파트너십이 파트너의 사망 시 수령한 보험금 중 해당 파트너의 몫⁶⁹⁶⁾

넷째, 1971년 이후 해당 파트너의 파트너십에 대한 출자분⁶⁹⁷⁾

693) Id., at ¶ 18.070.

694) ITA: 53(1)(e)(i).

695) ITA: 53(1)(e)(ii), 83(2).

696) ITA: 53(1)(e)(iii).

697) ITA: 53(1)(e)(iv).

수정취득원가의 차감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과세기간 동안의 파트너십 손실 중 해당 파트너가 배분받아야 할 몫(유한 파트너십의 손실을 제외한다). 다만 파트너십이 소유한 자본자산의 처분손실 100%는 소득에 산입되는 대신에 수정취득원가에서 바로 차감된다.⁶⁹⁸⁾

둘째, 파트너십의 정치헌금 또는 일체의 기부금 중 해당 파트너의 몫⁶⁹⁹⁾

셋째, 파트너십의 소득 또는 자본 중 해당 파트너의 자신의 지분에 따른 인출분⁷⁰⁰⁾

넷째, 파트너십의 지출과 관련하여 파트너가 활용한 투자세액공제분⁷⁰¹⁾

3) 음(-)의 수정취득원가(Negative ACB)

파트너십 지분이 아닌 모든 다른 자본자산(all other Capital property)들에 관련하여 발생한 과세연도 말 현재의 음(-)의 수정취득원가는 그 당시 실제 처분하지 않았음에도 위 발생연도 말 현재 그 금액만큼 자본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⁷⁰²⁾ 이러한 간주자본소득 규정은 파트너십 지분에 대하여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취급은 완전한 유한책임파트너십 또는 다른 특정 수동적 파트너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음의 수정취득원가에 대한 취급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⁷⁰³⁾

698) ITA: 53(2) (c) (i).

699) ITA: 53(2) (c) (iii).

700) ITA: 53(2) (c) (v).

701) ITA: 53(2) (c) (vi).

702) ITA: 40(3).

703)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8.070.40.

〈표 2-III-2〉 음(-)의 수정취득원가에 따른 자본소득 계산

가정: 파트너가 자신의 파트너십 지분을 \$5,000에 매도하고, 매각비용은 총 \$250이다.
해당 파트너의 파트너십 지분 수정취득원가는 (\$1,250)이다.

처분대가		\$5,000
차감	매각비용	(\$250)
처분익		\$4,750
가산	매각일 현재 음의 수정취득원가	\$1,250
파트너의 자본소득		\$6,000
과세대상 자본소득		\$3,000

3. 파트너십의 신고의무

캐나다 연방소득세법상 파트너십은 신고의무 및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파트너십의 소득 및 손실이 모두 각 파트너들에게 배분되며, 각 파트너는 자신의 소득 신고에 파트너십의 소득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파트너십은 각 파트너가 파트너십으로부터 배분받는 소득 및 손실에 관한 정보를 개별 파트너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⁷⁰⁴⁾

파트너십은 각 파트너가 파트너십으로부터 배분받는 소득 및 손실에 관한 정보를 각 파트너에게 다음 기한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첫째, 모든 파트너가 법인인 경우 과세기간 말로부터 5개월이 되는 날

둘째, 모든 파트너가 자연인인 경우 파트너십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역년의 다음 역년 3월 말

셋째, 위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위 과세기간 말로부터 5개월이 되는 날’과 ‘위 파트너십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역년의 다음 역년 3월 말’ 중 빠른 날

파트너십이 위 소득과 손실에 대하여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

704) Id., at ¶ 18.035-18.035.10.

과된다.⁷⁰⁵⁾

705) ITR : 229

IV. 신탁(Trust)

1. 신탁의 특성과 유형

가. 신탁의 개념

신탁(Trust)은 계약이 아니라⁷⁰⁶⁾, 수탁자(trustee)들이 신탁자산을 수익자(the beneficiaries)들을 위하여 관리 또는 운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수익자들 중 누구라도 수탁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의미한다.⁷⁰⁷⁾ 신탁은 일반적으로 위탁자(the settlor)가 수탁자(trustee)에게 신탁자산을 이전하고, 해당 자산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수익자(beneficiaries)들에게 이전한다. 따라서 신탁이 존속하기 위하여서는 다음 세 가지 확실성이 존재하여야 한다.⁷⁰⁸⁾

첫째, 위탁자가 신탁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도가 확실하여야 한다.

둘째,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특정된 자산이 있어야 한다.

셋째, 수익수익자(income beneficiaries)와 자본수익자(Capital beneficiaries)가 누구인지 여부가 확정되어야 한다.

신탁은 기본적으로 자산의 보유 및 운용과 그로 인한 수익의 향유가 분리되는 특성을 갖는다. 신탁은 수익자들이 미성년자들인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특정 예외들이 있지만, 미성년자들은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들과 거래하는 당사자들은 해당 자산을 보유한 수탁자와 미

706) Wardlaw, "Inter Vivos Trusts: A Base Primer", *Estates and Trusts Quarterly*, Vol. 5, 1980-81, p. 298.

707) Underhill and Hayton, *Law Relating to Trusts and Trustees*, 14th ed., 1987. p. 3.

708)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8.215.10.

성년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⁷⁰⁹⁾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분리된 독립적인 납세의무자로서 간주된다.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신탁은 개인으로서 간주된다.⁷¹⁰⁾

신탁의 캐나다 거주자성(residency)은 세법상 중요한 쟁점이다. 신탁이 캐나다 거주라면 신탁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그렇지 않다면 캐나다 내에서 비거주자로서 과세된다. 캐나다의 거주자성을 판별하는 것에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된 선도적인 판례⁷¹¹⁾를 살펴본다. 한 수탁자는 캐나다 거주자였고 다른 두 수탁자들은 버뮤다 거주자들이었다. 신탁재산의 보유 및 운용은 버뮤다 내에서 이루어졌다. 신탁약정에 의하면 수탁자들은 다수결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 증거에 의하면 버뮤다 내 수탁자들은 독립적인 판단을 행하였고 때때로 캐나다 수탁자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수익자들 중 일부는 캐나다 거주자들이었고 다른 수익자들은 미국 거주자들이었다. 법원은 해당 신탁이 버뮤다 거주자들과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다음 두 사실관계에 기인한 것이다. 첫째, 수탁자들 중 다수가 버뮤다에 거주한다. 둘째, 신탁서류(trust document)에 의하면 수탁자들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모든 문제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위 판결은 수탁자들의 다수가 어느 한 과세관할에 거주하지 않거나 수탁자들의 만장일치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수탁자가 여러 과세관할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⁷¹²⁾

캐나다 국세청(CRA)은 일반적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신탁재산을 지배하는 수탁자, 유언집행자(executor), 관리자(administrator), 상속인 또는 다른 법률상 대표자가 거주하는 곳에 신탁이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⁷¹³⁾

709) Id.

710) ITA: 104(2).

711) Thibodeau Family Trust v. The Queen, 78 DTC 6376 (F.C.T.D.).

712)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8.215.30.

713) IT-447.

나. 신탁 유형

신탁 유형에는 생전신탁(Inter vivos trust) 및 유언신탁(Testamentary trust),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 및 비재량신탁(Non-discretionary trust), 민사신탁(Personal Trust) 및 상사신탁(Commercial Trust), 배우자신탁(Spousal Trust), 자익신탁(Alter ego Trust)과 합동 배우자 등 신탁(Joint spousal or common-law partner trust) 등이 있다.

유언신탁은 개인의 사망에 따라 발효되는 신탁인 반면, 생전신탁은 위탁자가 생존하는 기간 동안 설정되고 연방소득세법상 유언신탁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⁷¹⁴⁾ 위탁자의 사망에 따라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닌 방법으로 신탁이 설정된다면 해당 신탁은 유언신탁이 아니다.⁷¹⁵⁾

재량신탁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분배일, 신탁소득의 수익자에 대한 지급 여부, 수익자에 대한 지급금액 및 수익자들 사이의 분배비율을 결정하는 권한이 부여된 신탁을 의미한다. 또한 수탁자가 신탁의 종료시기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경우도 있다. 비재량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선택을 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⁷¹⁶⁾

민사신탁은 어느 수익자도 신탁 또는 위탁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서 수익권을 취득하지 않는 생전신탁 또는 유언신탁을 의미한다. 반면, 상사신탁은 법에 정의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민사신탁이 아닌 신탁을 의미한다. 이에는 특정 투자 도관체 신탁(specified investment flow-through trust: SIFT Trust)이 포함된다. 특정 투자 도관체 신탁은 수익권이 상장되고 하나 이상의 포트폴리오가 아닌 투자자산들을 보유한 캐나다 거주자인 신탁을 의미한다.⁷¹⁷⁾

배우자신탁은 캐나다 연방소득세법상의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생전신탁 또는 유언신탁을 의미한다.

첫째,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사망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모든 신탁소득을 받을 적격

714) ITA: 108(1).

715)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8.220.10.

716) Id., at ¶ 18.220.20.

717) Id., at ¶ 18.220.30.

이 있을 것

둘째, 배우자 이외의 어느 누구도 그 배우자의 사망 이전에는 일체의 신탁의 소득 또는 자본을 수령하거나 달리 이용할 수 없을 것

셋째, 생전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이전시점에 위탁자와 신탁 모두 캐나다의 거주자일 것

넷째, 유언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사망 이후 36개월 이내에 신탁으로 이전되어야 하고, 그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그에 대한 신청을 할 것⁷¹⁸⁾

자익신탁은 위탁자 자신을 위하여 설정되는 신탁으로서 수탁자에게 위탁자 자신의 재산을 이전하고,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환수하거나 위탁자가 사망하기 이전까지 신탁소득을 위탁자가 수령한다.⁷¹⁹⁾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시점에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된다.

첫째,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사망 이전에 발생한 신탁의 모든 소득을 수취할 적격이 있을 것.

둘째, 납세의무자 이외의 어느 누구도 그 배우자의 사망 이전에는 일체의 신탁의 소득 또는 자본을 수령하거나 달리 이용할 수 없을 것.

셋째, 위탁자는 최소한 65세일 것.

넷째, 해당 신탁이 1999년 이후에 설정될 것.⁷²⁰⁾

합동 배우자 등 신탁은 신탁의 목적 및 적용규칙의 측면에서 자익신탁과 유사하다. 합동 배우자 등 신탁은 개인이 신탁에 재산을 이전하고, 자신 및 배우자(보통법 상 파트너를 포함한다)가 수익자가 되는 신탁을 말한다.⁷²¹⁾ 또한 위탁자 또는 그의 배우자

718) Id., at ¶ 18.220.40.

719) ITA: 248(1)

720)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8.220.50.

721) ITA: 248(1).

가 사망하거나 또는 신탁재산을 환수하기 전까지는 해당 재산은 신탁에서 관리된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시점에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된다.

첫째,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사망 이전에 발생한 신탁의 모든 소득을 수취할 적격이 있을 것.

둘째,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배우자 이외의 어느 누구도 그 배우자의 사망 이전에는 일체의 신탁의 소득 또는 자본을 수령하거나 달리 이용할 수 없을 것.

셋째, 신탁설정 시점에 위탁자가 생존하였고 최소한 65세일 것.

넷째, 해당 신탁이 1999년 이후에 설정될 것.⁷²²⁾

2. 신탁소득 계산

가. 신탁 설정 시의 과세

일반적으로 자본자산은 신탁에 공정 시장가치로 이전된다. 따라서 위탁자가 자본 소득이 발생한 자본자산을 신탁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위탁자에 대하여 과세된다. 이 경우 신탁재산의 취득원가는 공정 시장가치이다.⁷²³⁾

나.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1) 신탁의 소득

신탁의 순소득은 일체 개인의 소득의 계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다.⁷²⁴⁾

722)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8.220.60.

723) Id., at ¶ 18.230.

724) Id., at ¶ 18.245.

2) 수익자에 지급되는 소득

신탁은 신탁소득의 계산 시 수익자에게 지급되거나 지급하여야 할 소득을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신탁소득은 신탁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는다.⁷²⁵⁾

신탁소득의 계산 시 공제된 수익자에게 지급된 소득은 수익자 단계에서 자산소득으로서 과세된다.⁷²⁶⁾ 다만 법이 정하는 특정 유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데, 그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그 소득 구분이 지켜진다. 다음 소득의 경우에는 특별한 취급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⁷²⁷⁾

첫째, 캐나다의 법인으로 부터 수취한 과세대상 배당소득(수익자가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⁷²⁸⁾

둘째, 비과세 배당(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제된다).⁷²⁹⁾

셋째, 순과세대상 자본소득(net taxable Capital gains: 순자본손실은 수익자에 직접 흘러가지 않는다).⁷³⁰⁾

넷째, 국외원천소득과 관련 외국납부세액(수익자가 전액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⁷³¹⁾

개인 수익자에게 배분되고 신탁에 의하여 지정된(designated by trust) 신탁의 순과세대상 자본소득은 적격 농장자산 및 소규모 사업의 적격 주식과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⁷³²⁾ 신탁은 신탁소득 계산에 있어서 수익자에

725) ITA: 104(6).

726) ITA: 108(5).

727)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8.250.

728) ITA: 104(19).

729) ITA: 104(20).

730) ITA: 104(21).

731) ITA: 104(22).

732) ITA: 104(21.2), (21.3).

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공제할 수도 있다.⁷³³⁾ 이는 신탁이 현행 소득분배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이월결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⁷³⁴⁾

3) 소득의 귀속

일반적으로 신탁자가 특수관계자(non-arm's length persons) 또는 18세 이하의 조카들 또는 배우자를 위하여 자산을 신탁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해당 자산으로부터 소득을 얻게 하기 위한 적절한 귀속규칙이 적용된다.⁷³⁵⁾ 이는 신탁소득이 이전되지 않았을 경우에 위탁자에게 과세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귀속원칙은 당초 신탁에 이전되거나 대여된 자산을 대체하는 일체의 자산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 유보수익[the accumulating income; 우선적 수익권 선택(preferred beneficiary election)의 대상인 소득을 제외한다]은 신탁 단계에서 과세된다. 이는 다시 위탁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⁷³⁶⁾

과세대상 자본소득 및 공제가능 자본손실로서 생전배우자신탁에 의하여 실현되고 신탁으로부터 배분되어 배우자 수익자 단계에서 과세된 것은 해당 배우자신탁에 자산을 이전하거나 대여한 개인에게 귀속된다.⁷³⁷⁾

귀속된 금액은 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배우자에 의하여 가득된 소득 및 자본소득'과 '특수관계자 및 18세 이하 조카들[이하 '지정된 자'(designated persons)이라 한다]이 이전되거나 대여된 자산으로부터 가득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위 귀속규칙들이 적용된다.⁷³⁸⁾

신탁으로 이전 또는 대여된 자산에서 가득한 지정된 자의 소득으로서 귀속되는 금

733) ITA: 104(13.1).

734)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8.250.

735) ITA: 74.3.

736)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8.255.

737) ITA: 74.2, 74.3.

738) ITA: 74.3.

액은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해진다.⁷³⁹⁾

첫째, 신탁으로부터 지정된 자의 소득

둘째, 신탁으로 이전 또는 대여된 자산에서 가득한 신탁소득(지정된 자의 소득/ 모든 지정된 자들의 신탁으로부터의 총소득)

신탁의 배우자 수익자의 과세대상 자본소득 중 귀속되는 금액은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하여진다.⁷⁴⁰⁾

첫째, 신탁에 의하여 배우자 수익자의 과세대상 자본소득으로 지정된 금액

둘째, 신탁에 의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해당 과세연도의 순 과세대상 자본소득

개인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산의 대여 또는 특수관계자들 사이의 채무 역시 귀속규칙의 적용을 받는다.⁷⁴¹⁾ 해당 대여행위의 주된 동기가 이전받은 자 단계에서의 과세되는 방법을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해당 소득은 이전한 자의 단계에서 과세된다. 이러한 귀속규칙은 개인에 대하여 대여되거나 채무가 신탁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⁷⁴²⁾

4) Kiddie Tax

현행 kiddie tax는 미성년자인 자녀들과 소득을 나누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바, 17세 이하 개인의 신탁으로부터의 소득을 포함하는 특정 소득에 대하여 개인의 최고한계세율로 과세한다.⁷⁴³⁾ 이러한 방식으로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⁷⁴⁴⁾

첫째, 신탁 또는 파트너십을 통하거나 직접 수령한 ‘캐나다 폐쇄회사 및 외국회사’의 과세대상 배당 및 다른 주주 혜택들.

739) ITA: 74.3(1) (a).

740) ITA: 74.3(1) (b).

741) ITA: 56(4.1).

742)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8.255.

743) ITA: 120.4.

744)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8.260.

둘째, 신탁 또는 파트너십이 자녀의 친척에 의하여 수행되거나 친척이 참여하는 사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통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해당 신탁 또는 파트너십으로부터 얻은 소득.

Kiddie tax가 적용되는 소득에 대하여서는 배당세액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외의 다른 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 소득에 대하여서는 정규적인 귀속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위 소득은 법인귀속규칙에 의하여 부과된 간주이자 혜택을 감소시킨다.⁷⁴⁵⁾

5) 유보소득 및 우선수익자 선택(preferred beneficiary election)

특정 상황하에서는 우선수익자(preferred beneficiary)와 관련하여 선택이 있는 경우, 신탁은 신탁소득을 계산할 때 유보소득에 대하여 공제를 할 수 있다. 우선수익자 선택은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들 모두가 신탁의 과세기간 말 90일 내에 합동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 경우 우선수익자는 신탁의 유보소득 중 자신의 몫을 소득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미 과세된 신탁소득을 실제 수익자에게 배분할 때에는 과세되지 않는다.⁷⁴⁶⁾

우선수익자는 신탁의 수익자로서 캐나다의 거주자이고, '수탁자, 위탁자의 배우자 혹은 보통법상 파트너, 위탁자의 자녀, 위탁자의 손자(녀) 또는 위탁자의 증손자(녀)'이며 정신적 또는 육체적 손상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⁷⁴⁷⁾

다. 신탁의 세액계산

1) 과세기간

생전신탁의 과세기간 말은 12월 31일이다. 유언신탁의 과세기간은 역년주의를 따

745) ITA: 56(5), 74.5(13), 74.4(2)(g).

746)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8.265.

747) ITA: 108(1), 118(3.1).

를 필요가 없다. 그러나 12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과세기간을 통상적으로 회계가 이루어지는 연도에 근거하여 정할 수 있다. 유언신탁의 첫 과세기간은 위탁자의 사망 이후 1년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⁷⁴⁸⁾ 신탁의 과세기간이 어떻게 정하여지든 세액신고는 신탁의 과세기간 말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⁷⁴⁹⁾ 수익자는 신탁과 과세기간이 끝나는 역년에 신탁으로부터의 소득을 신고하여야 한다.⁷⁵⁰⁾

2) 세율

캐나다 연방소득세법은 신탁을 개인으로서 과세하는바, 생전신탁에 대하여서는 연방소득세율 29%가 적용된다. 또한 유언신탁에 대하여서는 개인과 동일한 한계세율이 적용된다.⁷⁵¹⁾

‘특정 투자 도관체 신탁(SIFT trust)의 사업소득 또는 소득신탁(income trust)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이 ‘법인에 의하여 가득된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 말 현재 존속하였던 특정 투자 도관체 신탁에 대하여서는 일반적으로 2011 과세기간부터 특별한 조세가 적용된다. 분배된 비포트폴리오 소득(본질적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은 기본 연방법인세율에서 연방세율을 감경하고 13%의 세율(주법인세율의 대응치)을 더한 것으로 한다. 이러한 유형의 소득은 신탁에 의하여 공제되지 않고 법인세를 납부한 재원으로서 투자자들에게 분배된다. 이는 투자자 단계에서 배당소득이 된다. 그러나 만약 투자자들이 연기금이거나,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캐나다에서 전혀 과세되지 않는다면, 위 배당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⁷⁵²⁾

748) ITA: 104(23) (a), 249.1(b) (i.1).

749) ITA: 150(1) (c).

750) ITA: 104(13).

751) ITA: 122(1).

752) ITA: 122.1(2), 122(1) (b);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8.280.20.

3) 세액공제 및 최저한세

신탁에 대하여서는 인적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배당세액공제와 외국 납부세액공제와 같은 세액공제는 적용된다.⁷⁵³⁾

‘수익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에 대하여는 최저한세(the minimum tax)가 적용된다. 또한 최저한세로부터의 \$40,000 공제혜택은 유언신탁에 대하여서만 허용된다. 신탁 유보소득에 대하여 우선 수익자 선택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계산 목적상 공제되지 않는 금액과 신탁소득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는 금액은 서로 구분되어 신탁 수익자들에게 배분되어야 한다.⁷⁵⁴⁾

753) ITA: 122(1.1).

754)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8.290.

V. 국제조세

1. 국제조세의 체계

캐나다가 과세권을 갖는지 여부는 거주자성(residency)에 의하여 결정된다.⁷⁵⁵⁾ 시민권의 보유 여부는 적절한 기준이 아니다. 전 과세기간 동안 캐나다의 거주자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는 당해 과세기간 동안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이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된다.⁷⁵⁶⁾ 캐나다 연방소득세법은 비거주자 및 국외법인에 대하여서는 캐나다 내 소득원천에 기하여 발생한 소득 및 이득에 대하여 과세한다.⁷⁵⁷⁾ 일반적으로 캐나다 내에서의 소득원천에는 캐나다 내에서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캐나다 내 소재 사업용 자산 또는 부동산의 처분에 따라 귀속되는 금액이 포함된다. 어느 한 과세기간 동안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지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전 과세기간 동안 어느 한 때라도 캐나다 내에 고용되었거나 캐나다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과세대상 캐나다 자산을 처분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는 연방소득세법 Division D에 따라 계산된 당해 과세기간의 캐나다 내 가득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⁷⁵⁸⁾

비거주자의 캐나다 원천소득에는 캐나다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과 같은 수동적 원천소득(passive sources) 역시 포함된다.⁷⁵⁹⁾ 이 소득에 대해서는 Part III상 원천징수 규정들에 의하여 과세한다.⁷⁶⁰⁾

비거주자에 대한 거주지국 과세와 캐나다에서의 과세로 인하여 이중과세가 발생

755) ITA: 2(1).

756) ITA: 126.

757) ITA: 2(3).

758)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9,020.

759) ITA 212(1).

760)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9,020.

할 수 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와 캐나다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조세조약상 비거주자 거주지국에서 캐나다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a foreign tax credit)의 혜택을 부여하여 이중과세를 제거해주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캐나다와 위와 같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중과세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⁷⁶¹⁾

2. 비거주자 · 국외법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가. 비거주자의 소득원천에 따른 과세

1) 비거주자의 캐나다 원천소득

캐나다 국내 세법상 캐나다 원천소득이라고 할지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캐나다 과세에서 면제될 수 있다.⁷⁶²⁾ 캐나다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일반 신고기한은 비거주자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 비거주자 개인은 캐나다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Part I 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과세대상 자본소득을 갖거나 과세대상 캐나다 자산(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지 않은 특정 자산을 제외한다)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⁷⁶³⁾ Part III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캐나다 원천소득은 Division B의 비거주자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⁷⁶⁴⁾

가) 근로소득

비거주자의 캐나다 내 근로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은 캐나다 거주자와 동일하다. 따라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이나, 고용혜택을 받는 부분은 캐나다 거주자의

761) Id.

762) Id. at ¶ 19,110.

763) ITA: 150(1.1), (4).

764)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9,110.

경우와 같고, 사용자가 캐나다 거주자인지 여부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캐나다 개인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은 납부세액에서 공제된다. 캐나다가 체결한 많은 조세조약이 비거주자가 단기간 동안 캐나다에 체재하는 경우 또는 소득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비과세하고 있다.⁷⁶⁵⁾

나) 사업소득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역시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소득원천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한다. ‘캐나다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는 캐나다 내에서 무언가를 생산, 재배, 광물채굴, 창조(creating), 제조, 직조, 개량, 포장, 보존 또는 건설하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⁷⁶⁶⁾ 또한 ‘캐나다 내에서 대리인 또는 직원(servants)을 통하여 판매를 위하여 주문을 권유하거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 또는 ‘캐나다 내에 소재하는 천연자원, 목재자원 또는 부동산(자본자산을 제외한다)을 처분하는 것’ 역시 캐나다 원천소득에 포함된다. 대다수의 캐나다 조세조약은 캐나다 연방소득세법 등 캐나다 국내법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며, 사업소득이 캐나다 내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에 귀속되는 경우에만 과세한다.⁷⁶⁷⁾

캐나다 내에서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대가(fee), 수수료(commossion) 또는 다른 금액을 지급하는 모든 자는 해당 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⁷⁶⁸⁾ 캐나다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고객이 그 대가의 15%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Regulation 105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비거주자가 캐나다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면세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원천징수 면제신청서(waiver application)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면제신청을 하지

765) Id. at ¶ 19,115.

766) ITA: 253.

767)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9,120.

768) ITR: 105(1).

않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는 캐나다 세액신고서에 포함된 사업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다.⁷⁶⁹⁾

지점세(a branch tax)는 캐나다에서 법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지점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법인에 대하여 부과된다.⁷⁷⁰⁾ 지점세는 Part I 세금에 더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많은 기술적인 조정(캐나다 내 자산에 대한 투자공제와 같은)을 거친 세후 캐나다 원천소득의 25%로서 계산된다. 지점세는 외국 모회사 지점을 외국 모회사에 대한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캐나다 내 자회사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것이다. 지점세는 본질적으로 캐나다 내에 보유되거나 재투자되지 않은 지점의 캐나다 원천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바, 이는 캐나다 내에 보유되거나 재투자되지 않은 소득을 대표하는 배당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조세조약 상 지점세에 관한 조항이 국내 세법상 지점세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예를 들면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조세조약에 따르면 지점세율은 5%이다. 조세조약들은 일반적으로 캐나다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지점세를 포함한 비거주자 법인에 대하여 캐나다 세금을 면제하고 있다.⁷⁷¹⁾

다) 과세대상 캐나다 자산의 처분

캐나다 내 과세대상 자산을 처분한 비거주자는 해당 자산에서 발생한 자본소득에서 공제가능한 자본손실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캐나다 연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⁷⁷²⁾

2010년 3월 4일 현재 캐나다 내 과세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⁷⁷³⁾

첫째, 캐나다 내 소재 부동산.

둘째, 캐나다 내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거나 보유된 자산, 위 사업과 관련된 적격 자본자산 또는 위 사업의 재고자산.

769)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9,123.

770) ITA 219

771)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9,125.

772) Id., at ¶ 19,130.

773) ITA: 248(1).

셋째, 처분 전 60개월 동안 어느 때라도 주식 또는 지분의 공정 시장가치의 50%를 초과한 부분이 캐나다 내의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경우에 있어서의 ‘지정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뮤추얼펀드법인은 제외한다)의 주식’, ‘파트너십 지분’ 또는 ‘신탁의 원본수익권(Capital interest)’.

넷째, 적격 주식 교환에 해당되는 법인의 지분은 처분 전 60개월 동안 어느 때라도 비거주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법인[또는 투자신탁(trust units)]의 자본주 발행분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주식 또는 좌수(units)의 공정 시장가치의 50%를 초과한 부분이 캐나다 내의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경우에 있어서의 지정된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뮤추얼펀드법인 포함)의 주식(또는 뮤추얼펀드신탁의 좌수).

과세대상 캐나다 자산에는 캐나다 내에서 수행된 사업에 사용된 자산들 또는 캐나다 내 소재 부동산에 부속된 자산들 역시 포함된다.⁷⁷⁴⁾

라) Section 116 증명(Section 116 certificates)

캐나다 내 과세대상 자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처분 전 어느 때라도 또는 처분 후 10일 이내에 국세청에 법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notice)하여야 한다.⁷⁷⁵⁾ 비거주자인 매도인이 절차준수증명서(a certificate of compliance)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⁷⁷⁶⁾

2) 비거주자의 공제항목과 세액공제

가) 공제항목들

비거주자는 소득 계산 시 다음 사항들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고용 손실, 사업 손실, 사업 투자 손실, Section 111에 따른 이월결손금, 스톡옵션 혜택, 조세조약 상 비과세 금액 및 캐나다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기타 유형의 보수. 법인의 경우에는 타 법인에서부터 받은 배당금액 역시 공제되고 기부금공제 역시 인정된다. 캐나다

774)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9,130.

775) ITA: 116(1), 116(3).

776) ITA: 162(7).

내 비거주자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거주자 개인의 모든 또는 90% 이상의 소득이 당해 과세기간 동안 가득한 캐나다 내 비거주자의 소득에 포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 계산 목적상 허용된 다른 공제항목' 역시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제될 수 있다.⁷⁷⁷⁾

나) 세액공제

캐나다 원천소득의 유형이나 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비거주자는 적격요건을 만족한다면 소득 계산 시 다음 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있다. 기부금세액공제, 정신적 및 육체적 손상에 따른 세액공제, 수업료 세액공제, EI 및 CPP/QPP 세액공제 및 학자금 대출이자 세액공제.

비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 90% 이상이 캐나다 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다음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기본 인적공제, 배우자 등 인적공제, 결혼 유사상태(equivalent-to-married) 세액공제, 가사도우미(caregiver) 세액공제, 피부양인(dependant) 세액공제, 노령 세액공제, 연금소득 세액공제, 캐나다 근로 세액공제, 입양비 세액공제, 대중교통이용 세액공제, 자녀 체육교육비 세액공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세액공제, 장애인주택 구입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장애인부양 세액공제, 교육 및 교과서 세액공제 및 배우자/자녀로부터 이전가능한 세액공제(Credits transferable from spouse/child).⁷⁷⁸⁾

3) 주/지구(Provincial/Territorial)소득세 납부의무

비거주자는 연방소득세뿐만 아니라, 각 주/지구소득세(Provincial/Territorial Income Tax) 역시 납부하여야 한다. 세율은 주별 또는 지구별로 다르다. 만약 비거주자의 소득이 연방소득세의 납세대상이나 주에서 가득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에도 위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연방소득세의 48%에 상당

777)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9,140.

778) Id., at ¶ 19,145.

하는 세금이 추가된다.⁷⁷⁹⁾ 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주내에서 가득한 소득’은 ‘주 내에서 그에 의하여 수행된 직무에 합리적으로 귀속되는 직무 또는 고용에 기한 소득’ 및 ‘주내에서 가득한 사업소득’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이 소득에 대하여서는 위 추가적인 세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캐나다 자산의 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과세대상 자본소득은 주 내에서 가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추가적인 세부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⁷⁸⁰⁾

4) 캐나다 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Part III tax

비거주자가 Part I, subsection 2(3)에 따라 캐나다 내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과세대상 자산의 처분에 기한 자본소득에 대하여 캐나다 소득세를 납부하지만, 이것이 비거주자의 캐나다 원천소득에 유일한 과세는 아니다.

연방소득세법 Part III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특정 소득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 거주자는 캐나다 세금으로서 해당 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할 것을 규정한다. 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통상의 소득유형은 다음과 같다.⁷⁸¹⁾ 경영보수(management fees),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이자(전부 비과세되는 이자를 제외한다)와 이익참가부 채권이자(participating debt interest), 유산 또는 신탁소득(estate or trust income), 임대료와 사용료, 연금혜택, 등록퇴직저축플랜(RRSP)과 등록퇴직소득기금(RRIF) 지급액, 이연수익공유플랜(DPSP) 지급금, 연금 지급금 및 과세대상 배당과 자본배당.

법에 배타적 목록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다. 많은 규정들은 위 범주의 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를 면제할 것을 규정한다. 위 원천징수 세율은 조세조약에 따라 감소될 수 있다. 만약 비거주자가 특정 소득에 대하여 Part III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비거주자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Part I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반대의

779) ITA: 120(1).

780)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9,150.

781) ITA: 212.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다.⁷⁸²⁾

5) 임대소득 관련 대안(Rental income alternative) – Section 216 election

비거주자는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Section 216의 원천징수가 아니라 임대소득 및 임대비용 모두를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다.⁷⁸³⁾ 이와 같은 대안이 선택된 경우 납부할 세액은 순임대소득에 근거하여 계산된다.

6) 캐나다 혜택 관련 대안(Canadian benefits alternative) – Section 217 elections

비거주자가 다음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에 대한 별도의 대안을 갖는다.⁷⁸⁴⁾ 연금혜택, 사망혜택과 section 56에 따른 혜택, 퇴직수당, 보충적 실업혜택(SUB 플랜), RRSP 혜택, DPSP 혜택 및 RRIF 혜택.

비거주자는 과세기간 말의 6개월 내에 캐나다 소득세신고를 하여 section 217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해당 신고서상 Part I에 따라 계산한 세금이 Part III 원천징수 세액(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⁷⁸⁵⁾ 임대소득에 대한과는 달리 section 217 대안에 따른 신고는 비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할 다른 신고(근로소득, 사업소득, 과세대상 캐나다 자산의 처분소득)와 별도로 분리되지 않는다.⁷⁸⁶⁾

캐나다 원천소득이 비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와 동일하게 인적 세액공제가 적용된다.⁷⁸⁷⁾ 9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금액의 15% 중 적

782)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9,160.

783) ITA: 216(1).

784) ITA: 217.

785) ITA: 217(2).

786)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9,170.

787) ITA: 217(4).

은 금액에 대하여 인적 세액공제가 적용된다.⁷⁸⁸⁾ 인적 세액공제와 section 217에 따라 신고된 캐나다 혜택들.

나. 부분적 거주자(Part-year Residents)

1) 부분적 거주자의 개념

부분적 거주자란 1과세연도 기간 내에 일부에 대하여서만 캐나다의 거주자인 자를 의미하며, 이에는 특별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다음 두 상황에 의하여 부분적 거주자가 될 수 있다.⁷⁸⁹⁾

첫째, 해당 과세연도의 어느 시점에 영구적 거주(permanent residence)를 위하여 캐나다를 떠나 타 국가로 이주하는 경우(Emigration).

둘째, 해당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에 타 국가의 거주자인 자가 캐나다의 영구적 거주자가 되는 경우(Immigration).

부분적 거주자는 캐나다 내에서 영구적 주거를 갖는 기간 동안에 대하여서만 캐나다 거주자로 간주된다. 캐나다 거주자인 기간에 대한 전 세계 소득 및 비거주자인 기간에 대한 캐나다 원천소득에 근거하여 Part I 세금을 계산한다.⁷⁹⁰⁾ 부분적 거주자에는 일시적 체류자(sojourner)로서 거주자로 간주된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⁷⁹¹⁾ 그와 같은 거주자는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거주자로 간주된다.⁷⁹²⁾

788) ITA: 217(5).

789) ITA: 114.

790) ITA: 2(1), (3).

791) ITA: 250(1) (a).

792)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9,210.

2) 부분적 거주자에 대한 소득계산

부분적 거주자에 대한 캐나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캐나다 거주자인 기간 동안 지급한 RRSP 불입금, 배우자 및 자녀부양 지급금 및 적격 자녀부양 비용과 같은 특정 공제금액은 통상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들이 적용된다. 부분적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제가 허용되는 것들에는 종업원 스톡옵션 공제와 이월결손금 공제가 있다.⁷⁹³⁾ 자본소득공제는 부분적 거주자가 직전 또는 직후 과세기간에 걸쳐서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⁷⁹⁴⁾

부분적 거주자의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세율은 다른 캐나다 거주자들의 경우와 같다. 다만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른 캐나다 거주자의 경우와 비교할 때보다 제한적이다.⁷⁹⁵⁾ 일부 인적 세액공제는 부분적 거주자가 되는 연도에 거주자로서 인정되는 날들을 기준으로 하여 비례적으로 안분하여 적용된다.⁷⁹⁶⁾

3) 캐나다 입국이민 시 간주취득(Deemed Acquisition on Entering Canada)

캐나다에 거주를 시작한 납세의무자가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은 이를 처분한 다음, 공정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로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는바, 이를 간주취득(Deemed Acquisition)이라 한다. 이는 대부분의 자산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자본자산(Capital property)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캐나다 입국 후에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손익은 캐나다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간주취득액이 캐나다 연방소득세법상의 취득원가(cost base)가 된다.⁷⁹⁷⁾ 이 원칙은 개인이 보유한 다음 자산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⁷⁹⁸⁾ 과세대상 캐나다 자산, 캐나다 내에서 수행되

793) ITA: 114(b).

794) ITA: 110.6(5); IT-262R2.

795)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9,210.

796) ITA: 118.91, 118.01-03, 118.1-2., 118.5-7, 118.62.

797) ITA: 128.1(1)(b),(c)

798) ITA: 128.1(1)(b).

는 사업의 재고자산, 캐나다 내에서 수행되는 사업의 적격 자본자산 및 전속적 권리 또는 이해관계(excluded rights or interests).

법인이 입국이민하는 경우 그 당시 해당 법인이 캐나다 거주자인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법인에 대한 간주배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서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⁷⁹⁹⁾

4) 캐나다 출국이민 시 간주처분(Deemed Disposition on Leaving Canada)

캐나다 거주자가 캐나다 거주자성을 포기하는 시점에 해당 자산을 공정 시장가치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는바, 이를 간주처분(Deemed Disposition)이라고 한다.⁸⁰⁰⁾

간주처분 규정은 약간의 예외가 있지만 자본자산과 자본자산이 아닌 자산 모두에 대하여 적용된다. 자산의 속성에 따라 간주처분에 따라 과세대상 자본소득, 공제가능 자본손실, 자본비용공제 환입, 종단손실(terminal loss) 또는 사업소득(또는 결손금)이 발생하게 된다. 간주처분에 따른 세금을 통상 ‘출국세’(departure tax)라고 부른다.⁸⁰¹⁾

잠재적인 세법상 취급으로 인하여, 캐나다 거주자성이 상실되는 시점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그 기산점은 다음 날 중 늦은 날이다.⁸⁰²⁾

첫째, 개인이 캐나다를 떠난 시점.

둘째, 배우자 및/또는 부양가족이 캐나다를 떠난 시점.

셋째, 개인이 타국의 거주자가 된 시점.

간주처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산은 Section 128.1(4)(b), 128.1(10) 및 128.1(6)에 규정되어 있다. 위 예외가 적용되는 자산 중 ‘캐나다 내 부동산, 천연자원 또는 목재자원’ 및 ‘출국 시 캐나다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한 사업의 자산(자본자산, 적

799) ITA: 128.1(c.1), (c.2).

800) ITA: 128.1(4).

801)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9,230.

802) Id.

격자본자산 및 재고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서는 공정 시장가치로 처분한 것으로 보도록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⁸⁰³⁾

3. 조세조약의 영향: 이중과세방지 규정

캐나다는 80개국 이상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캐나다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의 가입국이므로 국제법에 따라 해당 조약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해결한다.

첫째,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관할(jurisdiction's right to tax)을 정하여 과세권을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는 방법.

둘째,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법.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캐나다의 대부분 조세조약은 정보교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는 상호 세법 집행에 있어서 협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조약은 캐나다 의회를 통하여 입법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시행 관련 법령에 의하면 캐나다 연방소득세법상 어느 조항이 캐나다가 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조항과 충돌하는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조세조약시행법(The Income Tax Conventions Interpretation Act: ITCIT)은 캐나다에 의하여 체결된 조세조약에 사용된 용어를 정의하고 그 개념을 분류한다. 조세조약시행법의 몇 조항은 조세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캐나다는 조세조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UN 모델 조세조약(the United Nations Model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Nations)과 OECD의 모델 조세조약(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Capital)을 사용하여 왔다. 캐나다 법원은 OECD 모델조세조약 주식(the

803) 128.1(4)(d).

Commentary of the provisions of the OECD Model)을 중요한 해석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캐나다 주정부들의 조세체계는 조세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 조세조약 또는 조세조약의 특정 조항이 주세법상 인정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서는 주 입법을 검토하여야 한다.⁸⁰⁴⁾

4. 역외 거래 및 대출(Cross-Border Transactions and Loans)

가.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1) 개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이란 캐나다의 납세의무자가 특수관계자인 비거주자와 매입 또는 매출거래에서 사용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거래(Transaction)에는 재화, 용역, 기타 무체재산 등이 객체에 포함될 수 있다. 이전가격 세제와 관련한 법제가 도입되어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으로 거래되도록 하기 위한 것에 따른 것이다.

2) 캐나다 연방세법상의 이전가격세제

① 캐나다 연방세법상에서는 이전가격에 대해서 가격, 임차료, 로열티, 수수료 기타 지급금으로, 여기에는 사용, 생산, 제조 및 재생산, 및 거래 과정에서의 제공되는 용역 등에 따른 대가가 모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전가격 조정(Transfer Pricing Adjustment)은 비거주자와 납세의무자 간의 비정상적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비정상적 거래란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i) 계약 조건이 일반적인 정상의 거래(arm's

804)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9,300.

length transaction)와 다른 경우, 또는 ii) 제3자와의 거래가 아니면서, 단지 조세이익(tax benefit)을 얻을 목적만 있는 경우를 말한다.⁸⁰⁵⁾

- ② 캐나다 연방국세청에서는 정상가격 및 조건을 찾는 방식 중 거래 수익 산정 방식(Transactional profit method: TPM) 대신에 전통적인 거래 접근 방식(Traditional transaction method: TTM)을 선호하며, 그 중에서 특히 비교 가능한 제3자 정상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CUP method)을 적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⁸⁰⁶⁾
- ③ 이전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따른 가산세(penalty)가 부과되는데, 이는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가격 금액의 10%로서 계산된다. 하지만 해당 조정 과정 중에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가격 및 조건에 따른 거래가 합리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이러한 점이 인정받게 되면 해당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⁸⁰⁷⁾
- ④ 캐나다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과다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주주의 수익으로 보게 되며, 따라서 이는 배당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해당 기업은 주주에 대해서 배당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⁸⁰⁸⁾

나.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 Inbound Loans

사업소득 또는 자산소득을 얻기 위한 대출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캐나다 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서 공제된다.⁸⁰⁹⁾ 과소자본세제는 캐나다 법인의 상당한 지분(의결권의 수 또는 가치의 25% 이상)을 갖는 비거주자 주주가 단독으로 또는 그의 특수관계자와 함께 배당이 아닌 이자를 통하여 캐나다 법인의 이익을 줄이

805) ITA: 247(1)

806)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9,410.

807) ITA: 247(4)

808) ITA: 15(1), 214(3)(a), (246(1)

809) ITA: 20(1)(c).

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부채 대 자본의 비율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이자의 손금산입이 제한된다. 특정 비거주자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채의 해당 주주의 자본에 대한 비율이 2:1을 초과하는 경우에 위 제한이 부과된다.⁸¹⁰⁾

다. 비거주자에 대한 법인의 채권(Corporate Debt Owed by a Non-Residents) -Outbound Loans

캐나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들에게 Part III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배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경우 원천징수의 목적상 위 대여금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다.⁸¹¹⁾ 위 규정은 대출 잔액이 대출이 이루어진 사업연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⁸¹²⁾ 국세청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 대출이 발생한 다음 사업연도 이후 첫 달 15일부터 이자를 기산한다.⁸¹³⁾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은 대출잔액이 상환된 사업연도 이후 2년 이내에 국세청에 서면신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⁸¹⁴⁾

또한 캐나다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낮은 이자율 또는 무이자율로 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은 최소한 간주이자(deemed interest)를 소득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이 규정은 1년을 초과하여 존속된 대출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⁸¹⁵⁾ 위 간주이자 규정은 캐나다 내국법인의 다음 대출에 대하여서는 적용되지 않는다.⁸¹⁶⁾

첫째, 대출금이 적극적 사업소득을 위하여 사용된 경우에 있어서의 피지배 외국 관계회사에 대한 대출.⁸¹⁷⁾

둘째,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로 인하여 독립기업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 특수관계자

810) ITA: 18(4).

811) ITA: 15(2), 214(3)(a).

812) ITA: 15(2.6).

813) ITA: 227(6.1).

814) ITA: 15(9), 80.4(2), 214(3)(a).

815)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9,440.

816) ITA: 17(8).

817) ITA: 17(9).

가 아닌 자에 대한 대출.

셋째, 위 문단의 주주대출 규정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해당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대출금. 만약 대출금이 상환되어 원천징수이자자가 환급되는 경우에는 간주이자규정이 해당 대출금이 존속한 기간에 대하여 적용된다.⁸¹⁸⁾

캐나다 내국법인이 간접적인 대출을 통하여 간주이자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있다. 위 간접적인 대출로 인하여 특수관계자 들 사이에 채무를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그 대출을 받는 비거주자가 간주이자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캐나다 내국법인에 대하여 해당 금액의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간주된다.⁸¹⁹⁾

그러나 다음 대출에 대하여서는 위 조세회피방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⁸²⁰⁾

첫째, 비거주자들이 모두 캐나다 내국법인의 피지배 외국 관계회사인 경우.

둘째, 비거주자들이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그들 사이의 대출이 독립기업 원칙상 조건에 따른 경우.

5. 캐나다 거주자의 외국투자에 대한 과세

캐나다 거주자의 외국에 대한 투자를 캐나다 세법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투자의 성격에 의하여 결정된다. 외국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 투자인지 아니면 소극적 투자인지에 따라 세법상 취급이 달라진다.

가. 적극적 사업소득의 경우

1) 지점 형태의 투자

캐나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캐나다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이 아닌 지점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득이 캐나다

818) ITA: 17(1), 17(7), 227(6.1).

819) ITA: 17(1), (2).

820) ITA: 17(15).

연방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있고, 미사용 공제액은 3년 소급공제 및 10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⁸²¹⁾

2) 개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개인의 경우에는 해당 배당금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되었을 때, 이를 자신의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해당 배당에 대하여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용에는 일정한 제한이 부과되어 있다.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해당 소득의 15% 이하인 경우에는 Part I 세금에서 공제되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이 Division B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다. 따라서 1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전액 공제되지 않는다. 개인은 Part I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을 이용하기보다는 외국납부세액 전액을 Division B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은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캐나다 원천소득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이용될 수 있다. 또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⁸²²⁾

3) 법인이 외국 비관계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외국 관계회사가 아닌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거주자 법인인 경우에도 개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배당을 수취하는 시점에 과세된다. 외국 관계회사(a foreign affiliates)는 캐나다 내국법인이 직접 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와 함께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의 비거주자 법인

821)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9,515.

822) Id., at ¶ 19,520.

을 의미한다. 외국법인이 관계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배당은 내국법인의 소득에 포함되고 외국 원천징수세액의 전액이 공제된다. 다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은 Part I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을 이용하기보다는 사업소득 또는 자산소득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 전액을 Division B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⁸²³⁾

4) 법인이 외국 관계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외국 관계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배당 재원의 성질에 따라 그 세법상 취급이 달라진다. 배당 재원에는 비과세 잉여금(exempt surplus), 과세 잉여금(taxable surplus), 또는 취득 전 잉여금(pre-acquisition surplus)이 있다.

비과세 잉여금 배당은 Division C에 따라 전액 공제된다. 비과세 잉여금 배당은 외국 세율에 따라 과세됨에 그친다. 비과세 잉여금에는 캐나다와 조세조약 또는 포괄적 조세정보 교환협정(TIEA)을 체결한 국가에서 가득한 적극적 사업소득, 외국 관계회사가 지정된 조세조약국에서 수행한 적극적 사업소득을 얻거나 창출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자산의 처분에 기인한 자본소득이 포함된다. 또한 비과세 잉여금에는 다른 자산에 대한 자본소득의 50% 역시 포함된다.

과세대상 잉여금에 기한 배당에 대하여 제공된 Division C 손금산입 간접외국납부세액과 직접외국납부세액 모두에 관계된다. Division C 손금산입액은, Part I 세금에서 공제되는 대신에, 적절한 세법상 인자들(relevant tax factors)을 통하여 동일한 가치가 있는 손금공제액으로 전환된다. 외국 관계회사가 가득한 과세 잉여금에는 캐나다와 조세조약 또는 포괄적 조세정보 교환협정(TIE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외국 관계회사가 가득한 적극적 사업소득 및 국외원천 자산소득(foreign accrual property income: FAPI)이 포함된다. 또한 외국 관계회사가 적극적 사업소득을 얻거나 창출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하지 않은 자산에 기인한 자본소득 및 외국 관계회사 지분의 처분에 따른 자본소득이 포함된다.

823) Id., at ¶ 19,525.

외국법인이 비과세 잉여금 및 과세 잉여금 모두를 갖는 경우에는, 배당은 비과세 잉여금, 과세 잉여금 및 취득 이전 잉여금의 순서로 배당한 것으로 본다. '취득 전 잉여금배당'은 투자금의 반환을 의미하는데 전액 손금산입되고 비과세된다. 외국 관계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캐나다 내국법인은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⁸²⁴⁾

나. 수동적 소득의 경우

캐나다 거주자인 개인 또는 법인이 피지배 외국 관계회사(Controlled Foreign Affiliates: CFA)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CFA가 가득한 FAPI 중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몫은 캐나다 거주자의 Division B 소득에 포함되며 Part I을 납부하여야 한다.⁸²⁵⁾ FAPI는 CFA에 의하여 가득된 수동적 투자소득(Passive investment income)을 의미한다. 이에는 또한 캐나다와 조세조약 또는 포괄적 조세정보 교환협정(TIEA)을 체결하지 않거나, 60개월 이상 협상 과정 또는 협상 시도 단계에 있는 국가에서 CFA가 가득한 적극적 사업소득 역시 포함한다.⁸²⁶⁾ FAPI 규칙은 피지배 외국 실체가 가득한 수동적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이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⁸²⁷⁾ FAPI에 대한 피지배 외국실체 단계의 세금은 손금에 산입된다.⁸²⁸⁾ 손금을 차감한 순소득은 투자지분의 수정 취득원가에 가산된다.⁸²⁹⁾

CFA에 의하여 FAPI로부터 배당이 지급되는 시점에 해당 배당은 소득에 포함되나 이에 상응하는 공제가 적용된다. 소득에 산입된 배당소득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위 공제는 이전에 배당소득으로 산입된 금액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⁸³⁰⁾ FAPI가 투자자에게 배당으로서 모두 배당된 경우에는 이전의 FAPI 소득 및 손금산입에 관한 사항

824) Id., at ¶ 19,530.

825) ITA: 95(1).

826) ITA: 91(1).

827)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9,545.

828) ITA: 91(4).

829) ITA: 92(1).

830) ITA: 12(1)(k), 90(1).

은 반대로 세무조정된다.⁸³¹⁾ 외국의 피지배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투자자가 개인이라면 외국납부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고,⁸³²⁾ 투자자가 법인이라면 과세 잉여금 배당공제가 FAPI 공제보다 먼저 적용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캐나다 내국법인의 외국 피지배회사는 다음에 의하여 지배되는 캐나다 내국법인의 외국 관계회사이다.⁸³³⁾

첫째, 캐나다의 거주자들.

둘째, 캐나다의 거주자 및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자.

셋째, 캐나다 거주자 및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4명까지의 캐나다 거주자들(관련된 캐나다 주주들).⁸³⁴⁾

넷째, 캐나다의 거주자, 관련된 주주들, 관련 주주들의 특수관계자들.⁸³⁵⁾

6. 조세조약 및 현황

캐나다는 2013년 현재 91개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였으며, 9개의 국가와의 조세조약은 서명은 완료되었으나,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8개국과는 기존 조세조약의 재협상 또는 조세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 있다.⁸³⁶⁾ 캐나다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⁸³⁷⁾

831) ITA: 91(5).

832) ITA: 126(1).

833)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9,545.

834) ITA: 95(1).

835) ITA: 94.1(2)(h).

836) the Honourable James M. Flaherty (Minister of Finance), "Jobs Growth and Long-term Prosperity" (Economic Action Plan 2012), Ministry of Finance, 2012, p. 111.

837) Canadian Master Tax Guide, at ¶ 14,305.

〈표 2-V-1〉 조약체결 국가 현황

	국가명		국가명
1	Algeria	47	Latvia
2	Argentina	48	Lithuania
3	Armenia	49	Luxembourg
4	Australia	50	Malaysia
5	Austria	51	Malta
6	Azerbaijan	52	Mexico
7	Bangladesh	53	Moldova
8	Barbados	54	Mongolia
9	Belgium	55	Morocco
10	Brazil	56	Netherlands
11	Bulgaria	57	New Zealand
12	Cameroon	58	Nigeria
13	Chile	59	Norway
14	China(PRC)	60	Oman
15	Colombia	61	Pakistan
16	Croatia	62	Papua New Guinea
17	Cyprus	63	Peru
18	Czech Republic	64	Philippines
19	Denmark	65	Poland
20	Dominican Republic	66	Portugal
21	Ecuador	67	Romania
22	Egypt	68	Russia
23	Estonia	69	Senegal
24	Finland	70	Singapore
25	France	71	Slovak Republic
26	Gabon	72	Slovenia
27	Germany	73	South Africa

〈표 2-V-1〉의 계속

	국가명		국가명
28	Greece	74	Spain
29	Guyana	75	Sri Lanka
30	Hongkong	76	Sweden
31	Hungary	77	Switzerland
32	Iceland	78	Tanzania
33	India	79	Thailand
34	Indonesia	80	Trinidad and Tobago
35	Ireland	81	Tunisia
36	Israel	82	Turkey
37	Italy	83	Ukraine
38	Ivory Coast	84	United Arab Emirates
39	Jamaica	85	United Kingdom
40	Japan	86	United States
41	Jordan	87	Uzbekistan
42	Kazakhstan	88	Venezuela
43	Kenya	89	Vietnam
44	Korea (Republic of)	90	Zambia
45	Kuwait	91	Zimbabwe
46	Kyrgyzstan		

제3편 소비세제

I. 부가가치세

1. 개관

부가가치세(the 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캐나다 내에서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일반소비세(a broad-based consumption tax)에 해당한다. 현재의 부가가치세는 1991년 개별소비세법(the Excise Tax Act)를 개정하여 시행된 것이며 (구) 연방제조자 판매세(the former federal manufacturer's sales tax: FST)를 대체한 것이다. GST는 뉴질랜드 모델에 기초한 것이다.

캐나다의 GST는 최종소비단계의 재화 및 용역의 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고안된 다단계 판매세이다. 이에 의하면 세금이 재화 및 용역의 생산 및 분배의 각 단계에서의 공급가치(the supply value)에 근거하여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내에서 판매된 재화 및 용역 모두는 과세공급, 영세율공급 및 면세공급으로 나뉜다. 과세공급은 5%의 세율로 과세되면 이에 적절한 HST가 부과된다. 영세율공급은 0%의 세율로 과세된다. 과세공급 및/또는 영세율공급은 영업활동(commercial activity)으로 정의되나, 면세공급은 이에서 제외된다.

사업자는 매입분이 영업활동에 제공되는 범위에서 매입세액공제(input tax credit: ITC)를 받을 수 있다. 면세공급을 하는 자는 GST/HST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캐나다의 부가가치세(GST)의 연장으로서 여러 주(이하 '참여 주')에 의하여 통합판매세(Harmonized Sales Tax)가 도입되었다. 통합판매세는 참여 주의 구 주판매세

(the former provincial sales tax)를 대체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보다 높은 세율로 GST가 부과된다. 나머지 비참여 주들은 최근까지 부가가치세 구조를 갖지 않는다. 대신에 자신들만의 소매판매세(retail sales tax system)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Alberta 주는 주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⁸³⁸⁾

2. 납세의무자

가. 납세의무자 및 징수의무자 일반

캐나다의 GST는 최종소비단계의 재화 및 용역의 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고안된 다단계 판매세이다. 이에 의하면 세금이 재화 및 용역의 생산 및 분배의 각 단계에서의 공급가치(the supply value)에 근거하여 부과된다. GST는 캐나다 내 모든 과세공급에 대하여 등록된 사업자에 의하여 징수된다. 또한 수입된 재화에 대하여서는 국경에서 국세청(캐나다 국세청(CRA))에 의하여 징수된다. 국내소비를 위한 재화수입의 경우 그 세금에는 해당 주 거주자에 의하여 수입된 재화에 대한 HST의 해당 주 관련 부분이 포함된다. 또한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수입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주로 용역 및 무체재산권을 포함하는 과세공급의 수입자들에 의하여 신고납부(self-assessed)되기도 한다.⁸³⁹⁾

나. 영업활동(Commercial Activity)

영업활동(Commercial activity)은 사업자등록 요건 및 매입세액공제 적격의 판정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다. 과세공급을 하기 위하여 명목상 대가가 아닌 대가를 지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취득한 범위 내에서는 해당 납세의무자는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자산 또는 용역을 취득, 수입, 소비, 또는 사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무상 또는

838) Canadian Master Tax Guide, at ¶ 16,085.

839) Id., at ¶ 16,085.

명목상 대가를 받고서 다른 과세공급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무상 재화 또는 용역은 다른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공급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영업을 위하여 취득된 것으로 간주된다.

자본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이 영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자산의 취득, 수입(importation) 또는 지출(appropriation) 시점 자산의 사용 상황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용 상황이 그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취득 등 시점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기 위한 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에 사용되던 과세대상 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이를 과세공급거래로 본다. 다만, 면세사업에 배타적으로 사용된 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해당 매매는 면세거래가 된다. ‘배타적’이라는 용어는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를 의미하며, 국세청은 이를 90%로 판단한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를 의미한다.

영업의 취득, 설립, 처분 또는 종료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재화의 공급을 제외한다)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된다.⁸⁴⁰⁾

3. 과세대상 거래

GST/HST는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된다. 공급은 매매, 이전, 물물교환(barter), 교환거래(exchange), 라이선스 거래, 임대, 리스, 증여 또는 처분을 포함하는 일체의 방법에 의한 자산 및 용역의 제공을 의미한다.⁸⁴¹⁾

일단 공급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공급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급에는 과세공급, 영세율공급 및 면세공급이 있다. 과세공급은 영업활동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급으로서 면세공급에 해당하지 않은 공급을 의미한다. 과세공급은 매매 시점에 예외가 없이 과세된다.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은 과세공급의 대상이다. 그러나 영세율공급 및 면세공급은 캐나다 정부가 GST/HST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제한된 목록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이루어진 공급을 의미한다.⁸⁴²⁾

840) Id., at ¶ 16,110.

841) Id., at ¶ 16,120.

842)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420.

4. 세율

일반적으로 캐나다 내에서 판매된 재화 및 용역 모두는 과세공급, 영세율공급 및 면세공급으로 나뉜다. 과세공급은 5%의 세율로 과세되면 이에 적절한 HST가 부가된다. 영세율공급은 0%의 세율로 과세된다. 과세공급 및/또는 영세율공급은 영업활동 (commercial activity)으로 정의되나, 면세공급은 이에서 제외된다.⁸⁴³⁾

〈표 3-1-1〉 주별 부가가치세율 현황

(단위: %)

구분	세율		
	HST 체계 채택	연방 과세 (GST)	주 과세 (HST에 따른 州과세분)
뉴펀들랜드 및 라브라도 (Newfoundland and Labrador)	5	8	13
온타리오 (Ontario)	5	8	13
뉴브런즈윅 (New Brunswick)	5	8	13
노바스코샤 (Nova Scotia)	5	10	15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Prince Edward Island)	5	9	14
GST/PST 채택	연방 과세 (GST)	주 부가가치세 (PST)	전체 적용 세율
브리티시 컬럼비아 (British Columbia)	5	7	12
마니토바 (Manitoba)	5	8	13
서스캐처원 (Saskatchewan)	5	5	10
퀘벡 (Quebec)	5	9.975 (Quebec Sales Tax)	14.975
GST 채택	연방 과세 (GST)	주 부가가치세 (PST)	전체 적용 세율
앨버타 (Alberta)	5	×	5

843) Canadian Master Tax Guide, at ¶ 16,085.

5. 영세율공급 및 면세공급

일단 공급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공급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급에는 과세 공급, 영세율공급 및 면세공급이 있다. 과세공급은 영업활동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급으로서 면세공급에 해당하지 않은 공급을 의미한다. 과세공급은 매매 시점에 예외 없이 과세된다.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은 과세공급의 대상이다. 그러나 영세율공급 및 면세공급은 캐나다 정부가 GST/HST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제한된 목록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이루어진 공급을 의미한다. 면세공급에 대하여서는 제한된 범위에서 세액의 경감이 있고 영세율공급의 경우에는 세액의 부담이 전혀 없다.⁸⁴⁴⁾

이하에서는 영세율공급과 면세공급의 순서로 살펴본다.

가. 영세율공급

제한된 목록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서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공급은 여전히 과세공급으로 간주된다. 영세율공급을 포함하는 과세공급에 대하여서는 공급자가 매입세액공제의 형태로 납부한 GST/HST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영세율공급에 대하여서는 GST/HST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급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몇몇 예는 다음과 같다. 처방약 (prescription drugs), 의료장비, 기본 식료품 및 수출재화와 용역⁸⁴⁵⁾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소비세법(the Excise Tax Act)의 Schedule VI에 열거되어 있다.

844)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420.

845) Id., at ¶ 1,425.

〈표 3-1-2〉 소비세법 Schedule VI(영세율 적용 항목)

항목	영세율 적용 항목 내용
Part I	처방약 및 생물학적 제제(prescription drugs and biologicals)
Part II	의료 장비 및 보조장비(medical and assistive devices)
Part III	기본 식료품(basic groceries)
Part IV	농업 및 어업 생산물(agriculture and fishing)
Part V	수출재화 및 용역(exports)
Part VI	여행 용역(travel services)
Part VII	교통 및 운송 용역(transportation services)
Part VIII	국제 기관 및 공무원(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fficials) -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다리 및 터널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용역
Part IX	금융 용역(Financial services) -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일정의 금융용역 - 생명, 상해, 질병 등의 보험 - 희소금속의 공급에 관한 보험 - 해외 부동산 및 현물에 대한 보험
Part X	관세 징수(collection of customs duties)

나. 면세공급

면세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영세율공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공급거래에 대해서 GST/HST를 징수하여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면세공급은 영세율공급과 달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GST/HST는 매입재화 또는 용역의 취득원가에 추가된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GST/HST는 해당 자산 및 용역의 취득원가로서 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다.⁸⁴⁶⁾

면세공급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예는 다음과 같다.⁸⁴⁷⁾

846) Id., at ¶ 1,430.

847) Id.

- 첫째, 건강관리 및 자녀양육 용역(health care and child care services).
 둘째, 교육용역(educational services).
 셋째, 대부분의 금융용역(most financial services).
 넷째, 기존 주택의 매매 및 거주용 건물의 임대(sales of used residential housing and rentals of residential premises).

〈표 3-1-3〉 소비세법 Schedule V(면세공급 적용 항목)

항목	면세공급 적용 항목 내용
Part I	부동산(real property)
Part II	건강관리 용역(health care services)
Part III	교육 용역(educational services)
Part IV	자녀양육 및 인적 용역(Child care and personal services)
Part V	법률 지원 용역(legal aid services)
Part V.1	자선단체의 공급(supplies by charities)
Part VI	공공부문 기관(public sector bodies)
Part VII	금융용역(financial services)
Part VIII	여객선, 도로 및 다리 통행료(ferry, road and bridge tolls)

6. 부분적 면세사업자

가. 개관

부분적 면세사업자는 면세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함과 동시에 과세공급도 하는 사업자인 경우를 의미한다. 캐나다 연방소비세법(Canadian Excise Tax Act)상 대표적인 부분적 면세사업자는 금융용역(financial services)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주거용 건축물 및 다른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업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나. 금융용역(Financial Services)을 제공하는 사업자

캐나다의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금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과세대상 영업활동 및 면세 금융용역을 동시에 수행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부분적 면세사업자에 해당된다.⁸⁴⁸⁾ ‘금융용역’(financial service)은 상당히 광범위한 거래 및 용역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자, 배당 또는 금융상품에 관련된 기타 금액이 이에 포함된다.⁸⁴⁹⁾ 금융상품은 채무증권(debt security), 지분증권(equity security),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등을 포함한다. 다만, 금융용역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여러 용역들이 있다. 예를 들면 회계사, 보험계리인, 변호사, 공증인 등이 전문가로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제공되는 금융용역은 금융 용역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들 용역에 대하여서는 GST/HST가 부과된다.⁸⁵⁰⁾

다. 면세사업을 하는 부동산 사업자

부동산의 매각 또는 임대에는 GST/HST가 부과된다. 그러나 부동산 사업자가 캐나다 연방소비세법 Schedule V의 Part I상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된다. 즉, 기존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거주 목적의 장기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면세된다. 그러나 부동산 사업자가 신축 거주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실질적으로 개축(substantial renovation)하는 경우는 과세공급에 해당하여 GST/HST가 부과된다.⁸⁵¹⁾

848) Canada Master Tax Guide, at ¶ 16,305.

849) ETA : 123(1)

850)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6,510.

851) Id., at ¶ 6,520.

7. 부가급여에 대한 GST

가. 개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과세대상이 되는 부가급여(fringe benefits)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이와 관련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부가급여에 부가가치세 가액을 더한 금액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본다. 즉, 부가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공개 시장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취득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본질적으로 법은 사용자가 지불한 GST/HST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본다.

그러나 부가급여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일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ETA Schedule VI에 규정된 영세율공급에 해당하는 항목의 급여가 있는 경우 및 ETA Schedule V에 규정된 면세공급에 해당하는 항목의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영세율 및 면세공급 거래에 관하여 적용되는 원칙이 적용된다.⁸⁵²⁾

나. 부가급여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부가급여로서 사용자에게 의하여 지급된 GST/HST가 근로자의 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소득에 포함되는 전형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가 사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용 자동차의 유지비용과 주차비용, 휴가와 관련된 여행비용, 배우자의 업무 무관 여행비용 및 연간 \$50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GST/HST를 납부해야 할 증여가 이에 해당된다. 통상의 과세 혜택과 이에 대한 GST/HST 취급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⁸⁵³⁾

852) Id., at ¶ 3,220.

853) Id.

〈표 3-1-4〉 통상의 과세혜택과 GST/HST 취급

통상의 과세혜택과 GST/HST 취급		
과세혜택	GST/HST included	GST/HST excluded
자동차의 개인적 사용	✓	
근로자 자문 용역	✓	
단체 생명 보험 계약		✓
선물 제공 (Gift)	현금 제공	✓
	현물 제공	✓
휴가 여행	✓	
숙소 및 식사 등 제공	숙소의 성격에 따라 결정	
식사비 보조	✓	
무이자/저율 대출 제공		✓
주 입원 및 의료보험 플랜		✓
스톡 옵션		✓
여가 시설 제공	✓	
이사 비용 공제	✓	

8. GST 등록

가. GST 등록 일반

캐나다 내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세공급을 하는 모든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음 각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⁸⁵⁴⁾

첫째, 소규모 공급자의 경우.

둘째, 사업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닌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이 유일한 영업활동인 경우.

854) Id., at ¶ 16,095.

셋째, 캐나다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비거주자의 경우, 다만 공급자가 캐나다 내 고정사업장(PE)을 통해서 영업활동을 수행한다면,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된다. 캐나다 비거주자라도 캐나다 내에서 사업을 수행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캐나다 부가가치세(GST) 사업자는 자동적으로 통합판매세(HST)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HST를, 첫 국가들 재화 및 용역세(First Nations Goods and Services Tax: FNGST)가 적용되는 지역에 대하여서는 FNGST를 징수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요건의 적용대상에는 개인, 유산(estates), 신탁 및 수탁자(trust and trustees), 법인(corporation), 파트너십 및 파트너(Partnership and partner)가 있다.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면, 거래징수 의무, 신고 의무, 납부의무 및 기록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사업자등록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 이전의 특정 지급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다. 택시사업자 및 비거주자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⁸⁵⁵⁾

캐나다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요소들은 감안하여 결정된다.⁸⁵⁶⁾

- 비거주자의 대리인 또는 근로자의 소재지
- 인도장소
- 지급장소
- 매입장소 또는 자산의 취득장소
- 거래의 청약장소
- 자산 또는 재고자산의 소재지
- 사업상 계약체결장소
- 은행 계좌의 소재지
- 지점 또는 사무실의 소재지
- 비거주자의 성명 및 사업이 등재된 인명록 및 상공인 명부의 소재지

855) Id.

856) 캐나다 국세청(CRA) Policy Statement, P-051R2, "Carrying on Business in Canada."

- 용역의 수행장소
- 재화의 제조 또는 생산장소

나. 소규모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는 전 세계에 대한 과세공급이 1년에 \$30,000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위 금액은 관계법인(an associated corporation)의 과세공급(자본자산의 매각, 금융용역 및 영업권을 제외한다)이 포함된 액수이다. 공공기관(a public service body)의 경우에는 위 한도금액이 \$50,000이다. 직전 2개 연도 중 어느 한 연도에 총 수입이 \$250,000을 초과하지 않는 자선단체들(charities) 및 공공기관들(public institutions)은 소규모 사업자로 간주된다. 다만, 도서 및 정기간행물의 캐나다 내 판매업자와 택시 운수사업자는 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오락, 세미나, 특정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을 매각하기 위하여 캐나다에 입국한 비거주자는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매출의 규모에 상관없이 소규모 사업자로 간주될 수 없다. 소규모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나 그 공급자는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⁸⁵⁷⁾

다. 자발적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도, 자발적인 등록(voluntary registration)을 할 수 있다. 이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선택이다. 다음 요건들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⁸⁵⁸⁾

첫째, 캐나다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둘째, 캐나다에서 정기적으로 인도를 목적으로 주문을 권유하거나 캐나다 내에서 무체동산(intangible personal property)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을 하는 비거주

857) Canadian Master Tax Guide, at ¶ 16,100.

858) Id., at ¶ 16,105.

자의 경우

셋째, 상장 금융기관 거주자(a resident listed financial institutions)의 경우

넷째, 자회사의 자산의 90% 이상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비, 사용 또는 공급되기 위하여 보유되는 거주자인 지주회사의 경우

다섯째, 사업용 자산의 매매의 당사자로서 Section 167 선택의 적격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여섯째, 당사자로서 Section 156 선택의 적격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 구성원(temporary member)이 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9. 매매시점 환급(Point-of-Sale Rebates)

매매시점 환급은 소비자들이 특정 지정항목들을 구입함에 있어서 부담하는 HST 주 해당분(Ontario, New Brunswick, Newfoundland 및 Labrador의 경우에는 8%, Prince Edward Island의 경우에는 9%, Nova Scotia의 경우에는 10%)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위 항목들을 구입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공급사업자에 의하여 해당 세금이 매매 시점에 할인되어 구입자는 5%의 연방 GST만을 지급하면 된다. 만약 매매 시점에 위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입자는 해당 세金的 납부기일로부터 4일 이내에 국세청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매매 시점 환급은 HST 주에 소재한 소매업자로부터 특정 지정항목을 구입하는 경우 및 캐나다 밖으로부터 HST 주로 수입된 항목과 HST 주로부터 비HST 주로 이전된 항목들에 대하여 적용된다. 매매 시점 환급은 the Excise Tax Tax가 아닌 주 입법의 승인하에 부여된다. 적용항목들은 주별로 차이를 보인다.⁸⁵⁹⁾

859) Id., at ¶ 1,435.

10. 매입세액공제(Input Tax Credits)

캐나다 GST/HST상 사업상 매입에 대하여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된다. 이는 사업상 매입으로부터 GST/HST를 경감시켜주고 누적효과(the pyramiding of tax)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품 및 용역을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여야 한다. GST/HST는 소비에 대한 세금이 최종소비자에 의하여 부담되도록 설계된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특정 제한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은 일반적으로 비용에 관하여 연방소득세법상 비용공제에 대한 제한을 반영하고 있다.⁸⁶⁰⁾

사업자에 의하여 주장된 어느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세액공제액은 해당 기간 동안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징수된 세금으로부터 공제된다. 이 공제 후 잔액이 납부할 세액이 된다. 매입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자본자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GST/HST는 감가상각되지 않는다.⁸⁶¹⁾

GST만이 납부되었고 해당 재화 및 용역이 영업에 사용된 경우, GST/HST 사업자는 5%의 세율로 매입세액공제로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통합판매세(HST)가 적용되는 주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각 주별로 다른 세율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즉, British Columbia주의 경우에는 12%, Ontario, New Brunswick, Newfoundland주의 경우에는 13%, Nova Scotia주의 경우에는 15%의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⁸⁶²⁾

11. 제한된 매입세액공제(Restricted Input Tax Credits)

British Columbia 및 Ontario주에서는 대기업(Large business)에 대하여 임시 매입세액공제를 시행한다. 대기업은 연 매출액이 \$1천만을 초과하는 기업 및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을 의미한다. 이에는 농업기업 및 공공용역을 제공하는 단체들이 제외

860) Id., at ¶ 1,440.

861) Id.

862) Id.

된다. 위 각 주의 경우 HST가 적용되는 첫 8년 동안 특정 재화 및 용역에 대한 HST로서 ‘전체 매입세액공제액의 주 해당분인 7% 또는 8%’를 환급받을 수 있다. 위 8년이 경과되면 위 환급은 단계별로 소멸한다. 2010년 7월 1일부터 5년간은 매입세액공제액 중 주 해당분의 100%, 2015년 7월 1일부터 1년간은 75%, 2016년 7월 1일부터 1년간은 50%, 2017년 7월 1일부터 1년간은 25%를 환급받을 수 있고, 2018년 7월부터는 폐지된다.⁸⁶³⁾

12. 특례: 간이과세(Simplified Method and Quick Method)

소규모 사업자들의 서류작업 및 회계와 기장업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간이과세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⁸⁶⁴⁾ 간이과세에는 the Simplified method와 the Quick method가 있다.

The Simplified method는 연간 \$100만 이하의 과세공급을 하고 과세대상 매입(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입을 제외한다)이 연간 \$400만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GST/HST 총과세매입액’[GST/HST, 주 판매세 및 무상지급액 (gratuities)을 포함한다]에 부가가치세 매입액에 일정 비율($\frac{5}{105}$, $\frac{12}{112}$, 또는 $\frac{13}{113}$ 또는 $\frac{15}{115}$)을 곱하여 매입세액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다. 위 비율은 종업원 또는 파트너들에 의하여 야기된 과세상 비용을 상환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The Quick method는 연간 \$400,000 이하의 과세공급을 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 회계사, 재무컨설턴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에 따르면 납부할 GST/HST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공급거래의 일정 비율로 계산된다. 위 세액에는 GST/HST는 포함되나 주 판매세는 포함되지 않는다.⁸⁶⁵⁾

863) Id., at ¶ 1,445.

864) ETA : 227(1)

865)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op. cit., at ¶ 14,700.

13. 세무행정

가. 징수 및 납부(Collection and Remittance of Tax)

캐나다 내 과세공급을 하는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징수된 GST/HST는 납부되기 전까지 수탁자로서 보관한 것으로 의제된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공제액은 수탁된 금액에서 공제된다.⁸⁶⁶⁾

1) 과세정보의 공시(Disclosure of Tax)

사업자는 과세공급의 내용에 관한 특정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발행된 송장 혹은 영수증 또는 거래 시 체결된 서면계약서상에 공급대가 및 그와 관련하여 지급된 GST/HST 세액을 표시하거나 공급과 관련하여 수령한 금액에는 GST/HST 세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문서화(documentation)하여 표시할 수 있다. 사업자가 공급대가에 GST/HST를 포함하였으나 이를 송장 또는 영수증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는 공급장소에서 명백히 해당 가격에 부가가치세 세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⁸⁶⁷⁾

2) 신고기한

사업자는 GST/HST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고기한에 순세액(net tax)이 납부되어야 하며, 신고기간은 보통 월 단위, 분기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정하여진다. 과세연도(the fiscal year)는 신고의무자의 과세연도 또는 신고의무자가 특정한 과세연도를 의미한다.

866) Id., at ¶ 14,410.

867) Id., at ¶ 14,420.

일반적으로 사업자인 대기업들은 월별 신고기간을 채택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 규모의 기업들은 부가가치세를 월별로 신고하여 납부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대기업은 과세공급에 따른 수입이 \$600만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해당 과세공급에는 영세율공급이 포함된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연별 신고기간을 채택할 수 있다. 과세공급에 따른 수입 규모가 \$600만 이하 \$150만 초과인 경우에는 분기별 신고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는 월별 신고기한을 선택할 수 있다. 과세공급에 따른 수입 규모가 \$150만 이하인 경우에는 연별 신고기간을 선택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자는 월별 및 분기별 신고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⁸⁶⁸⁾

3) 세액의 납부(Remittance of Tax)

사업자는 해당 신고기간에 대한 순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에 해당 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순세액이 음(-)이면, 해당 사업자는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순세액은 해당 기간에 징수된 또는 징수되어야 할 GST/HST 세액 및 기타 추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해당 기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과 기타 공제되어야 할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된다. 매입세액공제는 당초 매입세액공제가 주장될 수 있었을 신고기한으로부터 4년 이내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 다만, subparagraph 149(1)(a)(i)~(x)까지의 금융기관 및 대기업의 경우에는 2년 기한이 적용된다.

연별 신고기간을 선택한 사업자라도 분기별 세액을 분납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분기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분납세액은 이전연도에 납부한 순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사업자의 과세기간에 대한 분납기준금액(installment base)이 \$3,000 미만이면, 분납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분납기준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사업자는 당해 연도에 대한 순세액 추정치에 근거하

868) Id., at ¶ 14,430.

여 분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⁸⁶⁹⁾

나. 국세청의 권리 및 의무

재무부(the Department of Finance)는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반면에 국세청은 ETA의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한다. 재무부 장관 및 예하 직원의 의무는 ETA의 section 275에서 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은 재무부 장관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 수입재화에 대한 GST/HST는 CBSA(Canadian Border Services Agency)에 의하여 관리되고 집행된다. 국세청은 GST/HST를 부과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과오납세액에 대하여서는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환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⁸⁷⁰⁾

다. 사업자의 권리

1) 불복절차

GST/HST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이 부과한 세액에 대하여 사업자는 납세 고지서 발송일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하여서는 캐나다 조세법원에 불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복기간 역시 90일이다. 세금에 대한 일반적인 불복절차 규정들이 적용된다. 조세법원의 판결에 대하여서는 연방 항소법원에,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서는 연방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⁸⁷¹⁾

2) 수정신고 및 부가가치세 조정(Amended returns and GST/HST Adjustments)

법률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하여 이를 수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나, 사

869) Id., at ¶ 14,440.

870) Id., at ¶ 14,500.

871) Id., at ¶ 14,610.

업자는 캐나다 연방 국세청 행정지침(the 캐나다 국세청(CRA)'s administrative guidelines) Policy Paper P-149R을 통해서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신고를 통해서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총납부세액은 증액되지 않고 매입세액공제액 또는 기타 공제금액만을 늘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캐나다 연방소비세법상 다음의 두 가지 상황이 있으면 GST/HST의 수정, 환급 또는 공제(adjustment, refund or credit)가 허용된다.

첫째, GST/HST가 초과되어 부과되거나 징수될(charged or collected) 것.

둘째, GST/HST 부과되거나 징수된 후 공급대가가 감액되고 공급자가 당초의 GST/HST를 수정, 환급 또는 공제하였을 것.

이상의 수정, 환급 또는 공제는 해당 세액이 징수 또는 부과된 공급자의 신고기간 말로부터 2년 이내(대가 감액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⁸⁷²⁾

위의 내용과는 별도로 HST 세제를 채택한 주와 그렇지 않은 주 사이에서 거래가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⁸⁷³⁾

첫째, HST 세제를 채택한 주에서 HST에 참여하지 않는 주로 재화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당 재화에 대해 납부된 HST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규칙은 HST 세율이 서로 차이가 있는 주 간의 거래에서 세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둘째, '주로 HST 세제를 채택하지 않은 주에서 사용하고자 취득한 무체재산권 및 용역'에 대하여서는 'HST 세제를 채택하는 주 단위에서 이미 부과된 HST'를 'HST 세제를 채택하지 않은 주'에서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셋째, 수입된 재화가 HST 세제를 채택한 주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재화의 수입에 있어서 캐나다 연방 국세청이 캐나다 국경에서 부과한 주(州) HST 세액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872) Id., at ¶ 14,620.

873) Canadian Master Tax Guide, at ¶ 16,285.

Ⅱ. 개별소비세

1. 첫 국가들 세금(First Nations Taxes: FNT)

첫 국가들 세금(FNT) 및 첫 국가들 재화 및 용역세(First Nations Goods and Services Tax: FNGST)는 해당 세금을 부과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첫 국가들의 인디언법(the Indian Act)상 보호구역(reserve)에서 생산되는 열거된 상품에 대하여 부과된다. 위 첫 국가들로는 Westbank (B.C.), Tk'eml ps te Secw pemc (B.C.), Sliammon (B.C.), Stz'uminus (B.C.), Adams Lake (B.C.), Tzeachten (B.C.), Cowichan (B.C.) 및 Little Shuswap Lake (B.C.)가 있다. 첫 국가들은 하나 이상의 보호구역을 가질 수 있으며, 한 국가의 위원회(band council)가 FNT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내 모든 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된다. FNT는 술, 연료 및 담배에 대하여 부과된다. FNGST는 특정 첫 국가들에서의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FNGST는 특정 첫 국가의 자치위원회 또는 다른 자치정부기관이 이를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킨 경우에 적용된다. FNGST는 GST 또는 HST 중 연방부분(federal part of HST)에 대신하여 모든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즉, FNT는 첫 국가들의 영토에서 'FNT가 부과되는 지정·열거 품목(the listed products)'을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소비세이며, FNGST는 첫 국가들의 영토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상품 및 용역에 대해서 부과되는 소비세이다.

FNT와 FNGST가 적용되는 첫 국가들의 영토에서 재화 및 용역을 취득하는 자가 해당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FNT와 FNGST의 세율은 5%로 GST 또는 HST 중 연방부분 세율과 동일하며, FNT가 부과되는 지정·열거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GST, HST 중 연방 부분 및 FNGST가 부과되지 않는다.⁸⁷⁴⁾ 일반적으로 원주민 자치정부

874) "RC4365(E) Rev.13: First Nations Goods and Services Tax", Canada Revenue Agency, p. 5.

의 영토에서 FNT가 부과되는 상품을 거래하는 GST/HST 등록 사업자(GST/HST registrant)가 FNT 또는 FNGST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며, 소규모 공급자(small supplier, 과세 매출액 \$30,000<공공기관의 경우, \$50,000 이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소규모 공급자가 GST/HST 사업자로 자발적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캐나다 연방 국세청은 그 첫 국가들은 위하여 FNT 또는 FNGST 징수업무를 수행한다. 즉 FNT 또는 FNGST는 ‘연방 GST/HST 또는 주정부의 GST/HST 징수 체계’를 활용하며, 신고기간 역시 GST/HST와 동일하다. 원천징수의무자는 GST/HST를 신고할 때, FNT와 FNGST도 같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FNT 과세대상인 보호구역 내 지역에서 생산된 열거 제품(listed products from a location on a reserve)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GST/HST 신고서와는 별도의 FNT 신고서(Form GST499 및 GST499-1)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나 이상의 원주민 자치정부(more than one band council)지역에서 지정·열거 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FNT를 각 지역별로 나누어 기재하고 신고하여야 한다.⁸⁷⁵⁾ FNT와 FNGST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http://www.cra-arc.gc.ca/tx/bsnss/tpcs/gst-tps/frstntns/>에서 얻을 수 있다.⁸⁷⁶⁾

2. 보험료에 대한 소비세(Excise Tax on Premium)

캐나다에 통상 상존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정 보험업자와 보험계약을 직접 또는 대리하여 체결 또는 갱신하는 자가 지급하는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ETA Part I에 따라 10%의 세금이 부과된다. 순보험료는 총지급보험료에서 보험계약에 따른 배당금과 보험계약의 해약에 따라 반환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캐나다 내에서 부보할 수 없는 재보험계약 및 생명, 상해(personal accident), 질병, 해상위험 또는 핵위험 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하여서는 위 소비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 소

875) 이상 자세한 사항은 “RC4072(E) Rev. 13 : First Nations Tax”, Canada Revenue Agency 및 “RC4365(E) Rev.13: First Nations Goods and Services Tax”, Canada Revenue Agency.

876) Canadian Master Tax Guide, at ¶ 16,397.

비세 면제규정은 캐나다 내에서 부보할 수 없는 다른 보험계약에 대하여서도 확대하여 적용되어 왔다.

납세의무자는 직전 역년 동안의 위 세금을 다음 해 4월 30일 이전까지 재무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일과 동일한 날에 보험자의 성명, 보험금액 및 직전 역년 동안의 순보험료를 명시한 서면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4월 15일 현재 미납부 세액의 1%' 및 '위 금액에 지연 개월(12개월이 상한이다)을 곱한 금액의 4분의 1'을 더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캐나다 밖에 소재하는 '계약중개인 또는 대리인(캐나다 법에 따른 법인이 아니거나 캐나다에서 설립되지 않은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의미한다), 보험자, 중개인 또는 대리인'은 3월 15일 이전에 재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직전 역년 동안의 순지급보험료 및 캐나다 밖에 있는 중개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일수당 \$10 및 \$50 중 적은 금액을 가산세(penalties)로 부과한다.⁸⁷⁷⁾

877) Canadian Master Tax Guide, at ¶ 16,425.

제4편 재산세제

I. 재산세

1. 개관

캐나다 연방세법상 재산세는 재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거나 해당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얻게 되는 소득에 한정하여 부과된다. 따라서 재산의 보유와 관련된 조세는 주세(Provincial Tax)에 포함되어 있다. 즉, 연방세법에서는 재산의 보유에 관한 세제가 적용되지 않는 반면, 개별 주에서는 주의 필요 재정부분을 확충하는 수단으로 재산세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 내 재산세는 각 주별로 살펴야 한다.

이하에서 캐나다 Ontario 주(州) 재산세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핀다. Ontrario주(州)는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법(Municipal Act)⁸⁷⁸, 부동산 평가법(Assessment Act)⁸⁷⁹ 및 주토지세법(Provincial Land Tax Act)⁸⁸⁰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878) 이하 각주에서 'OMA'라고 한다.

879) 이하 각주에서 'OAA'라고 한다.

880) 이하 각주에서 'OPLTA'라고 한다.

2. 과세대상

보유세로서의 재산세 과세대상은 부동산으로 한정된다. 지방자치단체법(Municipal Act)과 부동산평가법(Assessment Act) 및 주토지세법(Provincial Land Tax Act)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이 그 적용대상이다. 부동산의 개념에는 수면 아래 있는 토지(land covered with water), 삼림용 토지상 수목, 광산 등 채굴 장소, 토지 구축물을 포함한 모든 건물, 공공교통을 위한 교량 및 도로 등이 모두 포함된다.⁸⁸¹⁾

3. 납세의무자

부동산평가법(Assessment Act) 및 주토지세법(Provincial Land Tax Act)상 납세의무자는 평가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이에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 포함된다. 공익적 성격이 강한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면세하는바, 이 단체들에는 인디언 토지(Indian Lands) 비영리 의료법인(non-profit hospital service corporations)⁸⁸²⁾, 지역 여가센터(community recreation center) 및 광산(mining land)이 포함된다.⁸⁸³⁾

4. 과세표준

가. 현행 가치 평가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부동산평가법(Assessment Act)에 따른 평가가액(the Assessed value of the property)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해당 평가가액은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현행 평가가액(Current Value Assessment)으로 한다.⁸⁸⁴⁾

881) OAA: 1.

882) OMA: 324(2).

883) OPLTA: 3(1).

884) OAA: 19.2(1).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평가는 온타리오주(州)의 부동산평가 전문공사(the municipal property assessment corporation: MPAC)가 담당하며, 해당 공사는 평가를 위하여 상위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의 유형 및 현행 가치를 감안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이를 소유주에게 통지한다. 부동산이 나대지인지⁸⁸⁵⁾ 또는 세입자가 사용중인 상태인지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다.⁸⁸⁶⁾

부동산평가법(Assessment Act)은 부동산의 현행 가치(the current value)를 “자발적인 매도인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자발적인 매수인에게 매각된 가액”으로 정의한다.⁸⁸⁷⁾

현행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가 과세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2012년에 과세되는 온타리오주(州)의 부동산들은 2008년에 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된다. 다만, 평가기간이 다시 도래하여 평가액이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일시에 증액시켜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평가기간 도래일까지 순차적으로 증액시키는 방식을 취한다(Phase in/destination assessment). 예를 들어 토론토시에 있는 거주용 부동산이 2012년까지 \$448,000이었으나, 2013년 평가기간이 도래하게 되어 다시 평가된 가액이 \$550,000인 경우에는 증액된 \$102,000을 평가기간의 단위로 나누어 순차 증액하는 것이다. 평가 기간이 4년이라면, 2008년 기준의 \$448,000에서 \$25,500을 매해 증액한 금액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⁸⁸⁸⁾

885) OAA: 8(1)2.

886) OAA: 16.1(2).

887) OAA: 1.

888) http://www.toronto.ca/taxes/property_tax/assessment.htm (2013년 10월 방문)

〈표 4-1-1〉 현행 가치 평가액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계산

예를 들어 현행 가치 평가액(CVA)이					
① 2008년 1월 1일: \$448,000					
② 2012년 1월 1일: \$550,000					
③ 전체 증가액(Change in CVA): \$102,000					
④ 연차 증액분(Annual amount to be phased-in): $\$102,000/4=\$25,500$					
과세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순차 증감 변동률(Phase in %)	-	25%	50%	75%	100%
과세표준(평가액: CVA)	\$448,000	\$473,500	\$499,000	\$524,000	\$550,000

나. 현행 가치 평가를 위한 부동산 유형

현행 가치 평가액은 해당 부동산이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지방자치단체법(Municipal Act)은 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부동산을 상업 유형(commercial classes), 산업 유형(industrial class), 선택적 자산 유형(optional property class)으로 구분한다.⁸⁸⁹⁾

부동산평가법(Assessment Act)에 따른 부동산 유형은 다음과 같으나 이는 예시적이다.⁸⁹⁰⁾ 거주용 자산, 다세대 거주용 자산(the multi-residential property class), 상업용 자산, 산업용 자산, 파이프라인 자산 class, 농경지 및 농장자산 및 관리된 삼림자산(the managed forests property class).

5. 세율

세율은 주정부 차원이 아닌 하위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결정된다. 주거용 부동산 세율(the residential property class tax rate)을 1로 하여 다른 유형 자산에 대한 세율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한다.⁸⁹¹⁾ 다만, 자산에 대한 세율은 각 자산별로 정하여진

889) OMA: 308(1).

890) OAA: 7(2)

891) OMA: 308(3).

허용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나 그에 대한 예외 역시 규정되어 있다.⁸⁹²⁾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州) 토론토(Toronto)시는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자체적으로 세율을 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만, 증세에 대해서는 일정한 상한이 존재한다. 즉, 전년도 부과대상에 적용가능한 세율을 곱한 금액의 5%에 근거하여 증가상한이 계산된다. 아래의 그림은 토론토(Toronto)시의 재산세율에 관한 것이다.⁸⁹³⁾

〈표 4-1-2〉 부동산 유형 및 재산세율

(단위: %)

부동산 분류	시 세율	(부가되는) 교육세율	전체 세율
거주용 (Residential)	0.5337653	0.2120000	0.7457653
다세대 거주용 (Multi-Residential)	1.6981011	0.2120000	1.9101011
신 다세대 거주용 (New Multi-Residential)	0.5337653	0.2120000	0.7457653
일반 상업용 (Commercial General)	1.6716412	1.3638850	3.0355262
상업용 잉여분 1 (Residual Commercial Band 1)	1.4784032	1.3638850	2.8422882
상업용 잉여분 2 (Residual Commercial Band 2)	1.6716412	1.3638850	3.0355262
산업용 (Industrial)	1.6662458	1.3888080	3.0550538
파이프라인 (Pipelines)	1.0267316	1.5580410	2.5847726
농경지 및 농장 (Farmlands)	0.1334413	0.0530000	0.1864413
관리된 삼림 (Managed Forests)	0.1334413	0.0530000	0.1864413

892) OMA: 308(7)~(9).

893) http://www.toronto.ca/taxes/property_tax/tax_rates.htm (2013년 10월 방문).

6. 감면 및 세액공제

지방자치단체법상 비영리의료법인이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부동산⁸⁹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동산 자산(municipal Capital facilities)⁸⁹⁵, 적격 학교 자본설비(eligible school Capital facilities)⁸⁹⁶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세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액 경감(Tax reduction) 및 세액환급 프로그램(Tax rebate program)을 운영할 수 있다. 온타리오주 문화유산법(Ontario Heritage Act)에 따른 문화유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제도가 세액 경감제도로서 운용되고 있다. 또한 적격 기부금단체 자산(eligible charities' property)에 대한 세액 환급 프로그램(tax rebate program)⁸⁹⁷, 노령자 및 장애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재산세 납부이연 및 재산세 증액취소 프로그램⁸⁹⁸ 및 공실 건물에 대한 세액환급 프로그램⁸⁹⁹이 세액환급 프로그램으로서 운용되고 있다.

특히 공실 건물에 대한 세액환급 프로그램의 경우, 개별 하위 지방자치단체(lower-tier municipality)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온타리오주(州) 토론토(Toronto)시의 경우를 살펴본다. 토론토의 경우 토론토시법(Toronto Act)의 Section 331에 따라 세액환급이 이루어진다. 세액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유형에 속하여야 한다.

첫째, 전체가 공실인 상업용 및/또는 산업용 건물: 최소 90일 이상 연속하여 전체가 공실인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상업용 건물이 부분적으로 공실인 경우: 최소 90일 이상 연속하여 일부가 공실인 상태이고, 공실 부분이 명시적으로 표시되거나 물리적으로 건물 내부가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건물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시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 수선·개수·건설로 인하여 즉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일 것 또는

894) OMA: 324(2).

895) OMA: 110(6).

896) OMA: 110(12).

897) OMA: 361(2).

898) http://www.toronto.ca/taxes/property_tax/tax_relief.htm(2013년 10월 방문).

899) http://www.toronto.ca/taxes/property_tax/rebate_vacant.htm(2013년 10월 방문).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상태일 것.

셋째, 산업용이 부분적으로 공실인 경우: 최소 90일 이상 연속하여 일부가 공실이
어야 하고, 공실부분이 명시적으로 표시되거나 물리적으로 건물 내부가 구분되어 있
어야 한다.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에 대하여서는 공실부분에 귀속되는 재산세의 30%
(산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35%)를 환급하여 준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⁹⁰⁰⁾

$$RA = VV / TV \times T \times VN / Y \times RP$$

- RA: 환급세액
- VV: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의 공실부분 가치
- TV: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 전체의 가치
- T: 상업용 또는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액
- VN: 공실 일수
- Y: 1년 일수
- RP: 세액환급률(상업용 30%/산업용 35%)

7. 재산세 행정

캐나다 재산세와 관련된 조세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평가공사(the
municipal property assessment corporation: 이하 MPAC)가 평가가액을 산정하
는 것,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평가대장(Assessment roll)을 작성하고 고지하는 것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평가 전문공사의 부동산 현행가치의 평가는 매4년을 주기로 하여 평가일
(the valuation day)이 지정되고, 평가가액이 적용되는 첫해의 직전연도의 1월 1일
기준으로 한다.⁹⁰¹⁾ 또한 MPAC이 과세연도에 부동산 유형을 분류하고 평가하며, 부

900) Id.

901) OAA: 19.2(1).

동산 평가대장(Assessment roll)에는 평가대상자, 평가대상 부동산, 평가대상 부동산 자산의 조세부담액, 평가대상 부동산의 과세감면액 및 평가대상 부동산의 유형 등에 대한 법정사항을 기재한다.⁹⁰²⁾

평가대장 기재가 완료되기 14일 이전까지 해당 사항을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⁹⁰³⁾ 만약 평가액 자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액 검토위원회(the Assessment Review Board)에 이의(Appeal)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해당 자 또는 타인의 토지에 대한 현행가치가 잘못되었다는 점, 학교지원(school support)과 관련하여 대장에서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되었다는 점, 부동산 유형이 잘못 분류되었다는 점, 각 부동산 유형별 귀속분이 잘못되었다는 점 및 재무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다.⁹⁰⁴⁾ 2009년 이후 토지에 대한 평가액 산정의 무오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MPAC에 있다.⁹⁰⁵⁾

납세고지서(Tax bill)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의 최소 21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하며, 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납세의무자의 성명, 부동산 평가대장상의 자산번호, 자산의 특징을 위한 사항, 자산의 평가액, 총납부세액, 확정고지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새롭게 포함된 세목에 대한 구분 표시, 독촉세액 및 가산금, 납부기한 등, 납부 장소,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the late payment charges), 선납부세액에 대한 할인액 및 각 유형별 법정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⁹⁰⁶⁾

902) OAA: 14(1).

903) OAA: 31(1.1).

904) OAA: 40(1).

905) OAA: 40(17).

906) OMA: 343(1), (2).

II. 소비인지세

1. 개관

캐나다는 우리나라가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이 인지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⁹⁰⁷⁾ 따라서 법인이나 개인 모두가 일반적으로 인지세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다만, 담배제조업자에게는 담배 케이스에 정부인지를 첨부하도록 하고 담배 제품에 대하여서는 Section 42 및 43에 따라 소비인지세(excise stamp duty)를 부과한다.

2. 담배제조업자의 소비인지세(Tobacco Manufacturer's Excise Stamp Duty)

담배제조업자의 소비인지세(Excise Stamp Duty)는 거래에 대한 소비세이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현재 캐나다 연방소비세법(the Canadian Excise Tax Act; ETA) Part 3에서 규정한다.

소비인지(Excise stamp)는 재무부 장관(the minister of national revenue)이 ETA Section 25.1(1)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서 Section 25.5.에 따라 발행이 철회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⁹⁰⁸⁾

소비인지는 재무부 장관이 담배면허(a tobacco licence)를 가진 자 또는 담배제품 수입허가를 받은 자(a prescribed person who is importing tobacco products)에

907) Alex Smith(Deloitte Group), "Canada Highlights 2012", Deloitte Global Service Ltd., 2012, pp. 1-2.

908) ETA: 2.

대해서 발행하며 이는 담배제품(a tobacco product)에 부착된다.⁹⁰⁹⁾

3. 담배제조업자의 소비인지세 세율 및 세액계산

소비인지세는 ETA Section 42 및 43에 따라 부과되는바, 담배제품의 품목마다 다르게 부과된다. Cigarette의 경우, black stock이라면 5개비당 \$0.374875를 부과하며, 그 이외의 일반적인 담배라면 5개비당 \$0.425를 부과한다.⁹¹⁰⁾ Tobacco stick의 경우에도 black stock이라면 한개비당 \$0.074975를 부과하며, 그 이외의 경우라면 한개비당 \$0.085를 부과한다.⁹¹¹⁾

Cigarette 및 Tobacco stick이 아닌 담배제품의 경우, black stock이라면 50그램당 \$4.685938을 부과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50그램당 \$5.312를 부과한다.⁹¹²⁾

Cigar의 경우에는 1000개비당 \$18.50의 소비인지세를 부과하며⁹¹³⁾, 잎담배의 경우에는 1 킬로그램당 \$1.572의 소비인지세를 부과한다.⁹¹⁴⁾ 다만 Cigar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⁹¹⁵⁾

4. 소비인지세의 감경 및 면제

소비인지세가 부과되는 담배제품 중 인지를 받지 않는 것⁹¹⁶⁾, 개인적 용도를 위하여 개인에 의하여 수입된 것⁹¹⁷⁾, 가공되지 않은 담배 잎⁹¹⁸⁾, 캐나다에서 제조되고 소

909) ETA: 25.1(1).

910) ETA: 1. of Schedule 1(Section 42).

911) ETA: 2. of Schedule 1(Section 42).

912) ETA: 3. of Schedule 1(Section 42).

913) ETA: 4. of Schedule 1(Section 42).

914) ETA: 5. of Schedule 1(Section 42).

915) ETA: Schedule 2(Section 43).

916) ETA: 45(1).

917) ETA: 45(2).

918) ETA: 46.

비인지세를 납부한 담배제품을 개인이 사적 용도를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⁹¹⁹⁾, 캐나다 밖에서 제조되었으나 수입되어 소비인지세를 납부한 담배제품을 개인이 사적 용도를 위하여 재수입하는 경우⁹²⁰⁾ 및 폐기 또는 재가공을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⁹²¹⁾에는 소비인지세가 감경된다.

5. 소비인지세 행정

재무부장관은 소비인지 발행량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⁹²²⁾, 소비인지 생산업자를 지정⁹²³⁾하거나 소비인지의 디자인 등을 채택, 변경 및 소각할 권한을 가진다.⁹²⁴⁾

담배면허를 가진 자와 담배제품 수입허가 또는 담배 및 담배제품의 소유자로서 해당 제품이 소비인지를 받기 위하여 보세창고(sufferance warehouse)에 보관된 경우에만 잎담배(raw leaf tobacco) 또는 담배제품을 포장하거나 인지를 부착할 수 있다.⁹²⁵⁾

담배제조업자의 소비인지세는 ETA Section 42 및 43에 따라 부과되며, Cigar 종류의 경우에는 특별히 세금이 부가된다.⁹²⁶⁾ 소비인지세에 대한 납부, 징수, 가산금 및 가산세에 대한 취급은 관세법(the Customs Act)에 따라 정하여진다.⁹²⁷⁾

919) ETA: 47(1).

920) ETA: 47(2).

921) ETA: 48.

922) ETA: 25.1(2).

923) ETA: 25.1(4).

924) ETA: 25.1(5), 25.5.

925) ETA: 27.

926) ETA: 43.

927) ETA: 42.

제5편 기타 조세

본편에서 특별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금(Special Transactions Taxes)에 대하여 순서대로 살핀다.⁹²⁸⁾

노령사회보장혜택에 대한 환수세금(Clawback Tax on Old Age Security Benefits, Part 1.2):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포함된 노령사회보장혜택 중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 한도금액(2013년의 경우 \$70,954)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

대법인에 대한 세금(Tax on Large Corporations, Part 1.3): 2006년 1월 1일까지 사업연도 말 현재 ‘캐나다 내에서의 회전된 과세대상 자본’(taxable Capital employed in Canada)이 당해 연도 자본공제액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 자본세(Capital tax)가 부과되었다. 자본공제액은 2003년까지는 \$1,000만, 2004년과 2005년은 \$5,000만이었다. 자본세율은 2003년 말까지는 0.225%, 2004년에는 0.2%, 2005년에는 0.175%이었다.

담배제조업자 부가세(Tobacco Manufacturers' Surtax, Part II): 담배제조업 이익에 대하여서는 해당 사업연도에 계산된 Part I 세금의 50%를 부가세로서 징수한다.

법인 분배금액에 대한 세금(Tax on Corporate Distributions, Part II.1): 이는 법인이 분배될 경우 주주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과세될 자본잉여금을 개인주주 단계에서 비과세되는 자본소득으로 취급되는 처분대가의 형식으로 분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세회피방지 세금을 해당한다.

928) Canadian Master Tax Guide, at Chapter XIII.

과도한 선택권 행사에 대한 부가적 세금(Additional Tax on Excessive Elections, Part III): 비상장법인은 순자본소득 및 특정 비과세 수취액을 자본배당(Capital dividend)으로서 분배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 분배액은 주주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법인이 자본배당으로 선택한 금액이 자본배당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한 6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만약 비상장법인이 주주의 동의를 얻는다면 그 초과금액을 독립적인 과세배당으로 취급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 세금을 피할 수 있다.

과도한 적격배당금 지정에 대한 부가적 세금(Additional Tax on Excessive Eligible Dividend Designations, Part III.1): 법인이 2005년 이후에 지급한 적격배당과 관련하여 적격배당 지정이 과도한 경우에 부가적인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배당이 적격배당으로 지정된다면 배당세액공제금액이 증가한다. 보다 높은 gross-up 비율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45%, 2010년에는 44%, 2011년에는 41%, 2012년 이후에는 38%이다. 증가된 배당세액공제율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gross-up 금액의 $\frac{11}{18}$, 2010년에는 $\frac{10}{17}$, 2011년에는 $\frac{13}{23}$, 2012년 이후에는 $\frac{6}{11}$ 이다. 지정 자체로 과세배당이 수취인 단계에서 적격배당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과도한 지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법인에 대하여 부가적인 세금이 부과된다.

비상장법인의 과세대상 수취배당금에 대한 세금(Tax on Taxable Dividend Received by Private Corporation, Part IV): 비상장법인이 수취한 특정 과세배당에 대하여서는 환급가능 배당세금(refundable tax)이 부과된다. 해당 세금은 주주에게 과세배당을 지급할 때에 환급된다.

법인의 특정 우선주에 기한 수취배당금에 대한 세금(Taxes on Dividend on Certain Preferred Shares Received by Corporation, Part IV.1): 이는 과세대상 우선주 또는 과세대상 제한된 금융기관(Restricted Financial Institutions: RFI) 주식들과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수취된 배당에 대하여 적용되는 특별한 세금을 말한다.

등록 자선단체에 관한 세금(Tax in respect of Registered Charities, Part V): 등록이 취소된 자선단체는 취소일로부터 1년 후(지급일)에 '취소통지일 이전 120일 당시(평가일)를 기준으로 계산한 자산의 공정시장가치의 전액'에 '그 평가일과 지급일 직전까지의 기간 중 수취한 기부금 또는 자선단체간 증여금액'을 더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는 2012년 1월 1일과 총독의 재가(Royal Assent)를 얻은 날 중 늦은 날부터 등록 캐나다 아마추어 육상협회(Registered Canadian amateur associations: RCAAAs)에 대하여서도 확대하여 적용된다.

금융기관의 자본에 대한 세금(Tax on Capital of Financial Institutions, Part VI): 당해 사업연도 중 금융기관의 캐나다 내에서의 회전자본이 자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2006년 7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세율은 1.25%이고 자본공제액은 10억캐나다달러이다. 즉, 과세대상 회전자본이 10억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1.25%가 세액이다. 자본공제액은 관계된 금융회사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분배되어야 한다.

법인의 과세대상 우선주에 대한 지급배당금에 대한 세금(Tax on Corporations Paying Dividends on Taxable Preferred Shares, Part VI.1): 단기 우선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는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 과세대상 우선주에 대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는 25% 또는 40%의 세금을 부과한다.

적격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에 대한 환급가능 세액 및 법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환급가능 세액(Refundable Tax on Corporations Issuing Qualifying Shares, Part VII and Refundable Tax on Corporations in Respect of SR&ED Tax Credit, Part VIII): 적격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에 대한 환급가능 세액은 일반적으로 1983년 6월 이후부터 1987년 이전까지 주식의 발행과 관련하여 세액공제로 지정될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하여 적용된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환급가능 세액은 일반적으로 1983년과 1985년 사이동안 주식에 대하여 지정 가능한(could be designated)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하여 적용된다. 위 두 세액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나 각 규정들은 해당 각 기간 중 지정이 이루어진 주식의 불입자본금을 계산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의미를 가진다.

제66조의5에 규정된 공제에 대한 세금(Tax on Deduction Under Section 66.5, Part IX): 이는 Part I 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법인이 누적상계계정(cumulative offset account)에 근거한 금액의 30%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을 의미한다. 법인은 미리 규정된 '특정 범주에 속한 캐나다 내 탐사 및 개발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의 비율을 지정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누적상계계정에 더하여진다. 석유가스세입법(Petroleum and Gas Revenue Act)에 따르면 당해 사업연도의 지정된 금액의 30%를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다. 누적상계계정에 더하여진 금액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후속 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해당 금액의 30%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지정 과정에서 절약된 세금과 동일한 금액을 후속연도에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투자 도관 파트너십에 대한 세금[Tax on SIFT(Specified Investment Flow-through) Partnerships, Part IX.1]: 이는 특정투자 도관 파트너십의 과세대상 비 포트폴리오 수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 2006년 10월 31일부터 적용된다. 2009년까지는 세율이 연방 일반법인세율 및 주 SIFT세율로 이루어져 왔다. 이 경우 주 SIFT세율은 13% 즉, 주 일반 법인평균세율을 의미한다. 2009년 이후에는 주 SIFT세율이 고정사업장을 가진 각 주의 일반 주법인세율을 의미한다.

이연이익공유플랜에 대한 세금[Tax on Deferred Profit Sharing Plans(DPSPs) and Revoked DPSPs, Part X): 이연이익공유플랜에 의하여 지배되는 신탁으로서 과세되지 않은 신탁이 비적격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 공정시장가치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한다.

이연소득플랜에 대한 과다불입금에 대한 세금(Tax in Respect of Overcontributions to Deferred Income Plans, Part X.1): 이연소득플랜에 과도하게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서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등록투자자에 대한 세금(Tax in Respect of Registered Investments, Part X.2): 만약 RRSP, RRIF, 또는 RESP에 의하여 지배되는 신탁이 비적격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수익자 또는 신탁 자체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노동단체 설립 벤처캐피탈 법인[Labour-Sponsored Venture Capital Corporations(LSVCCs), Part X.3]: 노동단체 설립 벤처캐피탈 법인이 연방 또는 주별 투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양한 세금이 부과된다.

등록교육저축플랜에 대한 과다지급액에 대한 세금[Tax in Respect of Overpayments to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s(RESPs), Part X.4]: RESP에 과도하게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세금이 부과된다.

등록교육저축플랜으로부터의 소득지급액에 대한 세금[Tax on Income Payments from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s(RESPs), Part X.5]: RESP로부터 교육지원 금액 또는 불입금에 대한 환급금액이 아닌 분배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구 이연소득플랜에 따른 신탁에 대한 외국자산과세(Former Foreign Property Tax on Trusts Governed by Deferred Income Plans, Repealed Part XI): 2005년 전에는 RRSP, RRIF, 또는 DPSP에 의하여 지배되는 신탁이 30%를 초과하여 외국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이는 폐지되었다.

TFASAs, RRSPs, and RRIFs에 대한 세금(Tax in Respect of TFASAs, RRSPs, and RRIFs, Part XI.01): 개인이 과도한 TFSA금액을 가지는 경우, 비거주자가 TFSA에 불

입하는 경우, TFSA가 비적격투자를 하는 경우 및 TFSA가 TFSA의 수익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2011년 3월 22일 이후 RRSPs와 RRIFs의 거래 및 소득 등에 대하여서도 위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연소득플랜에 따른 신탁에 의하여 보유된 특정 자산에 대한 세금(Tax in Respect of Certain Property Held by Trusts Governed by Deferred Income Plans, Part XI.01): RRSPs, RRIFs, RESPs 또는 DPSPs가 비적격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이 가산세는 2011년 3월 22일 이후에 취득한 그 투자자산에 대하여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비과세 실체가 취득일 당시의 공정 시장가치와 다른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정 자산의 처분에 대한 세금(Tax in Respect of Dispositions of Certain Properties, Part XI.02): 공적 기관이 문화적 자산을 매각하거나 자선단체 또는 캐나다 주정부가 생태적으로 민감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퇴직보상약정에 대한 세금[Tax in Respect of Retirement Compensation Arrangement(RCAs), Part XI.03]: RCA에 불입한 금액의 50%를 환급 가능세액으로서 불입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플랜 역시 환급가능세액으로서 그 소득의 50%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납부한 세금은 수익자에 대하여 지급된 \$2에 대하여 \$1의 비율로 환급 가능하다.

비과세실체가 지급한 특정지급액에 대한 세금(Tax in Respect of Certain Payments Made by Exempt Taxpayers, Part XII): 비과세 취급을 받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캐나다 천연자원의 생산에 귀속되는 일체의 수입(revenue), 생산(production) 또는 소득(income)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금원을 지급 또는 분배하거나 그렇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원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부과한다.

특정 캐나다 천연자원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세금(Tax on Carved-Out Income, Part XII.1): 납세의무자의 캐나다 천연자원으로부터의 소득의 최대금액이 미리 결정되거나 그 소득이 10년 이내의 기간 중 실질적으로 감소하거나 소멸할 것으로 예정된 경우에 해당 자산을 ‘carved-out 자산’이라고 하고 그 자산에 기인한 소득을 ‘carved-out 소득’이라고 한다. Carved-out 소득에 대하여서는 45% 세율에 의한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Part I 세금의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 이는 석유 및 가스 산업 등 천연자원산업의 지나친 조세회피거래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즉, 천연자원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결손금이 누적되거나 비과세 취급을 받는 실체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당 소득을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특정 신탁의 지정소득에 대한 세금(Tax on Designated Income of Certain Trusts, Part XII.2): 이는 비거주자 또는 다른 지정수익자들에게 소득을 분배하는 캐나다 거주자인 신탁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생명보험업자의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Tax on Investment Income of Life Insurers, Part XII.3): 이는 생명보험회사들의 유보된 투자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적격 환경신탁에 대한 세금(Tax on Qualifying Environmental Trusts, Part XII.4): 적격 환경신탁[종전에는 광산개발신탁(mining reclamation trust)이라고 불림]은 통상 신탁과세 규정과 무관하게 계산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28%의 세금을 납부한다.

노동단체설립기금 세액공제의 환원(Recovery of Labour-Sponsored Funds Tax Credit, Part XII.5): 이는 LSVCC 주식이 최소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상환되는 경우에 연방 LSVCC 세액공제를 환원시키기 위한 세금을 의미한다.

도관체 지분증서에 대한 세금(Tax on Flow-Through Shares, Part XII.6): 도관체 지분증서의 발급에 있어서 정유, 가스 및 광산회사들은 적격 캐나다 탐사 비용(Canadian Exploration Expenses: CEE) 및 캐나다 개발비용(Canadian Development Expenses: CDE) 중 당해 역년에 발생한 비용의 공제를 투자자들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그 비용들을 그 전 역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이를 '1년 소급 규칙(one-year look-back rule)'이라고 한다. 이 규칙을 통하여 위 각 비용의 공제가 앞당겨지는바, 이로 인한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위 도관증서의 발행자에 대하여 과세를 하게 된다. 그 세금은 소득계산 단계에서 공제할 수 있다.

참고문헌

- Alex Smith(Deloitte Group), “Canada Highlights 2012,” Deloitte Global Service Ltd., 2012.
- Canadian Master Tax Guide*(67th Edition), 2012, CCH.
- Government of Canada, *Summary Report an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2012.
- Guide to the Canadian House of Commons*, Library of Parliament, 2011.
- Haig in Haig(ed.), *The Federal Income Tax*, 1921
- KPMG, *Tax Facts(2012–2013)*, KPMG LLP., 2012.
- Ministry of Finance, “Jobs Growth and Long-term Prosperity”(Economic Action Plan 2012)
- Peter W. Hogg, Joanne E. Magee & Jin Yan Li, *Principles of Canadian Income Tax Law*, 7th Ed., CARSWELL, 2010.
- Report of the Royal Commission on Taxation*(Carter Report), vol. 3, 1996.
- Robert E. Beam · Stanley N. Laiken · James J. Barnett, *Introduction to Federal Income Taxation in Canada*(32nd Edition), CCH, 2011.
- Rober Marleau · Camille Montpetit, *House of Commons Procedure and Practice*(2000 Edition)
- Simons, Personal Income Tax*, 1938
- The House of Commons Canada, *Guide to the Canadian House of Commons*, Library of Parliament, 2011.
- The Honourable James M. Flaherty(Minister of Finance),
- Underhill and Hayton, *Law Relating to Trusts and Trustees*, 14th ed., 1987.
- Wardlaw, “Inter Vivos Trusts: A Base Primer,” *Estates and Trusts Quarterly*,

Vol. 5

- Belawski v. M.N.R., 54 DTC 457(T.A.B.)
- Bellingham v. R. (1995), [1996] 1 C.T.C. 187, 96 D.T.C. 6075 (Fed. C.A.)
- Buckmann v. M.N.R., [1991] 2 C.T.C. 2608, 91 D.T.C. 1249 (T.C.C.)
- Corporation Notre-Dame de Bon-Secours v. Communaut Urbaine de Quebec, 95 DTC 5017(S.C.C.)
- Canada v. Fries, [1990] 2 S.C.R. 1322 1323, [1990] 2 C.T.C. 439, 90 D.T.C. 6662 (S.C.C.)
- Curran v. Minister of National Revenue, [1959] S.C.R. 850, [1959] C.T.C. 416, 59 D.T.C. 1247(S.C.C.)
- Curran v. M.N.R., [1959] S.C.R. 850, [1959] C.T.C. 416, 59 D.T.C. 1247 (S.C.C.)
- Dunkelman v. M.N.R., 59 DTC 1242(Ex. Ct.)
- Graham v. Green(Inspector of Taxes), [1925] 2 K.B. 37, 9 Tax Cas. 309(K.B.)
In re Castioni(1891), 1 Q.B. 149
- Overdyck v. M.N.R. 83 DTC 307(T.R.B.)
- London & Thames Haven Oil Wharves Ltd. v. Attwooll, [1966] 3 All E.R. 145;
reversed [1967] 2 All E.R. 124 134 (C.A.)
- Luprypa v. R. (1997), [1997] 3 C.T.C. 2363, 97 D.T.C. 1416 (T.C.C.)
- Minister of National Revenue v. Eldridge(1964), [1964] C.T.C. 545, 64 D.T.C. 5338 (Can. Ex. Ct.)
- Moldowan v. Minister of National Revenue(1977), [1977] C.T.C. 310, 77 DTC 5213 (S.C.C.)
- M.N.R. v. Taylor, 56 DTC 1125(Ex. Ct.)
- M.N.R. v. Walker, [1951] C.T.C. 334, 52 D.T.C. 1001 (Ex.Ct.)
- Ryall v. Hoare, [1923] K.B. 447, 8 T.C. 521 (K.B.)
- R. v. Fortino, [2000] 1 C.T.C. 349, 2000 D.T.C. 6060(Fed. C.A.)
- R. v. Poynton, [1972] C.T.C. 411, 72 D.T.C. 6329 (Ont. C.A.)

R. v. Savage, [1983], C.T.C. 393, 83 D.T.C. 5409 (S.C.C.)

Stratton's Independence v. Howbert, 213 U.S. 399

Stubart Investment Ltd. v. The Queen, 84 DTC 6305

Thibodeau Family Trust v. The Queen, 78 DTC 6376 (F.C.T.D.)

Walker v. M.N.R. (1951), [1951] C.T.C. 334, 52 D.T.C. 1001 (Ex. Ct.)

<http://can-ottawa.mofat.go.kr/korean/am/can-ottawa/policy/overview/index.jsp>(2013년 3월 방문)

<http://www.parl.gc.ca/parlinfo/Lists/Party.aspx>(2013년 3월 방문)

<http://www.parl.gc.ca/MarleauMontpetit/DocumentViewer.aspx?DocId=1001&Sec=Ch01&Seq=3&Language=E>(2013년 3월 방문)

<http://www.cra.go.kr>(2013년 3월 방문)

http://www.toronto.ca/taxes/property_tax/assessment.htm(2013년 10월 방문)

http://www.toronto.ca/taxes/property_tax/tax_rates.htm(2013년 10월 방문)

http://www.toronto.ca/taxes/property_tax/tax_relief.htm(2013년 10월 방문)

http://www.toronto.ca/taxes/property_tax/rebate_vacant.htm(2013년 10월 방문)

〈저자약력〉

이준봉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 박사

변호사

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북경대학교 법학원 Visiting Scholar

주요국의 조세제도

— 캐나다 편 —

2013년 11월 18일 인쇄

2013년 11월 25일 발행

발행인 옥동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8-71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상 일 인쇄

인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ISBN 978-89-8191-670-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11,000원

